

피조사자의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 환경 개선방안 연구

2023. 11.

건국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단

제 출 문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본 보고서를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연구
용역과제인 피조사자의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 환경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1. .

연구기관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최대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낙범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임수민 (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이론적 배경	2
2.1. 형사절차의 가치요소	2
2.2. 범죄통제모델과 적정절차모델	4
2.3. 적정절차모델과 민주주의의 관계	7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3.1. 연구의 범위	16
3.2. 연구의 방법	17
II. 수사절차와 조사환경의 인권침해적 요소	19
1. 수사절차와 기본권	19
1.1. 수사절차	19
1.2. 수사절차와 기본권 보호	22
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요약 분석	22
2.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	24
2.1. 인권침해사건 결정례 표본의 선정 및 방법	24
2.2. 경찰조사 인권침해 현황	24
2.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요약 분석	26
III. 인권보호 가치요소의 도출	37
1. 경찰 면접조사	37
1.1. 경찰 면접조사 개요	37
1.2. 경찰 면접조사 결과	37

2. 피조사자 면접조사	42
2.1. 피조사자 면접조사 개요	42
2.2. 피조사자 면접조사 결과	42
IV. 조사환경의 개선과정과 실태 분석	45
1. 조사환경 개선과정	45
2. 방문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52
2.1. 연구방법	52
2.2. 경찰관서의 조사환경 개관	55
2.3. 가치요소별 쟁점 정리	61
V. 수사체제의 개편과 환경의 변화 검토	74
1. 형사사법절차의 개편과 최근 동향	74
1.1. 검찰 주도의 수사체제에서 경찰 주도의 수사체제로	74
1.2. 최근 변화: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령 개정	75
2. 경찰 수사체제의 개편과 방향	76
2.1. 광역수사체제의 확대	76
2.2. 죄종별 수사체제 도입	77
2.3. 확대수사부서의 강화	80
3.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에 따른 변화	80
3.1.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에 따른 수사부서의 통합	80
3.2. 경찰 수사체제의 현황	82
3.3. 향후의 변화 가능성	88
VI. 조사환경 및 개선방안 분석	89
1. 조사방법	89
1.1. FGI 및 인터뷰 개요	92

2. FGI 조사 결과	93
2.1. 강제수사 영역 : 유치장 내 조사실 설치에 관한 의견	93
2.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동선	94
2.3. 체포된 피의자 석방여부 결정과 대기시간의 최소화 방안	96
2.4. 개별조사실의 운영, 참여경찰관 제도의 실효성	97
2.5. 지구대, 파출소 조사실 폐지 여부	100
3. 설문조사의 설계	102
3.1.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	102
3.2. 표본추출 방식	103
4.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105
4.1. 설문조사 문항	105
4.2.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결과	107
4.3.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합의견	131
5.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154
5.1. 설문조사 문항	154
5.2.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결과	156
5.3.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합의견	176
VII. 분석결과 및 정책적 대안	191
1. 행정·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완전 분리	191
1.1.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공간의 완전 분리	191
1.2.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공간의 배치와 조사실 설치의 세부지침	194
1.3. 조사구역 지정 및 조사실 설치를 위한 기본절차 마련	205
2.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참여 개선	207
2.1. 의의와 논의 상황	207
2.2. 대표적 참여제도와 일본과의 비교	210
2.3. 사법경찰관리 조사 참여제도의 평가	212

2.4. 개선방안	216
2.5. 정책적 대안을 고려한 설계 지침	225
3. 기타 참여제도의 활용	225
3.1. 참여제도의 구분과 현황	225
3.2. 신뢰관계인의 조사 참여제도의 검토	227
3.3. 변호인의 조사 참여제도의 검토	232
4.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의 활용	236
4.1. 영상녹화제도의 검토	236
4.2. 정책적 대안을 고려한 설계 지침	248
5. 체포된 피조사자를 위한 조사환경 구축방안	249
5.1. 체포된 피의자의 조사	249
5.2. 체포 피의자의 조사과정과 인권침해적 요소	251
5.3. 비교법적 검토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55
5.4. 정책적 대안	261
5.5. 정책적 대안을 고려한 설계 지침	268
VIII. 제도적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 요약	272
1. 제도적 환경개선방안	272
2. 물리적 환경개선방안	282
참고문헌	290

〈 표 목차 〉

〈표 I -1〉 형사소송법 개정전후 비교 1	10
〈표 I -2〉 형사소송법 개정전후 비교 2	14
〈표 I -3〉 주요 연구범위	17
〈표 II -1〉 인권침해 권고 현황	24
〈표 II -2〉 연도별 경찰조사 인권침해 현황	25
〈표 II -3〉 참여경찰관 관련 규정	26
〈표 II -4〉 수갑사용 관련 규정	30
〈표 II -5〉 변호인 참여 관련 규정	32
〈표 III -1〉 경찰 면접조사 참여자의 특성	37
〈표 III -2〉 피조사자 면접조사 참여자의 특성	42
〈표 IV -1〉 경찰 조사환경 개선과정	45
〈표 IV -2〉 방문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52
〈표 IV -3〉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 실태	62
〈표 IV -4〉 조사 참여를 위한 조사실 구조	64
〈표 IV -5〉 종로경찰서 통합 수사당직실	66
〈표 IV -6〉 청주홍덕경찰서 통합 수사당직실	67
〈표 IV -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조사실 진술녹음장치	69
〈표 IV -8〉 청주홍덕경찰서 조사실 진술녹음장치	69
〈표 IV -9〉 체포 피의자 호송차고와 이동로	70
〈표 IV -10〉 유치장 및 모니터링 시스템	71
〈표 IV -11〉 조사실 예약 관리	73
〈표 V -1〉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형사과의 담당업무	77
〈표 V -2〉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업무	80
〈표 VI -1〉 인터뷰 및 설문조사의 절차 및 모듈	91
〈표 VI -2〉 면담조사 대상자의 특성	92
〈표 VI -3〉 조사환경 관련 FGI 조사 결과 요약	100

<표 VI-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경찰관)	104
<표 VI-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일반시민)	105
<표 VI-6> 경찰관 대상 설문문항의 구성	106
<표 VI-7> 조사실 진술청취 집중도 빈도분석	108
<표 VI-8> 통합당직실 피의자 도주위험성 빈도분석	109
<표 VI-9> 조사실 업무처리 효율성 빈도분석	110
<표 VI-10> 조사실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111
<표 VI-11> 조사실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112
<표 VI-12> 조사실 피조사자 안전확보 및 신변보호 빈도분석	113
<표 VI-13> 조사실 환경 개선 분야 빈도분석	114
<표 VI-14> 진술녹음, 영상녹화 장점 빈도분석	115
<표 VI-15> 진술녹음, 영상녹화 수사 투명성 빈도분석	116
<표 VI-16> 사무실 내 조사실 업무처리 효율성 빈도분석	117
<표 VI-17> 사무실 내 조사실 보안취약성 빈도분석	118
<표 VI-18> 사무실 내 조사실 소음 등 불편함 빈도분석	119
<표 VI-19> 사무실 내 조사실 안전문제 공동대응 빈도분석	120
<표 VI-20> 사무실 내 조사실 인격, 명예보호 취약성 빈도분석	121
<표 VI-21> 사무실 내 조사실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취약성 빈도분석	122
<표 VI-22> 사무실 내 조사실 피의자-피해자 동선 중복 우려 빈도분석	123
<표 VI-23> 사무실 내 조사실 여성 등 피조사자 불안감 빈도분석	124
<표 VI-24>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업무처리 집중도 빈도분석	125
<표 VI-25>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보안유지 빈도분석	126
<표 VI-26>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업무처리 불편함 빈도분석	127
<표 VI-27>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128
<표 VI-28>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129
<표 VI-29> 통합수사당직실 체포피의자 집중감시 통제 빈도분석	130
<표 VI-30> 통합수사당직실 경찰장구사용 필요성 감소 빈도분석	131

<표 VI-31> 조사실 도입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132
<표 VI-32> 조사실 도입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인권보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요약	133
<표 VI-33> 계급별 조사실 피조사자 진술청취 집중도 인식차이 (A_1)133
<표 VI-34> 계급별 통합수사당직실에서 피의자 도주위험성 인식차이 (A_2)	134
<표 VI-35> 계급별 조사공간-사무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효율성 향상 인식차이 (A_3)	134
<표 VI-36> 계급별 조사실 도입의 피조사자 인권보호 인식차이 (B_4)135
<표 VI-37> 계급별 조사실 도입의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인식차이 (B_5)	135
<표 VI-38> 계급별 조사실 도입의 피조사자 안전확보 및 신변보호 인식차이 (B_6)	136
<표 VI-39>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136
<표 VI-40> 계급별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 인식차이 (C_9)137
<표 VI-41> 사무실 내 조사실 설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138
<표 VI-42> 사무실 내 조사실 설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요약138
<표 VI-43>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효율적 업무처리 인식차이 (D_10)	139
<표 VI-44>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인식차이 (D_11)	140
<표 VI-45>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소음 등 불편함에 대한 인식차이 (D_12)	140
<표 VI-46>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안전문제 공동대응에 대한 인식차이 (D_13)	141
<표 VI-47>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피조사자 인격·명예보호 취약성 인식차이 (E_14)	141
<표 VI-48>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피조사자 사생활 보호 취약성 인식차이 (E_15)	142
<표 VI-49>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피의자-피해자 동선 중복 인식차이 (E_16)	142
<표 VI-50>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 피조사자 불안감 인식차이 (E_17)	143
<표 VI-51> 사무실 내 조사실 설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144
<표 VI-52> 사무공간-조사공간 완전분리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요약145
<표 VI-53> 계급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집중도 향상 인식차이 (F_18)145
<표 VI-54> 계급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보안유지 인식차이 (F_19)146
<표 VI-55> 계급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불편함 인식차이 (F_20)	146
<표 VI-56>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집중도 향상 인식차이 (F_18)	147
<표 VI-57>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보안유지 인식차이 (F_19)	148
<표 VI-58>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불편함 인식차이 (F_20)	149
<표 VI-59> 계급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피조사자 인권보호 인식차이 (G_21)	150

<표 VI-60> 계급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인식차이 (G_22)	150
<표 VI-61> 조사실 형태별 피조사자 인권보호 인식차이 (G_21)	151
<표 VI-62> 조사실 형태별 피조사자 인권보호 인식차이 (G_21)	152
<표 VI-63> 계급별 통합수사당직실 체포 피의자에 대한 통제 인식차이 (G_23)	153
<표 VI-64> 계급별 통합수사당직실 경찰장구 사용 필요성 저하 인식차이 (G_24)	153
<표 VI-65> 일반시민 대상 설문문항의 구성	154
<표 VI-66> 조사대상자의 경찰조사 경험 여부 및 조사유형	155
<표 VI-67> 조사대상자의 총 조사시간 및 조사공간 유형	156
<표 VI-68> 조사실 개선 필요분야 빈도분석	157
<표 VI-69> 조사유형에 따른 조사실 개선필요 분야 인식 교차분석	158
<표 VI-70> 조사실 형태에 따른 조사실 개선필요 분야 인식 교차분석	158
<표 VI-71> 경찰조사 시 우려부분 빈도분석	159
<표 VI-72> 조사유형에 따른 조사과정상 우려사항 인식 교차분석(※조사경험이 있는 경우)	161
<표 VI-73>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경찰조사시 우려사항 인식 교차분석	161
<표 VI-74> 경찰관 단독조사 시 심리적 위축 빈도분석	162
<표 VI-75> 경찰관 단독조사 시 경찰관 부적절한 언어사용 빈도분석	163
<표 VI-76> 조사실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164
<표 VI-77> 조사실 인권보호 빈도분석	165
<표 VI-78>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빈도분석	166
<표 VI-79>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166
<표 VI-80>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보장 빈도분석	167
<표 VI-81> 진술녹음, 영상녹화 동의 빈도분석	168
<표 VI-82> 조사유형에 따른 진술녹음, 영상녹화 동의여부 교차분석(※조사경험이 있는 경우)	169
<표 VI-83> 진술녹음, 영상녹화 도움분야 빈도분석	169
<표 VI-84> 조사유형에 따른 진술녹음, 영상녹화 인식 교차분석(※조사경험이 있는 경우)	171
<표 VI-85> 변호인 참여 경험 빈도분석	171
<표 VI-86> 변호인 참여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172
<표 VI-87> 변호인 참여 적극적 보장 빈도분석	173
<표 VI-88> 특별조사실 필요성 빈도분석	174

<표 VI-89> 특별조사실 필요집단 빈도분석	174
<표 VI-90> 조사유형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조사경험이 있는 경우)	176
<표 VI-91> 조사실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분석결과	177
<표 VI-92> 조사실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요약	177
<표 VI-93> 조사경험에 따른 조사실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차이	178
<표 VI-94>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분석결과	180
<표 VI-95>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요약	180
<표 VI-96> 조사경험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181
<표 VI-97> 성별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182
<표 VI-98>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분석결과	183
<표 VI-99>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요약	183
<표 VI-100>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183
<표 VI-101> 성별에 따른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184
<표 VI-102>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진술녹음, 영상녹화 인식 교차분석	185
<표 VI-103> 특별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분석결과	186
<표 VI-104> 특별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요약	186
<표 VI-105>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특별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187
<표 VI-106>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교차분석	187
<표 VI-107> 성별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인식차이	188
<표 VI-108> 성별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교차분석	189
<표 VII-1> 조사공간-사무공간 완전 분리에 따른 공간구분 및 세부영역 ..	195
<표 VII-2> 조사실의 위치 선정 설계지침	196
<표 VII-3>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유형별 개선안	197
<표 VII-4> 동선체계를 고려한 조사실의 위치 선정 설계지침	204
<표 VII-5> 조사구역 지정 및 조사실 설치를 위한 기본절차	206
<표 VII-1> 기능별 경찰공무원 정원	218
<표 VII-2> 경찰과 검찰의 영상녹화 대상 사건	237
<표 VII-3> 검찰의 영상녹화 지침상 영상녹화 대상사건의 변화	239
<표 VIII-1> 조사환경개선 설계지침	286

〈 그림 목차 〉

〈그림 II-1〉 수사절차 흐름도	21
〈그림 IV-1〉 안동경찰서 본관 1층 배치도	56
〈그림 IV-2〉 안동경찰서 본관 2층 배치도 (유치장)	57
〈그림 IV-3〉 안동경찰서 유치실과 모니터링 시스템	58
〈그림 IV-4〉 안동경찰서 민원동 1층	59
〈그림 IV-5〉 안동경찰서 민원동 2층	60
〈그림 IV-6〉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실	64
〈그림 IV-7〉 청주 흥덕경찰서 조사실	64
〈그림 IV-8〉 서울 종로경찰서 조사실	64
〈그림 IV-9〉 청주 상당경찰서 조사실	64
〈그림 V-1〉 경찰청의 수사 조직	82
〈그림 V-2〉 경찰청의 조직	83
〈그림 V-3〉 서울경찰청의 수사 조직	84
〈그림 V-4〉 서울경찰청의 자치경찰차장 산하 조직	85
〈그림 V-5〉 대구경찰청의 조직	86
〈그림 V-6〉 송파경찰서의 조직	87
〈그림 VI-1〉 방법론적 삼각검증법 및 구성내용	90
〈그림 VI-2〉 인터뷰 및 설문조사의 절차 및 모듈	91
〈그림 VI-3〉 조사실 구조의 유형	106
〈그림 VI-4〉 조사실 진술청취 집중도 빈도분석	108
〈그림 VI-5〉 통합당직실 피의자 도주위험성 빈도분석	109
〈그림 VI-6〉 조사실 업무처리 효율성 빈도분석	110
〈그림 VI-7〉 조사실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111
〈그림 VI-8〉 조사실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112
〈그림 VI-9〉 조사실 피조사자 안전확보 및 신변보호 빈도분석	113
〈그림 VI-10〉 조사실 환경 개선 분야 빈도분석	114

<그림 VI-11> 진술녹음, 영상녹화 장점 빈도분석	115
<그림 VI-12> 진술녹음, 영상녹화 수사 투명성 빈도분석	116
<그림 VI-13> 사무실 내 조사실 업무처리 효율성 빈도분석	117
<그림 VI-14> 사무실 내 조사실 보안취약성 빈도분석	118
<그림 VI-15> 사무실 내 조사실 소음 등 불편함 빈도분석	119
<그림 VI-16> 사무실 내 조사실 안전문제 공동대응 빈도분석	120
<그림 VI-17> 사무실 내 조사실 인격, 명예보호 취약성 빈도분석	121
<그림 VI-18> 사무실 내 조사실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취약성 빈도분석	122
<그림 VI-19> 사무실 내 조사실 피의자-피해자 동선 중복 우려 빈도분석	123
<그림 VI-20> 사무실 내 조사실 여성 등 피조사자 불안감 빈도분석	124
<그림 VI-21>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업무처리 집중도 빈도분석	125
<그림 VI-22>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보안유지 빈도분석	126
<그림 VI-23>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업무처리 불편함 빈도분석	127
<그림 VI-24>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128
<그림 VI-25>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129
<그림 VI-26> 통합수사당직실 체포피의자 집중감시 통제 빈도분석	130
<그림 VI-27> 통합수사당직실 경찰장구사용 필요성 감소 빈도분석	131
<그림 VI-28>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집중도 항상 인식차이(F_18)	147
<그림 VI-29>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보안유지 인식차이(F_19)	148
<그림 VI-30>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불편함 인식차이(F_20)	149
<그림 VI-31> 조사실 형태별 피조사자 인권보호 인식차이(G_21)	151
<그림 VI-32> 조사실 형태별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인식차이(G_22)	152
<그림 VI-33> 조사실 개선 필요분야 빈도분석	157
<그림 VI-34> 경찰조사 시 우려부분 빈도분석	159
<그림 VI-35> 경찰관 단독조사 시 심리적 위축 빈도분석	162
<그림 VI-36> 경찰관 단독조사 시 경찰관 부적절한 언어사용 빈도분석	163
<그림 VI-37> 조사실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164
<그림 VI-38> 조사실 인권보호 빈도분석	165
<그림 VI-39>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빈도분석	166

<그림 VI-40>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167
<그림 VI-41>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보장 빈도분석	168
<그림 VI-42> 진술녹음, 영상녹화 동의 빈도분석	168
<그림 VI-43> 진술녹음, 영상녹화 도움분야 빈도분석	170
<그림 VI-44> 변호인 참여 경험 빈도분석	172
<그림 VI-45> 변호인 참여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172
<그림 VI-46> 변호인 참여 적극적 보장 빈도분석	173
<그림 VI-47> 특별조사실 필요성 빈도분석	174
<그림 VI-48> 특별조사실 필요집단 빈도분석	175
<그림 VI-49> 조사경험에 따른 조사실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차이	178
<그림 VI-50> 성별에 따른 조사실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차이	179
<그림 VI-51> 조사경험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181
<그림 VI-52> 성별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182
<그림 VI-53>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184
<그림 VI-54> 성별에 따른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184
<그림 VI-55>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진술녹음, 영상녹화 인식 교차분석	186
<그림 VI-56>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특별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187
<그림 VI-57>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교차분석	188
<그림 VI-58> 성별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인식차이	189
<그림 VI-59> 성별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교차분석	190
<그림 VIII-4> 조사환경 개선모델	283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사무공간은 크게 행정부서와 수사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부서는 일반 행정부서처럼 행정사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관계인이 출입하는 민원부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특히, 범죄수사라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업무까지 처리되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범죄수사절차에서는 다양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공간은 사건관계들의 특성, 즉 일반 피의자인지, 체포된 피의자인지, 성폭력 피해자인지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공간적 특성을 요구한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자백을 받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죄질이 중대하기 때문에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특별히 도주 방지 등 보안이 필요하다. 피해자나 참고인 등은 기억 환기나 허위진술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데, 적합한 조사실의 크기, 보안시설, 방음, 편의시설, 인권보호 시설 등 공간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형사사법의 개혁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경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공판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피의자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성 강화와 위법수사에 대한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구금할 장소가 필요하고 피의자를 체포한 후 경찰서의 해당 부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위한 장소나 가족 등을 위한 면회 장소도 필요하다. 구금된 피의자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가 아니라 무죄추정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운동이나 휴게활동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의자와 분리된 이동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분리된 공간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동 피해자 등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조사실을 운영해야 하는 등 다양한 쟁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사부서는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들로 인하여 일반 행정부서와는 차이나는 특수한 사무환경이 구비되어야 하며, 인권보호와 수사의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수사부서가 가지는 인권보호나 적법절차준수 등의 특수한 상황이나 일반 피의자와 체포된 피의자의 조사와 같이 개별적인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반 사무실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무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2015년 이후 경찰청은 수사부서환경모델 개선계획에 따라 사무공간에서 분리된 개별 조사실을 설치하고 체포된 피의자가 이동하는 별도의 경로를 확보하였으며 체포 피의자 조사를 위한 통합조사실을 설치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인권보호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2022년 경찰의 책임수사체제가 시행된 이후 책임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조사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인권보호, 업무효율, 보안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 미래지향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배경¹⁾

2.1. 형사절차의 가치요소

형사절차에는 여러 가치요소가 존재하는데, 범죄자는 유죄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억울한 유죄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은 금기의 대상이다.

1) 이론적 배경에 제시된 범죄통제모델과 적정절차모델은 패커의 저서 “The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의 주요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여 소개한 ‘최대현,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형사절차 개혁방향에 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 2013, 53-78면’의 내용을 번역문의 특성상 원문 그대로 재인용한 것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형사절차의 책임이지만 피의자의 인권 또한 보호의 대상이다. 다음으로 형사절차의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이다. 형사절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제한적으로 추구될 수는 없으며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치안서비스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형사절차에서 강조되는 가치들은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다. 군부독재 시기에는 정치권력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사회질서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인권보호라는 가치는 소홀하게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같은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패커의 적정절차모델과 범죄통제모델은 형사절차의 다양한 가치를 단순화시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이다.²⁾ 범죄통제모델과 적정절차모델은 형사절차의 다양한 작용들에 함축되어 있는 가치 선택의 문제를 이해하기에 유익하다. 선택의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두 개의 가치인 범죄통제와 적정절차는 스펙트럼의 양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쟁하며 발전한다.

범죄통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형사절차는 범죄의 억제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며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를 위해서 비공식적 시스템 하에서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한다. 반대로 적정절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형사절차는 공식적 처리절차를 강조하며 수사나 기소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발견절차나 비공식적인 방법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두 모델은 형사절차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결정과 행위들이 일련의 스펙트럼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정의 형사절차가 범죄통제에 치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정절차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형사절차가 발전하고 있는 흐름이나 예측 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Herbert Packer, "The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68).

2.2. 범죄통제모델과 적정절차모델

2.2.1. 범죄통제모델

범죄통제모델은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형사절차는 신속한 범인검거와 강력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범죄발생의 억제를 중요한 책무로 여기면서 효율성에 근거한 강력한 범죄통제가 범죄통제모델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범죄통제모델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발견된 피의자를 체포하고 신속하게 수사한 후 빠른 재판을 통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도록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범죄통제모델의 효율성이다.³⁾ 범죄통제모델의 성공적인 평가지표에는 높은 비율의 체포와 구속, 자백에 의존하는 범죄수사, 100%에 가까운 유죄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신속하게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등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확정적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형사절차는 공식절차인 재판보다는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한 수사와 같은 비공식적 절차에 주로 의존하고 사건절차는 획일적인 조치와 처리를 강조한다. 실제적 진실은 주로 경찰서나 검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되고 법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발견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는 절차만을 수행한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경찰, 검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결정의 확정력을 확보한다.

패커(Packer)는 형사절차의 이 과정을 ‘공장의 컨베이어벨트’로 비유하고 있다. 형사사건들이 컨베이어벨트로 운반되고 경찰관, 검사, 그리고 판사는 정해진 위치에서 각각 정해진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범죄통제모델에서는 유죄가 사실상 수사단계에서 결정된다. 재판은 수사절차에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축소되고 경찰이나 검찰이 유죄나 무죄의 가능성을 재판 이전에 이미 결정하면서 무죄인 피의자가 빠른 시일안에 형사절차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은 범죄통제모델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단 피

3) Packer, 앞의 책, 158면. 이하 논의는 158-159면 참조.

의자를 체포하고 조사를 한 후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이후의 절차는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시각으로 진행된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 가능성으로 인해 신속하게 남은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이어진다.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결정은 사안에 따라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다. 그 시점은 피의자가 체포되는 순간이 될 수 있고 체포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에 유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정은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범죄통제모델에서 많은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생각되고 있다.

2.2.2. 적정절차모델

범죄통제모델이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와 같다면, 적정절차모델은 장애물 경기장과 같다.⁴⁾ 형사절차의 중간 중간에 필터의 역할을 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수사에서 재판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걸러주게 하는 것이다. 적정절차모델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 번째, 적정절차모델은 공판절차 이전에 행해지는 수사절차와 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체적 진실발견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수사관은 사람이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완벽한 관찰자가 될 수 없으며 심리적 또는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관찰에 오류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형사절차 초기에 유죄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긴다. 유죄의 결론은 사람에 의해서 도출되어지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판 이후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이 다시 재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다. 적정절차모델은 사실 오류를 발견하면 공식적 절차를 통한 연속 심리로 그 오류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

실수나 오류 관련하여 두 모델의 시각은 매우 다르다. 범죄통제모델은 효율성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나 판단의 오류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절차모델은 절차의 신뢰도는 효율성을 제

4) 위의 책, 163면. 이하 논의는 163-171면 참조.

고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보장된다고 본다. 적정절차모델에서 형사절차의 목적은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적정절차모델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공권력을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법집행기관들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된다. 권력은 항상 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공권력의 남용방지를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수사기관의 최대의 효율성 추구는 시민들이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적정절차모델의 형사절차는 공권력 행사를 기본적으로 통제하고 법집행기관들의 효율성 극대화를 제한하고자 노력한다.

네 번째, 적정절차모델은 형사절차에서 무기평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적정절차모델이 제시하는 무기평등의 원칙은 정부, 특히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개개의 시민들에게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못하는 개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는데 적정절차모델은 이를 공공의 의무라고 부른다. 미란다 원칙의 준수 의무 부여나 영국의 의무변호사 등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무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예들이다.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이고 국가와 시민 사이의 무기의 평등 수준은 변호사가 형사절차에 개입하는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수사단계에 대한 변호사의 개입이 빠를수록 무기의 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재판결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같이 커지게 된다.

다섯 번째, 적정절차모델은 형사처벌이 궁극적으로 제한적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형사처벌은 사회적 약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처벌의 효과는 근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⁵⁾ 기본적으로 수사를 통해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수사권에 대한 회의는 수사권한과 관련된 재량권을 축소하려는 방향을 진행

5) Paul M. Bator, "Finality in Criminal Law and Federal Habeas Corpus for State Prisoners," Harvard Law Review, 76(3), (1963), p. 442.

한다.⁶⁾ 예컨대,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수방류업체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 와 방법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⁷⁾

2.3. 적정절차모델과 민주주의의 관계

범죄통제모델과 적정절차모델은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가치 모델로 형사절차의 중요한 가치를 단순화시켜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형사절차의 가치들은 서로 다른 밀도와 배합을 통해 각각의 국가시스템에서 공존한다. 범죄통제모델은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피의자의 유죄확정과 결과적인 범죄통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적정절차모델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성형은 교수는 패커의 두 모델과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을 양적조사방법을 통해 분석했다.⁸⁾ 각 국가의 민주주의의 수준에 따라 형사절차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전세계 111개 국가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두 모델 중 적정절차모델의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범죄통제모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국가는 사회통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식민지 정권의 형사절차를 의미한다.⁹⁾ 통제에 일방적 억제를 의미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보다 공권력이 우선시 된다. 시민들의 기본권은 제한되며 법집행기관들은 통제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범죄통제모델에서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절차가 재판절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법률상 권한과 재량을 수사기관에 부여함

6) Packer, 앞의 책, 171면.

7) 형사처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잘 보여준 글로 Keith Hawkins, "Law as Last Resort: Prosecution Decision-making in a Regulatory Agen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참조.

8) Hung-En Sung, "Democracy and Criminal Justic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From Crime Control to Due Proces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5(1), (2006).

9) Neal Tate and Stacia L. Haynie, "Authoritarianism and the Functions of Courts: A Time Series Analysis of the Philippine Supreme Court, 1961-1987", Law & Society Review, 27(4), (1993), pp.733-736.

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 유죄는 사실상 수사기관에 의해서 재판 전에 결정되고 재판은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적정절차모델의 가치가 강조되는 국가의 형사절차는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다. 정부 관료들은 선거, 여론 등 다양하게 책임을 부담하며, 법적 감시권한을 가진 정부기관들이 정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남용 등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¹⁰⁾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권력에 의한 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으며, 부적법한 압수·수색, 체포와 구속, 고문 등은 법원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고 금지된다.

형사시스템은 피조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철저한 기본권 보장이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효율성을 다소 떨어뜨리기도 한다. 발전된 민주주의는 범죄통제의 가치보다 적정절차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로 인해 공판절차가 치열해지고 무죄율은 증가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국가의 형사절차는 범죄통제모델의 가치 중심에서 적정절차모델의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이어지는데, 유죄율은 하락하고 효율성은 저하될 수도 있다. 피조사자들의 다양한 권리가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심각하게 인식되고 효율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적정절차 모델의 가치가 민주주의를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며, 국민신회의 기본이 되는 공정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시민들은 기본권이 형사절차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되어 진다고 여기면서 경찰, 검찰, 법원의 활동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다.¹¹⁾

2.4.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수사체제의 변화

독재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정부형태는 서로 다른 요구와 제한들을 통해 경

10) Guillermo O'Donnell,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5, (1994), pp. 61-62.

11) Mark Moore, "Notable Speech: Legitimizing Criminal Justice Policies and Practice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66(10), (1997).

찰, 검찰, 법원 등 형사절차의 여러 기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형사절차 역시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형사절차는 과거보다 더 투명해지고 다양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지고 있다.¹²⁾

한국의 형사절차가 검사 중심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장애물경기장으로 변화하려는 본격적 시도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효율성보다는 인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형사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의 결과가 사실상 검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형사절차는 범죄통제모델의 전형적인 예시처럼 검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와 같았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변경되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권과 실질적 수사종결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¹³⁾ 또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별다른 통제 없이 기소로 이어지며 기소된 사건의 99퍼센트 이상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¹⁴⁾ 이렇게 높은 비율의 유죄율은 법정에서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우월한 증거능력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¹⁵⁾

유죄율 뿐만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이의신청 기각비율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¹⁶⁾

비공식적 절차인 검찰 수사에 의한 사실 발견의 중요성,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한 높은 의존과 이를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형식적인 재판, 그리

12) Sung, 앞의 논문, p. 311.

13) 김대근,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종결의 쟁점과 대안-법해석학적 의미와 입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2022), 55-81면.

14) 최대현,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형사절차 개혁방향에 대한 소고”, 『서울대학교법학』, 제54권 제2호, (2013), 53-78면.

15) 신동운,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법학연구』, 제47권 제1호, (2006), 107-132면.

16) 최대현, 앞의 논문, 2013, 53-78면

고 결과인 높은 유죄율 등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범죄통제모델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적정절차모델이 강조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와 같았던 한국의 형사절차에 장애물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첫번째로 검사가 독점하고 있던 수사절차와 기소절차를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검사에게 수사절차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필터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경찰을 검사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적 책임수사기관으로 설정하고 검사에게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애물인 필터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표 I -1> 형사소송법 개정전후 비교 1

형사소송법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p>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p>	<p>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p>

<p>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p>	<p>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p>
<p><신 설></p>	<p>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p>
<p><신 설></p>	<p>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p> <p>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p> <p>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신 설></p>	<p>제197조의4(수사의 경합)</p> <p>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p> <p>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p> <p>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p> <p>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신 설></p>	<p>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p>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절차적 단절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형사시스템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영국의 국립기소청 설치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의 통합은 검사가 객관성을 잃을 수 있고 필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인권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¹⁷⁾ 같은 이유에서 선진사법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접 수사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기능분리를 구현하고 검사의 필터로서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사절차에서의 결정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사절차가 재판절차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던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 관련 규정도 삭제하였다.

17) 수사와 기소의 기능통합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현, “수사와 기소 기능분리의 원칙과 한계: 영국 검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경찰학연구*, 32호, (2012) 참조.

<표 I -2> 형사소송법 개정전후 비교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삭 제>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위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범죄통제모델의 가치가 중시되는 수사절차 중심의 형사절차는 앞으로 적정절차모델의 재판절차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¹⁸⁾

1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선 경찰서 조사환경의 개선과정과 현재의 운영실태를 경찰서 방문조사와 경찰관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적인 실태와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찰수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조사환경적 가치요소를 주요국가 경찰의 조사환경과 수사과정을 비교분석을 하여 검토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사실 환경 구축방안, 조사 중 수갑 착용 등 체포 피의자 조사와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조사참여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사법적 쟁점인 영상녹화제도나 진술녹음제도의 도입방안, 수사절차적인 쟁점으로 유치장의 설치와 운영방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환경개선방안이 반영된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과 예상목차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3> 주요 연구범위

구 분	주 요 연 구 범 위
조사환경분석	경찰서 수사환경 개선과정 검토
가치요소 도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사건 결정례 분석
	경찰서 등 수사기관 방문조사
	사건 관계인 면접조사
가치요소 분석 및 정립	경찰관과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논의 (비교법적검토)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방안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경찰관의 조사 참여 개선방안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투명성 제고방안
	체포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방안
변화모형제시	분석결과를 반영한 세부 조사환경 설계모델 제시

3.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피조사자의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환경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관련 문헌 및 연구논문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현재 조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세 번째로 문헌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 결정례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로 현장 방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방문 조사는 2013년부터 진행된 조사환경 개선 과정들을 살펴 볼 수 있는 경찰관 서에 대한 보도자료와 시범 운영이 진행되거나 최근에 경찰서 신축을 앞두고 있는 경찰관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면접조사는 경찰관, 수사기관의 수

사관, 피조사자,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와 인권침해사건 등에서 나타난 사안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네 번째는 방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서를 작성하고 전국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경찰서 방문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피조사자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조사환경에 대한 인식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환경개선방안이 반영된 구체적인 설계안을 건축 및 실내디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수사절차와 조사환경의 인권침해적 요소

1. 수사절차와 기본권

1.1. 수사절차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하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¹⁹⁾, 수사는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자수(형사소송법 제240조), 신고(범죄수사규칙 제47조)²⁰⁾, 인지(경찰수사규칙 제18조)²¹⁾ 등에 의해서 시작된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그러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피의자의 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에게 다음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인 구속 전 피의자신문

19)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20) 경찰청훈령 제1094호, 2023. 8. 18. 시행

21)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2022.1.4. 시행

을 통해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판사의 심사를 거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거나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때에는 판사의 중간 심사를 거쳐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5조)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서 출감하여 검사실이나 경찰의 수사부서 사무실로 피의자를 인치시킨 후 조사가 가능하다.²²⁾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와 증거를 조사한 후 피의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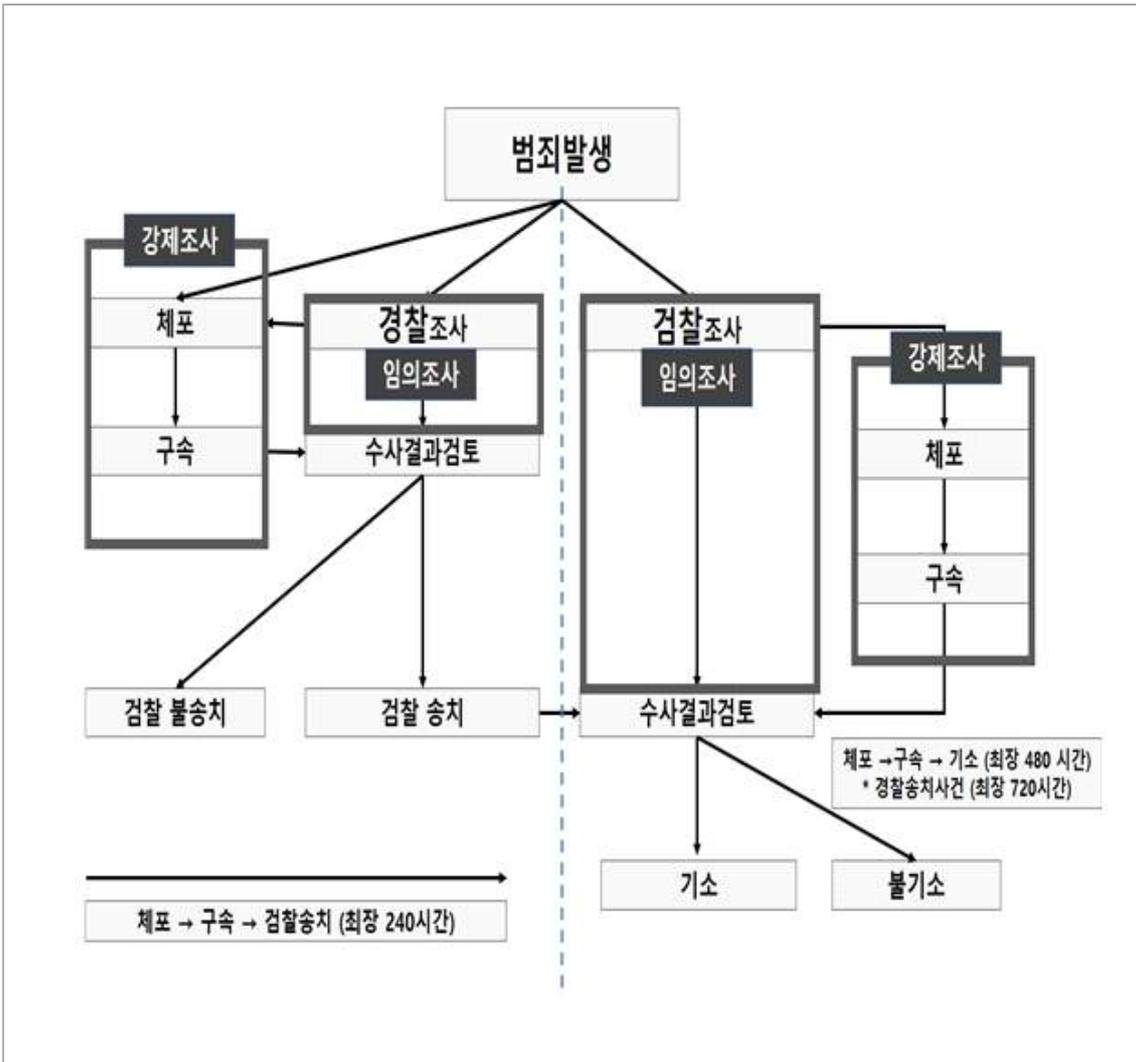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를 제기하는데 수사절차는 여기서 마무리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

고소, 고발 등에 의해 범죄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형사소송법 제257조) 공소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검사가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검사는 수사결과와 증거를 종합할 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에 처분을 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검사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처분을 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범죄발생 후 수사절차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22) 인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사람을 강제로 특정 장소로 데려다 놓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03.

<그림 II-1> 수사절차 흐름도



1.2. 수사절차와 기본권 보호

1.2.1.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인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범죄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 제1항) 우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와 참여권을 보장한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 제2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이동시킬 때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고(범죄수사규칙 제178조)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 장소를 이용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1항)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3항)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령, 심신상태, 그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감 또는 긴장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제1항) 여기서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밖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1.2.2.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보호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키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우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12조 1항) 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인 이외에 피의자의 신뢰관계인도 동석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또는 전달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2.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

2.1. 인권침해사건 결정례 표본의 선정 및 방법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한 2003년부터 2022년 사이 총 112건의 ‘경찰조사 인권침해 현황’을 확인하였다. 관련성 없는 2건을 제외하고, 여러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전부 집계하여 총 119건의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조사환경 및 제도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 ‘경찰’ 키워드를 검색하여 확인 가능한 2016년에서 2022년 사이의 결정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결정례 전문을 수집하였다. 이 중 시위진압, 채용, 순직 불인정 등 관련성 없는 내용을 제외한 86건의 결정례 중 조사환경 및 제도 관련 내용 16건을 선별하여 결정례 상세내용 요약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경찰조사 인권침해 현황

2003년부터 2022년 사이 총 112건의 경찰조사 인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환경 및 제도 관련 인권침해 문제는 크게 절차적 흠결, 방어권 제한, 부당조사, 조사과정 수갑착용, 사생활 침해, 가혹행위, 수사관 참여제도 미준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외에 조사장소 관련 문제도 확인되었다.

<표 II-1> 인권침해 권고 현황

구분		건수	상세
가혹행위		5	폭행, 구타, 고문
수사관 참여제도 미준수		4	
조사과정 수갑착용		11	유치장 수감시, 조사 진행 중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용(2시간, 3시간 20분)
사생활침해		7	수사상황 유출, 체포피의자 노출, 조사과정 외부공표, 조사과정 노출, 피조사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
방어권 제한	신뢰관계인	24	미성년자(소년범), 외국인, 장애인
	변호인	6	변호인 선임권(조력권) 미고지(2), 변호인 접견권(조력권) 제한, 변호인 참여 제한, 메모제출요구

조사장소	4	다용도실/탈의실/흡연실 조사, 조사장소 임의변경
부당조사	24	부적절한 언어사용(8), 욕설(4), 편파 수사, 구금지연, 진술 강요, 혐의내용 무관 조사, 외국인 인종차별,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무고죄 언급·불필요한 대면조사, 메모사용금지
절차적 흠결(미준수)	32	심야 조사(23), 진술거부권 미고지(4), 수사상황 안내 미흡, 조사과정 영상녹화 미고지, 휴식시간 미보장, 구금지연, 피의사실 설명 미흡
기타	2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구속 기간) 권고, 관련성 없음

경찰조사 인권침해 현황을 2003년에서 2012년, 2013년에서 2022년의 10년 단위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아래 <표 II-2>와 같이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폭행·가혹 행위는 5건에서 0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절차적 흠결(미준수)의 경우 22건에서 10건으로 15.3%p 감소하였다. 반면 수사관 참여제도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 유형이 새로 확인되었고, 방어권 제한 및 사생활침해 관련 인권침해 현황이 증가하였다.

<표 II-2> 연도별 경찰조사 인권침해 현황

구분	2003 - 2012		2013 - 2022	
	건수	%	건수	%
폭행·가혹행위	5	7.7	0	0.0
수사관 참여제도 미준수	0	0.0	4	7.4
조사과정 수갑착용	6	9.2	5	9.3
사생활침해	3	4.6	4	7.4
방어권 제한 (신뢰관계인, 변호인)	13	20.0	17	31.5
조사장소	3	4.6	1	1.9
부당조사	12	18.5	12	22.2
절차적 흠결 (미준수)	22	33.8	10	18.5
기타	1	1.5	1	1.9
전체	65	100.0	54	100.0

2.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요약 분석

2.3.1. 참여경찰관 없는 단독수사

참여경찰관 관련 결정례 전문을 확인 가능한 총 3건 중 2건은 병합사건이었다. 관련 사건의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인 경찰관들이 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를 위반하여 단독으로 신문하였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표 II-3> 참여경찰관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 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강요나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등 인권침해 위험을 예방하여 수사기관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한 증거능력을 확보하도록 도모하는 한편, 피의자에게는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경찰)들은 협소 공간, 수사 대상자의 참여경찰관에 대한 경계, 코로나 상황 등의 이유로 조사실 내에는 동석하지 않았으나 조사실 문을 열어놓고 사무실에서 조사 내용을 듣거나 사무실 밖에서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함(21진정0061800 사건 외 4건), 또는 신문시 같은 사무실 및 공간에 있음(19진정0678900 사건 외 6건, 22진정0024800 사건)으로 해당 신문과정에 참여했음을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참여 방식은 피의자신문 조서상에 참여 기재가 있다고 해도 다분히 형식적인 조치일 뿐이며, 피의자신문 과정에 사법경찰관리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한 단독조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특히 19진정0678900사건 외 6건(병합)의 경우 ‘수사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에 의한 비위’가 인정되었는데, 이는 그 보호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참여수사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다른 사무를 보며 같은 공간

에 있었다는 경우까지 참여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19진정0678900 외 6건(병합)에서 참고인들은 “피의자가 영상 녹화를 희망하지 않으면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사무실 공간 내에 있는 다른 직원이 개인 사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참여인이 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담당했었던 사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참여 여부가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해당 일자에 출장, 휴가, 병가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같은 팀원으로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사관 참여제도는 수사기관과 방어권 주체 간의 지위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제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양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피진정인에게 ‘수사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에 의한 비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그 보호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참여수사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상에 참여 기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참고인들이 다른 사무를 보면서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한 단독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1진정0061800 외 4건(병합)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이 진정인들을 단독으로 조사하였으나, 서류에는 2명이 조사했다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과 참고인들은 조사실 구조상 두 명의 수사관 동석 조사의 어려움, 참여경찰관 동석과 관련하여 밀폐된 협소 공간에서 경찰관 2명을 상대해야 하는 수사대상자들이 간혹 부담스러움·위험을 느껴 민원 제기 또는 참여경찰관 경계로 인해 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코로나 사태 발생 등의 이유로 조사실에 3인 이상이 입실하는 것을 지양해 왔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기관의 조사실이 협소하여 경찰관 2명이 동석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점, 조사실 문을 닫고 영상녹화장비가 있는 대기실에서 참여하거나 조사실 및 대기실 출입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사무공간에서 참여하였다는 피진정인과 참고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참여 방식은 피의자신문 조서상에 참여 기재가 있다고 해도 다른 사무를 보면서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형사 절차상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할 피의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헌법」 제11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모든 진정 사건에서 경찰관의 행위는 조사실의 구조환경적 문제와 많은 업무량과 인력 부족 등에서 기인한 관행적인 문제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 시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참여경찰관의 동석이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조사실 구조 및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전의 동일 내용 진정사건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내용을 권고 하였지만, 일선에서 유사한 상황이 계속 재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21진정 0061800 외 4건(병합) 사건에서 이와 관련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경찰관 입회가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조사실 구조 및 환경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참여경찰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부 훈령 등에 구체화할 것을 추가적으로 권고하기도 하였다.

2.3.2. 과도한 수갑 사용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경찰조사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서는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조사과정 수갑착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5건 확인되었지만, 결정례 전문과 보도자료에서 중복되지 않는 7건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지구대 내 피의자 대기석에 있는 진정인에게 한 시간 가량 뒷수갑 사용(19진정0602300),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착용시킨 상태에서 50분가량 벽면 고리와 뒷수갑을 또 다른 수갑으로 연결(19진정 0545100), 피의자신문을 하는 시간과 대기하는 시간 내내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수갑사용경위 등 기록 누락(22진정0125600)한 사례가 있다.

피진정인(수사관)들은 도주 및 자해 우려, 수갑 미착용 상황에서 도주 및 자해가 실제 발생하였을 때의 비난 가능성 및 수사의 차질, 피해자들이 수사에 임한 태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장구는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도주나 자해의 위험 정도 및 그 예방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찰장구의 과도한 사용

은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사용, 수갑 등 사용지침 등을 위반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19진정0545100)고 하였다.

유치장에서도 유사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는 18진정0520300(유치장에서의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사건에서 “경찰장구 오남용에 대한 기 권 고들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유치장에서의 수갑과 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일선기관에 수갑과 포승의 오남용 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전체 유치인보호관 대상으로 수갑과 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호유치실 내 과도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19진정 0545100)사건을 살펴보면, 경찰은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착용시킨 상태에서 벽면 고리와 뒷수갑을 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50여분 가량 경찰장구를 사용하였다. 피진정인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가 있고, 입감 당시 진정인이 “집에 보내주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고 말한 바 있어 진정인에 대해 뒷수갑을 착용시킨 후 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가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보호유치실 자체의 벽면 및 바닥이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은 유치인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입감 자체로도 그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는 점,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뒷수갑 착용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점, △실령 진정인의 소란행위가 보호유치실 내에서도 계속되어 다른 유치인의 평온을 깨트리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하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뒷수갑이라는 신체의 결박이 이루어지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거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유치인의 거동을 더욱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유치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 피진정인의 행위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경찰장구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표 II-4> 수갑사용 관련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경찰청 내부 지침 「수갑 등 사용지침」

※ 수갑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한다.
- 피의자 검거·호송·사무실 대기하는 경우 △ 피의자 행동 △ 현장 상황 △ 죄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
 - 피의자가 ①자살·자해·도주·위해·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③강력범죄(살인·강도·마약·방화 등)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뒷수갑 사용 가능
- ※ 뒷수갑을 사용한 경우라도 뒷수갑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대상자의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병환으로 인해 뒷수갑 사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앞수갑 사용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위 결정례 분석결과 실제로 피의자의 ‘도주 우려’ 등으로 인해 조사 시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갑 미착용 상황에서 도주 및 자해가 실제 발생하였을 때의 비난 가능성을 우려하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최대현·이동희(2016)²³⁾의 연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별도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유치장 안으로 한정되어 있고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의 사무실에서 조사 및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의 도주에 대한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한 경

23) 최대현, 이동희 (2016) 수사사무환경이 경찰 수사관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찰학논총, 11:2, 113-147

찰관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기타 비슷한 내용의 진정 사건들에서 인권위는 ‘직무교육’을 가장 많이 주문 결정하였는데, 유사한 사례가 꾸준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수사관 개개인에 대한 직무교육 외에 조사 시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도주 우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수사 환경 설계 관련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도 수갑을 채운 상태로 무리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피의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사례(17진정0597800)도 확인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뇌경색 및 심근경색으로 계속 치료 중이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였음에도 피의자를 장시간 대기시키고, 야간 조사를 포함하여 이틀 동안 3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는 체포된 이후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이틀 동안 유치장 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대기실, 조사실에서 거의 대부분 계속해서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마약 투여 여부 확인을 위해 소변 검사를 받고, 시료 채취 동의서에 서명할 때에도 수갑을 찬 상태였다. 이후 조사실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계속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상체를 숙인 채로 힘들어하는 모습과 경찰이 피의자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2조에서 조사에 소요된 시간이나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조사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찰청 관련 지침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경찰청장은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등의 건강을 고려하여 피조사자에 대한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2.3.3. 진술 강요 등 부당수사

사건18진정0917000은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는 사건으로, 진술강요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안이다. 수사과정 중 수사관이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진술을 강요하고 사건 내용 파악과 크게 관련 없는 인적사항 등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이며, 전문 중 진술 강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경찰관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언동을 함으로써 피의자의 진술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몰아가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압수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 신문과정 동안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어떤가요?”, “왜 거짓말 하나요?”, “명백히 거짓말인데 어디에서 날렸나요?” 등 ‘거짓말’ 과 관련된 질문을 수차례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거짓말’ 발언 중 수사자료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합리적인 의심에서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피의자로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때마다 나타나거나, 아니면 피의자의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사실상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인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신문과정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에서 경찰의 행위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향후 자백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려는 잘못된 업무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3.4. 변호인 조력권 침해

조사과정에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에 대한 감시자 및 수사에 대한 조언자 등의 역할을 하며, 변호인의 참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절차이다. 사법경찰관은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표 II-5> 변호인 참여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19진정0429400 결정례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중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그 의사를 존중하여 ① 관련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피의자에게 상당시간을 제공하여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② 피의자가 상당 시간 이내에 변호인을 선임한 후 자신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진정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가 조사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표 II-1>의 인권침해 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침해 사례로 변호인 선임권(조력권)을 미고지한 경우, 참여 및 접견권을 제한한 경우 등이 확인된다.

결정례 전문을 살펴보면, 사건19진정0451100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미고지한 사례이다. 경찰은 조사 시작 전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교부한 후 구두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의 뭐 사안은 아니기때문에 그냥 그 영상 봤던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 라고 발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조사 종료 후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온전한 자의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는 보기 어려워, 경찰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건19진정0429400은 변호인 조력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경찰은 진정인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자 진정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는 사람(진정인의 모친)과 연락 및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즉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10분 동안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명백히 그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보장해야할 상당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한 행위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 맞으며, 비록 이 사건 진정인이 조사 종료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진정인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온전히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조치 또한 오랜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인적 책임을 묻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아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둘 것과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정례 검토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선임의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변호인 조력권의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헌법, 형사소송법 상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거나 조력권이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는 경우의 문제점이 있어 관련 규정 보완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3.5. 미성년 피의자 인권침해

사건20진정0191400은 미성년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결정례이다.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경우 성년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보다 주의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례를 통하여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주의환기 및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

교육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결정례에서 미성년 피의자가 현행범인 체포 당시 범행용구로 보이는 아이폰 랜치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도주 및 폭행 등의 염려가 있었다는 경찰의 주장이 인정되어, 현행범인 체포 당시의 수갑사용 행위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구대 인치 이후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의 단순육설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유’, ‘지구대 내 회의실과 피의자 대기실로의 분리에 지나지 않은 장소이동’은 정당한 수갑사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그 사용 목적이 도주 및 자해의 방지보다는 인적사항을 자백받기 위한 조사의 방편으로 보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스스로 인적사항을 밝혀 미성년자임이 인지되었다면,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이상 곧바로 수갑을 해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보호자에게 체포사실 및 입회 여부 등을 알리는 미성년 피의자 보호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체포통지 및 보호자 조사입회 의사확인 등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보호절차 준수 의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하였고, 압수 및 조사과정에서 미성년 피의자의 보호자 입회 없이 제반 수사절차를 진행하였다. 피의자들의 신원확인 거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곧바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 또는 대기토록 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반드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통상의 식사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적절한 휴식 및 건강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사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미성년 피의자들은 15:00경 체포되어 늦은 밤에 석방되거나 유치장 입감되었는데, 통상적인 저녁식사가 아닌 떡(날개 단위로 포장된 절편 등)을 식사대용으로 제공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황상 식사제공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됨에도, 체포된 피의자에게 사회통념에 비추어 최소한의 음식물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일선 경찰 지구대 등에 별도의 관련 예산 배정 등 대비책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정이 기본적인 인권침해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경

찰관서의 수사·형사과 사무실 및 유치장 관리부서 등과 달리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는 피의자를 장기간 인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는 별도의 예산 등을 책정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경찰관의 자비로 지출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Ⅲ. 인권보호 가치요소의 도출

1. 경찰 면접조사

1.1. 경찰 면접조사 개요

수사경력 5년 이상의 경찰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은 담당 연구원 1인 또는 2인이 해당 권역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업무 공간과 분리된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 기간은 2023.05.31.~07.27. 이며, 면접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경찰 면접조사 참여자의 특성

No.	소속	수사경력	No.	소속	수사경력
경찰1	경찰서	25년	경찰10	지방경찰청	5년
경찰2	경찰서	10년	경찰11	지방경찰청	25년
경찰3	경찰청	20년	경찰12	지방경찰청	25년
경찰4	경찰청	20년	경찰13	교육기관	10년
경찰5	경찰서	5년	경찰14	교육기관	10년
경찰6	경찰서	20년	경찰15	교육기관	10년
경찰7	경찰서	10년	경찰16	교육기관	10년
경찰8	경찰서	10년	경찰17	공수처	20년
경찰9	경찰서	10년	경찰18	형사팀	20년

1.2. 경찰 면접조사 결과

1.2.1. 개별 조사실 구조에서 사법경찰리의 참여

면접조사 결과 경찰관들은 △조사실 문을 열어놓고 사무공간에서 조사내용 청취, △개별조사실 가운데 별도의 공간 만들어 근무자 배치, △개별조사실에 창문을 내서 옆 조사실 수사관이 간접적으로 참여, △조사의 처음과 끝에만 참여, △사무공간에 책상을 일자로 배열하고 조사해서 옆에 사람이 자기 조사

하면서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경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의 경찰관 참여방법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인권 보호 측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사실 문을 열어놓는 등의 경우 조사내용을 조사실 밖에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관과 참여하는 경찰관 모두가 ‘참여경찰관 제도’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리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사실에서의 개별 조사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부담, 특히 장시간 조사 참여시 본인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다른 업무 중인 수사관에게 참여를 부탁하는 입장의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경찰11).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무실에서의 조사’가 참여의무제도를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경찰4)는 의견이 있었으며,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한 참여(경찰4, 6, 7) 또는 진술 녹음·녹화로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들(경찰 10, 11, 18)이 있었다.

인권보호와 효율성의 가치를 모두 고려한 경찰관 참여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기술의 발전에 맞게 진술 녹음이나 녹화 또는 CCTV 등 모니터링 기술과 같이 실질적인 대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2.2. 조사중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운영

국가인권위의 최근 10년간 결정례를 분석한 자료에서, 경찰조사 인권침해 유형 중 부적절한 언행, 미고지·안내 미흡 등으로 인한 부당조사 및 절차 미준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감독을 위해 조사중 진술 녹음·녹화를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조사 결과 조사 중 진술 녹음·녹화의 운영은 참여경찰관 제도의 대체 방안 뿐 아니라, 추후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사관과 피조사자 모두 언행을 조심하게 된다(경찰1, 2, 4)는 이점이 있다. 고소인이 먼저 진술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 조사 중 진술을 녹음하는 경우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진술과정을 녹음하는 추세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영상녹화·진술녹음실이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조사를 위해 장시간 기

다리거나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조사실에 녹음장치 설치 및 조사 전과정 의무 녹음 시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가능할 것이며, 사법경찰리의 의무적 참여에 대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실의 부족으로 인해 피조사자의 대기시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이 가능한 조사실의 충분한 구비가 필요하다.

1.2.3. 체포 피의자 조사중 수갑 착용

현재 대부분 수사관들은 피의자를 출입구 쪽에 앉히지 않거나, 조사실 문을 이중으로 닫아두고 감독하는 근무자를 별도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하기도 하지만 체포 피의자의 도주, 자해 등 돌발상황이 있어 불가피하게 조사중 수갑 채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하여 수갑 사용시 인권침해 문제, 진술 임의성 저하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도주, 자해에 대한 부담이 커서 사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사부서의 경우, 체포된 피의자를 일반 조사실 등으로 이동시켜 조사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주·자해에 대한 우려로 조사 중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시키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확인되었다.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수갑을 착용해야 하고 그 상태로 다른 시민, 다른 부서의 경찰관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경찰3).

여성청소년 범죄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통합당직실 등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여성청소년 조사실로 이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수갑을 채워 의자에 묶어 놓고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경찰4).

또한 현재 규정상 지방청에는 유치장을 설치할 수 없어 지방청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처 경찰서 유치장을 이용하거나 일반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이동과 조사 과정에서 도주 우려 등으로 수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

다. 돌발적인 도주·자해의 우려로 인한 수사관·유치 관리인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CCTV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체포 피의자 조사 공간은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 조사 중 수갑 착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조사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용 조사실 등을 통해 일반 조사공간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조사실이 아닌 개별조사실이 설치된 통합 수사상황실 설치와 운영, 지방청에 유치장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포 피의자 조사 공간은 유치장과 인접한 곳에 두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 피의자를 입감시킬지 또는 조사 후 빠르게 석방할지 여부 등을 수사상황실장 등이 검토한다면 업무효율성과 인권보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1.2.4. 행정·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

조사 결과, 영상녹화가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경우, 공간이 부족해 수사공간과 일반 사무공간이 혼재되어있는 경우가 있었다. 별도의 조사실이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피의자와 단순 민원인들의 경로가 구분되지 않으며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 등으로 인한 수사 자료의 유출의 우려가 있다. 응답자들은 또한 별도의 조사실이 없거나 행정·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사에 집중하기 어려움, 보안에 취약함, 피조사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수사부서만 별도로 모아 수사동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수사동은 건물 전체가 보안구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안전이나 도주 방지 등의 보안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이후 수사부서만의 독립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사동을 일반 행정동과 분리시켜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수사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인권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동을 분리시키면 피의자와 단순 민원인 등의 경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인권보호, 보안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조사실, 유치장의 위치를 설계할 때도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의

권익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접근에 용이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침이 적은 공간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2.5. 기타 조사실 환경 중 보완 필요사항

첫째,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실 구축 및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여성청소년계의 조사실이 3층에 있으면 조사실을 찾기 위해 사실상 전 경찰서를 돌아 다니는 문제가 있는데,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피해자나 참고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기타 피의자 및 참고인은 편의에 따른 조사실에서 조사하면 되고 예를 들어 건물의 출입구 쪽에 설치한 조사실에서 조사하면 될 것이다(경찰 6, 경찰7).

현재의 조사실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설계된 공간으로 책상과 의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 특히 여성이나 아동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경찰 5).

둘째, 조사실 설계시 조사공간의 물리적 환경(면적, 창문, 공기)이 수사관, 조사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실 내 환기 시설의 부재로 피조사자들이 답답함, 어지럼증, 공기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문을 열고 환기시킬 경우 피조사자의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소음 등이 방해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및 경찰관 업무 효율성 높이기 위해 조사실 내 환기시설 구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실 사이 구분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경찰1, 2), 특히 여성청소년 수사과정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 조사과정에 특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경찰4)는 의견이 있었다. 피조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조사실 방음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2. 피조사자 면접조사

2.1. 피조사자 면접조사 개요

<표 III-2> 피조사자 면접조사 참여자의 특성

No.	신분	경찰서 방문횟수	주요 내용
피조사자1	피해자	2회	고소인, 사기 관련 피해 진술
피조사자2	변호사	10회 이상	피의자 조사과정 참여 경험
피조사자3	피의자	3회	성폭력 관련 피의사건 조사
피조사자4	피의자	1회	사기 관련 피의사건 조사
피조사자5	피의자	2회	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사건 조사
피조사자6	피해자	2회	고소인, 모욕 관련 피해 진술
피조사자7	피의자	3회	폭행 관련 피의사건 검찰 조사

2.2. 피조사자 면접조사 결과

2.2.1. 참여경찰관 동석

피조사자 증대한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관은 물론 검찰에서도 혼자서 조사하며 영상녹화 등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증대한 사건에도 수사관이 혼자서 조사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이 동석했다는 응답의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조사받는 경우 참여경찰관은 계속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경우는 왔다갔다하면서 동석하기도 하였다. “부인사건에 있어서는 경찰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참여경찰관의 존재가 피조사자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기도 하며, 참여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더 강한 압박을 주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총 3회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여자 수사관이 영상녹화실에서 혼자 조사했고 이후에는 추가로 2명의 경찰관이 참여한 상태로 영상녹화실에서 조사 받았다. 참여한 경찰관들은 112신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로, 진술하는 동안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계속 압박했다. 담당하는 수사관은 친절하게 들어주었다. 3명이나 되는 경찰관이 있어서 주눅 들었다(피조사자3).

2.2.2. 조사실의 위치 및 물리적 환경

면접조사결과,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고소인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별도의 조사공간에서 조사받는 것을 선호하였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실 배치와 환경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조사공간은 피의자와 구별하여 편안한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에 방문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지인을 만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다른 사람의 시선도 매우 신경을 쓰게 된다. 특히 첫 경찰서 방문의 경우 담당자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민원인이 사무실을 찾아다녀야 하는 방식에서 수사관이 민원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의 변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동과 행정동을 분리하고 수사동 1층에는 수사관련 민원을 안내할 수 있는 수사 분야 전문가를 배치한다면 처음 방문하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2.3. 조사 대기 공간 및 시간

피조사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대기장소에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에 사람이 꼭 차 있어서 2층에 서 있었다. 2층에 대기실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꼭 차 있고 밖에 벤치에도 꼭 차 있었다.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하고 피의자를 좀 분리해서 대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피조사자6).

조사 대기시간이 긴 경우 불필요한 긴장감 등이 발생한다. 평일 오전 또는 저녁시간에 조사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평일 오전 등으로 조사시간을 적절히 배정하여 조사 대기의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2.4. 조사중 진술녹음 및 영상녹화

피조사자의 응답 중 “조사 중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될지 몰라 불안했다” 는 의견이 있었으며, 진술 녹화 관련 서류에 체크하려고 하였는데 수사관이 ‘그런 거 안해도 된다’ 고 한 경우가 있었다(피조사자4). 중대한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관이 혼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영상녹화를 권하지도 않는다.

조서보다 오히려 녹음 또는 녹화가 정확히 발언을 기록할 수 있어 피조사자에게 안심을 줄 수 있으며, 조사실에 녹음장치 설치 및 조사 전과정 의무 녹음 시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IV. 조사환경의 개선과정과 실태 분석

1. 조사환경 개선과정

경찰의 인권친화적 조사환경개선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 이전에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서별로 사생활보호와 혼잡한 사무공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용조사공간을 설치 운영하였다.

2015년 경찰청은 인권친화적 수사부서 공간모형을 도입하고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사무공간과 분리된 조사공간과 체포피의자 조사를 위한 통합조사실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 경찰서 조사환경개선을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경찰서에 조사실과 영상녹화실이 설치 되어 운영 중에 있다.

조사실의 설치형태는 경찰서별로 차이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유리벽이나 가벽을 사용하고 있고, 설치유형은 1) 사무실내에 사무공간과 분리하여 조사실을 설치한 경우, 2) 사무실밖 가까운 장소에 별도의 조사실을 설치한 경우, 3) 체포 피의자 전용 조사실을 사무실내에 설치한 경우, 4) 체포 피의자 전용조사실을 사무실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 경우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일반인들과 이동 동선을 구분하여 유치장이나 별도의 조사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호송차 전용차고와 별도의 이동 통로를 구축하고 있다.

24) 민영규, "부산 경찰서에 피의자 전용 조사실 잇따라 마련", 부산연합뉴스, 2013. 3. 25.

25) 경찰청, "경찰서 수사공간 '인권친화적' 바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 10. 23.

<표 IV-1> 경찰 조사환경 개선과정

<p>2013년</p>		<p>부산해운대경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와 사무실 입구에 칸막이를 이용하여 전용조사실 4개 설치 ▪ 해운대경찰서 김종호 형사과장은 “전용 조사실 설치로 피의자나 피해자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기때문에 인권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게 됐고 업무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 고 함²⁴⁾
<p>2015년</p>		<p>서울동대문서 시범운영(2015. 10.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조사 전용공간 신설 ▪ 인권친화적인 수사부서 공간모형 도입²⁵⁾ ▪ 사무공간과 분리된 조사전용 공간 신설 ▪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피의자 통합수사공간 신설 ▪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 그림은 동대문서 통합수사공간으로 일반 행정업무는 처리하지 않고 형사, 수사, 교통,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등 체포된 피의자의 조사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변호인 접견실, 피의자 대기석, 영상녹화실, 조사실 등이 위치해 있음²⁶⁾
<p>2016년</p>		<p>천안서북경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교통조사계 조사환경 개선계획'에 리모델링 진행²⁷⁾ ▪ 조사실 6개 설치 ▪ 양면모니터 설치, 조사내용 모니터링 ▪ 조사실 CCTV 설치 ▪ 외부벽면에 투명창 설치 ▪ 조사실별 냉난방기 설치

26) 권오혁, "수사 사무공간 따로따로, 경찰서가 달라졌어요", 동아일보, 2015. 10.24.

27) 김종례, "조사실 설치로 '프라이버시' 보호 극대화", 충청뉴스라인, 2016. 10. 25.

28) 이승훈, "경찰서 유치장에 쇠창살 사라지고 난방시설 갖춰졌다. 경찰청 서울지방변호사회,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개선시설 시찰", 민중의 소리, 2018. 3. 21.

29) 박진숙, "소파에 칸막이까지, 확 달라진 경찰서 조사실", 뉴스핌, 2018. 10. 11.

<p>2017년</p>	    	<p>서울 광진경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과 분리된 개별조사실 설치 ▪ 체포피의자 관리구역 설정 후 조사실과 변호인 접견실 등 설치²⁸⁾ ▪ 보안구역 내 조사실 CCTV설치, 유치보호관이 실시간 모니터링 ▪ 유치장 환경 개선 ▪ 유치장 CCTV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치장 냉난방시설 설치 적정온도 유지 ▪ 진술영상녹화실 건물 3층에 별도 구축
--------------	--	---

30) 위 같은 글.

31) 문정연, "대구 달성경찰서 형사,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독립조사실 운용", 전국경찰뉴스, 2019. 4. 1.

32) 김아영, "창살 없는 유치장, 경찰서도 변화", 강원방송, 2019. 3. 11.

33) 김종환, "해경, 전국 77개 '독립 조사실' 신설, 피조사자 인권보장", 일간경기, 2019. 10. 23.

34) 김진태, "평택해양경찰서, 인권보호차원 '독립 조사실' 운영, 기호일보, 2019. 5. 23.

35) 해양안전팀, "전국 해양경찰관서, 인권친화적 조사공간 완공", 해사신문, 2019. 10. 25.

36) 2023. 7. 27. 면접조사실시

37) 공재만, "인천경찰, 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 인권친화적 미래지향적 수사환경조성 착수", 폴리스TV, 2020. 9. 13.

2018년		<p>서울 동작경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내 조사실 3개 설치(2018.8.16) ▪ 조사과정에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 위한 전용 조사 공간 ▪ 교통사고조사분야 전국적으로 2016년 21개, 2017년 20개, 2018년 20개 조사실 설치 계획 시행²⁹⁾
		<p>서울 영등포경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내 조사실 5개 설치 ▪ 김문상 경감은 “예전에는 경찰서 분위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진술할 때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조사실이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말하는 등 장점이 있다“고 진술³⁰⁾
2019년		<p>대구 달성경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내 조사공간 분리 ▪ 독립조사실 3개 설치 운용 ▪ 기존 사무실 환경에서의 조사는 사생활보호에 취약하고 열린 공간에서의 조사가 소음을 유발하여 조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조사실 설치 후 사생활보호와 업무 집중도 개선에 도움이 기대됨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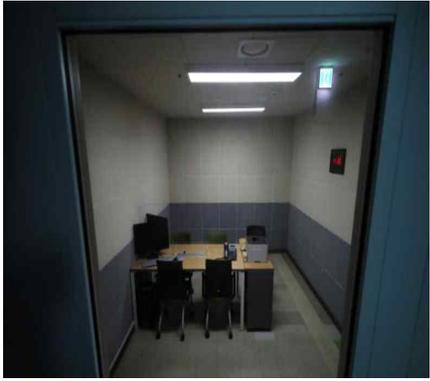
2019년



강원 춘천경찰서

- 사무실내 조사실 설치 운영
- 체포 피의자 호송과 조사를 위한 별도의 이동통로와 통합 당직실 설치 운영
-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의 신뢰도 제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경찰청 수사 부서 조사환경개선사업의 일환
- 강원경찰청의 경우, 2018년 원주경찰서, 2019년 춘천경찰서가 순차적으로 진행됨
- 춘천경찰서 경찰관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사하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또다른 조사가 이뤄진다면, 집중도 안 되고, 의사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차단이 돼 있어서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 고 언급함³²⁾

<p>2019년</p>		<p>해양경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2월부터 인권친화적 조사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18개 해양경찰서에 77개의 조사실을 설치하여 운용함³³⁾ 신축예정이거나 임시청사 등으로 이용되는 7개 경찰서는 순차적으로 설치 진행 신설된 모든 조사실에는 진술녹음장비가 설치되어 피조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사의 전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 실시 수사형사부서 이외에 외사와 보안부서에 대해서도 독립조사실 신설 계획을 추진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관들이 행정업무를 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가 함께 진행돼 피조사인들이 솔직하게 사건에 대해 털어놓는 것이 어려웠으나... 분리된 조사실이 생기면서 수사 경찰관의 업무 집중도도 높이고 피조사인의 인권보호도 할 수 있게 됐다” 고 언급³⁴⁾ 가벽형 독립조사실 설치 운용³⁵⁾
<p>2020년</p>		<p>파주경찰서 (2020.12.23 공간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체포피의자 이동경로 확보 변호인접견실, 영상녹화실 등 추가 설치

<p>2020년</p>	 	<p>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³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처는 과천정부청사에서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1층에는 부대시설, 2-3층에 공용조사실과 영상녹화실 12개가 설치되어 있음 ▪ 사무실 안에 조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과 조사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모두 영상녹화하도록 되어 있고, 수사관 2인이 조사에 참여 ▪ 모든 사건이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자도 단독으로 조사하기보다는 항상 참여인이 같이 조사를 진행
<p>2020년</p>	  	<p>인천 삼산경찰서(2020.9.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를 통해 개인 정보보호 강화, “분리 조사실을 마련하여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조사 받는 경우 피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최소화하는 등 인권친화적 수사 환경을 구축”³⁷⁾ ▪ 수사팀과 형사팀 사무공간은 조사실과 분리되어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음 ▪ 통합수사당직실 구축, 체포피의자 전용 조사실 공간 설치 ▪ 체포된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도주 방지를 위한 전용 호송차고 설치 ▪ 유치장 환경개선, 사생활보호를 위해 소규모 유치장 운영 및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치장 내부 변호인 접견실 설치

2. 방문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2.1. 연구방법

현재의 조사환경이 피조사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살펴 보았으며,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면접조사는 2023년 5월 31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찰관 18명, 피조사자와 변호인 7명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경찰조사 인권침해사건 결정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가치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개별 조사실 구조에서 사법경찰리의 참여
- 조사중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운영
- 체포 피의자 조사중 수갑 착용
-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감독
- 사무공간에서의 조사와 사생활보호
-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과 수사비밀의 노출
- 조사실 환경 중 보완 필요사항
- 유치장이 없는 수사기관에서의 체포 피의자 관리

방문조사는 2023년 6월 1일 ~ 8월 30일까지 지방경찰청 단위의 광역수사대 2개, 경찰서 16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검찰청, 영국의 경찰서 1개 등 총 21개의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 결정례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수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표 IV-2> 방문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① 경찰		
구 분	주요 특징	
서울 경찰청	광역 수사단	- 2023년 광역수사중심 건물로 변경 - 금융범죄수사대 등 4개 부서 위치 - 유치장 없음 - 층별로 공용 조사실 설치
	종로 경찰서	- 2022년 7월 임시청사 - 통합당직실 운영 - 유치장 없음 - 사무실과 분리된 부서별 조사실
	강남 경찰서	- 기존 건물에 조사실 설치 - 복도 경계로 조사실과 사무실 분리 - 형사팀 조사실 출입문 2개 설치, 사무실 쪽에서 출입 가능
	광진 경찰서	- 2017년 신축 - 사무실과 분리된 부서별 조사실 설치 - 유치장 환경개선 - 통합당직실 설치
	동대문 경찰서	- 2015년 조사환경개선 시범경찰서 - 사무실내 부서별 조사실 설치 - 체포피의자 전용 이동경로 및 조사실
	동작 경찰서	- 2018년 수사사무환경 개선 - 사무실내 부서별 조사실 설치 - 투명유리창 사용
	영등포 경찰서	- 2018년 수사사무환경 개선 - 사무실내 부서별 조사실 설치 - 유리벽 구조
대구 경찰청	달성 경찰서	- 2019년 수사사무환경 개선 - 사무실내 부서별 조사실 설치 - 통합당직실 운영, 체포 피의자 전용 조사실 설치
인천 경찰청	삼산 경찰서	- 2020년 신축 - 건물 1층 수사팀 공용조사실 설치 - 유리벽 형태의 개별조사실 - 유치장 및 통합당직실 설치 - 통합당직실내 개별 조사실 설치
경기 경찰청	파주 경찰서	- 2020년 신축 - 사무실과 분리된 수사팀 공용조사실 - 유치장과 통합당직실 운영 - 통합당직실내 개별 조사실 설치

충북 경찰청	반부패범죄 수사대	- 개별 조사실 없음 - 사무실에서 조사 진행 - 유치장 없음
	청주홍덕 경찰서	- 2017년 조사환경개선 - 수사팀 사무실내 조사실 설치 - 형사팀 통합당직실 운영 - 체포피의자 조사실 1개
	청주상당 경찰서	- 2021년 수사사무환경개선 - 통합수사당직실 설치 - 사무실내 조사실 설치
	제천 경찰서	- 2024년 신축 예정, 설계완료 - 수사팀 사무실내 조사실 설치 운영 - 형사팀 사무실 및 영상녹화실 조사 - 부서별 조사실 운영 - 신축 예정 건물에는 부서별 공용조사실 구축
충남 경찰청	천안서북 경찰서	- 2016년 수사사무환경개선 - 부서별로 사무실내에 조사실 설치 - 피조사자를 위한 양면모니터 설치 - 조사실별 냉난방기 설치 - 조사실별 CCTV 설치
경북 경찰청	성주 경찰서	- 사무실과 분리된 인접 공간에 수사팀 공용 개별조사실 설치 - 형사팀 통합당직실 운영 - 기타 부서별 조사실 설치
	안동 경찰서	- 2023년 3월 신축 - 수사팀 내외 공용조사실 설치 - 통합당직실 내 공용조사실 설치 - 유치장은 본관 2층에 위치 - 교통사고조사부서는 민원동 2층 위치, 사무실 내에 조사실 설치

② 국내 기타

구 분	주요 특징
고위공직자부패 수사처	- 과천정부청사 건물을 이용 - 1층에 부대시설 - 2층과 3층에 공용조사실과 영상녹화실 12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 - 사무실 안에 조사실을 두지 않고 사무실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조사실 설치 - 일반 경찰서 조사실 보다 넓은 구조이지만 별도의 송풍시설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음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지청	- 일반 조사는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검사실에서 진행 - 특별한 경우에 영상녹화실이나 장애인전용조사실 등에서 조사 진행

③ 해외 경찰	
구 분	주요 특징
영국 런던경찰청 Stoke Newington Police S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런던 주재 경찰관 경찰서 방문(23.6.20.) - 경찰서 1층에 유치장과 조사실 설치 - 조사실 3개, 변호인 면접실 3개 설치 - 강력범죄수사팀 등 수사부서의 사무공간은 건물 2층부터 위치 - 민원인은 건물 1층만 출입 가능 - 조사실 수가 많지 않아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

2.2. 경찰관서의 조사환경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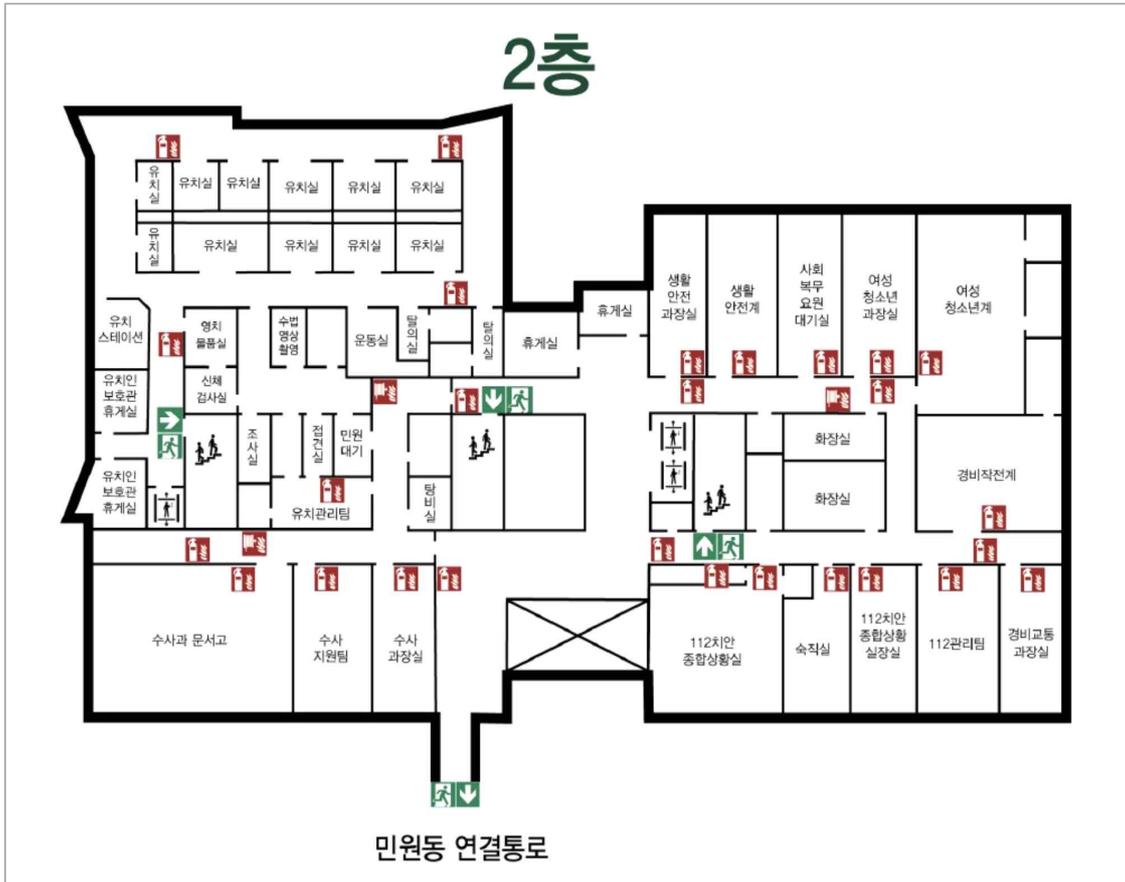
현재를 기준으로 전국 모든 경찰서에는 개별 조사실과 영상녹화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다만 개별 조사실이나 영상녹화실의 개수, 위치, 크기, 벽체의 재질, 녹음녹화장비 등 구성요소는 경찰서의 환경, 특히 건축된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축 경찰서를 중심으로 구조를 살펴보면 최근 조사환경에 대한 기본 모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3년 3월에 준공된 경북 안동경찰서가 최근의 변화된 조사환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아래에서는 청사배치도를 중심으로 최근 경찰관서의 조사환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본관 1층에는 경제범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사이버범죄수사팀, 형사팀, 여청청소년수사팀, 생활질서계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부서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동경찰서는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1급지 경찰서로 변경되었고, 경북경찰청 소속의 강력범죄수사대와 경북청 과학수사팀이 1층 공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경찰관서의 구조에 포함해서 검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부서별로 조사실과 영상녹화실을 달리 두고 있으며 사무실내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범죄수사팀에는 조사실 3개와 영상녹화실 1개, 지능범죄수사팀에는 조사실 2개를 두고 있으며, 맞은편 형사팀에는 조사실 2개와 영상녹화실 1개를 두고 있다. 형사팀은 통합수사당직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상녹화실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수사팀과 형사팀 사이에는 공용조사실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내 부서별 전용 조사실과 공용 조사실을 동시에

<그림 IV-2> 안동경찰서 본관 2층 배치도 (유치장)



유치장은 데스크에서 전체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조에서 영국과 같이 개별 유치실 구조로 변경하고 각각의 유치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는데, 개별 조사실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IV-3> 안동경찰서 유치실과 모니터링 시스템



최근에 신축되는 경찰서에서는 안동경찰서와 같이 모든 조사실을 본관 1층에 배치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교통범죄수사팀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민원동에 위치시키고 있어 안동경찰서의 경우에도 민원동의 1층에 사무실내에 조사실 3개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사무실 내부에서 연결된 문과 복도쪽에서 연결된 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시민들이 사무실 내부를 통해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수사상황 등의 외부노출을 차단하고자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IV-4> 안동경찰서 민원동 1층



교통조사와 교통범죄수사팀의 경우,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민원동의 1층 또는 2층에 사무실과 조사실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사팀과 조사실이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어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별도의 안내를 받아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안동경찰서의 경우에도 이 점을 고려하여 민원동의 2층이 아닌 1층에서 조사실을 배치한 것으로 이해되며, 2층에서는 경찰서 내부 직원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청문감사인권관실의 사무실과 조사실을 두고 있다.

<그림 IV-5> 안동경찰서 민원동 2층



2.3. 가치요소별 쟁점 정리

2.3.1.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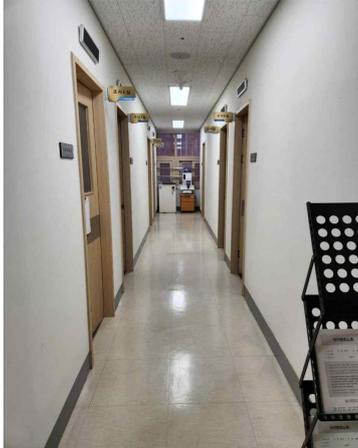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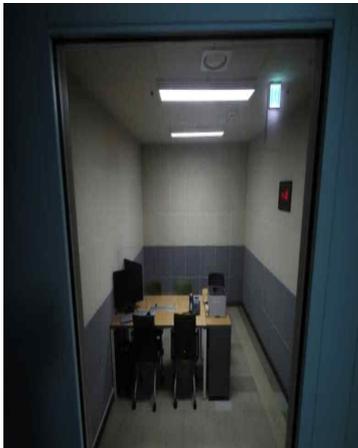
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개별 조사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에 조사실과 영상녹화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조사실의 설치방식과 운영형태는 경찰서별,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우선 사무실과 분리된 공간에 부서별로 조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복도를 경계로 두고 복도의 한쪽에는 사무실을 두고 다른 한쪽에 조사실을 두는 방식이다.

다음은 건물의 1층에 전 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조사실을 두고, 주요 수사부서들을 배치한 후 그 부서들에는 부서별 개별 조사실을 설치하여 모든 조사활동이 건물의 1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동경찰서와 같이 최근에 신축되거나 충북 제천경찰서와 같이 신축 예정인 경찰서가 이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축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경찰서의 경우에는 사무실 내에 조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3>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 실태

사무실과 분리된 공간에 부서별 조사실 설치 운영	본관 1층에 부서별 조사실과 공용조사실 설치 운영 (교통사고조사 민원동 위치)	사무실내 부서별 조사실 설치
		
서울 종로경찰서	경기 파주경찰서	청주 상당경찰서
		
서울 광역수사단	경북 안동경찰서	춘천경찰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충북 제천경찰서

2.3.2. 개별조사실 구조에서 사법경찰리 참여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개별조사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기존의 사법경찰리 참여 규정으로 인하여 조사환경과 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채, 2~3시간 이상 조사실에서 대기할 해야 하는데,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면접조사결과 다수 발견되었다. 과거에는 종로경찰서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무를 보면서 옆에서 진행되는 조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최근에 개별 조사실이 설치되면서 자연스러운 참여가 불가능하며 조사 참여가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조사실 옆 벽면을 투명창으로 설치하여 옆 조사실에서 조사 중인 경찰관이 참여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사용하거나, 조사실을 사무실내에 설치하고 조사 중에 문을 열어 놓고 근처에 앉아 사무를 보는 경찰관이 참여인이 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래 종로경찰서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 사무실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청주 상당경찰서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사실에 책상을 추가로 설치하여 업무를 보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사례도 있었다.

<표 IV-4> 조사 참여를 위한 조사실 구조

<그림 IV-6>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실



조사실 옆 벽면을 투명창으로 설치하여 옆조사실 조사 중인 경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그림 IV-7> 청주 흥덕경찰서 조사실



사무실 내 조사실을 설치하고 조사중 출입문을 열어놓고 출입문 근처에 앉아 있는 경찰관을 참여자로 지정

<그림 IV-8> 서울 종로경찰서 조사실



과거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이 통합된 형태와 같이 사무실내에 조사공간을 마련하여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참여문제 해결

<그림 IV-9> 청주 상당경찰서 조사실



조사실에 1인용 책상 2개를 설치하고 한쪽에서는 조사를 다른 한쪽에서는 참여하면서 동시에 업무진행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2.3.3. 체포 피의자 조사

종로경찰서는 체포된 피의자 조사를 위한 통합 수사당직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문은 이중 잠금장치로 되어 있어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가 차단된 형태이다. 통합 수사당직실 내에 개별 조사실 2개와 영상녹화실 1개가 설치되어 있어 조사를 위해 외부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화장실도 대기실과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수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자해 등의 우려가 없다면 조사 중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

모든 사건의 체포 피의자를 통합 수사당직실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들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들을 일반 사무실 또는 해당 부서의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조사 중 수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종로경찰서는 유치장이 없어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계속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 30분 이상 자동차로 이동해서 피의자를 의뢰압감하고 있어, 사생활보호와 방어권 보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표 IV-5> 종로경찰서 통합 수사당직실

	<p>체포 피의자 관리공간 체포 피의자 대기실 체포 피의자용 화장실</p>
	<p>통합 수사당직실 배치도</p>
	<p>통합 수사당직실 내에 형사팀과 강력팀 사무실 위치</p> <p>개별 조사실 2개 영상녹화실 1개</p>

종로경찰서 통합 수사당직실의 조사환경이 기본권 보장에 상대적으로 충실한 형태라고 평가한다면, 청주홍덕경찰서는 형식적으로 통합수사당직실을 구축한 형태로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 수

사당직실은 형사팀에서 체포한 피의자를 조사하기에도 협소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표 IV-6> 청주흥덕경찰서 통합 수사당직실

	<p>체포 피의자 관리공간 체포 피의자 대기실 체포 피의자용 화장실</p>
	<p>통합 수사당직실 조사실 유치장 출입문</p>
	<p>형사팀 사무실 안쪽에 통합수사당직실 위치</p> <p>개별 조사실 1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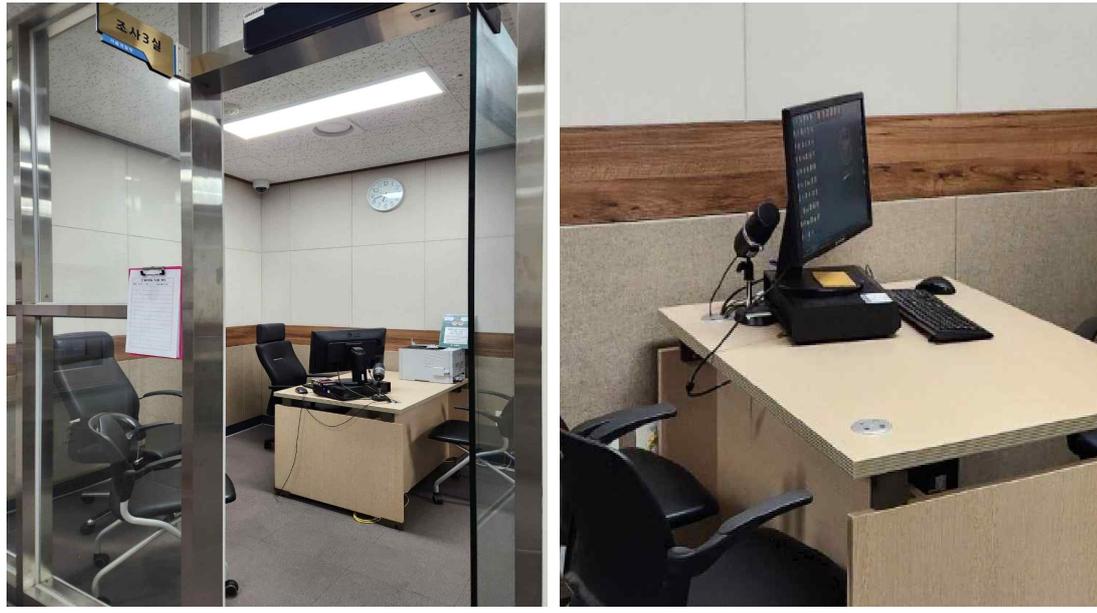
2.3.4. 조사과정 진술녹음

경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사례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과거 10년 동안에는 조사과정에서 폭행이나 탈의실 조사 등과 같이 명백하게 규정에서 어긋난 사안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세심한 관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적절한 언어 사용, 혐의내용 무관 조사,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무고죄 언급, 불필요한 대면조사, 편파수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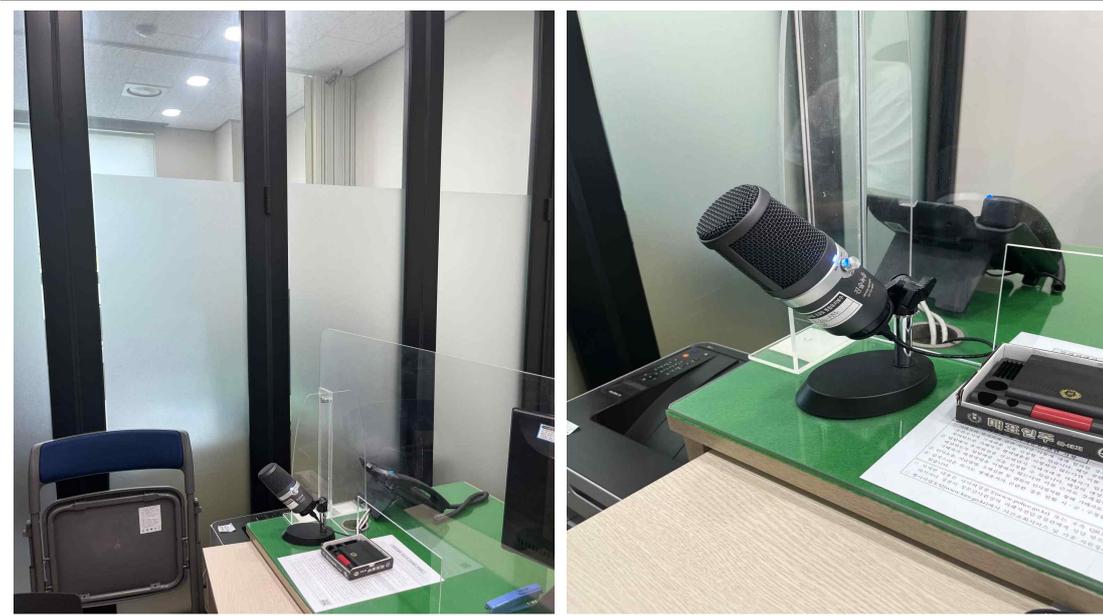
이러한 사안들은 수사관 참여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사과정 전체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경찰청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의 진술녹음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면서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과정의 진술을 녹음할 수 있도록 개별조사실에 녹음장치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영상녹화실에서 녹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 진술녹음내용은 수사시스템 서버에 자동 저장되고 녹음내용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외부 반출은 불가능하다.

<표 IV-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조사실 진술녹음장치



<표 IV-8> 청주홍덕경찰서 조사실 진술녹음장치



2.3.5. 유치인 호송차고와 전용 이동로

신축경찰서와 사무환경개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방지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호송 전용 차고를 설치하고 통합 수사당직실을 통해서 체포 심사를 거친 후 유치 또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동선을 구축하고 있다.

<표 IV-9> 체포 피의자 호송차고와 이동로

<p>호송차고 (인천삼산경찰서)</p>	
<p>호송차고 유치인면회실 (청주홍덕경찰서)</p>	
<p>호송차고 이동경로 (경북성주경찰서)</p>	

2.3.6. 개별 유치장과 모니터링 시스템

2016년부터 진행된 수사사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유치장은 개별 유치실 중심으로 변경되고 호송차고, 유치장 내부시설, 유치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유치실 내부, 변호인접견실, 개별조사실, 이동동선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표 IV-10> 유치장 및 모니터링 시스템

<p style="text-align: center;">유치장 모니터링 시스템 (인천삼산경찰서)</p>	
<p style="text-align: center;">유치장 모니터링 시스템 (서울광진경찰서)</p>	
<p style="text-align: center;">유치실 (서울광진경찰서)</p>	

유치실
(안동경찰서)



유치장
모니터링 시스템
(안동경찰서)



유치장
모니터링 화면
(안동경찰서)



2.3.7. 개별 조사실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별 조사실이 모든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비어 있는 조사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 앞에 별도의 예약지를 붙여 놓고 수기로 필요한 시간을 적어 놓는 방식으로 예약 관리가 이루어진다.

개별 조사실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의 내용은 진술녹음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후에 조사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나 사전에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며 진술녹음이나 녹화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강남경찰서 방문면접조사결과 “경제팀 조사실은 1층에 4개, 2층에 18개를 갖추고 있는데, 조사가 물리는 시간대(오후 2시경)에는 조사실이 꽉 차는 경우가 있어 사용 가능한 조사실을 찾아서 이동해야 하는데.. 전산으로 조사실 사용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많았다.

<표 IV-11> 조사실 예약 관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서울 강남경찰서
	

V. 수사체제의 개편과 환경의 변화 검토

1. 형사사법절차의 개편과 최근 동향

1.1. 검찰 주도의 수사체제에서 경찰 주도의 수사체제로

2020년 2월 2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였다. 즉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대등한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검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도 대폭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 수사기관이 되었다. 즉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수사가 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②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③ 위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막바지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주는 추가로 더 제한되었는데 2022년 5월 9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주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였다. 동시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즉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한 것이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새로 출범하였으며 이

외에도 새로운 영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에 경찰만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출범한 공수처도 현재까지 2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피의자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며 무용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³⁹⁾

1.2. 최근 변화: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령 개정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크게 반발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각하하였다.

각하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사 및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고 한 후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하였다.⁴⁰⁾

다만 법무부는 2022년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즉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했는데 법무부는 ‘~등’ 문구를 최대한 활용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다.

더구나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함)’의 개정안도 2023년 7월 31일 입법예고하였다. 이 시행령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이유로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들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고 비판받고 있다.⁴¹⁾

다만 수사준칙이 개정되더라도 대부분의 수사를 사실상 하는 것은 경찰이며 이는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던 시기에도 동일했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변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피의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39) 노컷뉴스, 2023. 8. 5. (<https://www.nocutnews.co.kr/news/5989280>)(2023. 8. 8. 검색).

40)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2헌라4.

41) 경향신문, 2023. 7. 31.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7312110005>)(2023. 8. 11. 검색).

2. 경찰 수사체제의 개편과 방향

2.1. 광역수사체제의 확대

경찰의 수사체제는 매우 자주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전국의 광역수사대 및 도시형 경찰서에 총 139개팀 806명으로 구성된 ‘절도특별수사팀 TSI’를 창설하여 상습·신중·조직·국제적 절도범죄를 전담하게 하였다.⁴²⁾ 그러나 이러한 특별수사팀은 오래 가지 못하고 지금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부서를 설치된 조직을 기준으로 먼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크게 나누면 지금의 시도경찰청인 지방경찰청(이하 ‘시도경찰청’으로 표기함)과 경찰서는 물론 경찰청에도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청 내에서도 수사국뿐만 아니라 교통국 및 외사국 등도 특정분야의 수사를 지휘 및 관리해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생활안전국도 여성대상범죄 등의 수사를 지휘 및 관리해오고 있으므로 경찰청 대부분의 부서가 사실상 수사와 관계가 있다.

다만 경찰청 내에 수사를 직접 하는 부서를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기에 주로 시도경찰청의 수사부서를 확대해 왔다. 이러한 확대의 배경에는 점점 광역화, 기동화되는 범죄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체계가 필요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시도경찰청에는 다양한 직접 수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경찰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약수사와 사이버수사업무를 시도경찰청에 신설된 마약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하게 된 것을 들 수 있고, 2004년에는 기동수사대를 대폭 확대하여 광역수사대를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부서는 최근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설치된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⁴³⁾

42) 경찰청, 「경찰백서」 2008, 경찰청, 「경찰백서」 2009.

43) 장응혁,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조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130-135면.

그러나 경찰에서도 경찰서가 대부분의 범죄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조직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하여는 연방수사국, 주수사국, 중앙수사국 등이 담당하고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미사건 위주의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점을 들면서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광역수사단으로 승격시키고 경찰서의 수사인력을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⁴⁴⁾도 일찍부터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찰서의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국제적인 범죄 등 아주 특수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건 처리 능력에 있어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수사체제에 있어서 시도경찰청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서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2.2. 최종별 수사체제 도입

경찰서의 수사체제도 매우 다양한 변화가 있어 과거에는 ‘단서별’ 수사체제였다. 즉 고소 및 고발 등 수사단서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지금의 경제팀에 해당하는 조사계가 담당하고 현행범을 체포한 사건은 지금의 형사팀인 형사계가 담당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체제는 2005년 ‘최종별 전문수사팀제’가 도입되면서 크게 바뀌었는데 현재는 최종 즉 범죄의 종류를 기준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이에 따라 특히 형사과와 수사과의 담당 업무가 크게 바뀌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도경찰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과와 형사과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44) 김택수 외, “수사경찰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226면.

45) 수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50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지원업무
 - 가. 서무.예산관리
 - 나. 각종 영장관리
 - 다. 범죄단속계획 수립.관리
 - 라. 압수물관리
 - 마. 사건접수, 송치관리
 - 바. 그 밖에 당직편성 등 수사지원 업무
 - 사. 호송출장소 지도감독(마포, 양천, 송파, 서초, 도봉경찰서에 한한다)
 - 아. 수배 업무

<표 V-1>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형사과의 담당업무

수사과	형사과
<p>제48조(수사1과) 수사1과장⁴⁵⁾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범죄수사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기·횡령·배임 사범 수사 나. 명예훼손·모욕 사범 수사 다. 위증·무고 사범 수사 라. 특별법범 중 지능범죄수사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범 등 수사 <p>제49조(수사2과) 수사2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능범죄수사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회·시위사범 수사 나. 선거사범 수사 다.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수사 라. 통화 관련 범죄 수사 마. 그 밖에 특별법범 수사 2. 사이버범죄수사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보통신망 이용 개인정보·전자상거래·저작권, 금융거래 관련 범죄 수사 나.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 수사 다.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범죄 수사 라. 사이버 도박 등 불법(유해) 사이트 범죄 수사 	<p>제51조(형사1과) 형사1과장⁴⁶⁾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사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사상 등 사건 수사 나. 변사·안전사고 처리 다. 형사 소관 고소·고발 사건 및 지역경찰 동행사건 수사 라. 그 밖에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형사사건 수사 <p>제52조(형사2과) 형사2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력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살인, 강도, 방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발생사건 수사 나. 강력범죄 관련 인지·첩보사건 수사 다. 주요 112신고 사건 현장출동 라. 그 밖에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형사사건 수사 2. 마약범죄수사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마약류 범죄 관련 발생·인지·첩보사건 수사(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흡입 등을 포함한다) 나. 마약류 범죄 관련 112신고 사건 현장출동

2. 유치관리업무(남대문, 서대문, 용산, 성북, 성동, 서부, 강북, 금천, 도봉경찰서에 한한다)
 가. 유치관리 및 호송업무
 3. 제48조 및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
 46) 형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53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형사지원업무
 가. 범죄단속 계획수립 및 관리
 나. 형사사건 관리
 다. 타 형사사법기관 협조(사실조사, 형집행정장 등)
 라. 형사사건 수사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공조
 마. 관리미제사건 및 장물수배서 관리
 바. 수사첩보 수집·관리
 사.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관찰 및 자료 관리
 아. 수사장비 관리
 자.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차. 수사자료표 관리
 카. 종합조회실 운영 및 관리

최종별 전문수사팀제에 대해서는 ① 최종에 따른 범죄발생량이 달라 경찰서 단위에서는 업무량의 편차와 근무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 ② 수사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③ 계장이 팀장으로 바뀜으로써 형사과장과 수사과장 1인이 전체 과원을 직접 관리 및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④ 광역수사대와 경찰서간의 관할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중복과 공조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나⁴⁷⁾ 문제들을 보완해 가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지역별로 치안 여건이 다른 가운데 경계가 모호한 범죄가 늘면서 경찰청은 2021년부터 통합하여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른바 민생 사건은 경찰서의 통합수사팀이 하고, 익명 및 비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능범죄는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광역수사체제의 강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도 내부적인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 형사과에 신설하였던 생활범죄팀을 최근 폐지하였다. 생활범죄팀은 자전거·오토바이·스마트폰 절도 등 생활 주변 범죄에 대응해 왔는데 수사권조정 이후 수사 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기에 폐지 후 강력팀·경제팀·여성청소년강력팀으로 인원을 재배치하였다.⁴⁸⁾

또한 최근에는 형사과가 피싱사건을 담당하고 경제과가 명예훼손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은 경제팀, 메신저·몸캠 피싱은 사이버수사팀에서 담당하였으나 이를 합쳐 모두 형사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총 11개의 범죄가 조정되었는데 그 기준으로는 사건의 특성·행위 태양(물리력 수반 여부, 야간 주취 상태 발생 등), 수사 업무 방식(피의자 특정 여부, 현장성 등), 종합대응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⁴⁹⁾

타. 그 밖에 당직편성 등 형사지원 업무

2. 제51조 및 제52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

47) 김택수 외, “수사경찰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23-24면.

48) 이유진, “수사권 원 경찰, 17년 만에 수사체제 대수술…‘조직 효율화’ 앞세웠지만 내부는 ‘부글부글’”, 경향신문, 2022. 1. 18.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1181420001#c2b>)

49) 장나래, “‘피싱 →형사과, 명예훼손→경제과’… 수사경찰 업무 분장 개편”, 한겨레, 2023. 8. 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882.html)

2.3. 확대수사부서의 강화

경찰서에는 수사과와 형사과 이외에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많다. 이를 확대수사부서라고 하는데 교통사고 및 범죄⁵⁰⁾를 담당하는 교통과 외에 여성청소년과가 대표적이다. 여성청소년과의 여성청소년수사업무는 다음과 같은데 원래 ‘소년범죄의 수사’만을 소년계에서 담당하다가 여성청소년과로 확대개편되면서 업무가 확대된 것이다.

<표 V-2>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업무

여성청소년수사업무	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업무
가.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수사 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수사 라. 소년범죄 수사 및 자료수집·분석 마. 가출인·실종아동 등 발견 및 수사 바.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재범방지 및 관리 사. 과 내 영상녹화실 운영 및 관리	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강간 등 성(폭력)범죄·공연음란 수사 나. 소재불명 신상대상자 추적 등 전담·합동 및 인지 수사 다. 10세 이상 주요 아동학대 사건 라. 기타 관서장이 지정한 사건

3.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에 따른 변화

3.1.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에 따른 수사부서의 통합

2021년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서 모든 수사부서는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게 됐으며 그에 따라 경찰청의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50)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은 다음과 같이 교통범죄수사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가. 인적 피해 발생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수사(가해자 일체불상인 경우에 한함)
- 나. 난폭·보복운전, 폭주족 수사 및 관련 민원사항
- 다. 기타 교통범죄 인지수사

아울러 교통조사업무를 별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 교통사고 접수, 송치, TCS 관련 업무
- 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 다. 교통사고 관련 민원사항 처리
- 라.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수사
- 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사건 처리
- 바. 교통사고 통계

이러한 개편은 적정한 수사 수행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권력기관이 가진 권한과 인원을 재조정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권력기관 개혁’에 따라 부가적으로 추진된 것이다.⁵¹⁾

즉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보안수사권 이전’으로 경찰권이 비대화될 것이기에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고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논의만 되면서 도입되지 않았던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되었고 동시에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 것이다.

다만 구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사사무를 독립한 사무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3가지 사무에 대해서 이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사무를 분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경찰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업무만 분장하게 되었는데 경찰조직의 외관은 그대로이지만 내부적인 체계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개편된 수사체제는 비대화될 수 있는 경찰권한을 나누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전적으로 지휘 및 감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경찰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수사를 하지 않는 일반경찰이 특히 인사 및 감찰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즉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수사 관여를 막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국가수사본부장 도입의 취지이다.

51)경찰청, “경찰서 수사공간 '인권친화적' 바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 10. 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847735>)(2023. 8. 8. 검색).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해서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정도만 있다.

3.2. 경찰 수사체제의 현황

이에 따라 개편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V-1> 경찰청의 수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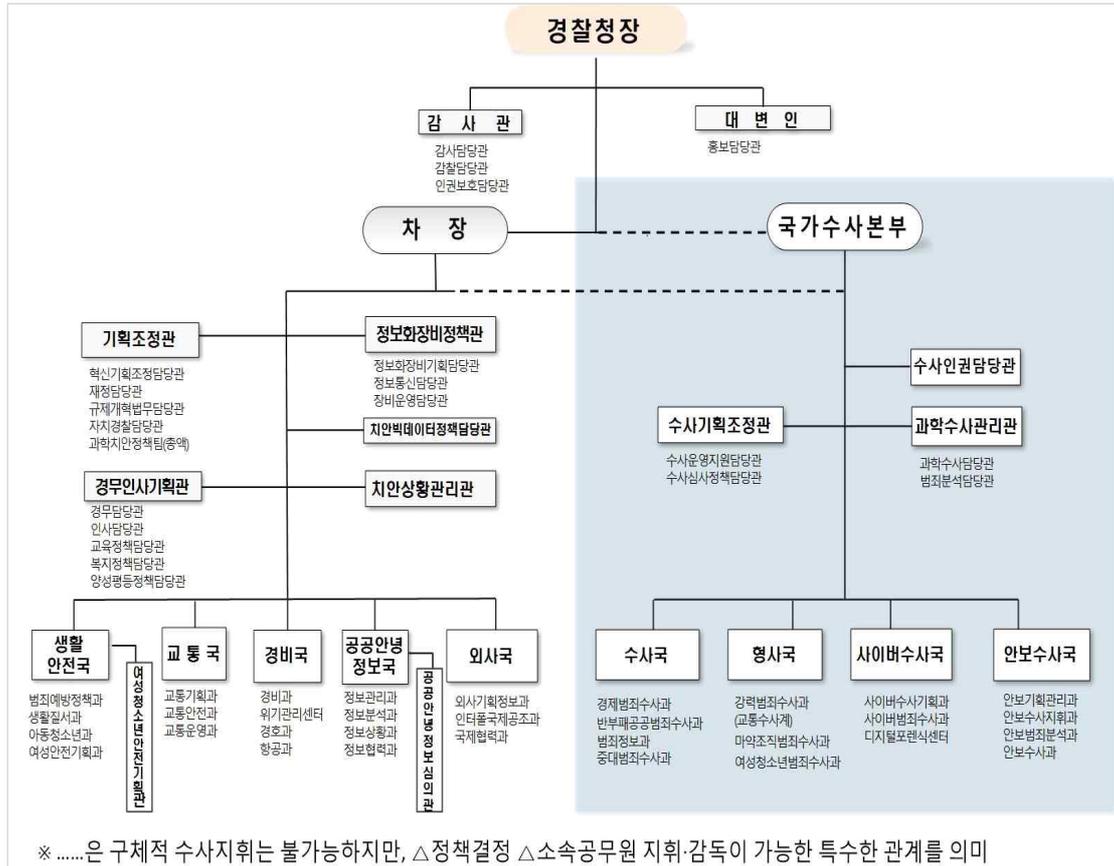


위 그림처럼 경찰청의 수사 조직은 국가수사본부장 산하에 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⁵²⁾ 왜냐하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수사부서 공무원의 임용권도 여전히 경찰청장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정, 승진, 교육, 복무관리 등 인사 사항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서장의 관리·감독 영역이 되며 심지어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 및 감찰권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없다.

더구나 경찰법 제16조 제1항은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 경찰청장의 행정적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경찰법 제14조 제3항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52) 오병두,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7-33면, (2021), 12-13면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청법상의 검찰총장과 비슷한 역할을 기대받아 신설되었다고 하면서 그래서인지 임기제한 등 다양한 권한남용의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V-2> 경찰청의 조직



그러나 일찍부터 우려되었던 것처럼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책임만 지는 자리라던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경찰권의 집중과 강화를 위하여 기능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장은 계속하여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인터뷰 등을 통하여 경찰을 대표하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자녀의 학교폭력문제로 검찰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자가 사퇴하는 등 부적격자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의 수사 조직도 개편되었다. 가장 대표적이지 규모가 큰 시도경찰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 관련 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V-3> 서울경찰청의 수사 조직



이처럼 서울경찰청은 치안감인 수사차장 하에 크게 수사부, 광역수사단, 안보수사부로 이루어져 있고 수사부는 수사과·형사과·사이버수사과·과학수사과로, 광역수사단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로, 안보수사부는 안보수사지원과·안보수사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차장이 아닌 자치차장의 산하에도 수사부서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경찰사무에 속하는 수사사무가 있기 때문인데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자치경찰이 하는 수사를 규정하고 있다.⁵³⁾ 따

53)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라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하지만 수사사무이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⁵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산하에는 교통안전과에 ‘교통조사계’가, 생활질서과에 ‘풍속단속계’가,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지하철경찰대에는 ‘지하철수사계’가 있다. 자치경찰차장 산하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V-4> 서울경찰청의 자치경찰차장 산하 조직



목적에 관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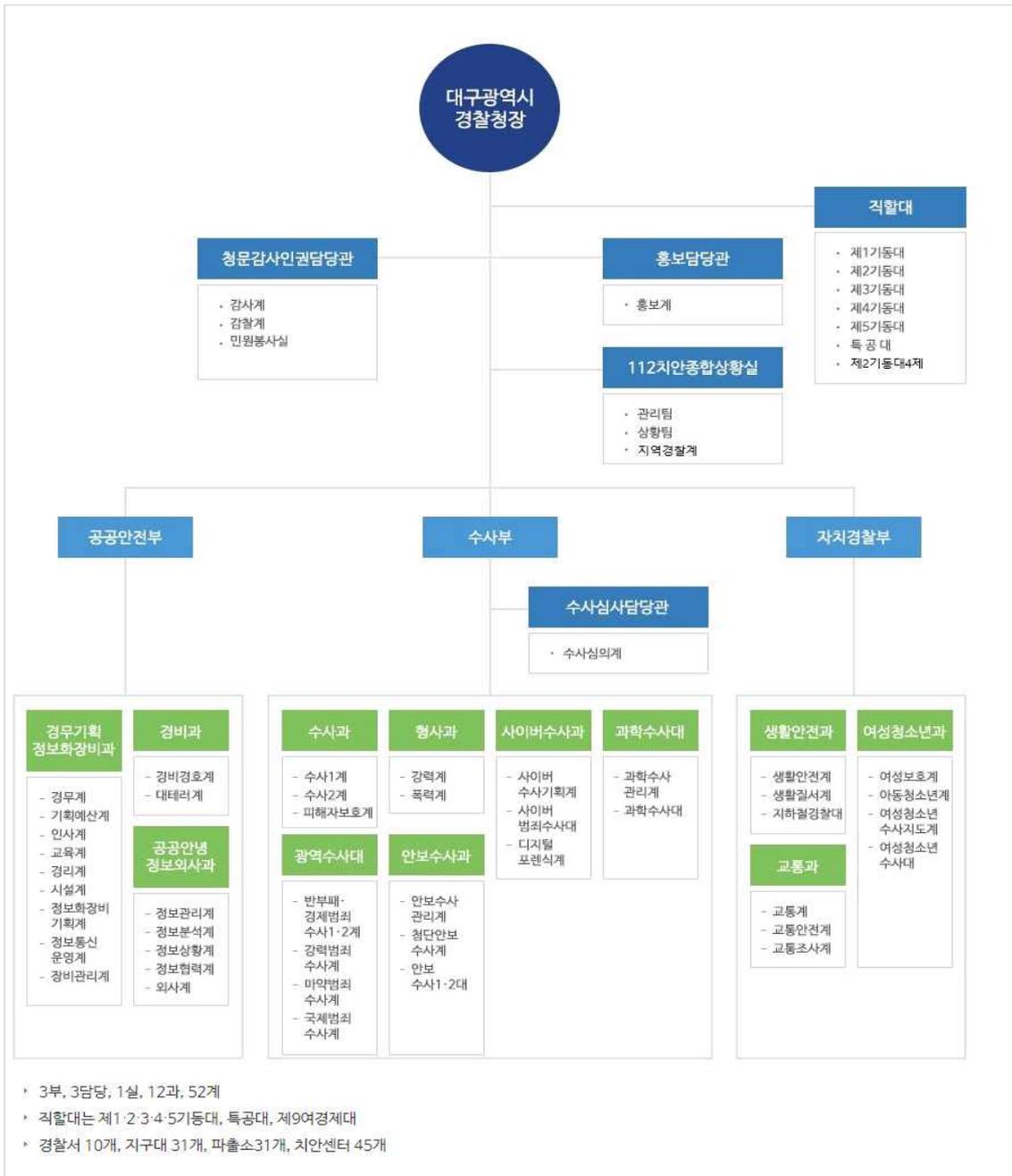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54) 오병두,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2021), 7-33면. 11면은 대부분의 수사사무가 국가경찰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영역에서 경찰권의 분리·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다른 시도경찰청도 유사하여 대구경찰청의 조직도 다음과 같다.

<그림 V-5> 대구경찰청의 조직



이처럼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모든 수사부서를 모았지만 다른 경찰기관에서는 과거와 같이 행정부서와 수사부서가 같이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경찰서도 동일하다. 서울경찰청 산하 가장 대규모서의 하나인 송파경찰서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V-6> 송파경찰서의 조직



3.3. 향후의 변화 가능성

국가수사본부장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 이후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다만 향후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의 안보수사권 이관인데 경찰은 2022년 전국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며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를 하고 있다.⁵⁵⁾ 다만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안보수사국을 안보수사본부로 격상하는 것은 잠정 중단했으며 안보수사관 이관에 대한 우려 및 반대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약수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의 경우 시내 모든 경찰서에 마약수사전담팀을 비록 한시적이지만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11개 경찰서에만 설치된 것을 잠정적이지만 31개 경찰서로 확대한 것으로 서울경찰청에는 사이버마약범죄수사팀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⁵⁶⁾

55) 송상현, “경찰, 안보수사본부 신설 논의 멈춰…"시기상조" 결론”, 뉴스1, 2023. 3. 10. (<https://www.news1.kr/articles/?4977320>)(2023. 8. 11. 검색).

56) 이미령, “서울 31곳 모든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운영”, 연합뉴스, 2023. 4. 14.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4046300004>)(2023. 8. 11. 검색).

Ⅵ. 조사환경 및 개선방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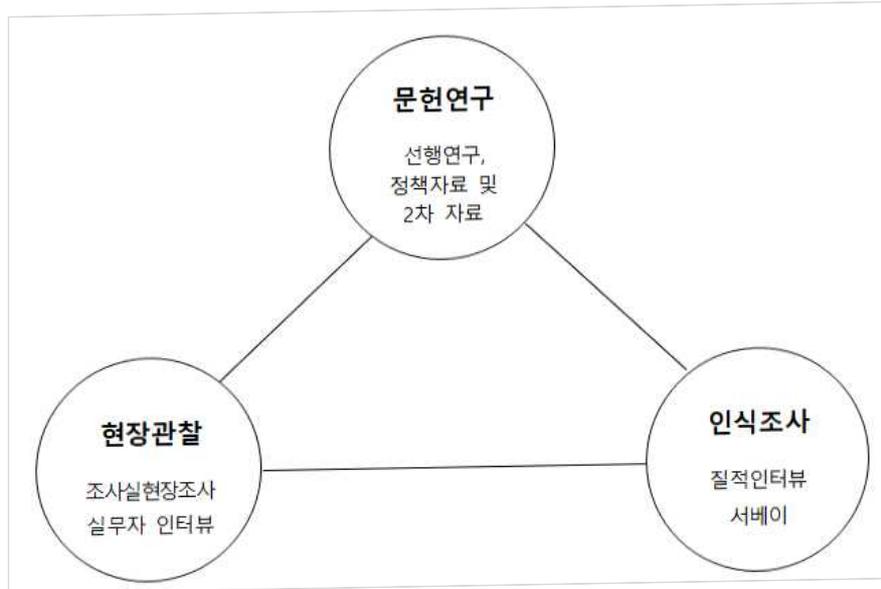
1. 조사방법

조사환경에 대한 경찰관과 일반국민 인식조사를 위해서 먼저 조사환경과 수사절차에 관련된 선행연구(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인권위 결정례, 수사 환경에 관한 인식연구에서 활용된 설문문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심층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위한 기본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사부서의 물리적 환경은 지역별, 경찰서별로 매우 다양하며, 실질적인 수사절차는 수사관의 경험과 재량, 수사대상 범죄의 특성, 수사대상자의 특성화 현장상황에 따라서 그 과정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현장관찰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문헌연구와 현장관찰, 질적인인터뷰를 혼합한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질적인인터뷰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조사환경개선에 관한 필수적인 항목들을 기초로 하여 기본적인 면담의 프로토콜을 마련하되,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의 가변성을 허용함으로써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청취함으로써 인식조사에 필요한 항목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혼합적인 연구방법론은 삼각측정법 또는 삼각검증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이라고 하며, 다양한 조건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인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복합적 결과의 일치와 차별성을 검토하고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일반화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인인터뷰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분석 결과를 혼용하여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현장관찰과 이에 수반된 실무자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삼각검증법은 단일자료나 일부사례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편견과 일반화의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Patton, 1990).

<그림 VI-1> 방법론적 삼각검증법 및 구성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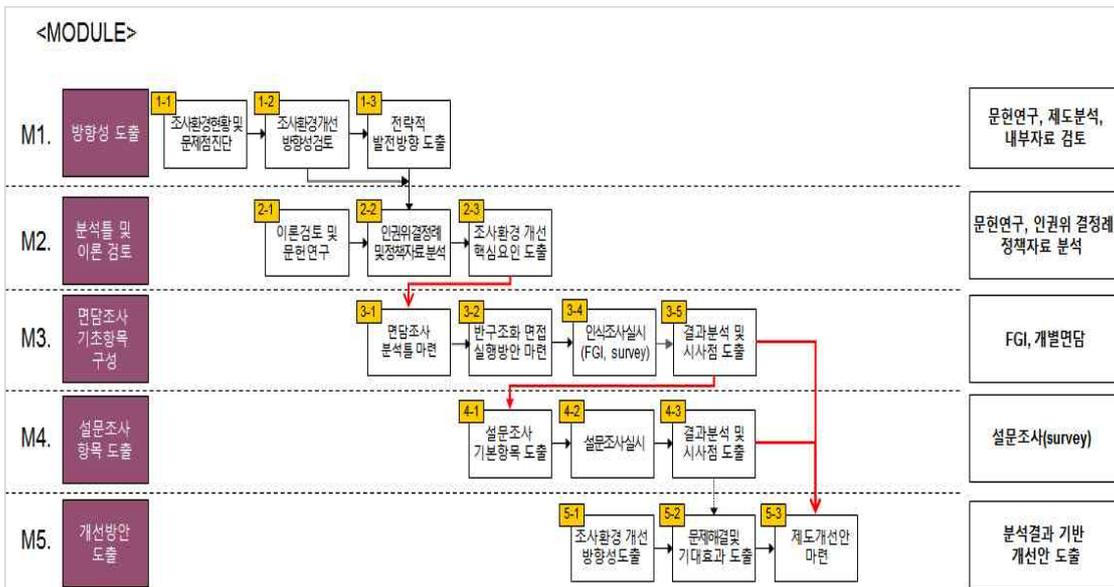
심층면담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와 현장 실무자 심층인터뷰로 실시하였다. FGI는 수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참여자들을 선정하였으며, 상호 경험과 지식에 대한 공유, 토론을 통해서 현행 수사환경의 한계점과 개선점, 수사환경과 참여경찰관의 제도적 조건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사절차상 한계와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한바와 같이 조사환경개선을 위한 핵심 변수들에 대한 주제목록(a list of topics)을 마련하고 그 외에는 대상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질의응답과 토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와 방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밝히고자 하는 현상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만드는 장점을 갖는다.

FGI는 한 차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관찰을 직접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다수 실시하여 내용에 대한 재확인 및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FGI와 개별면담 결과들을 종합하여 면담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를 위한 기초적인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 인터뷰 및 설문조사의 절차 및 모듈



<그림 VI-2> 인터뷰 및 설문조사의 절차 및 모듈



1.1. FGI 및 인터뷰 개요

조사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FGI와 개별면담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연구기간 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FGI 대상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수사분야 연구 또는 현장 경험이 있으며, 각각 심리학, 사이버범죄수사, 수사구조 개혁 등의 경력이 있어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FGI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FGI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VI-2> 면담조사 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수사분서 실무경력	전문분야
A	20년	강력범죄와 범죄심리
B	17년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 수사
C	15년	수사구조 개혁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구성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사무환경에 따른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여 필사를 통해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시 수갑 착용에 대한 문제, 피해자·피의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동선, 체포된 피의자 석방 여부 결정과 대기시간 최소화 방안, 개별 조사실의 운영 및 참여경찰관 제도의 실효성, 지구대·파출소 조사실 폐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진척된 응답 내용을 유도하여 설문조사 설계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2. FGI 조사 결과

일시·장소	2023 년 5 월 31 일 10시 ~ 12시, 경찰대학 강의동
참 석 자	연구진 3명, 인터뷰 대상자 3명
주요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제수사 영역 : 유치장 내 조사실 설치에 관한 의견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동선 3. 체포된 피의자 석방여부 결정과 대기시간의 최소화 방안 4. 개별조사실의 운영, 참여경찰관 제도의 실효성 5. 지구대, 파출소 조사실 폐지여부

2.1. 강제수사 영역 : 유치장 내 조사실 설치에 관한 의견

Q. 체포된 피의자 장시간 수감착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도주우려가 있기때문에 수갑을 채우는데 인권문제가 있음. 유치장 내에 조사실을 설치하여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 (조사대상자 C) 직원들이 구치소 방문해서 조사받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한다. 공간이 협소하다. 경찰서의 경우, 광역 유치장을 사용하므로 업무효율성 문제가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 참여권이 중요하고 시설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증거관리를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치장 내에 조사실 설치 시 사이버뿐만 아니라 유치장은 컴퓨터가 되지 않거나 공용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 보안관리가 엄격해서 기술적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실시간으로 자료보완을 위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유치장으로 들어가면 실시간 자료보완 요청이 힘들 수 있다. 제2의 구치소 조사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 동선 분리의 안은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실질심사의 경우, 주차 후 사무실까지 이동한다. 경찰서에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구속된 피의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법원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치장 조사실은 도주, 자해방지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유치장 근무자들의 행정업무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병원에서 팔찌를 차면 실시간 추적 가능, 특정 공간을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있다. 시설과 기술을 함께 활용하면 좋다. 수갑보다 인권침해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기술적 접근이 인권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
- (조사대상자 B) 실무적으로 조사 시 수갑을 풀어준다. 예외적으로 자해, 위해 우려 시에 한쪽 수갑을 풀어준다. 실무적으로 조사 중 수갑 채우는 것은 규칙위반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다. 수사관 외에 조사 중에 참여하는 경찰관은 유치관리 차원에서 참여자 명칭을 패용하는 지침이 있다. 동선 분리의 경우, 행정동과 민원동을 나눈다. 경기남부청의 경우에는 과거 민원인이 가장 많이 이동해야 한다. 최단 거리 이동으로 동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행정부서와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서 단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로경찰서의 경우, 가벽을 활용해서 유치인과 일반 시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했다. 기존 공간에서도 통로를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조사대상자 A) 구치소 조사 힘들다는 것에 동의한다. 광역 유치장 제도가 운영 중이므로 공용컴퓨터로 조사할 경우, 복잡한 사안일 경우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수갑이 문제가 된다면 유치장에서 형사계로 가는 동선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구속사건의 경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현행법 체포된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대기시키는 것도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같이 구속비율이 높은 사건을 취급하는 부서(형사, 사이버), 구속 비율이 낮은 사건을 취급하는 부서(경제 등)은 높은 층에 배치, 엘리베이터는 보안카드를 사용, 각 층은 출입문을 보안. 실제로 조사받는 층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피의자 입장에서 동선이 짧아지고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를 못하게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2.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동선

- Q. 경찰민원인, 수사대상자, 피해자/참고인, 피의자는 동선 분리가 필요함. 피해자는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동선과 출입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조사대상자 A) 수원구치소는 아파트 형태로 되어있다. 수사동에 유치장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좋겠다.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안내동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방문예약이 되어 있으면 신분증을 통해서 자동으로 안내가 되도록 한다. 피해자, 참고인은 방문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참고인을 별도의 동선으로 안내하는 방법이 있겠다.
- (조사대상자 C) 참고인, 피의자 유명인의 경우,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한다. 정문에 기자들이 있을 때,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출입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조사대상자 B) 첫째, 피의자, 피해자 관계성 범죄, 둘째, 프라이버시 두 가지는 다른 목적이라고 본다. 첫째는 경찰관 동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기술적으로는 독립된 공간으로 해결 될 것이다. 둘째, 경찰관 동행으로는 부족, 동선구분으로 해결해야 한다. 유아인 마포경찰서 출석지연은 기자가 많다는 이유였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동선 구분이 필요하다.

Q. 대기실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나? 1층에 대기실을 두면 공간이 낭비되지 않나? 층별 구조의 경우, 층별 대기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 (조사대상자 A) 보안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다.

Q. 죄종별, 수사 단계별, 피의자/피해자 특성별, 보안등급별 지침을 정해서 실무적으로 마련이 가능한가?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

- (조사대상자 B)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쾌해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행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지침, 위원회를 통한 결정은 어렵다. 가능한 개방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 큰 공간에서 파티션 형태로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 공간에서 시선을 마주치지 않을 정도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기실 공간에서 애초에 누구든지 독립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2.3. 체포된 피의자 석방여부 결정과 대기시간의 최소화 방안

Q.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은?

- (조사대상자 A) 은행시스템과 같은 대기시간 시스템도 도입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찰서에서 신분증을 찍으면 대기인원, 대기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
- (조사대상자 B) 처음 찾아온다면 가능하다. 2회 이상 찾아오거나 대질조사의 경우, 수사관도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 초점은 처음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관이 어느 정도 예측해서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Q. 체포된 피의자를 바로 조사할 경우, 수갑을 풀어주는 것은?

- (조사대상자 A) 형사 당직방은 통상 1층에 있어서 동선이 짧다. 실무적으로 현행법 체포자들은 석방을 한다. 주취 등 문제가 있을 때, 신원보증인이 있다면 대부분 석방한다. 현행법 체포 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인지사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체포의 경우, 강력사건이면 피해자는 보통 경찰서에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피해자 분리는 어느 정도 된다. 영장신청 판단이 되면 바로 조사를 해서 유치장 입감을 시킨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Q. 개별조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참관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개별조사실에서 조사할 경우, 참관인이 없는 환경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형사당직실도 조사실을 만들면 대기자 관리 등 문제가 나타난다. 현행 형사당직실을 유지하는 것이 맞나?

- (조사대상자 A) 실무적으로 힘들 것이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인계되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다. 석방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석방시킨다. 바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조사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현재 업무방식 상, 개별조사실로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인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강력팀처럼 각 사무실을 구분하면 더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

한다. 여청팀과 형사팀을 통합하는 것도 문제이다. 실무적으로 입감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체포된 모든 피의자를 입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과장급 등), Gatekeeper처럼 석방, 입감을 정해주면 실무적으로 가장 선호할 것이다.
- 형사당직에서 입감 비율은 10%정도 될 것이다. 조사와 석방을 결정해서 형사당직실로 인계된다면 너무 많은 피의자들이 조사실에서 대기하는 수는 줄어들 것이다. 여청의 가정폭력 사건도 귀가 사건이 많다. 기능별로 다 구분되어서 각 기능에서 하고 있다. 하나의 통합된 Gatekeeper가 특정 공간에서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각 기능의 팀장들이 대기하고 판단해주고, 상황실장 보고가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현장에서 거부감이 적을 것이다.
- (조사대상자 C) 입감자, 즉시 조사자를 구분하는 입구에 별도의 공간이 있다면 좋겠다. 모든 피의자를 입감시킨다면 문제가 있다. 입감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실무상 크다. 입감지휘를 받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많다. 모든 피의자를 입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병을 어떻게 할지를 상황실의 분실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은 좋다. Gatekeeper는 위해요소 판단, 입감여부 신속판단을 하는 역할 정도가 좋다.

2.4. 개별조사실의 운영, 참여경찰관 제도의 실효성

Q. 개별조사실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나?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조사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 (조사대상자 B) 참여경찰관이 가장 문제가 크다.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참여 경찰관이 없었는데 이름이 있으면 문제제기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시작할 때 잠깐 들어오고 끝날 때 잠깐 들어오는 경우, 조사실 문을 열어두는 경우로 해결한다. 실질적 참여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 경찰관이 1:1로 있을 때 인권침해 우려,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긴급대응 등을 위해서 참여경찰관이 필요하다. 참여경찰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야 내에 들어오는 정도로 문을 열어두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면 수사관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조사실 환경은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다. 참여경찰관이 조사실 내에서의 이야기

를 들을 수 있는 이어폰 착용 등 기술적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참여 경찰관을 운용하면 업무량 분석과 필요인원에 대한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

- (조사대상자 C) 참여의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가 들어가야 한다. 설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시설개선이 들어가야 한다.

Q. 소규모 팀제(3인)로 개별 수사실을 운용하는 방법은? 적정 인원은? 팀별, 반별 조사실

- (조사대상자 A) 강력반은 인원이 많다. 경제팀은 1:1이 많다. 형사팀은 폭행 3, 4명씩 조사를 받는다. 휴가자가 있거나 유치장 입감을 갈 경우, 참여인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조사대상자 B) 역행한다.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책임수사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50억 횡령사건을 조사하는데 옆에서 1만원도 안 되는 사건을 조사한다. 50억 횡령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자백을 받고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조사환경이 되지 않는다. 사무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조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팀조사의 경우, 공범끼리 말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조사가 필요하다. 2,3명이 동시에 대질조사를 받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참여경찰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이 없는 사건을 같은 공간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생각하므로 넓은 공간을 선호할 수 있다.

Q. 광수대에서 팀단위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조사실보다는 팀단위가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 (조사대상자 A) 광수대는 기획수사, 인지수사를 한다. 조사도 유기적으로 한다. 팀별로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수사업무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사건, 1:1 사건은 최종에 따라서 조사할 때, 옆의 사건처리 방식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지한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
- 형사, 경제, 여청, 교통은 개별사건, 강력, 광수대는 팀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 단, 시도경찰청은 대부분 체포영장을 받는다. 같은 날, 같은 사건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연간 거의 없다.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대단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마약은 거의 팀단위이다. 팀단위 접근이 맞다.

- 강력반, 광수대는 조사실이 좁기 때문에 조사 분위기가 잡힌다. 참고인, 피해자는 영장신청을 위해서 빨리해야 하는 경우는 한 곳에서 빨리 조사를 받는다. 그것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조사대상자 B) 팀단위 수사하더라도 개별적 조사가 맞는 경우가 있다. 공범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좋을 수 있다. 전략적 증거사용. 1:1 조사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생각할 수 있다. 수사이론적으로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개별 역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함께 응원하고 조사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어서 팀조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Q. 여러 명을 대질조사 하는 경우, 적절한 조사실 규모는? 신뢰관계인, 통역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조사대상자 B) 1:3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공유오피스와 같이 조사실에 충분한 장비,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 선호할 수 있다. 교통의 경우, 사무실 내에 파티션으로 조사실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다. 동선이 짧아서 선호한다.
- (조사대상자 A) 좁아서 답답하다. 수사관들이 선호하지 않다. 조사실 이용하려면 대기해야 한다. 고소인이 출석했는데 조사실이 비어있지 않으며 기다려야 한다. 조사실을 늘릴 필요가 있다. 피의자 조사할 때마다 층을 옮겨서 조사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조사실을 여러 팀이 공유하면 내 조사인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 여성, 사이버, 경제 섞여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조사대상자 C) 장비관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 층 전부를 조사공간으로 두면 설계상 좋지만 실무상 선호하지 않을 것 같다. 자기 팀 공간 내에 조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동선이 짧아서 가장 선호한다. 기본 컨셉은 팀 내에 조사공간을 두고, 필요시 한 층의 공용 조사실을 병행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실 밖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조사실의 문을 양쪽으로 문을 뚫어 놓는다면 동선 구분이 가능할 것 같다.

한쪽은 외부에서 접근가능 하도록, 한쪽은 내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2.5. 지구대, 파출소 조사실 폐지 여부

Q. 지구대, 파출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 (조사대상자 A) 지구대에서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사실이 별도로 있지만 흥분해있거나 자해,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범체포서 빨리 작성해서 경찰서로 빨리 보내는 것이 맞다. 경찰서별 인원에 따라서 다르다. 2,3급서에서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지구대는 거의 조사실이 별도로 있다. CCTV가 있고 인권침해 요소가 특별히 없다. 장기간 대기하는 것은 조사에 대한 개별경찰관 교육의 문제이다. 가정 폭력 등 쌍방으로 같이 지구대로 오는 경우, 분리될 수 있는 조사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취객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경우, 대기석과 조사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 스토킹도 간단히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 (조사대상자 C) 시설이나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개별 경찰관에 대한 교육의 문제라고 본다. 별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경찰서와 지구대 조사환경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조사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본서, 타서 직원이 지역관서에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민원인 간단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피의자 보다는 주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다.
- (조사대상자 B) 4조 2교대를 위해서 지구대, 파출소에 일정 인원 대기가 필요하다. 업무분장의 문제이다. 3급서의 경우, 사건이 많지 않고 지구대 인원 확보가 많으니, 조사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조사(interrogation)가 아니므로 조사실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간이진술서는 이제 쓰지 않는다. 수사의 업무를 늘상 하던 기능이 아니라 순찰 기능을 하는 경찰관이 전문수사관으로 특화되지 않는 경찰관이 저지르는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는 아니다.

<표 VI-3> 조사환경 관련 FGI 조사 결과 요약

분야	주요 내용
<p>강제수사 유치장 내 조사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장 조사실 확충 및 활용의 경우 인권친화적 요소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수사의 효율성 측면과는 상충될 수 있음 체포된 피의자를 유치장에 대기시키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경찰청, 경찰서에서 다루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층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동선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p>피해자보호를 위한 공간과 동선의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자의 유형에 따라서 심리적 부담감,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가 다르게 인식되므로 동선 구분의 필요성이 요청됨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신상보호 등의 목적에 따라서 별도의 출입구 또는 대기공간이 필요함
<p>대기시간의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 도입 필요 실무적으로 현행범체포 시 대기시간 문제, 가피해자 분리 문제는 크지 않음 형사당직실 개별조사실 확대 시 인원확충 필요할 것임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중간관리자급의 결정권한과 gatekeeper 역할 부여가 필요함
<p>개별조사실 운영 및 참여경찰관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경찰관 제도는 실무적으로 현장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되고 있음 조사실 내에서의 돌발상황 대응과 참여경찰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원확충이 필요함 정확한 업무량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사건의 유형, 사건의 경중, 조사대상자의 특성, 영장신청 여부 등에 따라서 조사실 공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조사실을 층별로 분리할 경우에는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무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음
<p>지구대, 파출소 조사실 폐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대, 파출소 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가피해자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대기석과 조사공간의 분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경찰관 개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도 필요함

3. 설문조사의 설계

3.1.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

본 연구에서는 일선경찰서 조사실 활용에 따른 인식과 개선, 수사관 참여제도, 진술녹음 및 영상녹화, 변호인 참여제도 등 조사환경 및 조사과정에 대한 인권보호와 업무효율성 측면에서의 인식 및 개선필요 분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관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의 구축에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활용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인권보호 및 피조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실은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사실 환경개선에 따른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수사관 참여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실무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이 분리됨에 따라서 경찰관들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자리이동, 서류준비, 자료준비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업무효율성에 있어서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진술녹음과 영상녹화, 변호인 참여제도 역시 물리적 공간의 개선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형사절차상의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조사실 내에 설치된 진술녹음과 영상녹화 시스템의 활용빈도는 높지 않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실 구축 및 조사환경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분야에 대한 경찰관과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인권친화적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경찰관과 일반시민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진행하였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개별조사실 도입의 효과성과 개선필요 분야, 수사관 참여제도의 운영과 대안, 업무효율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조사실 구조적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위축, 사생활 보호,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인식과 조사환경의 개선 필요 분야, 수사관 참여제도 및 변호인 참여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개선필요 분야에 대한 복수응답 항목을 제외하고는 인식수준은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 표본추출 방식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전송하여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경찰관은 현재 수사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수사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경찰서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했으며, 그밖에 경찰서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반시민 설문조사에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은 비확률적 표본추출방식을 택하였다. 무작위로 추출할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경찰서의 환경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표본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개체를 1차적으로 선택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1차 표본의 구성은 경찰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조사원을 모집하였으며, 학생조사원들에게 연령별 인구집단의 비례를 고려해서 연구대상 집단의 인원을 배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⁵⁷⁾ 이후 단계에서는 1차 연구대상자들에게 소개를 받아 경찰서 방문경험이 있거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을 표본을 선택하는 스노우볼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로 추가적으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추출방식은 본 연구주제의 특성상 조사대상자들이 경찰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에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무작위추출 방식으로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파악과 접근이 어려워 모집단 프레임의 작성이 불가능한 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3

57) 각 조사원별로 자신에게 배정된 설문조사 대상자 인원 전체에서 20대 이하 20%, 30대 20%, 40대 20%, 50대 20%, 60대 이상 20%를 할당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10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일반시민은 492명이 응답하였고 경찰관은 247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경우, 20대 응답자가 과대표집 되는 결과가 나타나 최종분석에서는 20대 응답자 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일부를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총 34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사집단별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VI-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경찰관)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80	27.9
	여	67	27.1
연령	20대	22	8.9
	30대	89	36.0
	40대	79	21.0
	50대 이상	57	23.1
근무부서	경찰서 수사 및 형사부서	192	77.7
	경찰서 확대수사 부서	12	4.9
	시도경찰청 수사 및 형사부서	41	16.6
	기타	2	0.8
계급	순경	17	6.9
	경장	43	17.4
	경사	47	19.0
	경위	94	38.1
	경감	42	17.0
	경정이상	4	1.6
경찰 총 경력	5년 이내	42	17.0
	6~10년	59	23.9
	11~15년	37	15.0
	16~20년	27	10.9
	21년 이상	82	33.2
수사부서 근무경력	5년 이내	99	40.1
	6~10년	44	17.8
	11~15년	35	14.2
	16~20년	32	13.0
	21년 이상	37	15.0
합계		247	100.0

<표 VI-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일반시민)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60	46.1
	여	187	53.9
연령	10대	25	7.2
	20대	108	31.1
	30대	60	147.3
	40대	58	16.7
	50대	82	23.6
	60대	11	3.2
	70대 및 이상	3	0.9
조사경험 유무	경험 없음	190	54.8
	경험 있음	157	45.2
합계		347	100.0

4.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4.1. 설문조사 문항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항목구성은 다음 <표VI-6>과 같다. 조사실 도입의 효과성 및 인권보호 관련 문항은 업무효율성 분야 3개, 인권보호 분야 3개, 개선분야 1개로 구성하였다. 수사관 참여제도와 관련된 문항은 제도의 장점 및 대안에 관한 문항 1개, 인권보호 문항 1개로 구성하였다. 조사실 구조적 환경개선에 관한 문항은 사무실 내 조사실(유형1)에 관한 항목과 공간분리(유형2)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실시한 파일럿 테스트에서 두 가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의 필요성에 따라서 개념상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 <그림VI-3>과 같이 2가지 유형을 도식화하여 제공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유형2’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설명을 별도로 제시하여 하였으며, ‘사무실 밖 복도, 로비 등으로 구분되거나 다른 층 등으로 분리하여 조사실을 배치’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사무실 내 조사실에 관한 업무효율성 측면의 문항 4개, 인권보호 측면의 문항 5개로 구성하였고, 공간분

리안에 대한 업무효율성 문항 3개, 인권보호 측면의 문항 4개로 구성하였다.

<그림 VI-3> 조사실 구조의 유형



<표 VI-6> 경찰관 대상 설문문항의 구성

분야	세부분야	항목구성
조사실 도입의 효과성 및 인권보호	업무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조사자 진술청취의 집중도 (A_1) 통합당직실에서의 피의자 도주위험성 (A_2) 조사실-사무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효율성 (A_3)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B_4) 피조사자 사생활 보호 (B_5) 피조사자 안전확보 및 신변보호 (B_6)
	개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실도입의 효과성 인식 (B_7)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사실과 업무공간의 분리(별도 공간 또는 다른 층) ② 피조사자 특성에 따른 특별 조사실 설치 ③ 피의자 조사실과 피해자(참고인 등) 조사실 별도 설치 ④ 조사실 1개당 면적의 확대 ⑤ 조사실의 환기 ⑥ 조사실 간의 방음문제 ⑦ 진술녹음, 영상녹화 시설의 확충 ⑧ 조사실 사용예약 전산시스템의 구축

수사관 참여제도	제도의 장점 및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관 참여제도의 운영과 대안 (C_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향상 ② 피조사자의 민원제기 대응에 활용 ③ 수사관 참여제도의 대안적 수단 및 보완책으로 활용 ④ 진술내용의 정확한 반영을 통한 수사자료 활용가능성 ⑤ 경찰관의 태도와 언행의 개선 효과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의 투명성 확보 (C_9)
조사실 구조적 환경개선 (사무실 내에 조사실 설치)	업무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효율성 (D_10) 수사서류 유출 등 보안 취약성 (D_11) 사건관리자 왕래, 조사 시 소음 등 불편함 (D_12) 피조사자 돌발행동에 대한 공동대응 (D_13)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조사자 인격, 명예보호 취약성 (E_14)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취약성 (E_15) 피의자-피해자 간의 동선 중복 (E_16) 여성,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 불안감 (E_17)
조사실 구조적 환경개선 (공간분리)	업무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처리 집중도 향상 (F_18) 서류관리 등 보안유지 강화 (F_19) 조사를 위한 이동, 서류준비 등에서 불편함 (F_20)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조사자 인권보호 강화 (G_21) 피조사자 사생활 보호 (G_22) 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 체포 피의자 집중감시 및 통제 (G_23) 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 경찰장구사용 필요성 감소 (G_24)

4.2.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결과

4.2.1. 조사실 도입의 효과성 및 인권보호

조사실 활용에 따른 업무효율성은 피조사자 진술청취의 집중도, 통합당직실에서의 피의자 도주위험성, 조사실-사무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효율성 측면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조사실을 활용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진술청취에 있어서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 ‘그렇다’는 40.5%로 전체 응답자의 약 81.4%에 해당하는 경찰관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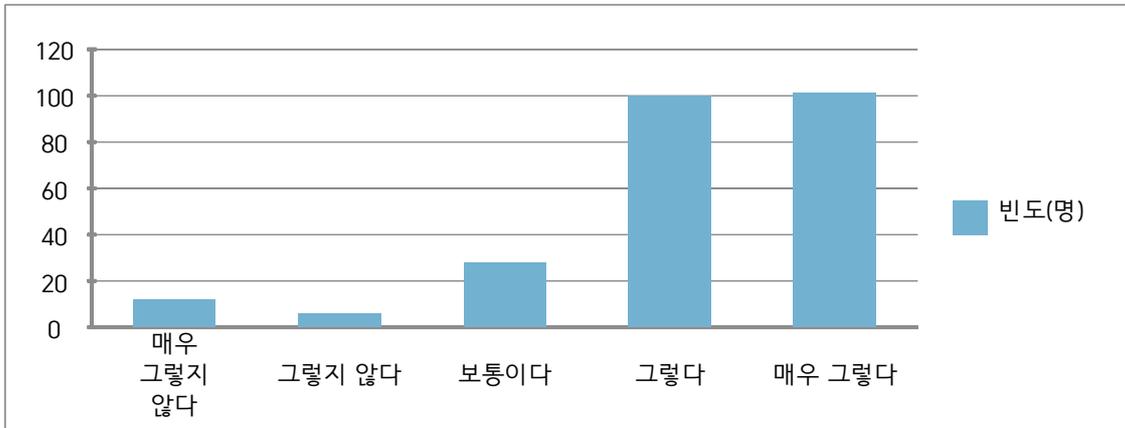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는 11.3%, ‘그렇지 않다’ 2.4%, ‘매우 그렇지 않다’는 4.9%로 나타났다.

<표 VI-7> 조사실 진술청취 집중도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에서는 피조사자 진술청취에 있어서 집중도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A_1)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2	4.9
그렇지 않다	6	2.4
보통이다	28	11.3
그렇다	100	40.5
매우 그렇다	101	40.9
합계	247	100.0

<그림 VI-4> 조사실 진술청취 집중도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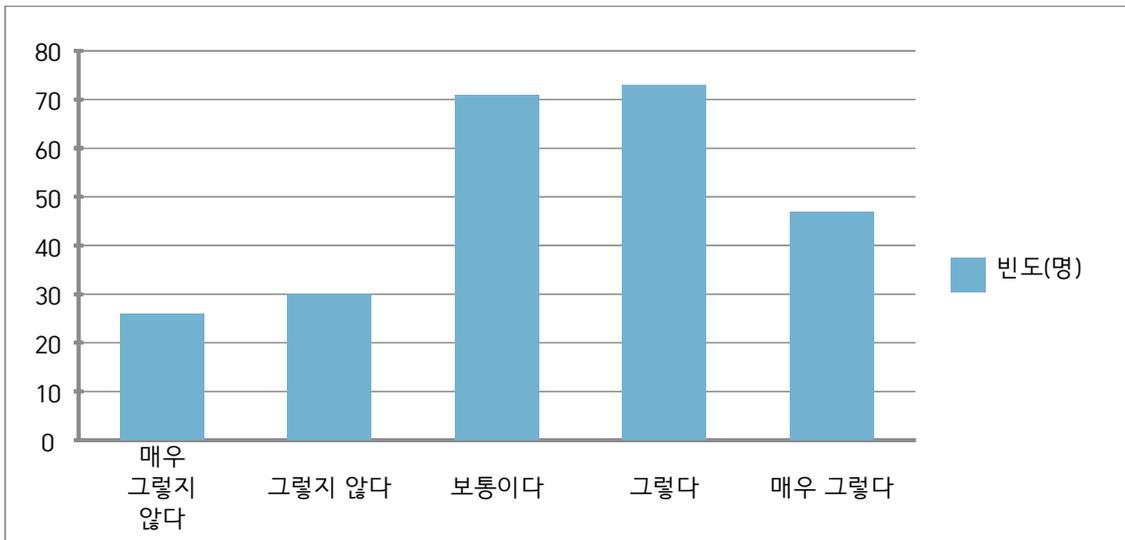


통합당직실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의자의 도주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의견이 약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28.7%, ‘매우 그렇다’ 19.0%, ‘그렇지 않다’ 12.1%, ‘매우 그렇지 않다’ 1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8> 통합당직실 피의자 도주위험성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6	10.5
그렇지 않다	30	12.1
보통이다	71	28.7
그렇다	73	29.6
매우 그렇다	47	19.0
합계	247	100.0

<그림 VI-5> 통합당직실 피의자 도주위험성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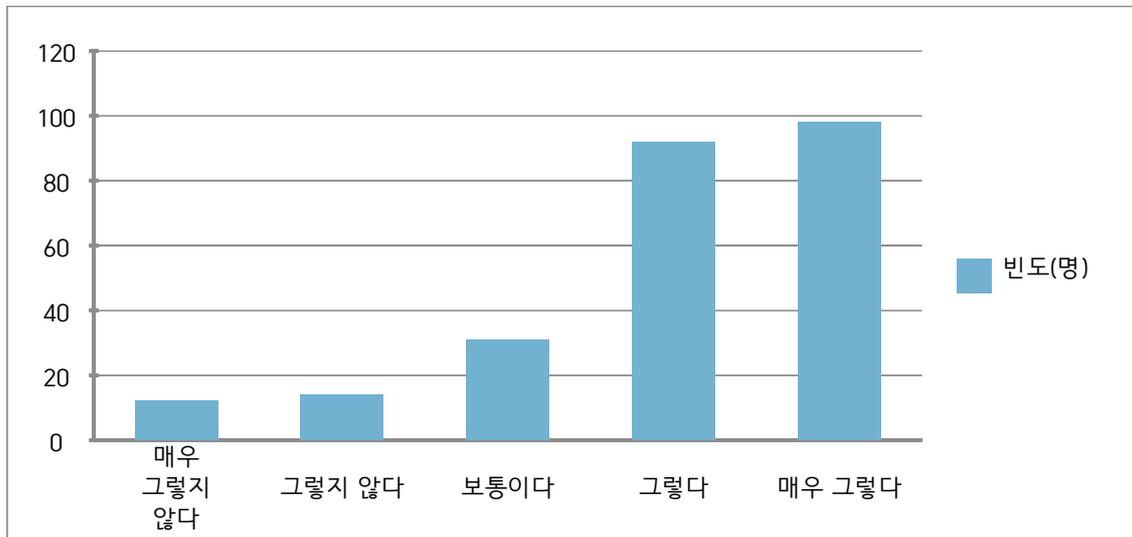
조사실과 사무공간을 분리하는 경우, 수사서류 작성 등에 집중할 수 있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매우 그렇다’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의견도 37.2%로 나타나 조사실-사무공간의 분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는 12.6%, ‘그렇지 않다’ 5.7%, ‘매우 그렇지 않다’ 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9> 조사실 업무처리 효율성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과 사무공간의 분리로 수사서류 작성 등에 집중할 수 있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A_3)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2	4.9
그렇지 않다	14	5.7
보통이다	31	12.6
그렇다	92	37.2
매우 그렇다	98	39.7
합계	247	100.0

<그림 VI-6> 조사실 업무처리 효율성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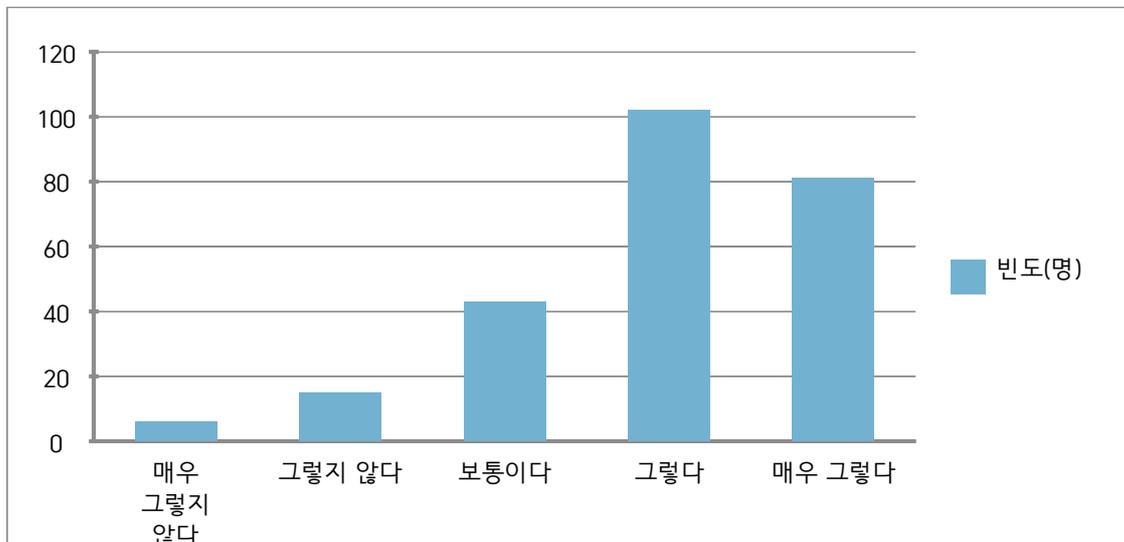
조사실 도입에 따른 인권보호에 관한 측면은 피조사자 인권보호, 사생활보호, 안전확보 및 신변보호로 조사하였다. 먼저, 피조사자의 전반적인 인권보호 측면에서 유리한지에 대한 의견에서는 ‘그렇다’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 32.8%로 나타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조사실 도입의 효과성은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17.4%, ‘그렇지 않다’ 6.1%, ‘매우 그렇지 않다’ 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10> 조사실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B_4)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6	2.4
그렇지 않다	15	6.1
보통이다	43	17.4
그렇다	102	41.3
매우 그렇다	81	32.8
합계	247	100.0

<그림 VI-7> 조사실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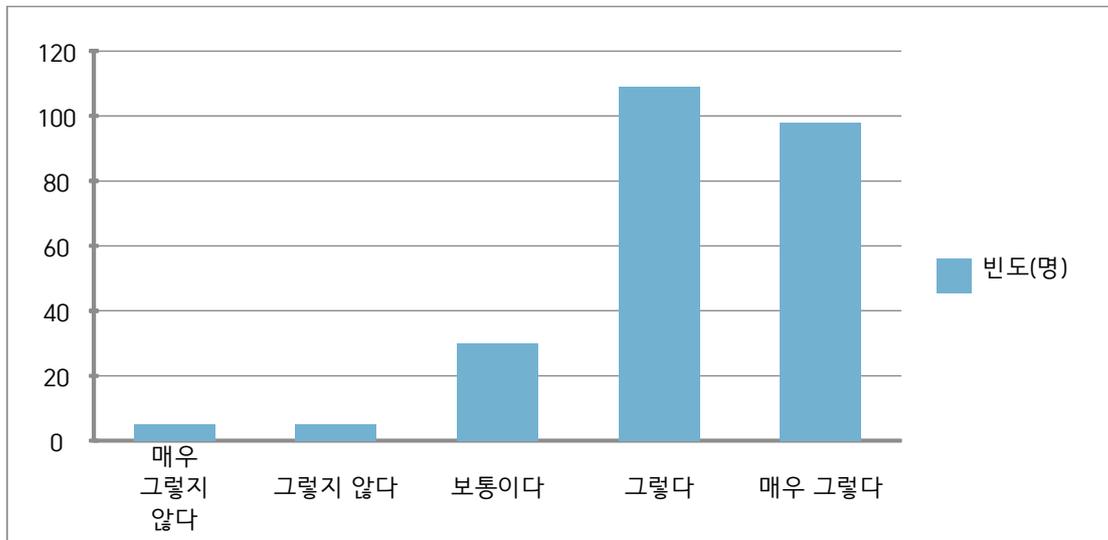
조사실이 피조사자의 사생활 보호에서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가 39.7%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12.1%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부정적인 의견은 4.0% 정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VI-11> 조사실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B_5)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5	2.0
그렇지 않다	5	2.0
보통이다	30	12.1
그렇다	109	44.1
매우 그렇다	98	39.7
합계	247	100.0

<그림 VI-8> 조사실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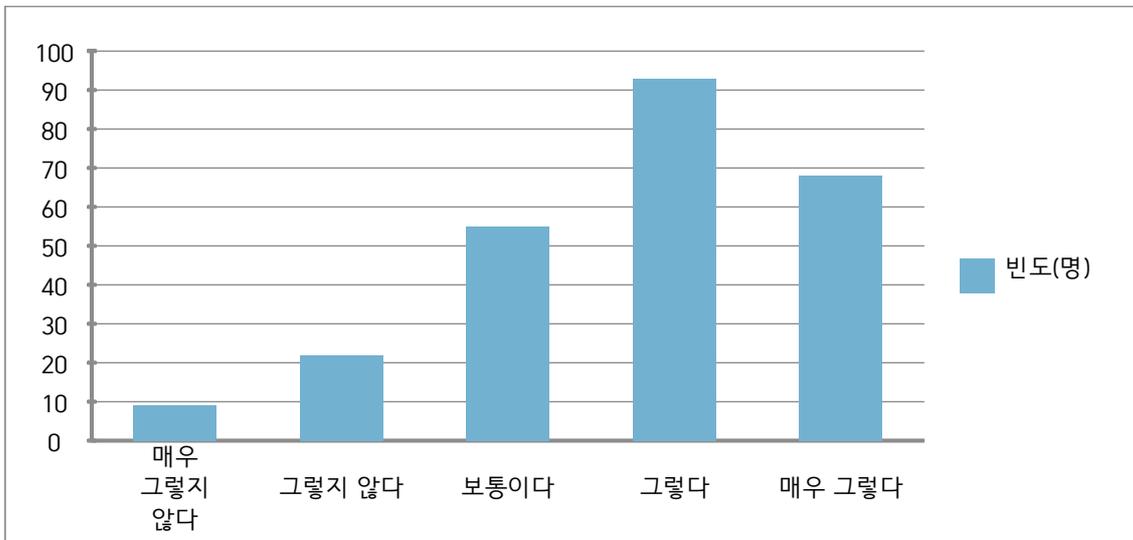
조사실이 피조사자의 안전 확보와 신변보호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 27.5%, ‘보통이다’ 22.3%로 과반수의 경찰관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8.9%, ‘매우 그렇지 않다’는 3.6%로 나타났다.

<표 VI-12> 조사실 피조사자 안전확보 및 신변보호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안전확보와 신변보호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B_6)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9	3.6
그렇지 않다	22	8.9
보통이다	55	22.3
그렇다	93	37.7
매우 그렇다	68	27.5
합계	247	100.0

<그림 VI-9> 조사실 피조사자 안전확보 및 신변보호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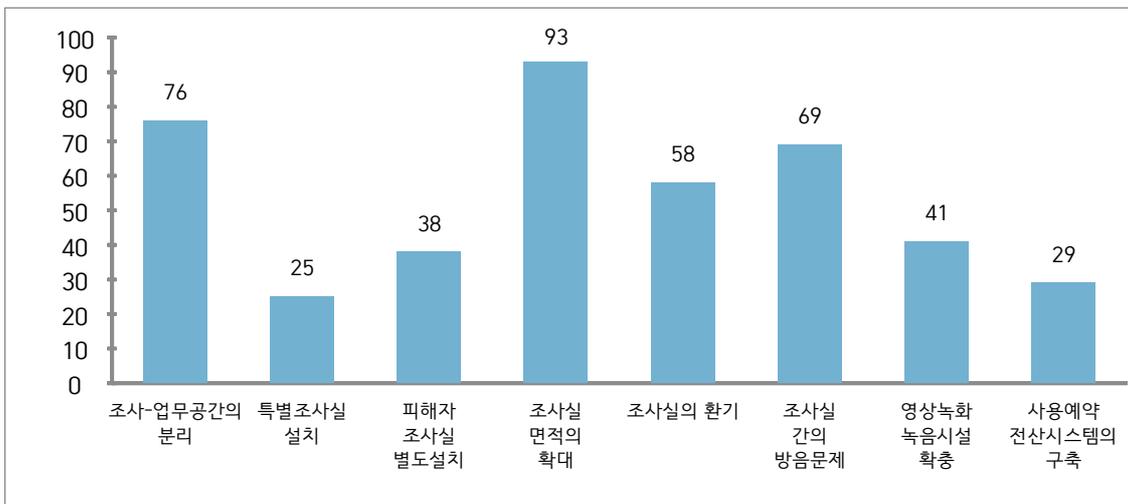


다음으로 현행 조사실 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문항에서는 ‘조사실 1개당 면적의 확대’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사실과 업무공간의 분리’ (17.7%), ‘조사실 간의 방음문제’ (16.1%), 조사실 환기(13.5%), ‘영상녹화, 녹음 시설의 확충’ (9.6%), ‘피의자 조사실과 피해자 조사실 별도로 설치’ (8.9%), ‘조사실 사용예약 전산시스템의 구축’ (6.8%), ‘피조사자의 특성에 따른 특별 조사실 설치’ (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13> 조사실 환경 개선 분야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조사실과 업무공간의 분리 (사무실 밖 별도 공간 또는 다른 층)	76	17.7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에 따른 특별조사실 설치	25	5.8
피의자 조사실과 피해자(참고인 등) 조사실 별도로 설치	38	8.9
조사실 1개당 면적의 확대	93	21.7
조사실의 환기	58	13.5
조사실 간의 방음문제	69	16.1
영상녹화, 녹음 시설의 확충	41	9.6
조사실 사용예약 전산시스템의 구축	29	6.8
합계	429	100.0

<그림 VI-10> 조사실 환경 개선 분야 빈도분석



4.1.1. 수사관 참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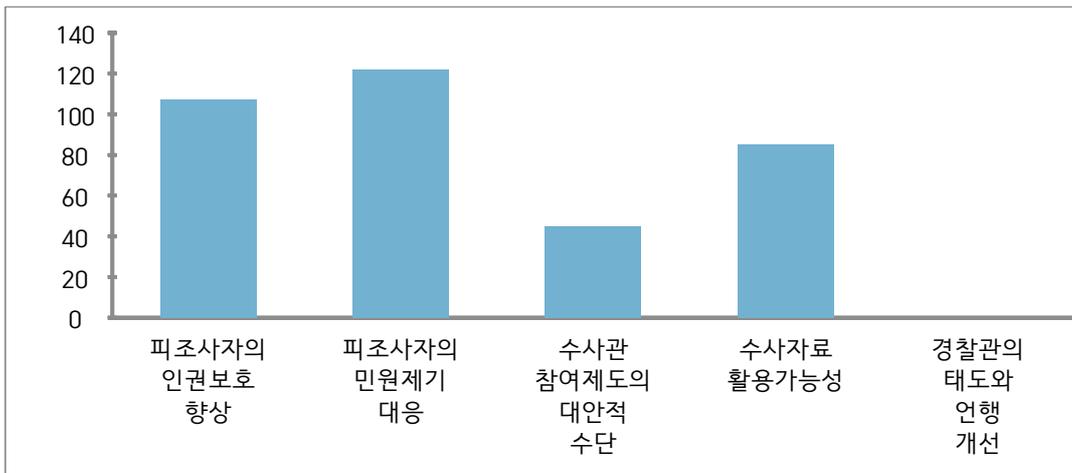
수사관 참여제도와 관련하여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장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조사자의 민원제기 대응에 활용’ 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향상’ 이 29.8%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술내용의 정확한 반영을 통한 수사자료 활용가능성’ 은 23.7%, ‘수

사관 참여제도의 대안적 수단 및 보완책으로 활용' 은 12.5%로 나타났으며, '경찰관의 태도와 언행의 개선 효과' 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표 VI-14> 진술녹음, 영상녹화 장점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향상	107	29.8
피조사자의 민원제기 대응에 활용	122	34.0
수사관 참여제도의 대안적 수단 및 보완책으로 활용	45	12.5
진술내용의 정확한 반영을 통한 수사자료 활용가능성	85	23.7
경찰관의 태도와 언행의 개선 효과	0	0.0
합계	359	100.0

<그림 VI-11> 진술녹음, 영상녹화 장점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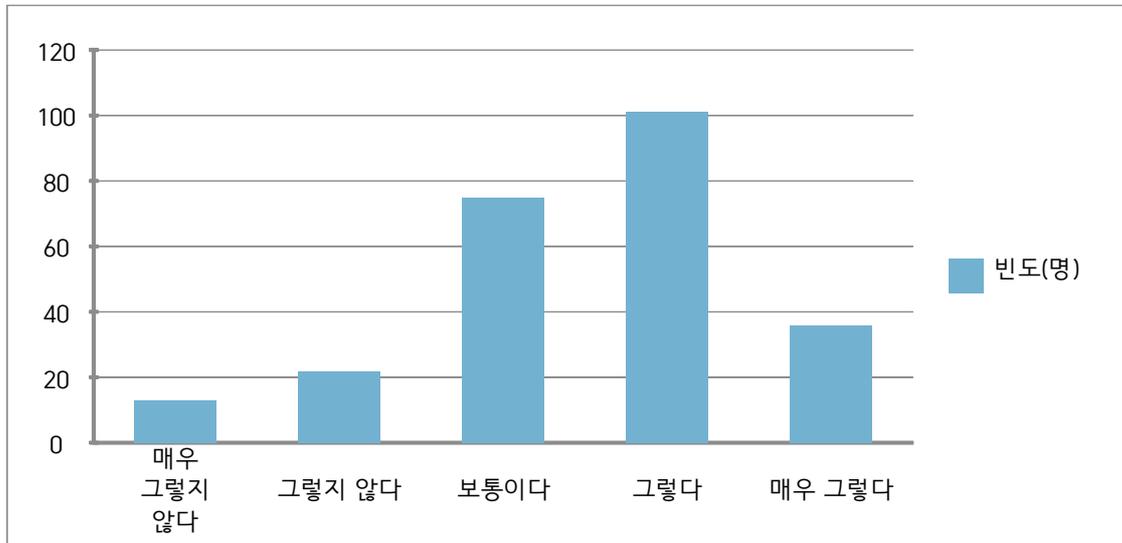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통한 수사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 가 40.9%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 30.4%, '매우 그렇다' 14.6% 순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의견으로 '그렇지 않다' 는 8.9%, '매우 그렇지 않다' 는 5.3%로 나타났다.

<표 VI-15> 진술녹음, 영상녹화 수사 투명성 빈도분석

문항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통해서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_9)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3	5.3
그렇지 않다	22	8.9
보통이다	75	30.4
그렇다	101	40.9
매우 그렇다	36	14.6
합계	247	100.0

<그림 VI-12> 진술녹음, 영상녹화 수사 투명성 빈도분석



4.1.2. 조사실 구조적 환경개선 (사무실 내 조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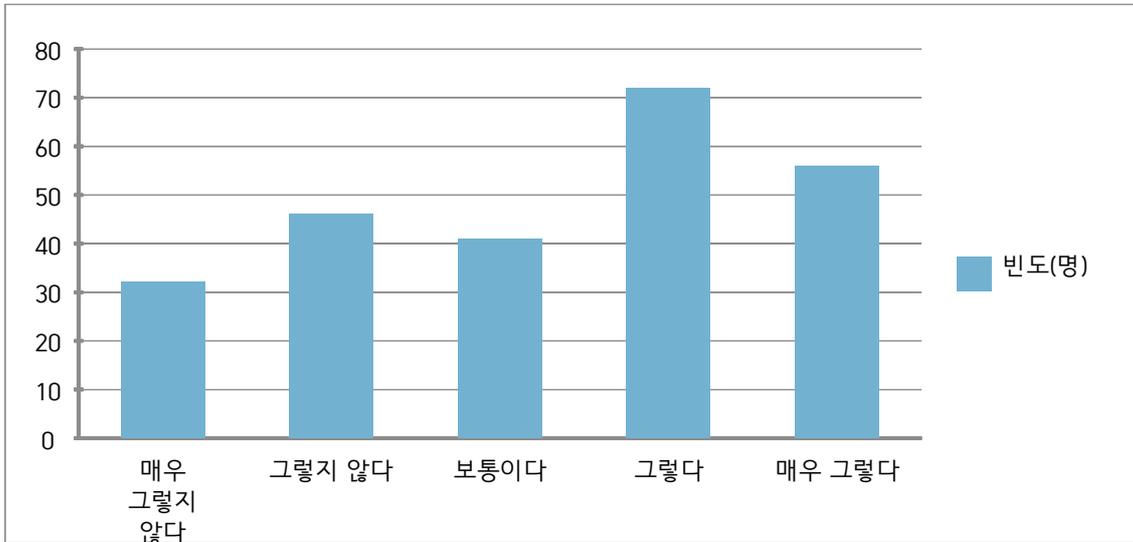
사무실 내에 조사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29.1%, ‘매우 그렇다’가 22.7%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8.6%,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13.0%로 나타나 사무실 내 조사실을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효율성 증가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6> 사무실 내 조사실 업무처리 효율성 빈도분석

문항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유형1),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D_10)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2	13.0
그렇지 않다	46	18.6
보통이다	41	16.6
그렇다	72	29.1
매우 그렇다	56	22.7
합계	247	100.0

<그림 VI-13> 사무실 내 조사실 업무처리 효율성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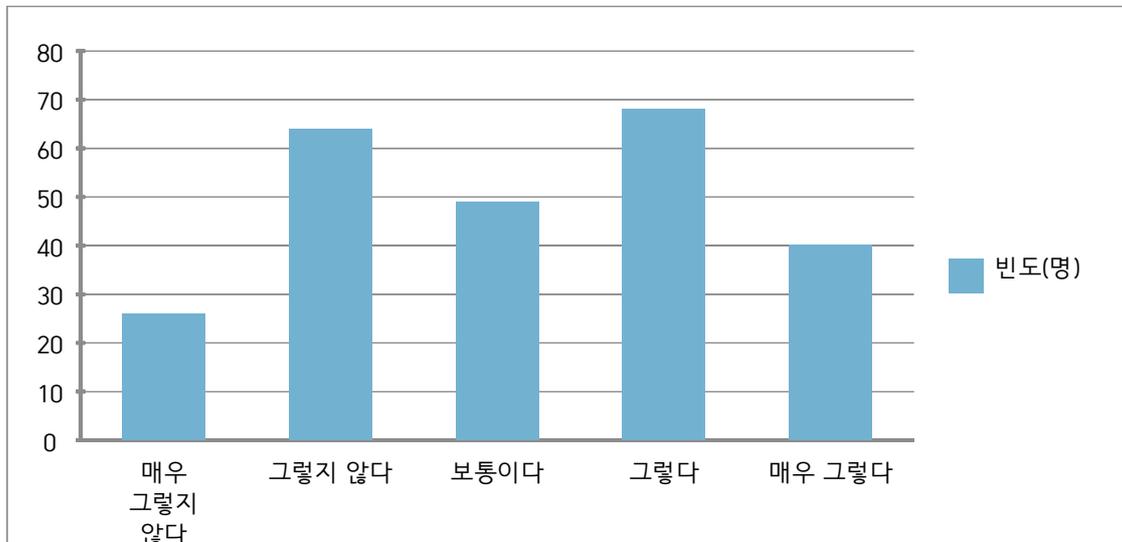
사무실 내에 조사실을 설치하는 경우, 수사서류 유출 등 보안상 취약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의견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25.9% 정도로 높게 나타나 보안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이다’는 의견은 19.8%, ‘매우 그렇다’는 16.2%, ‘매우 그렇지 않다’는 10.5%로 나타났다.

<표 VI-17> 사무실 내 조사실 보안취약성 빈도분석

문항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수사서류 유출 등 보안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D_11)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6	10.5
그렇지 않다	64	25.9
보통이다	49	19.8
그렇다	68	27.5
매우 그렇다	40	16.2
합계	247	100.0

<그림 VI-14> 사무실 내 조사실 보안취약성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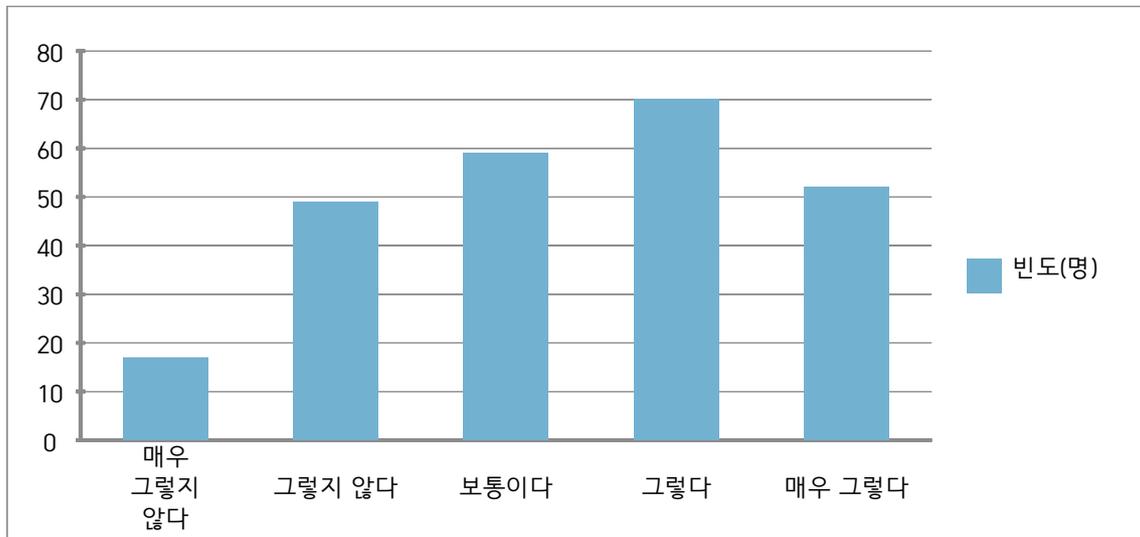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사건관련자들의 왕래나 조사 시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23.9%, ‘매우 그렇다’ 21.1%, ‘그렇지 않다’ 19.8%, ‘매우 그렇지 않다’ 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18> 사무실 내 조사실 소음 등 불편함 빈도분석

문항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사건관련자들의 왕래, 조사 시 소음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야기된다고 생각한다. (D_12)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7	6.9
그렇지 않다	49	19.8
보통이다	59	23.9
그렇다	70	28.3
매우 그렇다	52	21.1
합계	247	100.0

<그림 VI-15> 사무실 내 조사실 소음 등 불편함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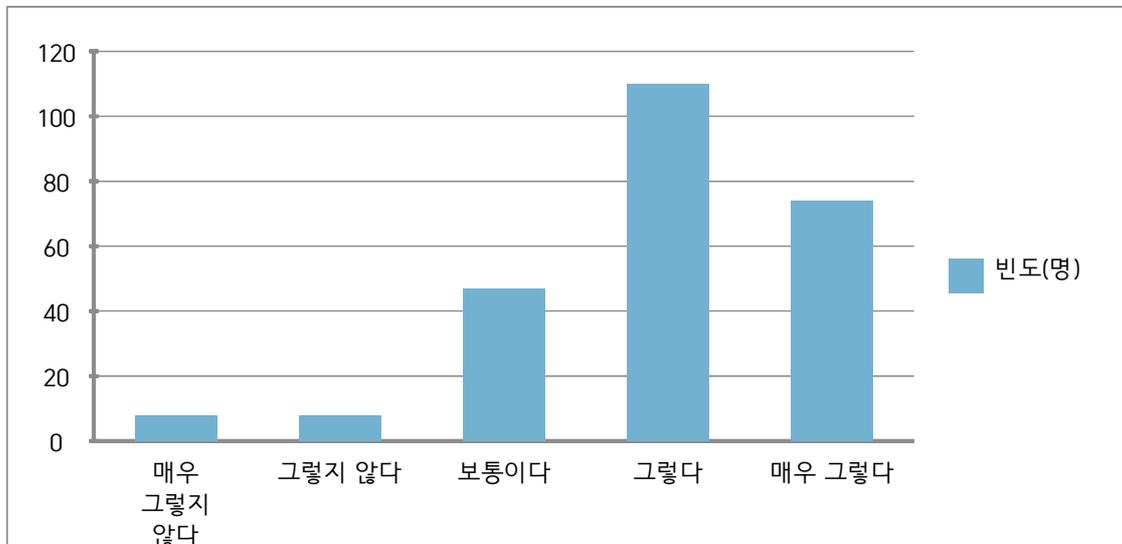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돌발행동 등 안전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의견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 30.0%, ‘보통이다’ 19.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매우 그렇지 않다’ 3.2%, ‘그렇지 않다’ 3.2%로 많지 않았다.

<표 VI-19> 사무실 내 조사실 안전문제 공동대응 빈도분석

문항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돌발행동과 난동, 자해 등 안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D_13)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8	3.2
그렇지 않다	8	3.2
보통이다	47	19.0
그렇다	110	44.5
매우 그렇다	74	30.0
합계	247	100.0

<그림 VI-16> 사무실 내 조사실 안전문제 공동대응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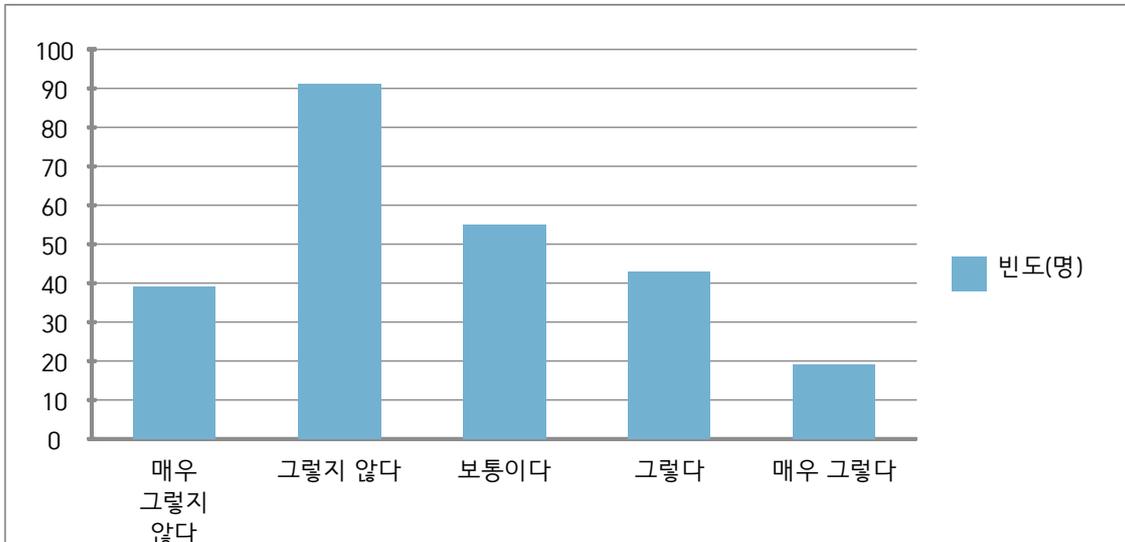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인격, 명예보호 등에서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2.3%, ‘그렇다’ 17.4%, ‘매우 그렇지 않다’ 15.8%, ‘매우 그렇다’ 7.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실을 사용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인격권과 명예보호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VI-20> 사무실 내 조사실 인격, 명예보호 취약성 빈도분석

문항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인격이나 명예보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E_14)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9	15.8
그렇지 않다	91	36.8
보통이다	55	22.3
그렇다	43	17.4
매우 그렇다	19	7.7
합계	247	100.0

<그림 VI-17> 사무실 내 조사실 인격, 명예보호 취약성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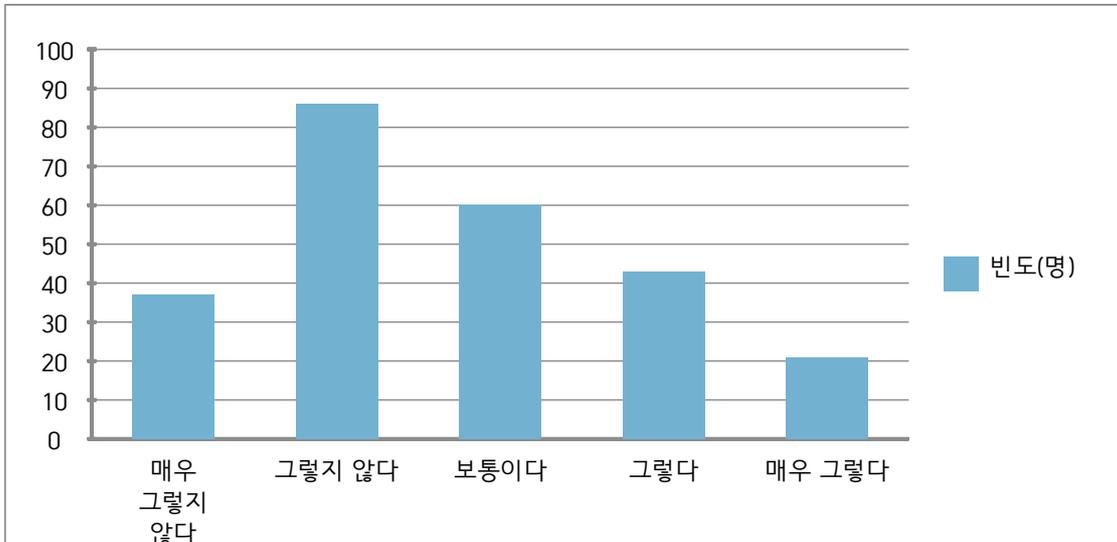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취약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는 의견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4.3%, ‘매우 그렇지 않다’ 는 15.0%로 과반수의 경찰관들은 사생활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반면, 취약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그렇다’ 17.4%, ‘매우 그렇다’ 8.5%로 나타나 사생활보호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VI-21> 사무실 내 조사실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취약성 빈도분석

문항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E_15)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7	15.0
그렇지 않다	86	34.8
보통이다	60	24.3
그렇다	43	17.4
매우 그렇다	21	8.5
합계	247	100.0

<그림 VI-18> 사무실 내 조사실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취약성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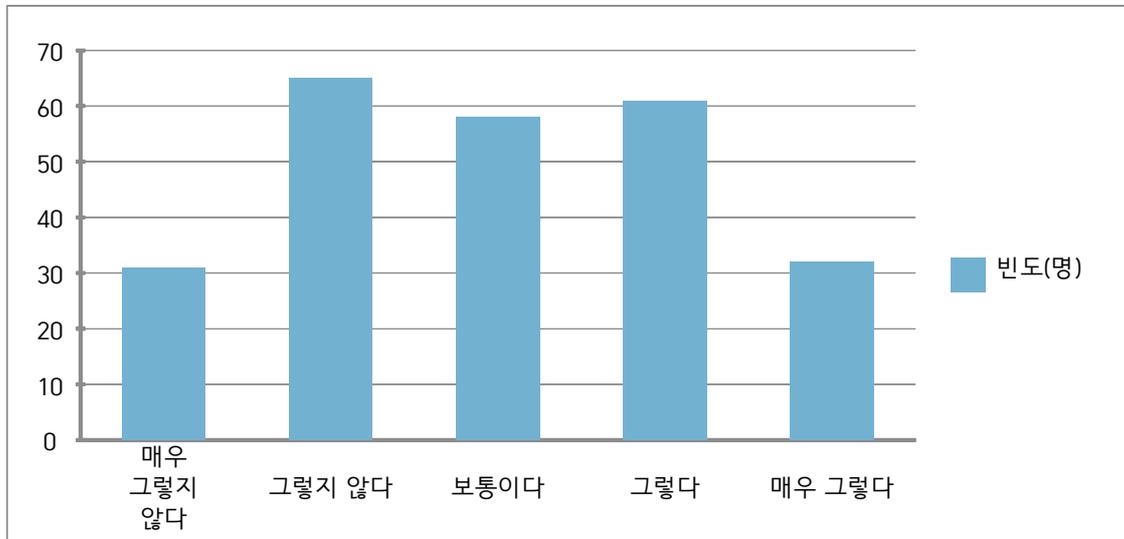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의자-피해자 간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 발생의 소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6.3%, ‘그렇다’ 24.7%, ‘보통이다’ 23.5%, ‘매우 그렇다’ 13.0%, ‘매우 그렇지 않다’ 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이나 부정적인 의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동선이 겹치는 문제는 각 경찰서별 차별화되는 사무실의 구조와 사무실 및 조사실 출입문의 형태, 이동 동선, 조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사시간의 선정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표 VI-22> 사무실 내 조사실 피의자-피해자 동선 중복 우려 빈도분석

문항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의자-피해자 간에 동선이 겹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E_16)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1	12.6
그렇지 않다	65	26.3
보통이다	58	23.5
그렇다	61	24.7
매우 그렇다	32	13.0
합계	247	100.0

<그림 VI-19> 사무실 내 조사실 피의자-피해자 동선 중복 우려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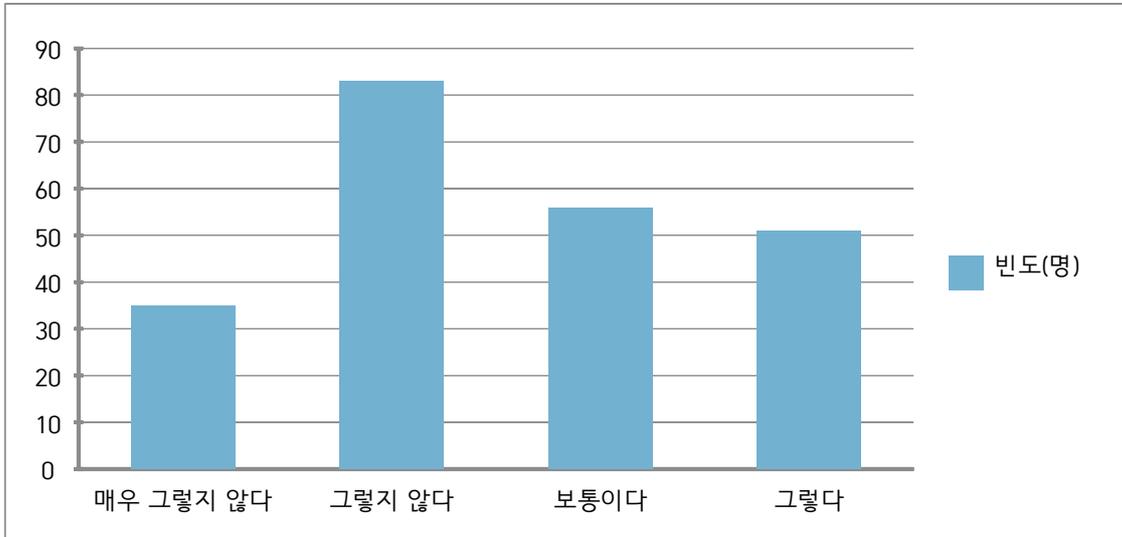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 집단에게는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2.7%, ‘그렇다’ 20.6%, ‘매우 그렇지 않다’ 14.2%, ‘매우 그렇다’ 8.9%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사무실 내에 설치된 조사실 구조로 인해서 불안감이 유발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VI-23> 사무실 내 조사실 여성 등 피조사자 불안감 빈도분석

문항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여성,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 등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E_17)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5	14.2
그렇지 않다	83	33.6
보통이다	56	22.7
그렇다	51	20.6
매우 그렇다	22	8.9
합계	247	100.0

<그림 VI-20> 사무실 내 조사실 여성 등 피조사자 불안감 빈도분석



4.1.3. 조사실 구조적 환경개선 (사무실-조사실 완전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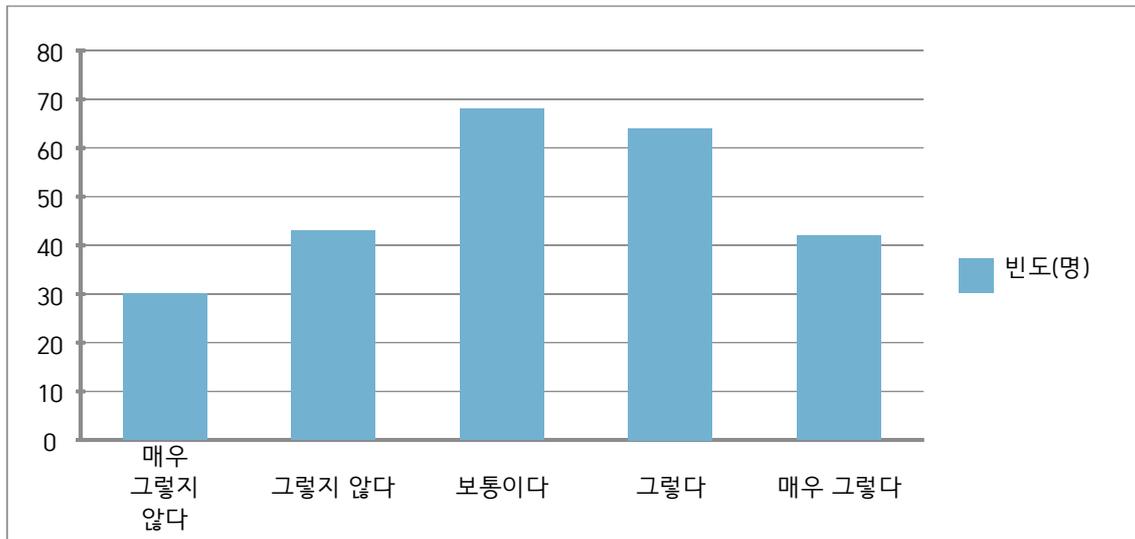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에는 복도를 경계로 두고 사무실과 다른 한쪽에 조사실을 두는 방식이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밖에도 건물의 한 층에 전 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조사실을 두는 방식이 있으나 신축 경찰서에서 활용되고 있어서 사례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사무실-조사실의 완전분리 유형(유형2)을 ‘사무실 밖 복도, 다른 층 등으로 분리하여 배치’ 하는 것으로 설명을 제시하고 업무효율성 측면과 인권보호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업무

처리의 집중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보통이다’가 2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 25.9%, ‘그렇지 않다’ 17.4%, ‘매우 그렇다’ 17.0%, ‘매우 그렇지 않다’ 1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24>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업무처리 집중도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0	12.1
그렇지 않다	43	17.4
보통이다	68	27.5
그렇다	64	25.9
매우 그렇다	42	17.0
합계	247	100.0

<그림 VI-21>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업무처리 집중도 빈도분석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보안유지 측면에서의 유리함에 대한 인식에서는 ‘그렇다’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2.7%, ‘매우 그렇다’ 21.9%로 나타나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15.0%, ‘매우 그렇지 않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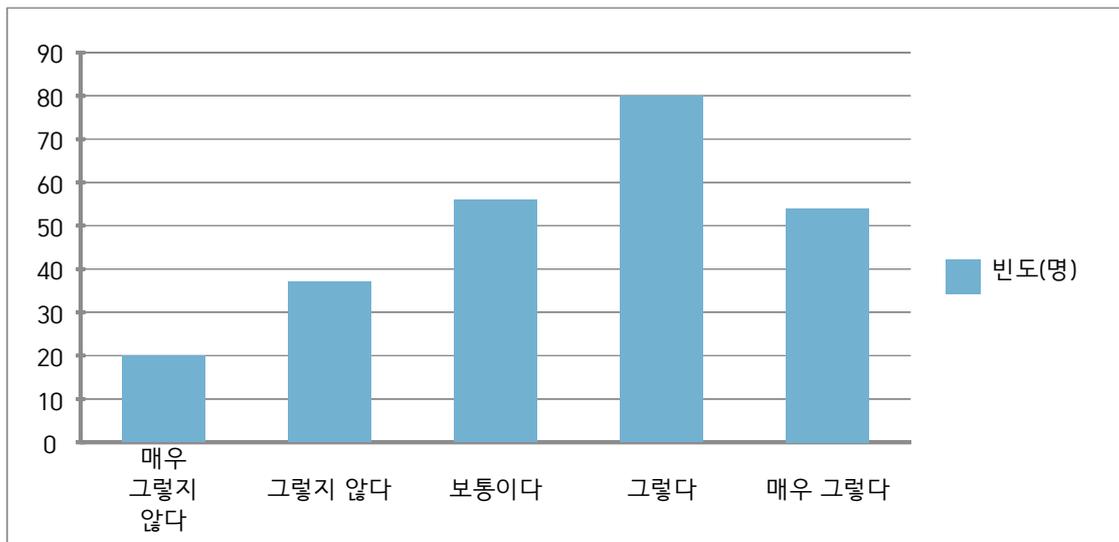
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VI-25>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보안유지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유형2), 서류관리 등 보안유지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F_19)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0	8.1
그렇지 않다	37	15.0
보통이다	56	22.7
그렇다	80	32.4
매우 그렇다	54	21.9
합계	247	100.0

<그림 VI-22>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보안유지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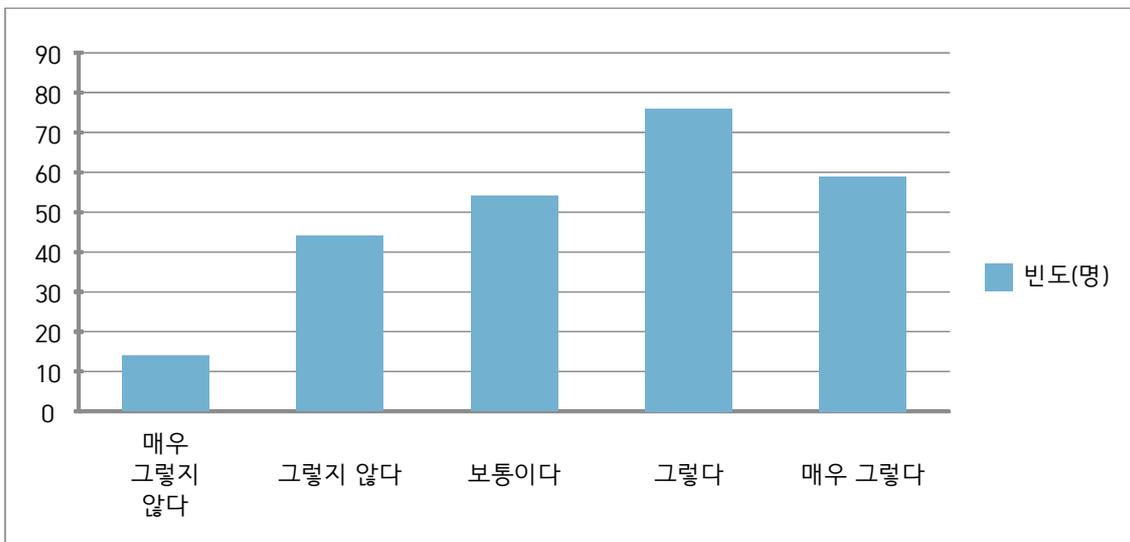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조사를 위해서 사무공간을 벗어나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이동해야 하므로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렇다’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는 의견도 23.9%로 나타나 과반수의 경찰관들은 불편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21.9%, ‘그렇지 않다’ 17.8%, ‘매우 그렇지 않다’ 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26>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업무처리 불편함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유형2), 조사를 위한 이동과 서류준비 등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F_20)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4	5.7
그렇지 않다	44	17.8
보통이다	54	21.9
그렇다	76	30.8
매우 그렇다	59	23.9
합계	247	100.0

<그림 VI-23>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업무처리 불편함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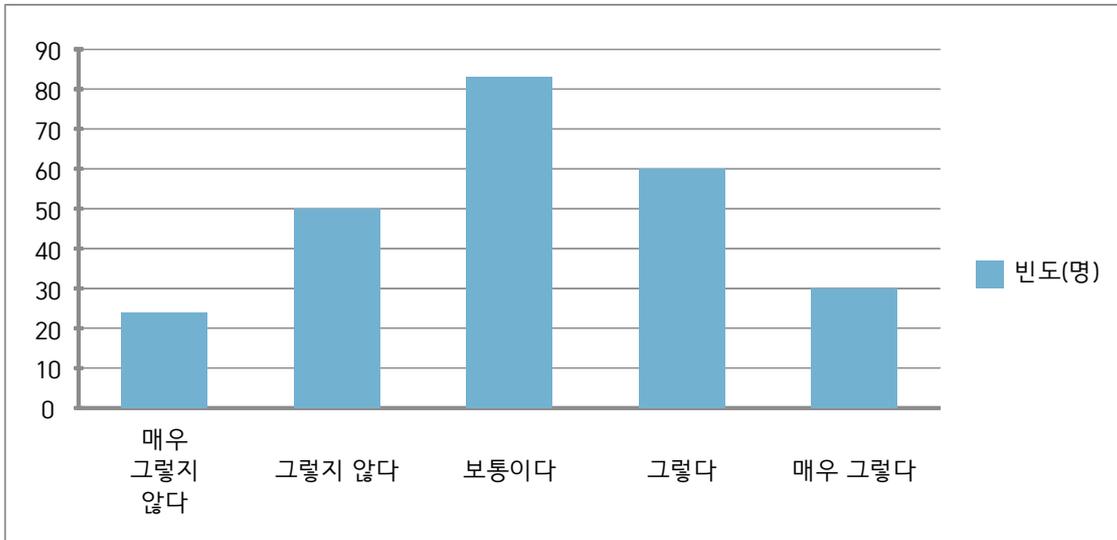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은 ‘보통이다’가 33.6%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 24.3%, ‘그렇지 않다’ 20.2%, ‘매우 그렇다’ 12.1%, ‘매우 그렇지 않다’ 9.7%로 나타났다. 즉,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27>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유형2),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G_21)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4	9.7
그렇지 않다	50	20.2
보통이다	83	33.6
그렇다	60	24.3
매우 그렇다	30	12.1
합계	247	100.0

<그림 VI-24>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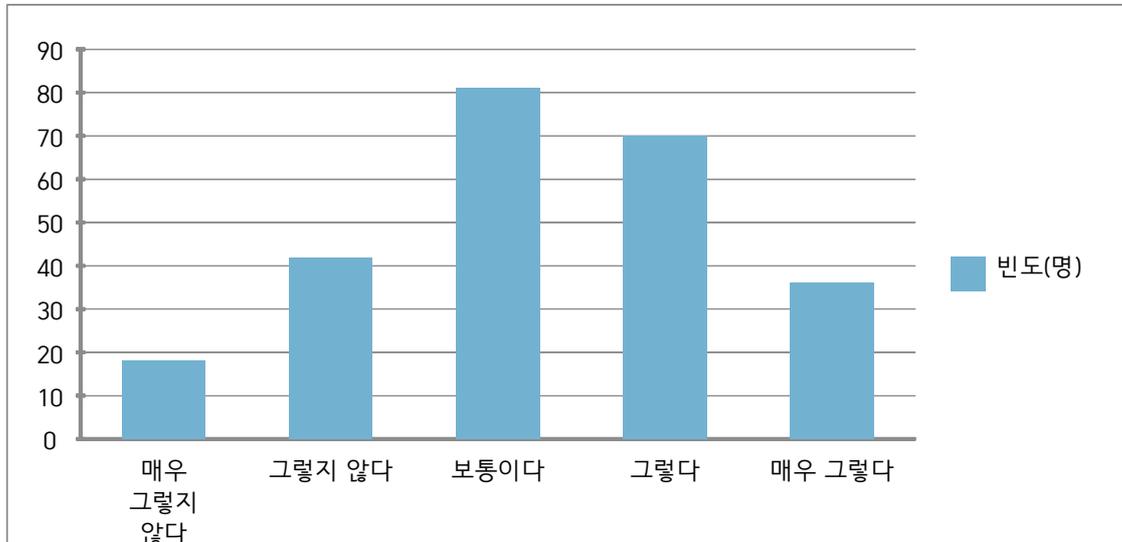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32.8%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 28.3%, ‘그렇지 않다’ 17.0%, ‘매우 그렇다’ 14.6%, ‘매우 그렇지 않다’ 7.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사생활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인식을 대체적으로는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28>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유형2),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G_22)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8	7.3
그렇지 않다	42	17.0
보통이다	81	32.8
그렇다	70	28.3
매우 그렇다	36	14.6
합계	247	100.0

<그림 VI-25> 조사실 사무실 밖 분리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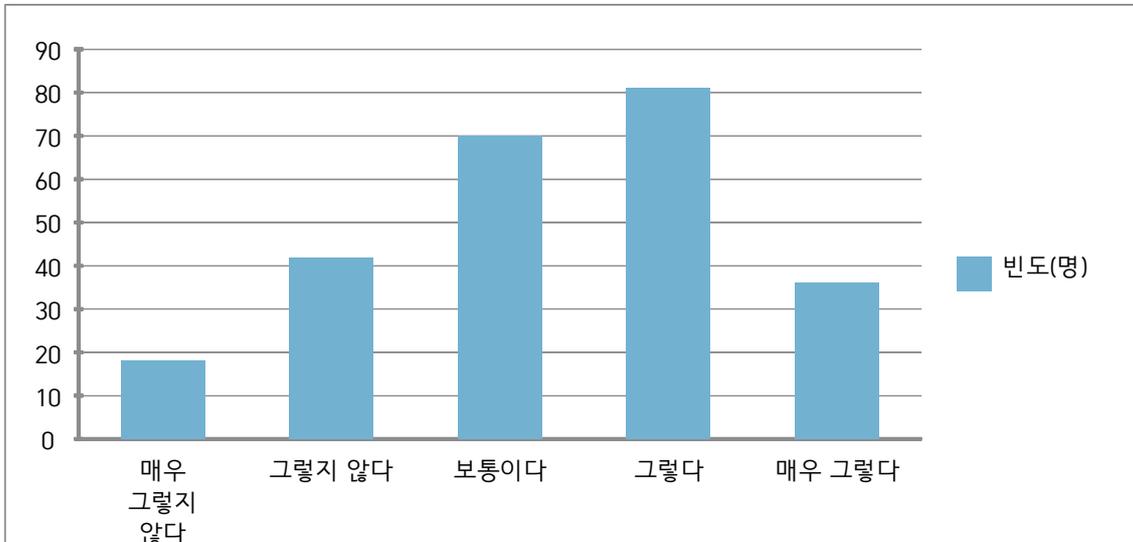
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의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감시와 통제의 유리함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8.3%, ‘그렇지 않다’ 17.0%, ‘매우 그렇다’ 14.6%, ‘매우 그렇지 않다’ 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29> 통합수사당직실 체포피의자 집중감시 통제 빈도분석

문항	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감시와 통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G_23)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8	7.3
그렇지 않다	42	17
보통이다	70	28.3
그렇다	81	32.8
매우 그렇다	36	14.6
합계	247	100.0

<그림 VI-26> 통합수사당직실 체포피의자 집중감시 통제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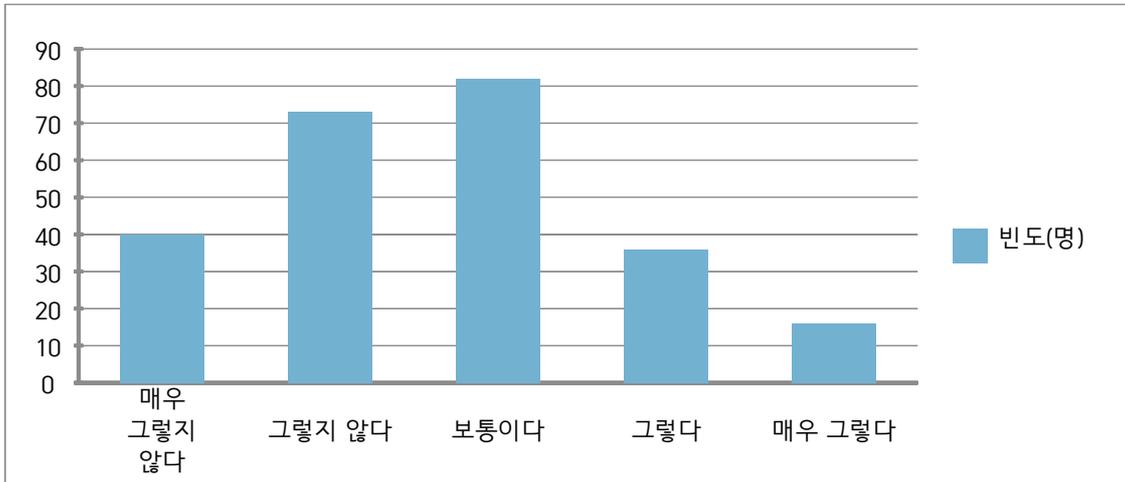
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의 경찰장구사용(수갑)의 필요성은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보통이다’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29.6%, ‘매우 그렇지 않다’ 16.2%, ‘그렇다’ 14.6%, ‘매우 그렇다’ 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0> 통합수사당직실 경찰장구사용 필요성 감소 빈도분석

문항	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는 경찰장구사용(수갑)의 필요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G_24)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40	16.2
그렇지 않다	73	29.6
보통이다	82	33.2
그렇다	36	14.6
매우 그렇다	16	6.5
합계	247	100.0

<그림 VI-27> 통합수사당직실 경찰장구사용 필요성 감소 빈도분석



4.3.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합의견

4.3.1. 조사실 도입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실 도입의 효과성과 인권보호 측면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에서 제시하였다. 조사실 도입에 따라서 피조사자의 진술청취의 집중도 향상(평균값=4.10, 표준편차=1.025)과 수사서류 작성에 있어서의 집중도 향상(평균값=4.01, 표준편차=1.091)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합수사당직실에서의 피의자 도주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이 나

타나고 있지만(평균값=3.35, 표준편차=1.222) 높은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다.

인권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조사실 도입으로 인해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평균값=4.17, 표준편차=0.868)와 인권보호 측면(평균값=3.96, 표준편차=0.983)에서의 효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확보와 신변보호(평균값=3.77, 표준편차=1.064)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조사실은 피조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사생활보호에 적합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찰관들의 수사관련 업무수행의 효율성에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VI-31> 조사실 도입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분야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업무 효율성	조사실에서는 피조사자 진술청취에 있어서 집중도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 (A_1)	4.10	1.025
	통합수사당직실에서 피의자 도주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생각한다. (A_2)	3.35	1.222
	조사실과 사무공간의 분리로 수사서류 작성 등에 집중할 수 있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A_3)	4.01	1.091
인권보호	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B_4)	3.96	0.983
	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사생활 보호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B_5)	4.17	0.868
	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안전확보와 신변보호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B_6)	3.77	1.064

<표 VI-32> 조사실 도입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인권보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요약

조사실 도입 업무효율성	피조사자 진술청취의 집중도 향상	긍정 81.4%	
	통합당직실에서 피의자 도주위험성 낮음	긍정 48.6%	
	조사실-사무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효율성	긍정 76.9%	
조사실 도입 인권보호	피조사자 인권보호 유리함	긍정 74.1%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긍정 83.8%	
	피조사자 안전확보 및 신변보호	긍정 65.2%	

다음으로 경찰관들의 계급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실 도입에 따른 피조사자 진술청취의 집중도 향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순경 집단의 평균값은 4.47(표준편차=0.624)로 가장 높았으며, 경사 집단의 평균값은 3.89(표준편차=1.2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순경, 경장의 하위직과 경위 이상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나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VI-33> 계급별 조사실 피조사자 진술청취 집중도 인식차이 (A_1)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4.47	0.624	4.15	4.79	1.125
경장	43	4.19	0.699	3.97	4.40	
경사	47	3.89	1.272	3.52	4.27	
경위	94	4.09	0.991	3.88	4.29	
경감 이상	46	4.13	1.166	3.78	4.48	
합계	247	4.10	1.025	3.97	4.23	

통합수사당직실에서 피의자 도주위험성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순경 집단의 평균값이 3.76(표준편차=0.7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사 집단의 평균값이 3.09(표준편차=1.2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급 모든 집단의 평균값은 보통수준인 3점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I-34> 계급별 통합수사당직실에서 피의자 도주위험성 인식차이 (A_2)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76	0.752	3.38	4.15	2.257
경장	43	3.26	1.217	2.88	3.63	
경사	47	3.09	1.299	2.70	3.47	
경위	94	3.55	1.132	3.32	3.79	
경감 이상	46	3.11	1.370	2.70	3.52	
합계	247	3.34	1.219	3.19	3.50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에 따른 수사서류 작성 등 집중에 의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순경 집단의 평균값이 4.29(표준편차=0.7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사 집단의 평균값은 3.74(표준편차=0.1.3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순경 계급과 경감 이상 계급의 집단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팀 내에서 상대적으로 업무경험이 많지 않고 선배 경찰관들로부터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배워나가는 순경 계급과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계급에 해당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들이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이 분리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업무효율성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VI-35> 계급별 조사공간-사무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효율성 향상 인식차이 (A_3)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4.29	0.772	3.90	4.69	1.185
경장	43	4.02	0.859	3.76	4.29	
경사	47	3.74	1.359	3.35	4.14	
경위	94	4.02	1.047	3.81	4.24	
경감 이상	46	4.15	1.154	3.81	4.49	
합계	247	4.01	1.091	3.88	4.15	

다음으로 조사실 도입에 따른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유리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경감 계급 이상 집단의 평균값이 4.26(표준편차=0.8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사 계급 집단의 평균값은 3.77(표준편차=1.237)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VI-36> 계급별 조사실 도입의 피조사자 인권보호 인식차이 (B_4)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4.00	0.707	3.64	4.36	1.805
경장	43	3.81	0.932	3.53	4.10	
경사	47	3.77	1.237	3.40	4.13	
경위	94	3.97	0.955	3.77	4.16	
경감 이상	46	4.26	0.828	4.01	4.51	
합계	247	3.96	0.983	3.84	4.08	

조사실이 피조사자의 사생활 보호에서 유리한지에 대한 계급별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경감 계급 이상 집단의 평균값이 4.39(표준편차=0.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순경 집단의 평균값도 4.27(표준편차=0.58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경사 계급의 집단의 평균값은 3.96(표준편차=1.19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I-37> 계급별 조사실 도입의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인식차이 (B_5)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4.27	0.588	3.99	4.60	1.564
경장	43	4.14	0.675	3.93	4.35	
경사	47	3.96	1.197	3.61	4.31	
경위	94	4.17	0.863	3.99	4.35	
경감 이상	46	4.39	0.682	4.19	4.59	
합계	247	4.17	0.868	4.07	4.28	

조사실이 피조사자의 안전 확보와 신변보호에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경감 계급 이상 집단의 평균값이 3.89(표준편차=0.9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경 집단의 평균값은 3.88(표준편차=0.928)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장 집단의 평균값은 3.60(표준편차=0.95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I-38> 계급별 조사실 도입의 피조사자 안전 확보 및 신변 보호 인식 차이 (B_6)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88	0.928	3.41	4.36	0.505
경장	43	3.60	0.955	3.31	3.90	
경사	47	3.70	1.232	3.34	4.06	
경위	94	3.79	1.025	3.58	4.00	
경감 이상	46	3.89	1.120	3.56	4.22	
합계	247	3.77	1.064	3.63	3.90	

4.3.2. 진술 녹음 또는 영상 녹화에 대한 인식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진술 녹음과 영상 녹화 방식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의 평균값은 3.51(표준편차=1.020)로 나타나 보통수준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조사환경과 제도적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수사관 참여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적, 기술적 개선과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진술 녹음과 영상 녹화는 수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개선요인과 함께 보충적인 수단으로써 고려될 수 있다.

<표 VI-39> 진술 녹음 또는 영상 녹화 인식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분야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진술 녹음 영상 녹화	진술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통해서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_9)	3.51	1.020

한편, 계급별 진술 녹음 또는 영상 녹화에 따른 수사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어서는 경감 계급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값 3.72, 표준편차=0.886). 반면 순경 집단의 평균값은 3.18(표준편차=0.88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부분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진술 녹음 또는 영상 녹화에 대한 수사 투명성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계급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VI-40> 계급별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 인식차이 (C_9)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18	0.883	2.72	3.63	2.332
경장	43	3.26	1.002	2.95	3.556	
경사	47	3.36	1.293	2.98	3.74	
경위	94	3.65	0.924	3.46	3.84	
경감 이상	46	3.72	0.886	3.45	3.98	
합계	247	3.551	1.020	3.38	3.63	

조사실 구조적 환경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인권보호 인식

신축 경찰서가 아닌 기존의 경찰서에 조사실을 구축하는 경우, 사무공간의 일부 공간을 배정하여 사무실 내에 조사실을 구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에 업무효율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업무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효율적 업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평균값 3.30, 표준편차=1.349). 특히, 피조사자의 돌발행동과 난동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평균값 3.95, 표준편차=0.955). 반면, 사무실 내의 사건 관련자들의 왕래나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다소 있으며(평균값 3.37, 표준편차=1.212), 보안유지 측면에서도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평균값 3.13, 표준편차=1.262)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서류 등 보안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하며, 조사실의 방음장치 설치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권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피조사자의 인격이나 명예보호 취약성(평균값 2.64, 표준편차=1.166), 사생활 침해 가능성(평균값 2.70, 표준편차=1.166), 동선 중복에 따른 문제(평균값 2.99, 표준편차=1.240) 등에 대해서는 보통수준(3점) 보다는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인권보호와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크지 않지만 앞서 항목별 빈도분석

결과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개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실 내에 설치된 조사실의 실질적인 사용과정에서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 등이 사무실 내에 있는 조사실에 출입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유발될 수 있다는 문항에서도 평균값은 2.77(표준편차=1.190)로 보통 수준(3점) 이하로 나타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VI-41> 사무실 내 조사실 설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분야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업무 효율성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유형1),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D_10)	3.30	1.349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수사서류 유출 등 보안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D_11)	3.13	1.262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사건관련자들의 왕래, 조사 시 소음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야기된다고 생각한다. (D_12)	3.37	1.212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돌발행동과 난동, 자해 등 안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D_13)	3.95	0.955
인권보호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인격이나 명예보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E_14)	2.64	1.166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E_15)	2.70	1.173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피의자-피해자 간에 동선이 겹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E_16)	2.99	1.240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여성,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 등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E_17)	2.77	1.190

<표 VI-42> 사무실 내 조사실 설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요약

사무실 내 조사실 업무효율성	업무효율성 증가	긍정 51.8%	
	수사서류 유출 보안 취약성	긍정 43.7%	
	사건관련자 왕래, 조사 시 소음 등 불편함	긍정 49.4%	
	피조사자 돌발행동 공동대응 가능	긍정 74.5%	

사무실 내 조사실 인권보호	피조사자 인격, 명예보호 취약성	평 25.1%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취약성	평 25.9%
	피의자-피해자 간 동선 중복	평 37.7%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피해자 불안감	평 29.5%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된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계급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장 계급의 평균값이 3.51(표준편차=1.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감 계급 이상 집단의 평균값이 3.46(표준편차=1.378)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사 계급의 평균값이 2.98(표준편차=1.4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계급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I-43>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효율적 업무처리 인식차이 (D_10)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12	1.166	2.52	3.72	1.171
경장	43	3.51	1.387	3.08	3.94	
경사	47	2.98	1.437	2.56	3.40	
경위	94	3.32	1.297	3.05	3.58	
경감 이상	46	3.46	1.378	3.05	3.87	
합계	247	3.30	1.349	3.13	3.47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된 경우 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계급별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순경 계급의 집단의 평균값이 3.29(표준편차=1.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장 계급의 평균값은 2.79(표준편차=1.2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가장 하위계급에서 보안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대체적으로 모든 계급에서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계급별 평균차이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44>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인식차이 (D_11)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29	1.213	2.67	3.92	0.967
경장	43	2.79	1.226	2.41	3.17	
경사	47	3.19	1.377	2.79	3.60	
경위	94	3.20	1.223	2.95	3.45	
경감 이상	46	3.17	1.270	2.80	3.55	
합계	247	3.13	1.262	2.97	3.29	

다음으로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된 경우, 소음 등의 불편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순경 계급의 집단에서 평균값이 3.71(표준편차=1.0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장 계급의 평균값이 3.05(표준편차=1.2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하위 계급에서 사건관련자들의 왕래, 조사 시 소음 등에 따른 불편함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조사환경과 조사실이 개선되는 과정을 경험한 상위계급 경찰관들에 비해서 최근의 수사 환경을 주로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계급별 평균차이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45>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소음 등 불편함에 대한 인식차이 (D_12)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71	1.047	3.17	4.24	1.406
경장	43	3.05	1.214	2.67	3.42	
경사	47	3.34	1.238	3.98	3.70	
경위	94	3.37	1.164	3.13	3.61	
경감 이상	46	3.57	1.311	3.18	3.95	
합계	247	3.37	1.212	3.22	3.52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안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경장 계급의 평균값이 4.16(표준편차=0.8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감 이상 계급이 4.04(표준편차=0.91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위 계급에서의 평균값이 3.84(표준편차=0.9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급별 평균차이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46>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안전문제 공동대응에 대한 인식차이 (D_13)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88	1.111	3.31	4.45	1.016
경장	43	4.16	0.814	3.91	4.41	
경사	47	3.89	1.005	3.60	4.19	
경위	94	3.84	0.976	3.64	4.04	
경감 이상	46	4.04	0.918	3.77	4.32	
합계	247	3.95	0.955	3.83	4.07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인격과 명예보호 측면에서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순경 계급에서 평균값이 3.06(표준편차=1.3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장 계급에서의 평균값은 2.21(표준편차=0.98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순경 계급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급 집단에서는 모두 보통수준(3점)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은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구조적 환경으로 인한 피조사자의 인격이나 명예보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는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47>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피조사자 인격·명예보호 취약성 인식차이 (E_14)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06	1.391	2.34	3.77	2.945*
경장	43	2.21	0.989	1.90	2.51	
경사	47	2.77	1.237	2.40	3.13	
경위	94	2.57	1.062	2.36	2.79	
경감 이상	46	2.91	1.262	2.54	3.29	
합계	247	2.64	1.166	2.50	2.79	

* p<0.05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피조사자의 사생활 보호의 취약

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순경 계급 집단의 평균값이 3.06(1.2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장 계급의 평균값은 2.30(표준편차=1.08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앞선 피조사자 의견 및 명예보호 취약성에 대한 문항(E_14)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갖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48>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피조사자 사생활 보호 취약성 인식차이 (E_15)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06	1.298	2.39	3.73	1.920
경장	43	2.30	1.081	1.97	2.63	
경사	47	2.74	1.276	2.37	3.12	
경위	94	2.70	1.066	2.48	2.92	
경감 이상	46	2.87	1.258	2.350	3.24	
합계	247	2.70	1.173	2.55	2.84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이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순경 계급 집단에서의 평균값이 3.41(표준편차=1.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장 계급의 집단에서 평균값은 2.72(표준편차=1.26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9>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의 피의자-피해자 동선 중복 인식차이 (E_16)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41	1.176	2.81	4.02	1.091
경장	43	2.72	1.260	2.33	3.11	
경사	47	2.94	1.292	2.56	3.32	
경위	94	3.03	1.195	2.79	3.28	
경감 이상	46	3.07	1.272	2.69	3.44	
합계	247	2.99	1.240	2.84	3.15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여성,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 등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욱 커질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순경 계급 집

단의 평균값이 3.24(표준편차=1.0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장 계급의 평균값은 2.47(표준편차=1.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순경 계급에서 다소 우려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업무에 대한 경력과 경험이 가장 적은 집단에서 사무실 내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VI-50> 계급별 사무실 내 조사실 피조사자 불안감 인식차이 (E_17)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24	1.091	2.67	3.80	1.727
경장	43	2.47	1.182	2.10	2.83	
경사	47	2.62	1.295	2.24	3.00	
경위	94	2.85	1.107	2.62	3.08	
경감 이상	46	2.85	1.247	2.48	3.22	
합계	247	2.77	1.190	2.62	2.91	

조사공간-사무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인권보호 인식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크게 사무실과 분리된 공간에 부서별 조사실을 설치하는 방식이나 본관 1층과 같은 공간에 부서별 조사실과 공용조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으며, 주로 신축한 경찰서에서 조사실을 구축할 때 택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유형(유형2)에 대한 업무효율성 및 인권보호 측면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업무효율성 분야에서 보안유지(평균값 3.45, 표준편차=1.215)와 업무처리 집중도(평균값 3.18, 표준편차=1.254)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불편함이 야기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평균값 3.49, 표준편차=1.196)이 존재하고 있다. 즉,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은 앞서 보안유지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무실 내에 조사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으나, 경찰관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상충되는 측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공간과 분리하여 조사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기술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사생활보호(평균값 3.26, 표준편차=1.125)와 전반적인 인권보호(평균값 3.09, 표준편차=1.148)에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통합수사당직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 감시와 통제에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나(평균값 3.30, 표준편차=1.134)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사용의 필요성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평균값 2.66, 표준편차=1.111)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선 설문문항에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피의자 도주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집중감시와 통제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조사 시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요건들이 갖춰졌을 경우에 한하므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는 사실 자체가 수갑 사용의 필요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갑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I-51> 사무실 내 조사실 설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분야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업무 효율성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의 집중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F_18)	3.18	1.254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서류관리 등 보안유지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F_19)	3.45	1.215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조사를 위한 이동과 서류준비 등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F_20)	3.49	1.196
인권보호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G_21)	3.09	1.148
	조사실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G_22)	3.26	1.125
	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 감시와 통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G_23)	3.30	1.134
	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는 경찰장구사용(수갑)의 필요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G_24)	2.66	1.111

<표 VI-52> 사무공간-조사공간 완전분리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요약

조사공간 사무실 밖 분리 업무효율성	업무처리 집중도 향상	긍정 42.9%	
	서류관리 등 보안유지 강화	긍정 54.3%	
	조사를 위한 이동, 서류준비 불편함	긍정 54.7%	
조사공간 사무실 밖 분리 인권보호	피조사자 인권보호 강화	긍정 36.4%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긍정 42.9%	
	통합수사당직실 체포 피의자 집중감시, 통제 가능	긍정 47.4%	
	통합수사당직실 경찰장구사용 필요성 감소	긍정 21.1%	

계급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의 집중도 향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순경 계급 집단에서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평균값 3.59, 표준편차=1.176). 반면, 경장 계급과(평균값=3.02, 표준편차=1.389), 경사 계급(평균값=3.04, 표준편차=1.233)의 평균값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로 업무경력이 짧은 순경 계급에서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겪은 불편함에 대해서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계급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VI-53> 계급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집중도 향상 인식차이 (F₁₈)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59	1.176	2.98	4.19	1.102
경장	43	3.02	1.389	2.60	3.45	
경사	47	3.04	1.233	2.68	3.40	
경위	94	3.15	1.182	2.91	3.39	
경감 이상	46	3.39	1.308	3.00	3.78	
합계	247	3.18	1.254	3.03	3.34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할 경우 보안유지에 있어서 더욱 유리할지 여부에 대한 계급별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순경 계급 집단의 평균값이 3.76(표준편차=1.2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장 계급의 평균값이 3.37(표준편차

=1.2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계급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VI-54> 계급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보안유지 인식차이 (F_19)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76	1.251	3.12	4.41	0.449
경장	43	3.37	1.291	2.97	3.77	
경사	47	3.43	1.137	3.09	3.76	
경위	94	3.39	1.166	3.15	3.63	
경감 이상	46	3.54	1.328	3.15	3.94	
합계	247	3.45	1.215	3.30	3.60	

조사공간이 사무공간과 분리될 경우, 사무실에서 이동해서 조사를 위한 서류와 파일의 준비가 필요하며,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인터뷰 결과에서 조사되었다. 조사공간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조사준비를 위한 이동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불편함이 야기될 것이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전체의 평균값은 3.49(표준편차=1.196)로 크게 부정적인 인식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장 계급에서의 평균값이 3.74(표준편차=1.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사계급의 평균값은 3.30(표준편차=1.26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경감 이상의 평균값은 3.43(표준편차=1.276)으로 나타났다.

<표 VI-55> 계급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불편함 인식차이 (F_20)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53	1.007	3.01	4.05	0.817
경장	43	3.74	1.255	3.36	4.13	
경사	47	3.30	1.267	2.93	3.67	
경위	94	3.50	1.124	3.27	3.73	
경감 이상	46	3.43	1.276	3.06	3.81	
합계	247	3.49	1.196	3.34	3.64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방안이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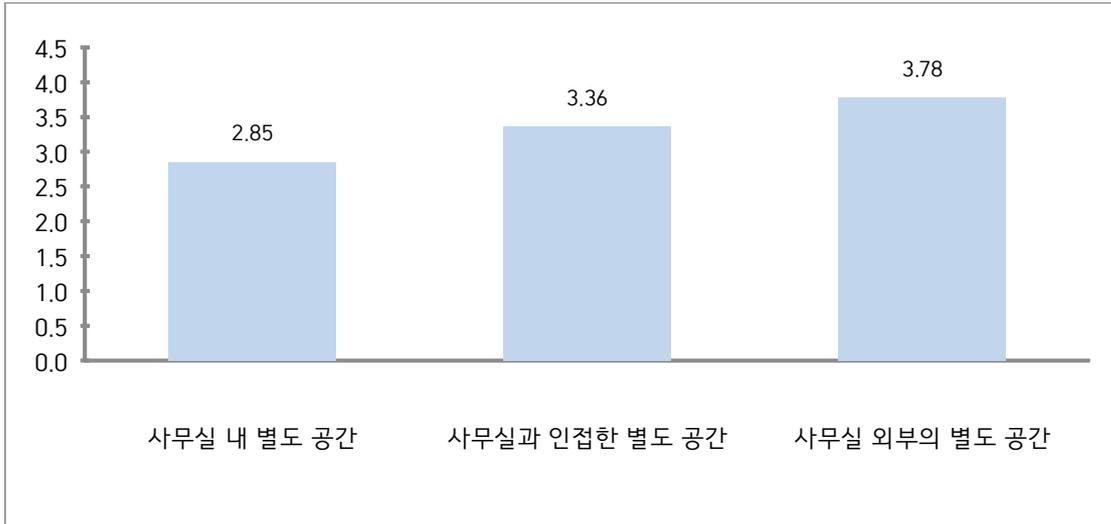
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소속된 경찰서의 조사실 형태로 집단을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2.85(표준편차=1.20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실과 인접한 별도 공간(복도 맞은편 등) 집단의 평균값은 3.36(표준편차=1.249), 사무실 외부의 별도 공간(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 집단의 평균값은 3.78(표준편차=1.121)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실제로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의 경우에 업무처리 집중도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56>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집중도 향상 인식차이 (F₁₈)

사무실 형태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사무실 내 별도 공간	109	2.85	1.208	2.62	3.08	8.393***
사무실과 인접한 별도 공간 (복도 맞은편 등)	111	3.36	1.249	3.13	3.60	
사무실 외부의 별도 공간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	27	3.78	1.121	3.33	4.22	
합계	247	3.18	1.254	3.03	3.34	

*** $p < 0.001$

<그림 VI-28>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집중도 향상 인식차이 (F_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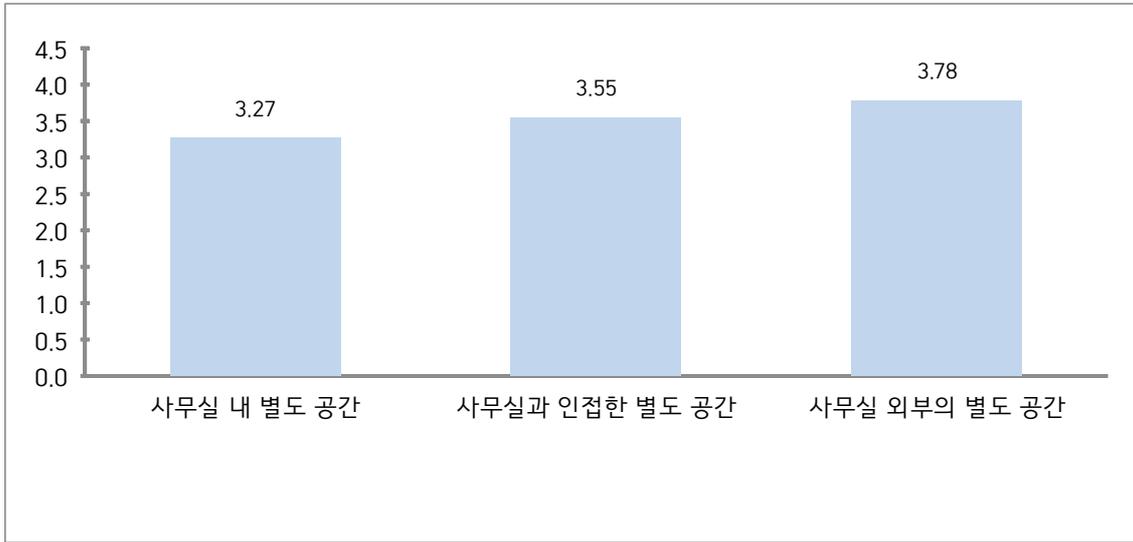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보안유지에 대한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이 3.27(표준편차=1.1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무실과 인접한 별도 공간인 경우의 평균값은 3.55(표준편차=1.249), 사무실 외부의 별도 공간인 경우의 평균값은 3.78(표준편차=1.050)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업무처리 집중도 향상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VI-57>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보안유지 인식차이 (F_19)

사무실 형태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사무실 내 별도 공간	109	3.27	1.199	3.04	3.49	2.639
사무실과 인접한 별도 공간 (복도 맞은편 등)	111	3.55	1.249	3.31	3.78	
사무실 외부의 별도 공간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	27	3.78	1.050	3.36	4.19	
합계	247	3.45	1.215	3.30	3.60	

***p<0.001

<그림 VI-29>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보안유지 인식차이 (F_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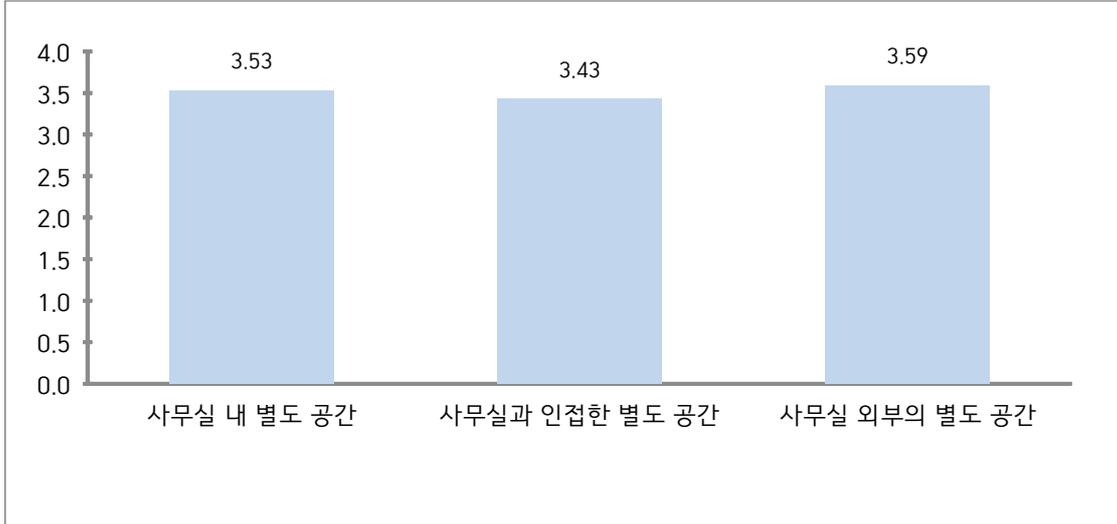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의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의 불편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사무실 외부의 별도 공간으로 완전하게 분리된 경우, 불편함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평균값 3.59, 표준편차=1.248). 반면, 사무실과 인접한 별도의 공간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의 평균값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평균값=3.43, 표준편차=1.18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비록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업무처리의 집중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안유지의 측면에 있어서도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58>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불편함 인식차이 (F_20)

사무실 형태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사무실 내 별도 공간	109	3.53	1.206	3.30	3.76	0.293
사무실과 인접한 별도 공간 (복도 맞은편 등)	111	3.43	1.180	3.21	3.65	
사무실 외부의 별도 공간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	27	3.59	1.248	3.10	4.09	
합계	247	3.49	1.196	3.34	3.64	

***p<0.001

<그림 VI-30> 조사실 형태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업무처리 불편함 인식차이 (F_20)



다음으로 조사공간을 사무실 밖으로 분리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순경계급의 평균값이 3.47(표준편차=1.06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경장 계급의 평균값은 2.74(표준편차=1.1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I-59> 계급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피조사자 인권보호 인식차이 (G_21)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47	1.068	2.92	4.02	1.640
경장	43	2.74	1.197	2.38	3.11	
경사	47	3.04	1.141	2.71	3.38	
경위	94	3.15	1.047	2.93	3.36	
경감 이상	46	3.20	1.293	2.81	3.58	
합계	247	3.09	1.148	2.95	3.23	

다음으로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계급별 인식에 있어서도 앞선 항목(G_21)과 마찬가지로 순경계급의 평균값인 3.71(표준편차=0.9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감 계급 이상 집단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평균값 3.46, 표준편차=1.224). 반면 경장 계급은 2.93(표준편

차=1.2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사팀 내에서 계급별 역할과 책임 등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60> 계급별 조사공간 분리에 따른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인식차이 (G_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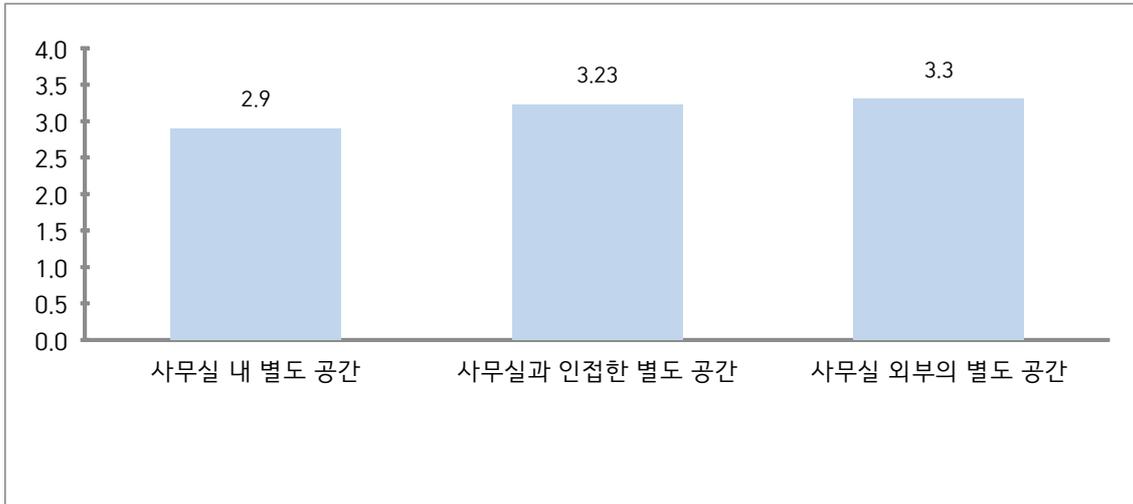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71	0.920	3.23	4.18	2.249
경장	43	2.93	1.203	2.56	3.30	
경사	47	3.11	1.184	2.76	3.45	
경위	94	3.31	1.006	3.10	3.51	
경감 이상	46	3.46	1.224	3.09	3.82	
합계	247	3.26	1.125	3.12	3.40	

인권보호 측면에서 인식수준의 차이점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현재 소속된 경찰서의 조사실 형태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평균값 2.90, 표준편차=1.162), 사무실과 인접한 별도 공간의 평균값은 3.23(표준편차=1.068), 사무실과 분리된 외부의 별도 공간의 경우에는 3.30(표준편차=1.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I-61> 조사실 형태별 피조사자 인권보호 인식차이 (G_21)

사무실 형태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사무실 내 별도 공간	109	2.90	1.162	2.68	3.12	2.753
사무실과 인접한 별도 공간 (복도 맞은편 등)	111	3.23	1.068	3.02	3.43	
사무실 외부의 별도 공간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	27	3.30	1.325	2.77	3.82	
합계	247	3.09	1.148	2.95	3.23	

<그림 VI-31> 조사실 형태별 피조사자 인권보호 인식차이 (G_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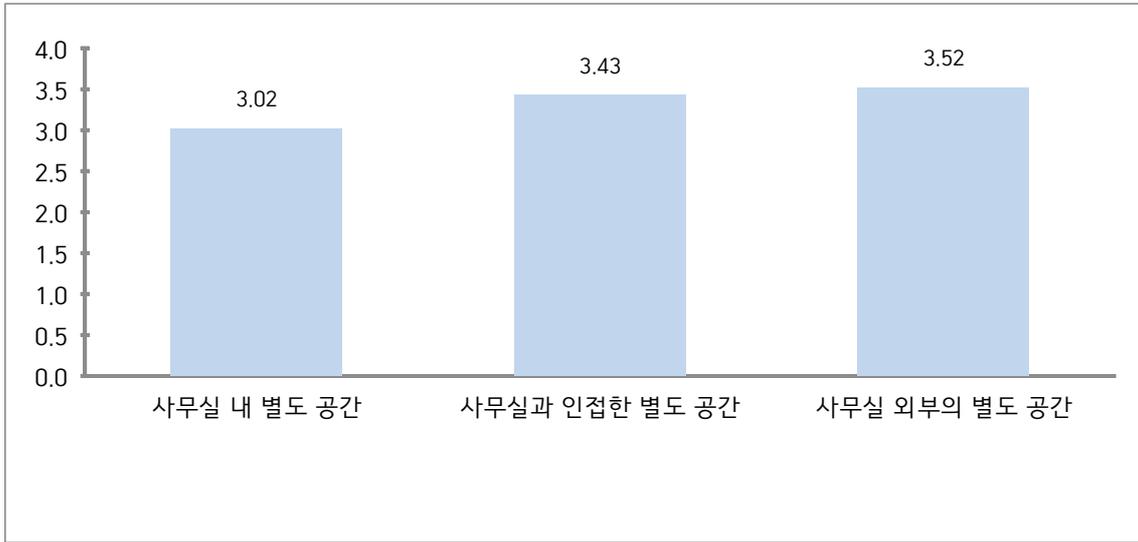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평균값 3.02, 표준편차=1.170), 사무실과 인접한 별도 공간의 평균값은 3.43(표준편차=1.024), 사무실과 분리된 외부의 별도 공간의 경우에는 3.52(표준편차=1.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5$). 즉, 사무실과 구분된 조사실이 설치된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장점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VI-62> 조사실 형태별 피조사자 인권보호 인식차이 (G_21)

사무실 형태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사무실 내 별도 공간	109	3.02	1.170	2.80	3.24	4.665*
사무실과 인접한 별도 공간 (복도 맞은편 등)	111	3.43	1.024	3.24	3.62	
사무실 외부의 별도 공간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	27	3.52	1.189	3.05	3.99	
합계	247	3.26	1.125	3.12	3.40	

* $p < 0.05$

<그림 VI-32> 조사실 형태별 피조사자 사생활보호 인식차이 (G_22)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체포 피의자에 대한 집중감시와 통제가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급별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순경 계급의 평균값이 3.65(표준편차=0.9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위계급이 3.44(표준편차=1.06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사 계급의 평균값이 3.04(표준편차=1.1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63> 계급별 통합수사당직실 체포 피의자에 대한 통제 인식차이 (G_23)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3.65	0.931	3.17	4.13	1.435
경장	43	3.21	1.103	2.87	3.55	
경사	47	3.04	1.160	2.70	3.38	
경위	94	3.44	1.063	3.22	3.65	
경감 이상	46	3.26	1.307	2.87	3.65	
합계	247	3.30	1.134	3.16	3.45	

통합수사당직실에서 경찰장구의 사용 필요성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계급에서 보통수준(3점)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장 계급의 평균값이 2.42(표준편차=1.0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I-64> 계급별 통합수사당직실 경찰장구 사용 필요성 저하 인식차이 (G_24)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순경	17	2.88	1.166	2.28	3.48	1.713
경장	43	2.42	1.029	2.10	2.74	
경사	47	2.43	.950	2.15	2.70	
경위	94	2.82	1.116	2.59	3.05	
경감 이상	46	2.70	1.263	2.32	3.07	
합계	247	2.66	1.111	2.52	2.80	

5.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5.1. 설문조사 문항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항목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조사개요(조사경험, 조사유형, 조사시간, 조사공간) 4개 문항, 조사공간 개선 필요성 1개 문항, 조사과정에 대한 4개 문항,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문항 3개, 진술 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한 2개 문항, 변호인 참여제도에 관한 문항 3개, 조사실 환경개선에 관한 문항 2개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초로 구성된 설문지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문항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 경우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찰서에서의 조사경험이 없는 시민들도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항목에서 사용되는 용어(조사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표 VI-65> 일반시민 대상 설문문항의 구성

분야	세부분야	항목구성
조사유형	조사경험	• 조사경험 유무 및 횟수 (a_1)
	조사유형	• 조사유형(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기타) (a_2)
	조사시간	• 조사 소요시간 (a_3)
	조사공간	• 조사실 유형 (a_4)
조사공간 개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공간 개선 필요 분야 (a_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사실 면적 ② 조사실 방음시설 ③ 조사실 환기시설 ④ 조사실 위치의 접근 편리성
조사과정	조사 시 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조사 시 우려되는 부분 (b_6)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 ② 사생활 노출 ③ 사건 관련자와의 원치 않는 접촉 ④ 장시간의 대기 시간
	조사실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 단독 조사에 따른 심리적 위축 (b_7) •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b_8) • 조사실 내의 사생활 보호 (b_9) • 조사실의 인권보호의 정도 (b_10)

수사관 참여제도	참여경찰관 운영 및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경찰관 입회 경험 (c_11) • 참여경찰관 제도의 피조사자 인권보호 (c_12) • 조사과정에서 참여경찰관 조사참여의 적극적 보장 (c_13)
진술녹음, 영상녹화	동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녹음, 영상녹화 동의 여부 (d_14)
	제도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녹음, 영상녹화의 장점 (d_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방지 ②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③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④ 수사의 증거자료 활용
변호인 참여제도	경험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인 참여 경험 (e_16)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사자 인권보호 (e_17) • 변호인 적극적 참여의 보장 필요성 (e_18)
조사실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특별조사실 필요성 (f_19) • 특별조사실 필요 대상 집단 f_20)
기본사항	개인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총 347명으로 이 중에서 조사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78명이고 조사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69명이다. 조사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피의자 진술은 49명으로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의 27.5%를 차지하였고 피해자 진술은 50명(28.1%), 참고인 진술은 48명(27.0%), 기타 31명(17.4%)을 차지하였다.

<표 VI-66> 조사대상자의 경찰조사 경험 여부 및 조사유형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경찰조사 경험	없음	169	48.7
	1회	136	39.2
	2회	28	8.1
	3회	4	1.2
	4회 이상	10	2.9
	소계	178	51.3
합계		347	100.0
조사유형	피의자 진술	49	27.5
	피해자 진술	50	28.1
	참고인 진술	48	27.0
	기타	31	17.4
합계		178	100.0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총 조사시간은 1시간 이내가 138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하였다. 2시간은 31명으로 17.4%, 3시간은 5명으로 2.8%, 4시간은 2명으로 1.1%, 5시간 이상은 2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피조사자들은 1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받았던 공간의 경우에는 사무실 내의 조사실이 10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하였다. 사무실 밖 조사실은 15명으로 8.4%를 차지하였으며, 사무실 내 개방된 사무공간이라고 응답한 자는 49명으로 27.5%를 차지하였다. 통합당직실(형사당직실) 내 조사실은 5명으로 2.8%를 차지하였다.

<표 VI-67> 조사대상자의 총 조사시간 및 조사공간 유형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총 조사시간	1시간 이내	138	77.5
	2시간	31	17.4
	3시간	5	2.8
	4시간	2	1.1
	5시간 이상	2	1.1
합계		178	100.0
조사공간	사무실 내 조사실	109	61.2
	사무실 밖 조사실	15	8.4
	사무실 내 개방된 사무공간	49	27.5
	통합당직실(형사당직실) 내 조사실	5	2.8
합계		178	100.0

5.2.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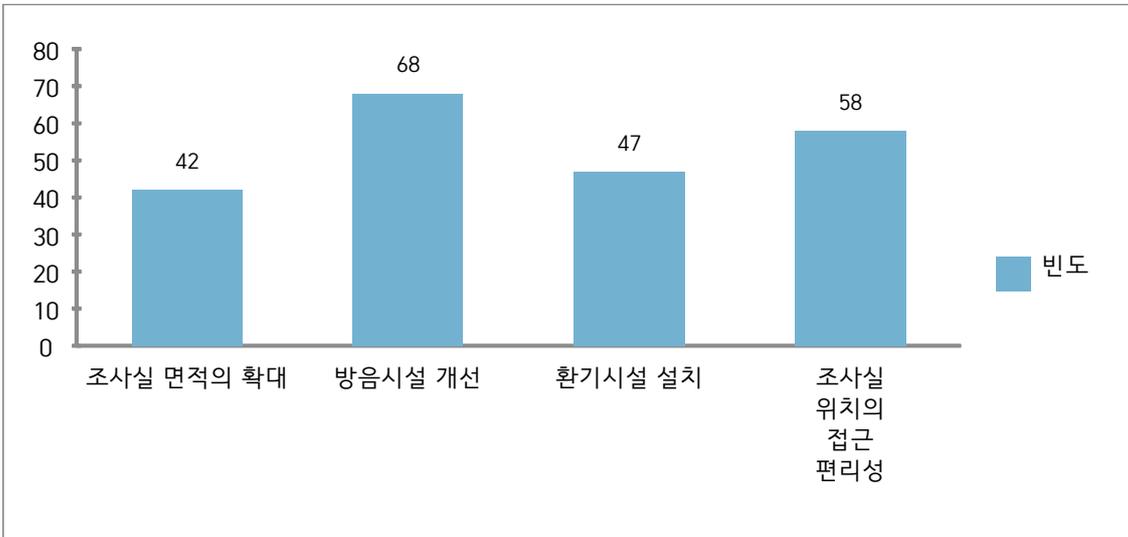
5.2.1. 조사공간 개선 필요성

조사공간의 개선 필요성 분야에 대한 의견에서는 ‘방음시설 개선’이 전체의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조사실 위치의 접근 편리성’이 27.0%, ‘환기시설 설치’ 21.9%, ‘조사실 면적의 확대’ 19.5%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서에서 조사경험이 있는 경우, 방음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68> 조사실 개선 필요분야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조사실 면적의 확대	42	19.5
방음시설 개선	68	31.6
환기시설 설치	47	21.9
조사실 위치의 접근 편리성	58	27.0
합계	215	100.0

<그림 VI-33> 조사실 개선 필요분야 빈도분석



피조사의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유형별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진술을 받았던 피조사자 중에서는 ‘조사실 위치의 접근 편리성’을 선택한 경우가 전체 응답의 22건(10.2%)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 진술의 경우 ‘방음시설 개선’을 선택한 경우가 21건(9.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피의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경우에도 ‘방음시설 개선’과 ‘조사실 위치의 접근 편리성’을 선택한 경우가 16건(7.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신변노출이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방음이나 조사실 위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경우에는 방음시설 개선에 대해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9> 조사유형에 따른 조사실 개선필요 분야 인식 교차분석

구분		조사유형				합계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기타	
조사실 면적의 확대	소계	9	12	12	9	42
	비율	4.2%	5.6%	5.6%	4.2%	19.5%
방음시설 개선	소계	16	21	16	15	68
	비율	7.4%	9.8%	7.4%	7.0%	31.6%
환기시설 설치	소계	12	13	13	9	47
	비율	5.6%	6.0%	6.0%	4.2%	21.9%
조사실 위치의 접근 편리성	소계	22	16	16	4	58
	비율	10.2%	7.4%	7.4%	1.9%	27.0%
총계		56	62	57	37	215
		27.4%	28.8%	26.5%	17.2%	100.0%

* 퍼센트 및 합계는 전체 응답(복수선택 가능)을 기준으로 함

조사를 받았던 조사실의 구조적 형태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사무실 내 조사실의 경우에 ‘방음시설 개선’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건으로 전체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은 18.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사무실 내 조사실 중 ‘조사실 위치의 접근 편리성’ 이 35건(16.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무실 내의 개방된 사무공간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방음시설 개선’ 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 조사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방음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표 VI-70> 조사실 형태에 따른 조사실 개선필요 분야 인식 교차분석

구분		조사유형				합계
		사무실 내 조사실	사무실 밖 조사실	사무실 내 개방된 사무공간	통합당직실 내 조사실	
조사실 면적의 확대	소계	30	5	5	2	42
	비율	14.0%	2.3%	2.3%	0.9%	19.5%
방음시설 개선	소계	40	5	21	2	68
	비율	18.6%	2.3%	9.8%	0.9%	31.6%
환기시설 설치	소계	28	6	12	1	47
	비율	13.0%	2.8%	5.6%	0.5%	21.9%
조사실 위치의 접근 편리성	소계	35	6	16	1	58
	비율	16.3%	2.8%	7.4%	0.5%	27.0%
총계		133	22	54	6	215
		61.9%	10.2%	25.1%	2.8%	100.0%

* 퍼센트 및 합계는 전체 응답(복수선택 가능)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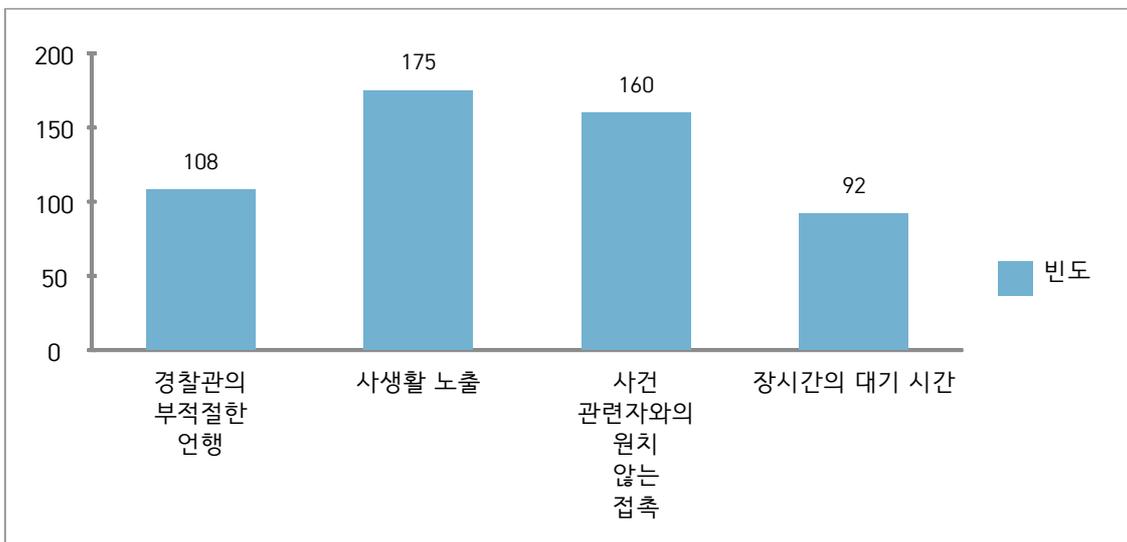
5.2.2. 조사과정에 대한 인식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사생활 노출’이 전체의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건 관련자와의 원치 않는 접촉’ 29.9%,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 20.2%, ‘장시간의 대기 시간’ 1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71> 경찰조사 시 우려부분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	108	20.2
사생활 노출	175	32.7
사건 관련자와의 원치 않는 접촉	160	29.9
장시간의 대기 시간	92	17.2
합계	535	100.0

<그림 VI-34> 경찰조사 시 우려부분 빈도분석



조사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구분하여 조사유형별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의견 중에서는 피의자 진술을 경험한 집단에서 응답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52건 중에서 23건). 다음으로는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즉, 피의자 진술을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과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언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경험이 있거나 현재보다는 개선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생활 노출’ 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91건 중 28건), 참고인 진술(28건), 기타(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자로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사생활 노출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조사환경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사건 관련자와의 원치 않는 접촉’ 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의 경우가 62건 중에서 28건으로 나타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자 진술, 기타, 피의자 진술 순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는 참고인 진술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자신의 진술사실이 사건 관련자에게 알려져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피의자의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나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간의 대기시간’ 에 대한 응답은 각 조사유형별로 크게 차이점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진술의 경우가 27건 중에서 1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상 피해자들은 경찰서에서 진술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추가적인 시간에 대해서도 피해에 수반되는 또 다른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경우 ‘사생활 노출’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8건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I-72> 조사유형에 따른 조사과정상 우려사항 인식 교차분석 (※조사경험이 있는 경우)

구분		조사유형				합계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기타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	소계	23	11	11	7	52
	비율	9.1%	4.4%	4.4%	2.8%	20.6%
사생활 노출	소계	28	28	21	14	91
	비율	11.1%	11.1%	8.3%	5.6%	36.1%
사건 관련자와의 원치 않는 접촉	소계	5	18	28	11	62
	비율	2.0%	7.1%	11.1%	4.4%	24.6%
장시간의 대기 시간	소계	10	14	13	10	47
	비율	4.0%	5.6%	5.2%	4.0%	18.7%
총계		66	71	73	42	252
		26.2%	28.2%	29.0%	16.7%	100.0%

* 퍼센트 및 합계는 전체 응답(복수선택 가능)을 기준으로 함

조사경험의 유무에 따른 경찰조사시 우려사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경험이 있는 집단 내에서는 ‘사생활 노출’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건 관련자와의 원치 않는 접촉’으로 나타났다.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 내에서는 ‘사건 관련자와의 원치 않는 접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생활 노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신분노출 등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동시 동선 체계의 관리, 조사실의 위치의 접근 편리성 향상을 통한 불필요한 접촉의 최소화, 조사실 내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방음시설의 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표 VI-73>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경찰조사시 우려사항 인식 교차분석

구분		조사경험 유무		합계
		유	무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	소계	52	56	108
	비율	9.7%	10.5%	20.2%
사생활 노출	소계	91	84	175
	비율	17.0%	15.7%	32.7%

사건 관련자와의 원치 않는 접촉	소계 비율	62 11.6%	98 18.3%	160 29.9%
장시간의 대기 시간	소계 비율	47 8.8%	45 8.4%	92 17.2%
총계		252 47.1%	283 47.1%	5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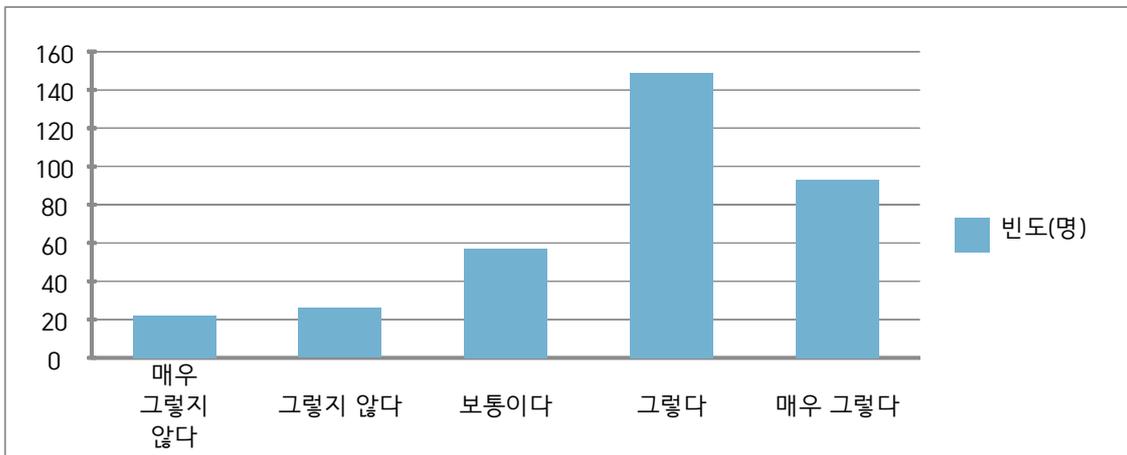
조사실에서 경찰관과 단독을 조사를 받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가 전체의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 26.8%, ‘보통이다’ 16.4%, ‘그렇지 않다’ 7.5%, ‘매우 그렇지 않다’ 6.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실 내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여경찰관 제도 및 조사실 환경개선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VI-74> 경찰관 단독조사 시 심리적 위축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에서 경찰관과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_7)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2	6.3
그렇지 않다	26	7.5
보통이다	57	16.4
그렇다	149	42.9
매우 그렇다	93	26.8
합계	347	100.0

<그림 VI-35> 경찰관 단독조사 시 심리적 위축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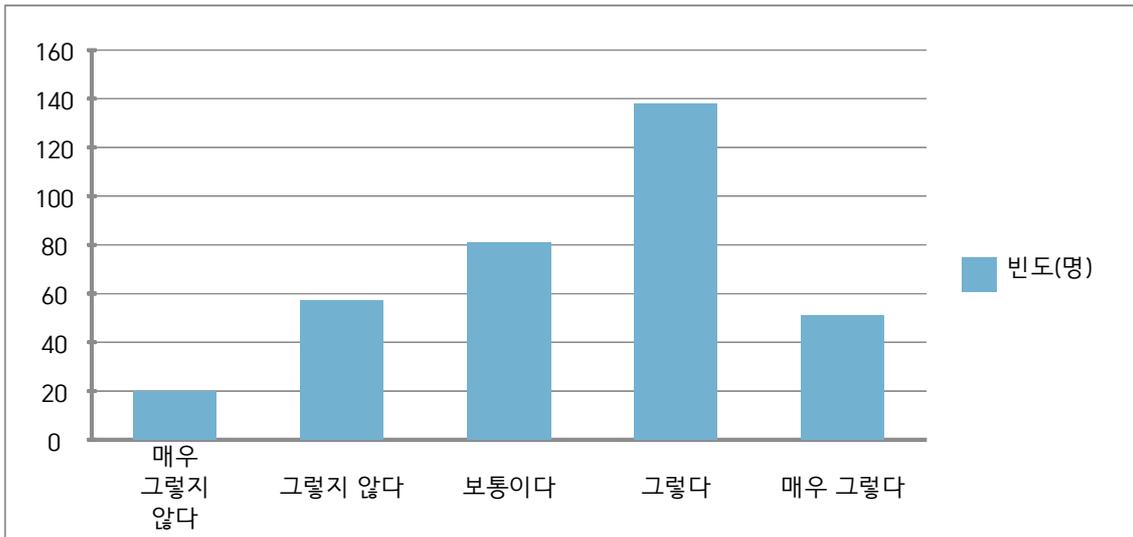


조사실에서 경찰관과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39.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23.3%, ‘그렇지 않다’ 16.4%, ‘매우 그렇다’ 14.7%, ‘매우 그렇지 않다’ 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75> 경찰관 단독조사 시 경찰관 부적절한 언어사용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0	5.8
그렇지 않다	57	16.4
보통이다	81	23.3
그렇다	138	39.8
매우 그렇다	51	14.7
합계	347	100.0

<그림 VI-36> 경찰관 단독조사 시 경찰관 부적절한 언어사용 빈도분석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얼굴이나 대화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전체 응답자의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27.4%, ‘매우 그렇다’ 12.7%, ‘그렇지 않다’ 12.1%, ‘매우 그렇지 않다’ 4.6%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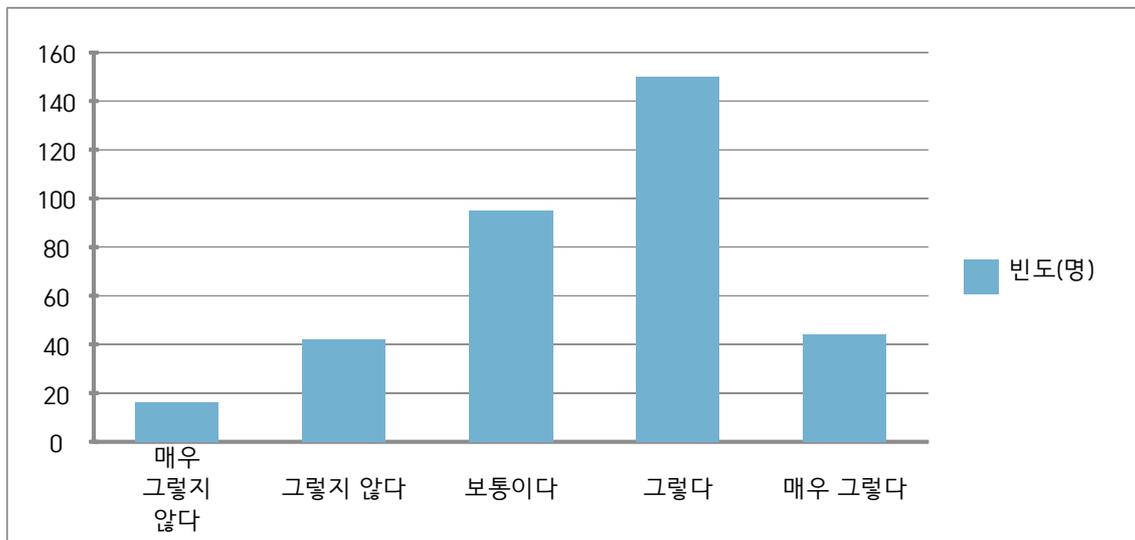
나타났다.

<표 VI-76> 조사실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문항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얼굴이나 대화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b_9)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6	4.6
그렇지 않다	42	12.1
보통이다	95	27.4
그렇다	150	43.2
매우 그렇다	44	12.7
합계	347	100.0

<그림 VI-37> 조사실 사생활보호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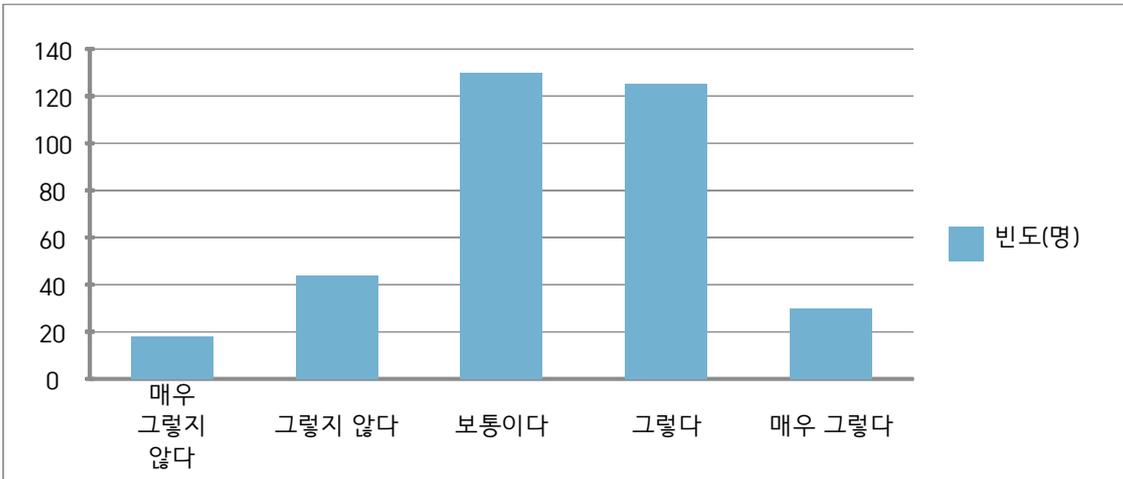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인권보호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보통이다’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 36.0%, ‘그렇지 않다’ 12.7%, ‘매우 그렇다’ 8.6%, ‘매우 그렇지 않다’ 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77> 조사실 인권보호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8	5.2
그렇지 않다	44	12.7
보통이다	130	37.5
그렇다	125	36.0
매우 그렇다	30	8.6
합계	347	100.0

<그림 VI-38> 조사실 인권보호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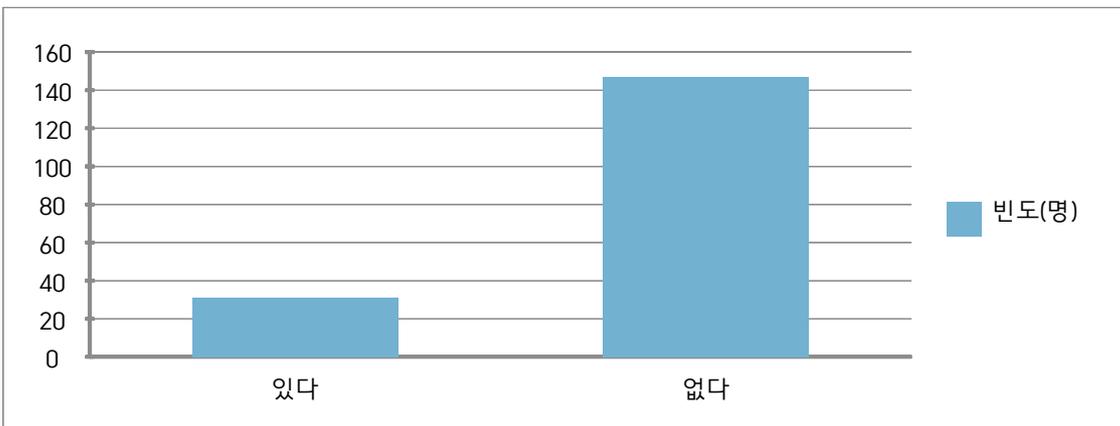
5.2.3.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실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경찰관’이 조사에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없다’가 전체의 82.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있다’는 17.4%로 나타났다. 인터뷰 조사에서 참여경찰관 제도가 실무적으로는 옆 자리 경찰관을 입회로 보거나 조사실 문을 열어두고 근접한 경찰관을 참여경찰관으로 보고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실무상의 관행을 응답자들의 관점에서는 ‘없다’라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VI-78>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빈도분석

문항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수사관 외에 다른 ‘참여경찰관’ 이 조사에 함께 참여(입회)한 경험이 있나요? (c_1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31	17.4
없다	147	82.6
합계	178	100.0

<그림 VI-39>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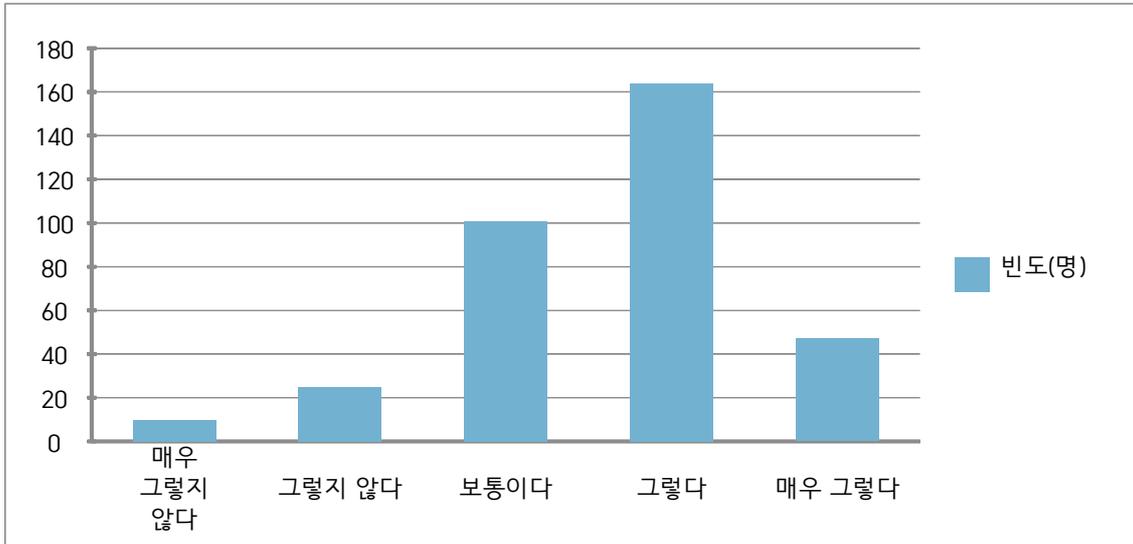


참여경찰관이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전체 응답자의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29.1%, ‘매우 그렇다’ 13.5%, ‘그렇지 않다’ 7.2%, ‘매우 그렇지 않다’ 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79>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문항	참여경찰관이 조사에 함께 참여(입회)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c_12)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0	2.9
그렇지 않다	25	7.2
보통이다	101	29.1
그렇다	164	47.3
매우 그렇다	47	13.5
합계	347	100.0

<그림 VI-40>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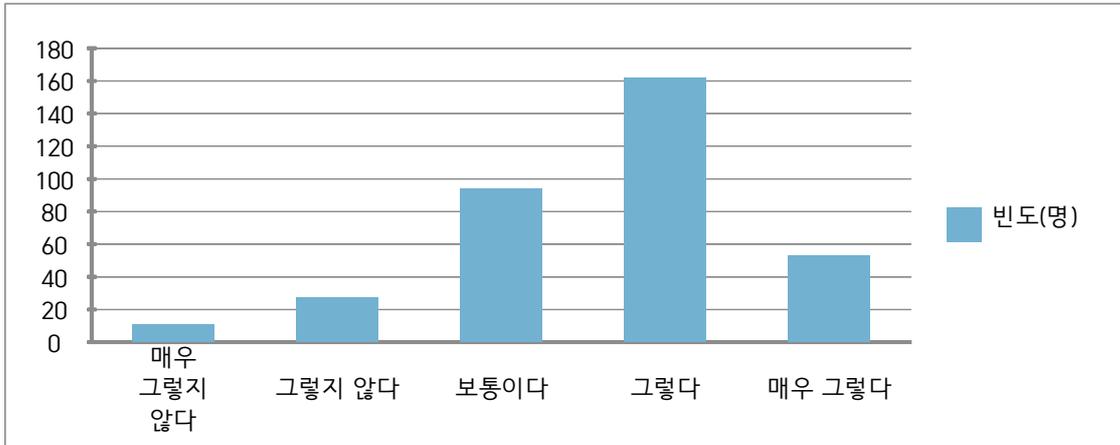
참여경찰관이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46.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27.1%, ‘매우 그렇다’ 15.3%, ‘그렇지 않다’ 7.8%, ‘매우 그렇지 않다’ 3.2%순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표 VI-80>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보장 빈도분석

문항	참여경찰관이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_13)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1	3.2
그렇지 않다	27	7.8
보통이다	94	27.1
그렇다	162	46.7
매우 그렇다	53	15.3
합계	347	100.0

<그림 VI-41> 참여경찰관 참여(입회) 보장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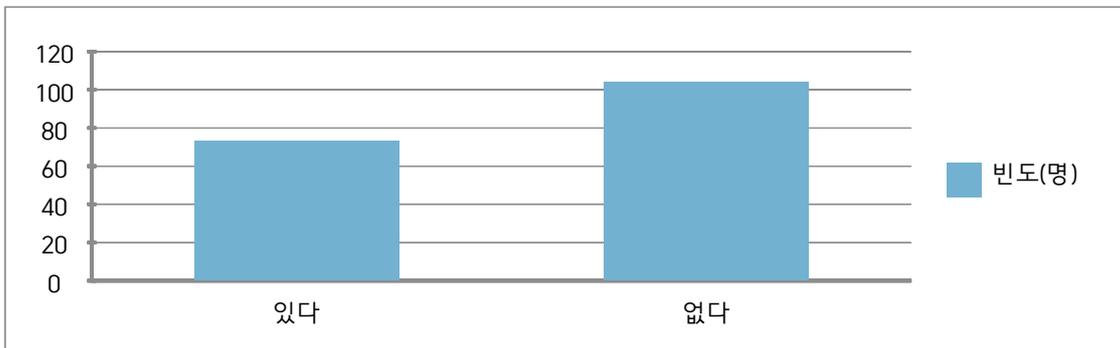
5.2.4. 진술녹음, 영상녹화에 대한 인식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에 동의한 경험은 ‘없다’가 10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9.0%를 차지하였고 ‘있다’는 73명으로 41.0%를 차지하였다.

<표 VI-81> 진술녹음, 영상녹화 동의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73	41.0
없다	105	59.0
합계	178	100.0

<그림 VI-42> 진술녹음, 영상녹화 동의 빈도분석



조사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동의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참고인 진술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각각 29.0%, 기타 7.2%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이 108건 중에서 30건으로 전체 응답자의 27.8%를 차지하였으며, 피의자 진술의 경우가 29건으로 26.9%를 차지하였다. 참고인 진술은 21.3%, 기타는 25.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진술녹음과 영상녹화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사유형별로 살펴보면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82> 조사유형에 따른 진술녹음, 영상녹화 동의여부 교차분석 (*조사경험이 있는 경우)

구분		조사유형				합계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기타	
있다	소계	20	20	24	5	69
	비율	29.0%	29.0%	34.8%	7.2%	100.0%
없다	소계	29	30	23	27	108
	비율	26.9%	27.8%	21.3%	25.0%	100.0%
총계		49	50	47	31	177
		27.7%	28.2%	26.6%	17.5%	100.0%

* 퍼센트는 행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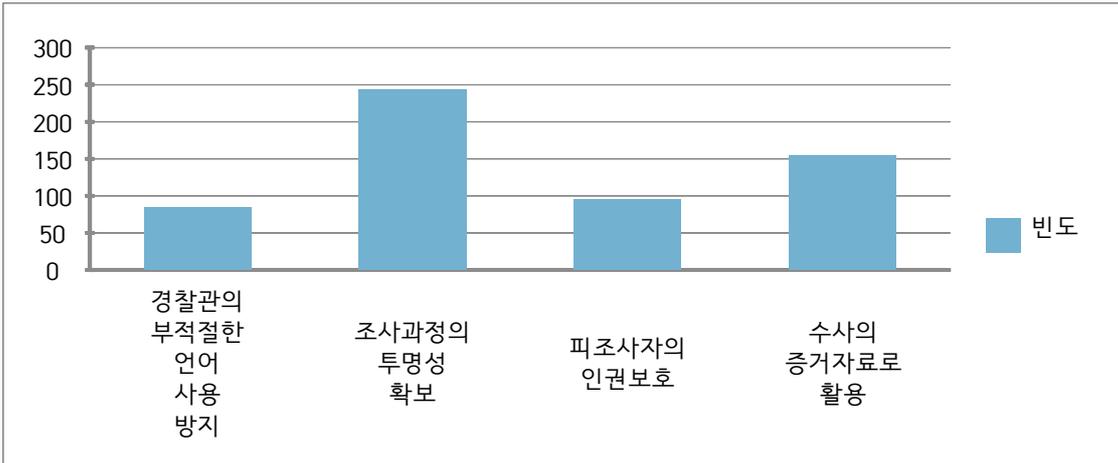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 이 26.7%,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16.5%,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방지’ 가 14.7%로 나타났다.

<표 VI-83> 진술녹음, 영상녹화 도움분야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방지	85	14.7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243	42.1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95	16.5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	154	26.7
합계	577	100.0

<그림 VI-43> 진술녹음, 영상녹화 도움분야 빈도분석



조사유형에 따른 진술녹음과 영상녹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신분 또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항목 내에서도 두 집단 모두 36건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방지’ 항목 내에서는 참고인 진술의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의자 진술(11건), 피해자 진술(9건), 기타(7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항목에서는 참고인 진술(19건), 피의자 진술(16건), 피해자 진술(11건), 기타(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 항목 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28건), 그 다음으로는 참고인 진술(20건), 기타(13건), 피의자 진술(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피의자 진술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에는 진술녹음과 영상녹화를 수사의 증거자료로써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자신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응답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피의자 진술 또는 피해자 진술에 있

어서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각각 전체의 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이 28건으로 9.7%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사용에 대한 우려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목적에서의 활용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4> 조사유형에 따른 진술녹음, 영상녹화 인식 교차분석 (*조사경험이 있는 경우)

구분		조사유형				합계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기타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방지	소계	11	9	16	7	43
	비율	3.8%	3.1%	5.5%	2.4%	14.9%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소계	36	36	30	17	119
	비율	12.5%	12.5%	10.4%	5.9%	41.2%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소계	16	11	19	10	56
	비율	5.5%	3.8%	6.6%	3.5%	19.4%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	소계	10	28	20	13	71
	비율	3.5%	9.7%	6.9%	4.5%	24.6%
총계		73	84	85	47	289
		25.3%	29.1%	29.4%	16.3%	100.0%

* 퍼센트 및 합계는 전체 응답(복수선택 가능)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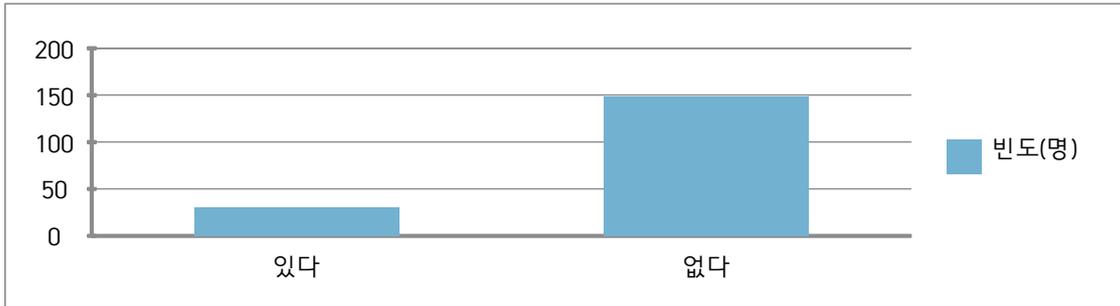
5.2.5. 변호인 참여제도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의 경우가 전체의 83.1%로 나타났고 ‘있다’는 16.9%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VI-85> 변호인 참여 경험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30	16.9
없다	148	83.1
합계	178	100.0

<그림 VI-44> 변호인 참여 경험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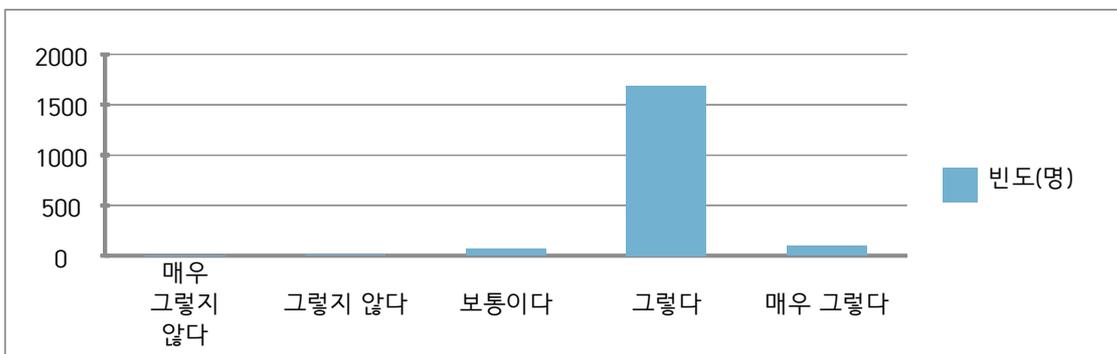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48.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28.2%로 나타나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19.0%, ‘그렇지 않다’ 2.9%, ‘매우 그렇지 않다’ 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86> 변호인 참여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문항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e_17)
----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5	1.4
그렇지 않다	10	2.9
보통이다	66	19.0
그렇다	1687	48.4
매우 그렇다	98	28.2
합계	347	100.0

<그림 VI-45> 변호인 참여 피조사자 인권보호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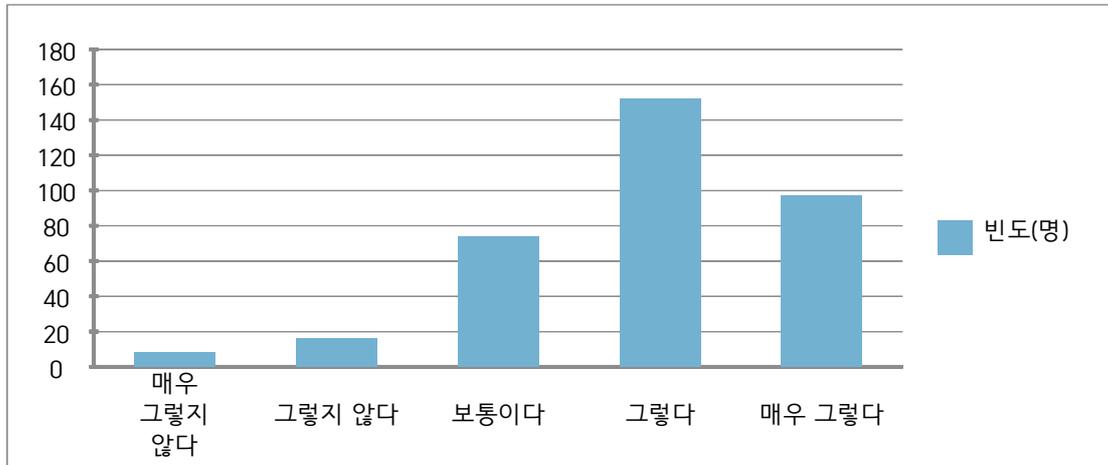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다’가 43.8%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 28.0%로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21.3%, ‘그렇지 않다’ 4.6%, ‘매우 그렇지 않다’ 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87> 변호인 참여 적극적 보장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8	2.3
그렇지 않다	16	4.6
보통이다	74	21.3
그렇다	152	43.8
매우 그렇다	97	28.0
합계	347	100.0

<그림 VI-46> 변호인 참여 적극적 보장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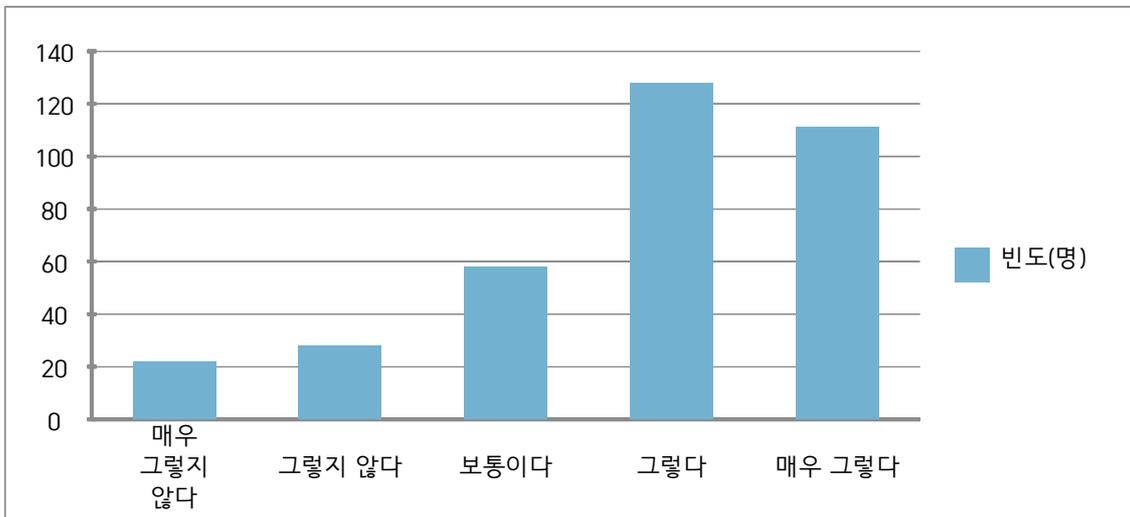
5.2.6. 조사실 환경개선

조사실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특별조사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전체 응답자의 36.9%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 32.0%, ‘보통이다’ 16.7%, ‘그렇지 않다’ 8.1%, ‘매우 그렇지 않다’ 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88> 특별조사실 필요성 빈도분석

문항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특별조사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f_19)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2	6.3
그렇지 않다	28	8.1
보통이다	58	16.7
그렇다	128	36.9
매우 그렇다	111	32.0
합계	347	100.0

<그림 VI-47> 특별조사실 필요성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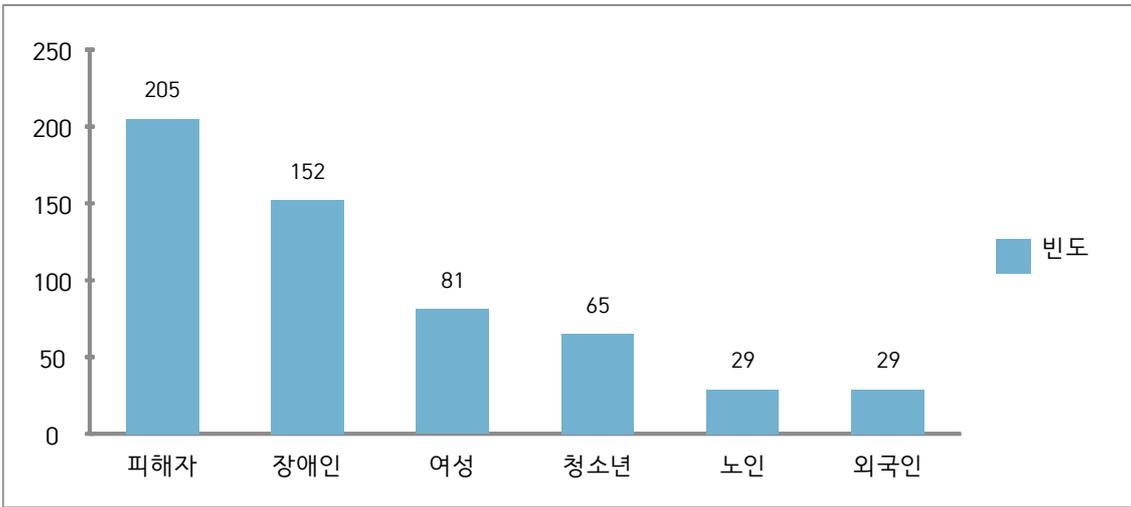
어떠한 집단에게 특별조사실이 가장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에서는 ‘피해자’가 전체의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27.1%, ‘여성’ 14.4%, ‘청소년’ 11.6%, 노인과 외국인 각각 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89> 특별조사실 필요집단 빈도분석

문항	만약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조사실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하나요. (f_20) (복수선택 가능)	
구분	빈도(명)	백분율(%)
피해자	205	36.5
장애인	152	27.1

여성	81	14.4
청소년	65	11.6
노인	29	5.2
외국인	29	5.2
합계	561	100.0

<그림 VI-48> 특별조사실 필요집단 빈도분석



조사유형별로 특별조사실 필요성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건수를 기준으로 참고인 진술을 경험한 집단에서 ‘피해자’ 라고 응답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큰 비중(11.5%)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경험한 집단에서 ‘피해자’ 라고 응답한 경우가 32건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하였다. 그밖에는 피의자 진술을 경험한 경우에는 ‘장애인’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에서도 ‘장애인’ 에 대한 특별조사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밖에 ‘여성’ 의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이나 ‘외국인’ 에 대한 특별조사실의 필요성을 선택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0> 조사유형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조사경험이 있는 경우)

구분		조사유형				합계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기타	
피해자	소계	17	32	33	17	99
	비율	5.9%	11.1%	11.5%	15.9%	34.4%
장애인	소계	26	24	21	10	81
	비율	9.0%	8.3%	7.3%	3.5%	28.1%
여성	소계	14	6	16	8	44
	비율	4.9%	2.1%	5.6%	2.8%	15.3%
청소년	소계	13	5	9	4	31
	비율	4.5%	1.7%	3.1%	1.4%	10.8%
노인	소계	8	5	1	5	19
	비율	2.8%	1.7%	0.3%	1.7%	6.6%
외국인	소계	4	7	2	1	14
	비율	1.4%	2.4%	0.7%	0.3%	4.9%
총계		82	79	82	45	288
		28.5%	27.4%	28.5%	15.6%	100.0%

* 퍼센트 및 합계는 전체 응답(복수선택 가능)을 기준으로 함

5.3.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합의견

5.3.1. 조사과정에서 우려사항 및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항목별 기술통계와 집단별 평균차이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과정에 있어서 조사실에서 경찰관과 단독으로 조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의 평균값은 3.76(표준편차=1.118)으로 나타났으며,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사용의 평균값은 3.41(표준편차=1.102)로 나타났다. 얼굴이나 대화의 외부노출에 따른 사생활보호에 있어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항목의 평균값은 3.47(표준편차=1.012)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평균값은 3.30(표준편차=0.975)으로 나타났다. 즉,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와 인권보호의 목적을 위해서 도입된 조사실의 목적은 실제 조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91> 조사실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분석결과

분야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조사 과정	조사실에서 경찰관과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6	1.118
	조사실에서 경찰관과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3.41	1.102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얼굴이나 대화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3.47	1.012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인권보호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3.30	0.975

<표 VI-92> 조사실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요약

조사실 인권보호	경찰관 단독 조사에 따른 심리적 위축	긍정 69.7%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긍정 54.5%	
	조사실 내의 사생활보호	긍정 53.9%	
	조사실의 인권보호 정도	긍정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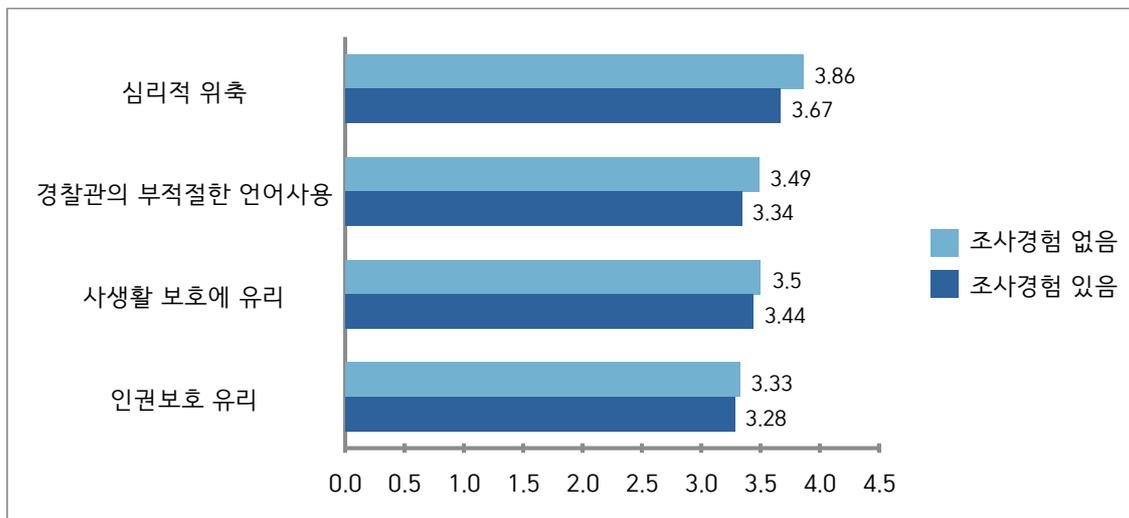
다음으로 실제 조사경험의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위축에 관한 문항에서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값은 3.86(표준편차=1.085)으로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인 3.67(표준편차=1.14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경찰서의 조사환경과 조사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사용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는 경찰조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3.34(표준편차=1.149)로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값(3.49, 표준편차=1.047)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실을 활용할 경우,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서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3.44(표준편차=1.041)로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값인 3.50(표준편차=0.98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유리함에 대해서는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3.28(표준편차=0.973)로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값 3.33(표준편차=0.980)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I-93> 조사경험에 따른 조사실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차이

분야	문항	집단구분 (조사경험)	n	평균값	표준편차	t
조사 과정	조사실에서 경찰관과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없음	169	3.86	1.085	1.631
		있음	178	3.67	1.143	
	조사실에서 경찰관과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없음	169	3.49	1.047	1.303
		있음	178	3.34	1.149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얼굴이나 대화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없음	169	3.50	0.983	0.543
		있음	178	3.44	1.041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인권보호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없음	169	3.33	0.980	0.535	
	있음	178	3.28	0.973		

<그림 VI-49> 조사경험에 따른 조사실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차이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경찰관과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위축에 대해서는 남성 집단의 평균값은 3.78(표준편차

=1.050), 여성 집단의 평균값은 3.75(표준편차=1.176)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사용에 대한 우려에서는 남성 집단의 평균값은 3.30(표준편차=1.109), 여성 집단은 3.51(표준편차=1.089)로 여성의 경우에 보다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사생활 보호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성 집단의 평균값은 3.42(표준편차=1.090), 여성은 3.52(표준편차=1.007)로 나타났고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남성 집단의 평균값은 3.23(표준편차=0.986),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3.36(표준편차=0.965)으로 여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림 VI-50> 성별에 따른 조사실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차이

5.3.2.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경찰관이 조사에 함께 참여(입회)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균값은 3.61(표준편차=0.910)로 나타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경찰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63(표준편차=0.942)으로 나타났다.

<표 VI-94>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분석결과

분야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수사관 참여제도	참여경찰관이 조사에 함께 참여(입회)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61	0.910
	참여경찰관이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63	0.942

<표 VI-95>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요약

참여경찰관 운영 및 인권보호	참여경찰관 제도의 피조사자 인권보호	긍정 60.8%	
	참여경찰관 조사참여의 적극적 보장 필요	긍정 62.0%	

다음으로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경찰관 제도가 시민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있어서는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값은 3.77(표준편차=0.893)로 나타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 3.47(표준편차=0.903)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t=3.140$,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조사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기대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 경찰조사를 경험한 집단의 평균값이 낮다는 점은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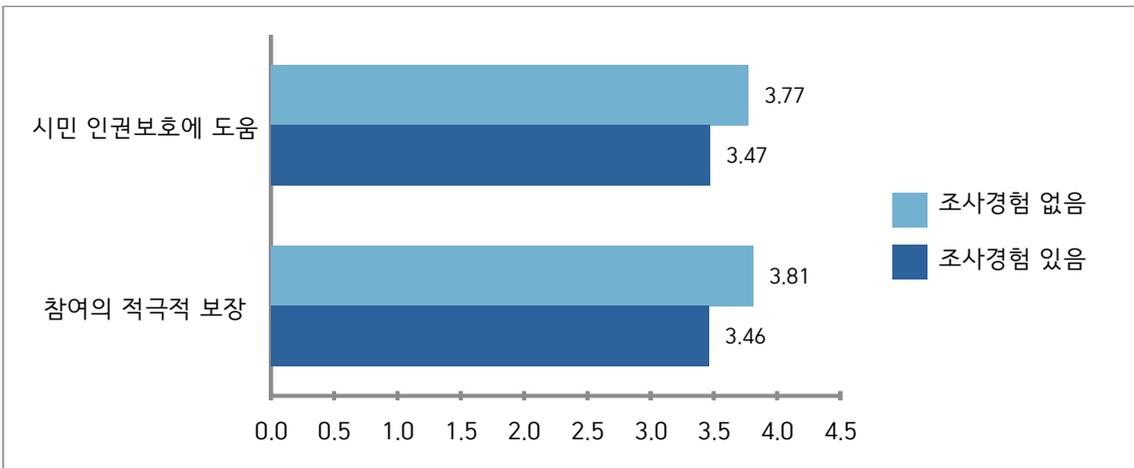
참여경찰관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값은 3.81(표준편차=0.919)로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인 3.46(표준편차=0.9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3.517$, $p<0.001$).

<표 VI-96> 조사경험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분야	문항	집단구분 (조사경험)	n	평균값	표준편차	t
수사관	참여경찰관이 조사에 함께 참여 (입회)하는 것은 시민의 인권보호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없음	169	3.77	0.893	3.140 **
		있음	178	3.47	0.903	
참여제도	참여경찰관이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없음	169	3.81	0.919	3.517 ***
		있음	178	3.46	0.933	

** p<0.01, *** p<0.001

<그림 VI-51> 조사경험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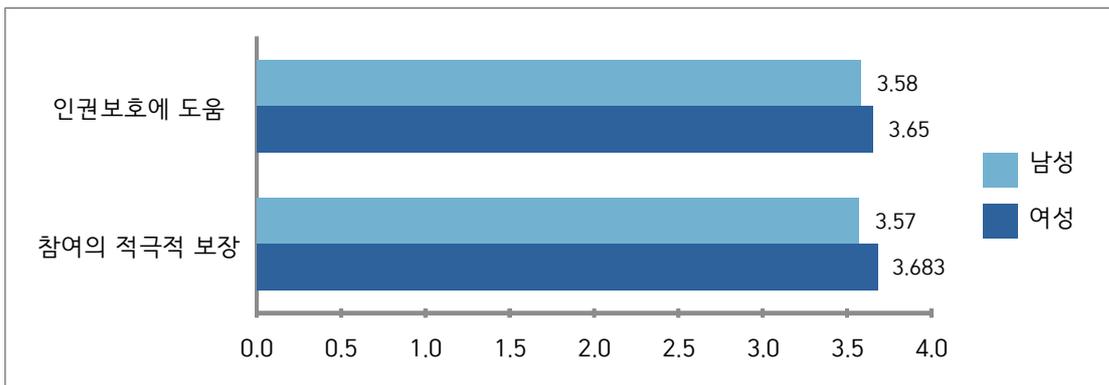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참여경찰관이 입회하는 것이 시민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남성 집단의 평균값은 3.58(표준편차=0.935)이고 여성 집단의 평균값은 3.65(표준편차=0.888)로 여성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경찰관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있어서는 남성 집단의 평균값은 3.57(표준편차=0.909)이고 여성 집단은 3.68(표준편차=0.968)로 여성 집단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I-97> 성별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분야	문항	집단구분 (성별)	n	평균값	표준편차	t
수사관 참여제도	참여경찰관이 조사에 함께 참여 (입회)하는 것은 시민의 인권보호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남성	160	3.58	0.935	0.735
		여성	187	3.65	0.888	
수사관 참여제도	참여경찰관이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160	3.57	0.909	1.142
		여성	187	3.68	0.968	

** p<0.01, *** p<0.001

<그림 VI-52> 성별에 따른 수사관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사관 참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사관 참여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실무상 참여경찰관을 입회를 보장하면서 경찰관들의 업무수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조사실 공간의 확대와 구조개선 등을 통해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5.3.3.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해서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의 평균값은 3.99(표준편차=0.848)로 나타났고, 변호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의 평균값은 3.90(표준편차=0.937)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참여제도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VI-98>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분석결과

분야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변호인 참여제도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99	0.848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90	0.937

<표 VI-99>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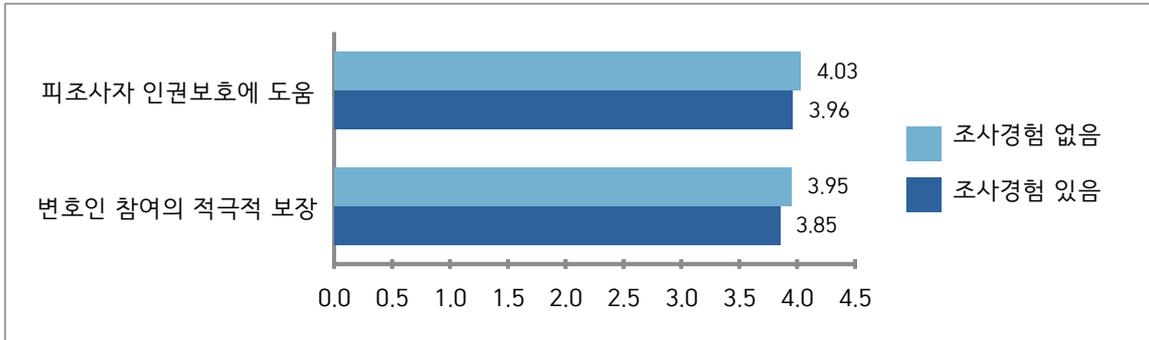
변호인 참여제도	변호인 참여제도의 피조사자 인권보호	긍정 76.6%	
	변호인 참여의 적극적 보장 필요	긍정 71.8%	

다음으로 조사경험에 따른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호인 참여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있어서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값은 4.03(표준편차=0.751)으로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 3.96(표준편차=0.93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호인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서는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값은 3.95(표준편차=0.878)로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 3.85(표준편차=0.990)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0>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분야	문항	집단구분 (조사경험)	n	평균값	표준편차	t
변호인 참여제도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없음	169	4.03	0.751	0.822
		있음	178	3.96	0.932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없음	169	3.95	0.878	0.928
		있음	178	3.85	0.990	

<그림 VI-53>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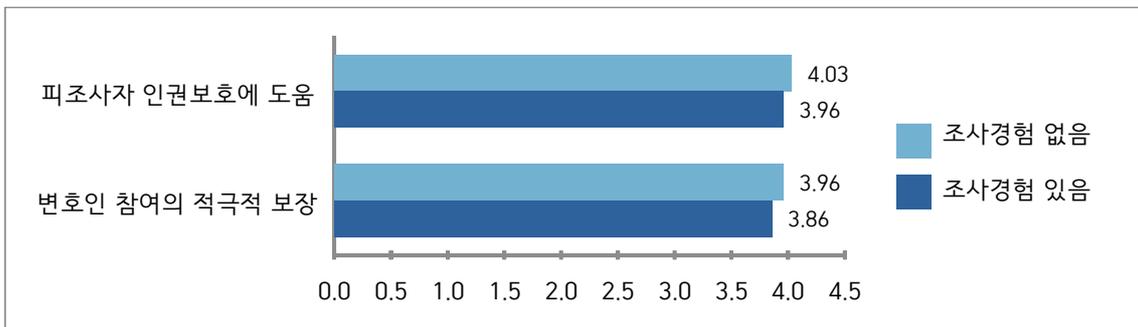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변호인 참여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남성 집단의 평균값이 4.03(표준편차=0.812)으로 여성 집단의 평균값 3.96(표준편차=0.87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남성 집단의 평균값이 3.96(표준편차=0.886)으로 여성 집단의 평균값인 3.86(표준편차=0.97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VI-101> 성별에 따른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분야	문항	집단구분 (성별)	n	평균값	표준편차	t
변호인 참여제도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남성	160	4.03	0.812	0.810
		여성	187	3.96	0.879	
변호인 참여제도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160	3.96	0.886	0.944
		여성	187	3.86	0.979	

<그림 VI-54> 성별에 따른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권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사관 참여제도의 내실화와 더불어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사실 1개당 면적의 확대와 사무기기 등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의 확충도 이루어져야 한다.

5.3.4. 진술녹음 및 영상녹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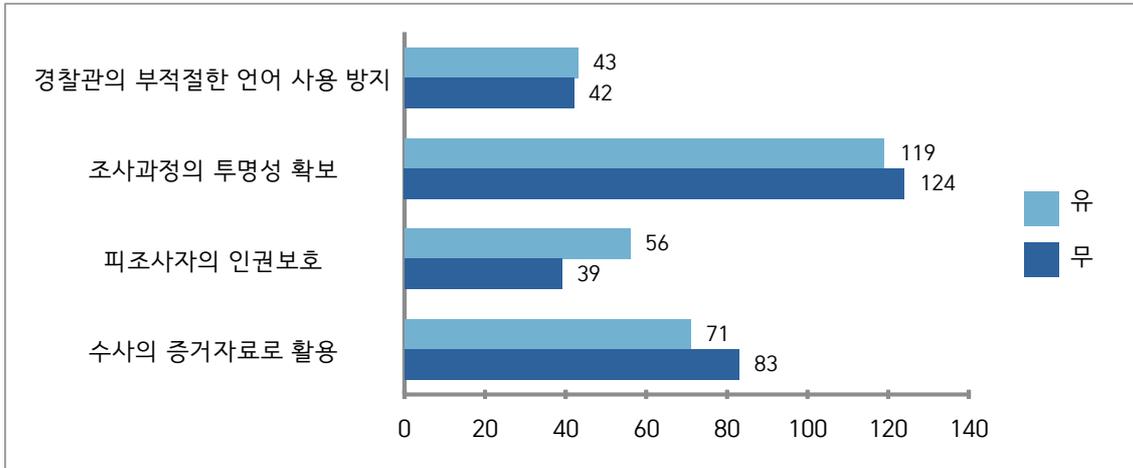
진술녹음 및 영상녹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경험의 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124건, 21.5%), 다음으로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도 동일한 항목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119건, 20.6%). 다음으로는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83건으로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의 71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조사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경찰관이 정리해서 조서에 기재하는 현재의 조사방식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재고할 여지가 있으며, 조사실의 환경개선에 있어서 진술 녹음과 영상녹화를 위한 조사실 공간의 확보와 추가적인 장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VI-102>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진술녹음, 영상녹화 인식 교차분석

구분		조사경험 유무		합계
		유	무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방지	소계	43	42	85
	비율	7.5%	7.3%	14.7%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소계	119	124	243
	비율	20.6%	21.5%	42.1%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소계	56	39	95
	비율	9.7%	6.8%	16.5%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	소계	71	83	154
	비율	12.3%	14.4%	26.7%
총계		289	288	577
		50.1%	49.9%	100.0%

* 퍼센트 및 합계는 전체 응답(복수선택 가능)을 기준으로 함

<그림 VI-55>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진술녹음, 영상녹화 인식 교차분석



5.3.5. 조사실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특별조사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평균값은 3.80(표준편차=1.160)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VI-103> 특별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분석결과

분야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특별조사실 필요성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특별조사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80	1.160

<표 VI-104> 특별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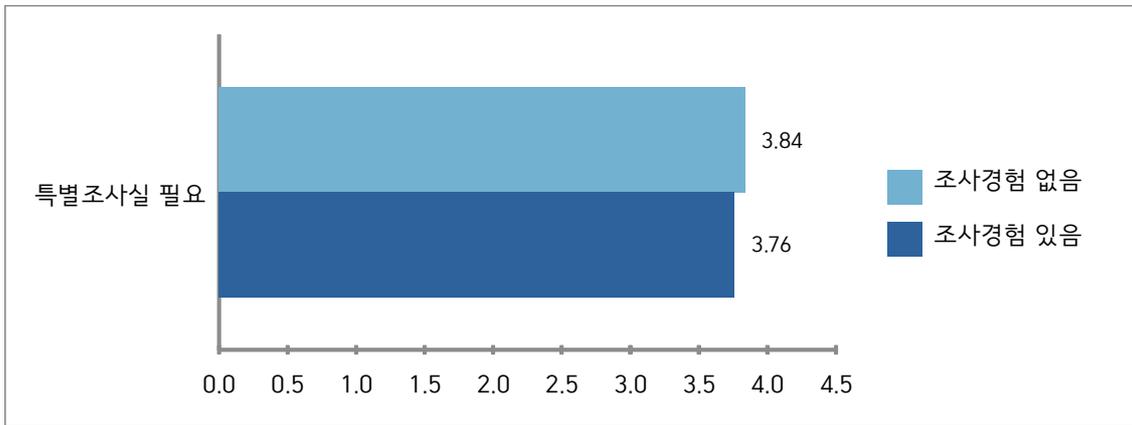
환경개선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특별조사실 필요성	긍정 68.9%	
------	------------------------------	----------	--

특별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경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값은 3.84(표준편차=1.177)로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 3.76(표준편차=1.14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I-105>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특별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분야	문항	집단구분 (조사경험)	n	평균값	표준편차	t
특별 조사실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특별 조사실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없음	169	3.84	1.177	0.611
		있음	178	3.76	1.145	

<그림 VI-56>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특별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조사경험 유무에 따라서 특별조사실이 필요한 집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 중에서는 조사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피해자’ 라고 응답한 경우가 106건(1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조사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피해자’ 라는 응답이 99건(17.6%)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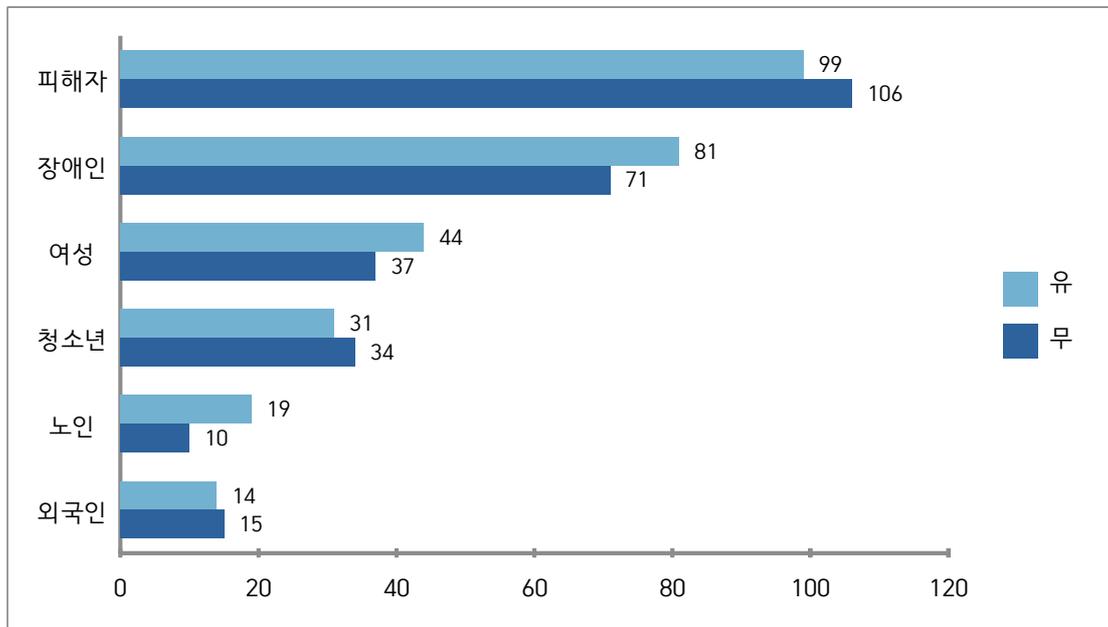
<표 VI-106>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교차분석

구분		조사경험 유무		합계
		유	무	
피해자	소계	99	106	205
	비율	17.6%	18.9%	36.5%
장애인	소계	81	71	152
	비율	14.4%	12.7%	27.1%
여성	소계	44	37	81
	비율	7.8%	6.6%	14.4%
청소년	소계	31	34	65
	비율	5.5%	6.1%	11.6%

노인	소계 비율	19 3.4%	10 1.8%	29 5.2%
외국인	소계 비율	14 2.5%	15 2.7%	29 5.2%
총계		288 51.3%	273 48.7%	561 100.0%

* 퍼센트 및 합계는 전체 응답(복수선택 가능)을 기준으로 함

<그림 VI-57> 조사경험 유무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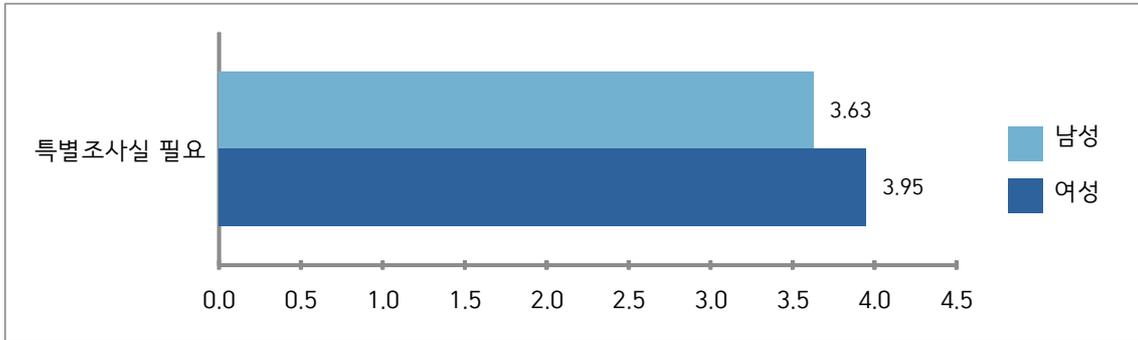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여성 집단의 평균값이 3.95(표준편차=1.172)로 남성 집단의 평균값 3.63(표준편차=1.125)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544$, $p<0.05$).

<표 VI-107> 성별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인식차이

분야	문항	집단구분 (성별)	n	평균값	표준편차	t
특별 조사실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특별 조사실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남성	160	3.63	1.125	2.544 *
		여성	187	3.95	1.172	

* $p<0.05$

<그림 VI-58> 성별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인식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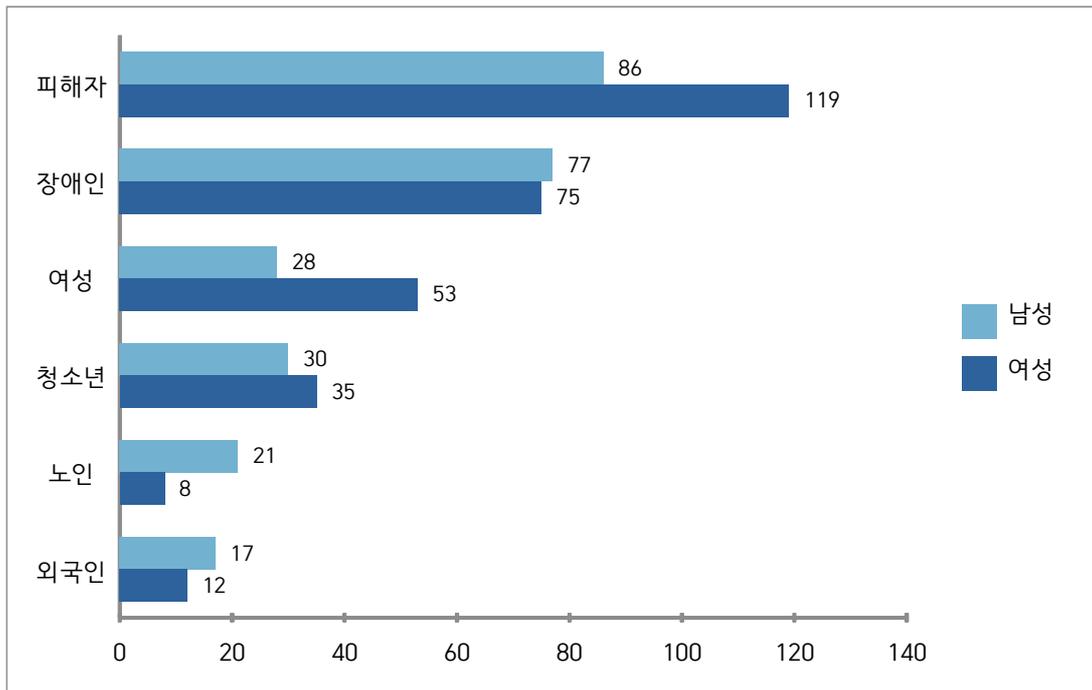
성별에 따라서 특별조사실이 필요한 인구집단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특별조사실이 필요하다는 전체 응답 중에서(561건) 여성 집단 응답자 중에서 ‘피해자’ 라고 응답한 경우가 119건(2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 집단 중에서 ‘피해자’ 라고 응답한 경우가 86건(15.3%)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밖에 ‘장애인’ 은 남성 집단에서는 77건, 여성 집단에서는 75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 경우에는 여성 집단이 53건으로 남성 집단 28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소년’ 의 경우에는 여성 집단 35건, 남성 집단 30건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과 외국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표 VI-108> 성별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교차분석

구분		조사경험 유무		합계
		유	무	
피해자	소계	86	119	205
	비율	15.3%	21.2%	36.5%
장애인	소계	77	75	152
	비율	13.7%	13.4%	27.1%
여성	소계	28	53	81
	비율	5.0%	9.4%	14.4%
청소년	소계	30	35	65
	비율	5.3%	6.2%	11.6%
노인	소계	21	8	29
	비율	3.7%	1.4%	5.2%
외국인	소계	17	12	29
	비율	3.0%	2.1%	5.2%
총계		259	302	561
		46.2%	53.8%	100.0%

* 퍼센트 및 합계는 전체 응답(복수선택 가능)을 기준으로 함

<그림 VI-59> 성별에 따른 특별조사실 필요성 교차분석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별조사실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배정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한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면 조사실 중의 일부를 피해자 전용 조사실로 지정하여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조사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별도 조사실을 설치하고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성,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서 입구에서 조사실까지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VII. 분석결과 및 정책적 대안

1. 행정·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완전 분리

1.1.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공간의 완전 분리

인권친화적으로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어온 조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사무실 이동과정에서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과 신변 노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조사실의 형태는 크게 사무실과 분리된 수사실, 건물의 1층 등에 전 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조사실, 사무실내에 조사실과 같이 경찰서 건물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경찰서별로 다소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조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사생활 노출의 최소화라는 인권친화적 조사환경 구축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경찰관 및 사건 관련자, 민원인 등이 자주 왕래하는 행정·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완전하게 분리하거나 건물구조상 완전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도 등을 사이에 둬으로써 공간 간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체포 피의자 호송과 조사를 위한 이동통로를 별도로 두어 피해자 및 일반 민원인들이 동선 상에서 상호 겹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생활 노출(32.7%)’ 과 ‘사건 관련자와의 원치 않는 접촉(29.9%)’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얼굴이나 대화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 국민들은 경찰서에 방문하였을 때, 얼굴 노출이나 타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가장 염려하고 있으므로 조사환경의 개선에 있어서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서 향후 조사실을 신축 또는 개선헌 경우에는 행정·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완전한 분리를 통하여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사무 공간과 조사공간의 완전분리’가 가장 인권친화적인 설계방안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행정·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은 경찰서가 위치한 지형, 건물의 구조, 면적과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 그동안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여 조사실을 구축해오고 있으나 여러 가지 조건적 제약에 따라서 조사공간이나 조사실은 경찰서 건물의 여러 층이나 공간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사실의 통합관리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충분한 환경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실을 사무실과 완전하게 분리하는 경우에는 경찰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건물의 신축,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 사무실의 공간재배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은 여러 가지 환경적, 공간적 조건들을 가정한 상태에서 조사공간의 배치와 조사실의 환경개선에 대한 일반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표준모델과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1. 조사공간의 배치 및 설계

조사실을 사무공간과 완전하게 분리하여 조사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다. 경찰서 건물 내에서 피조사자들과 민원인의 접근성이 가장 편리하고 경찰서 입구에서 조사실까지 이르는 최단거리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인 저층(건물 입구층 또는 1층) 전체를 수사층(조사공간)으로 지정한다. 조사공간은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공간과 다른 층에 배치함으로써 조사공간과 업무공간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바와 같이 시민들은 사생활노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조사실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방음시설의 개선(31.6%)과 조사실 위치의 접근 편리성(27.0%)을 가장 우

선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점은 경찰서 본관 건물의 저층부에 조사공간을 조성할 경우 민원인들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소음, 타인과의 접촉에 대한 우려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공간 영역 내에서는 일반적인 임의수사나 피해자, 참고인 진술 등을 위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동선과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공간과의 적절한 분리도 고려해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를 관리하는 강제수사 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유치장 공간과도 인접해야 하므로 보안구역의 설정에 대한 고려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경찰서 입구에서 1층 조사실에 이르는 동선은 소환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여타 일반 민원인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기공간과 복도 등의 공용구역을 거쳐 조사실에 이르도록 하며, 여타 구역의 보안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각 구역별로 사전에 부여된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층은 임의조사구역과 강제조사구역으로 구분한다. 조사공간 영역 내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제외한 피조사자와 변호인, 신뢰관계인, 조사자와 조사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활용되는 임의조사실 공간을 별도로 구성한다. 임의조사 공간과 별도로 체포된 피의자 조사를 위한 강제수사구역을 분리하고 동선체계의 수립을 통해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조사구역으로 지정된 수사층 공간 중에서 강제수사구역과 인접하여 유치장을 배치함으로써 수사구역에서 유치장으로 이어지는 동선상에서 불필요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강제수사구역은 유치장 쪽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입감이나 혹은 호송이 필요한 경우에 조사구역과 유치장 사이의 거리가 최단거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구역을 보안구역으로 지정한다.

1.1.2. 업무공간의 배치 및 설계

조사공간과 업무공간을 완전하게 구분하여 별도의 층으로 배치하는 경우, 저층부에 배치된 조사공간에서 인접한 별도의 층에 업무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업무공간으로 지정된 층은 인중

시스템 등을 통해서 민원인을 비롯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보안수준을 높이고 피조사자들이 다른 부서의 경찰관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인식조사 결과에서 경찰관들은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 보안에서의 취약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존재했으며, 사건관련자의 왕래나 조사 시의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시민들이 조사환경의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의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 소음과 소란행위, 협소한 사무실, 열악한 사무실 환경(조명, 온도 등)으로 인한 불만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김순양 외, 2002).

사무공간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들의 왕래, 대화, 소음 등으로 인한 방해요인을 최소화한다. 업무 공간 내에서는 경찰관들은 민원인이나 피조사자들에 의한 방해 없이 각종 사건서류, 송치서류 등의 작업능률성을 높일 수 있고 같은 부서의 동료직원들과 업무처리, 사건처리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킨다. 경찰관들은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업무에 몰입함으로써 경찰수사의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공간의 배치와 조사실 설치의 세부지침

1.2.1. 조사공간의 분리 및 보안구역의 지정 관리

사무공간과 완벽하게 분리하여 조사실 및 유치장을 경찰서 건물 1층에 배치하고 사무공간은 조사공간과 다른 층에 배치한다. 기본적으로 수사층은 1개의 층에 설치하여 집중관리 영역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개 층의 구조로 할 수 있다. 조사공간은 크게 조사구역(임의수사구역, 강제수사구역), 유치장, 통합수사상황실, 조사편의영역(임의조사 피조사자 대기실 및 화장실)으로 구성된다.

먼저 유치장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라서 유치관리 영역, 유치전이 영역, 유치거주(편의) 영역, 유치거주(거실) 영역으로 구분된다. 조사공간 중에서 체포된 피의자들의 출입 및 조사공간인 강제조사구역에는 체포피

의자 조사영역 및 유치장 입감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체포피의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 공간 및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한다. 임의조사구역은 그밖에 임의수사를 위한 조사실로 구성된다. 조사편의영역은 체포된 피의자가 아닌 일반 피조사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과 화장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조사공간에 통합수사상황실을 구축하여 체포피의자의 이동, 인계, 조사 등을 관리하고 각 보안구역의 출입관리 및 동선 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표 VII-1> 조사공간-사무공간 완전 분리에 따른 공간구분 및 세부영역

공간구분		세부 영역
수사층 (경찰서 저층부, 1층)	유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관리 영역 ▪ 유치전이 영역 ▪ 유치거주 (편의 영역) ▪ 유치거주 (거실 영역)
	조사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조사구역 (체포피의자 조사영역, 대기실 및 화장실) ▪ 임의조사구역 (일반 조사영역) ▪ 통합수사상황실 ▪ 조사편의 영역 (임의조사 피조사자 대기실 및 화장실)
별도 층 배치	사무공간	

각 공간영역 중에서 유치장 공간과 체포피의자 조사를 위한 강제조사구역은 보안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보안수준을 높인다. 강제조사구역에서 유치장 입출감을 위한 통로 및 이송 외부에서 보안구역으로 출입하는 별도의 출입구와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체포된 피의자와 기타 피조사자 간의 동선을 분리한다. 보안구역을 포함한 조사공간 내에서는 체포된 피의자의 집중관리가 가능하게 하며, 수사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피의자의 도주방지 등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경찰장구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한다.

조사공간의 경우, 유치장 보다는 하위 단계의 보안구역으로 운영하여 출입문 통제 등 보안시스템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을 관리하며, 체포피의자 조사영역과 일반적인 임의수사(피해자, 참고인 조사 포함)를 위한 일반 조사영역을 공간배치상 구분함으로써 피조사자들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조사공간 내에는 조사편의영역을 배치하여 피의자 대기실(휴게실)

과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여 조사 중 피의자 및 수사관들의 외부출입을 요소를 줄이고 피의자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표 VII-2> 조사실의 위치 선정 설계지침

- 조사실은 불특정 다수 일반인의 접근성이 왕래가 많은 공용공간(휴게실, 화장실 등)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며, 조사실은 피조사자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본관동(또는 수사동)의 저층 또는 1층에 설치하며, 1개 층에 설치하여 집중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부득이하게 1개 층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수의 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사무공간은 조사공간과 분리하되 조사공간과 근접한 층에 설치한다.
- 경찰서 부지관계, 건물구조 등으로 부득이 사무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하거나 사무공간에 접할 경우에는 복도 등으로 구분하여 사무실 밖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사실은 외부의 소리나 다른 사무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위치와 구조로 설치한다.

※ 유치장의 경우에는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름 (경찰청 예규)

만약 경찰서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고 노후화된 경찰서의 공간확보나 리모델링이 어려워 조사공간을 별도의 층으로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사무공간을 재배치하고 수사공간을 분할하여 사무실 밖에 위치하도록 한다. 조사실은 사무실과 복도, 통로 등을 통해서 구분함으로써 피조사자가 경찰관들의 사무공간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경찰서 입구를 통해서 공용공간을 거쳐서 접근할 수 있는 조사실은 임의수사구역으로 지정하고 체포피의자에 대해서는 통합수사당직실을 구축하여 강제수사구역으로 지정한다. 체포피의자는 통합수사당직실 내의 전용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 입감 또는 호송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며, 동선 관리를 통해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표 VII-3>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유형별 개선안

추진전략	I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완전분리안(Plan A)	부분 개선안	
		II. 사무실 밖 조사실 설치안(Plan B)	III. 사무실 내 조사실 설치안(Plan C)
조사구역의 선정	<p>(A-1) 수사층 분리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조사 및 임의조사구역, 유치장 저층부(1층) 배치 행정·사무공간은 2층 이상으로 배치하여 조사공간-사무공간 층 분리 <p>(A-2) 수사동 분리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부서와 조사실, 유치장을 별도로 모아 수사동 신축 수사동 건물 내에서 수사층과 행정·사무층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한 조사공간-사무공간의 분할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은 복도, 통로, 공용구역 등으로 구분(임의조사구역) 통합수사당직실 구축 및 체포피의자 강제수사구역 지정 	<p>(공간협소 구축경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수사과 사무공간 내 개인 업무공간 재배치를 통한 조사공간 확보 사무실 내 조사실 임의조사구역 지정 유치장, 체포피의자 조사실 및 대기실 강제조사구역 지정
보안구역	<p>(A-1) 수사층 분리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장 구역, 강제조사구역 및 체포피의자 이동통로, 체포피의자 대기실 <p>(A-2) 수사동 분리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동 전체는 보안구역으로 지정, 출입통제 및 관리 수사동 내 유치장, 강제조사구역은 보안등급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수사당직실 출입통제 및 관리 통합수사당직실 전체 구역 유치장 및 강제조사구역, 체포피의자 이동통로(벨도 출입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과 사무실 출입통제 및 관리 사무실 내 조사실 임의조사구역 유치장 및 강제수사구역, 체포피의자 이동통로(벨도 출입구 설치)

1.2.2. 수사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사무공간 배치 원칙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에 있어서 인권보호적 요소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업무효율성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거리

는 가급적 가까운 동선 상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이나 서류 인쇄와 복사, 컴퓨터 파일의 확인 등 행정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수사관들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가지러 가거나 신분증 복사 등을 위해서 사무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조사실과 사무실을 이동하는 시간이 길수록 피조사자들의 대기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공간과 업무공간은 가장 인접한 층에 배치하도록 한다.

1.2.3. 조사편의 영역 대기공간의 배치 및 운영원칙

임의조사를 위한 조사편의 영역의 대기공간 배치와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대기실 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조사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구조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행정 및 민원처리를 위해서 경찰서에 찾아오는 불특정인과 피조사자들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 및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이동하는 동선상에서 대기공간이 개방되지 않도록 한다. 복도, 통로 등의 공용공간에서 대기실 공간이 쉽게 보이지 않도록 파티션 등의 가림막의 설치나 벽체 생성을 통한 분리된 구조로 대기공간과 공용공간을 구분하는 대기실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조사공간으로 유입되거나 반대로 조사실의 대화가 대기공간으로 나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대기공간의 운영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대기공간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기실 공간은 조사를 받기위해서 대기하는 동안에 피조사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가구를 배치한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배치한다. 책상과 의자는 피조사자들의 변호인, 신뢰관계인이 필요시 함께 착석할 수 있도록 2인용을 기준으로 한다. 로비나 계단, 화장실 등의 공용공간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기실을 벽체생성 또는 가림막 설치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대기실 내에서 개방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분의 공간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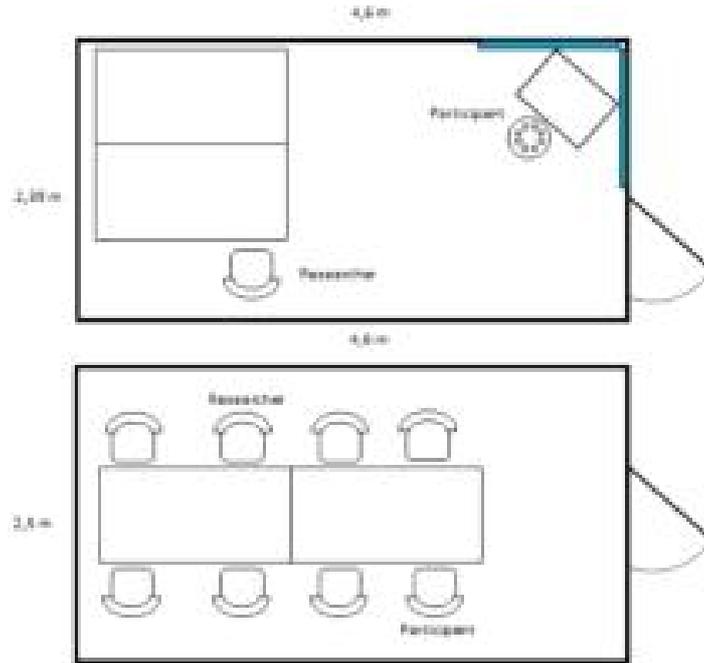
하도록 설계한다. 대기실 내에서는 가구가 배치된 공간 이외에 적정면적의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용공간으로 뚫린 창문은 불투명창으로 설치하여 신변노출이나 타인과의 시선이 마주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1.2.4. 피조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조사실의 설치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특별조사실 설치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맞춤형 공간의 설계와 접근성에 대한 배려이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소에 느끼지 않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Gudjonsson, 2003).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실 환경에 노출되는 것, 경찰관에게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것에서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조사자들은 정확한 경험이나 기억에 대해서 진술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자기방어를 위한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진다(Verschuere et al., 2004). 이와 같은 심리적 위축이나 수사상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사실의 물리적 환경을 피조사자들에게 편안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Bouwhuis et al., 2022).

Bouwhuis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사무실 구조의 조사실과 편안한 의자와 유색의 벽지를 사용한 조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피조사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편안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 조사실에서도 피조사자들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점이 나타났다. 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피조사자들은 많은 심리적 위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실 구조의 조사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보다는 편안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VII-1> 편안한 물리적 환경을 갖춘 조사실(위)과 일반적인 조사실(아래)



※ 출처 : Bouwhuis et al., 2022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특별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약 68.9%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14.4%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조사실의 개선에 있어서는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별도의 조사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별조사실은 이동과 접근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공간을 배치하고 조사실 1개당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실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편리한 책상, 의자, 색상 등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제수사가 아닌 경우에 이루어지는 임의조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조사실 공간 내에는 책상과 의자를 놓는 공간뿐만 아니라 여유 공간을 둬으로써 공간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2.5. 수사관 참여제도, 변호인 및 신뢰관계인 참여 보장을 위한 기능성 및 가변성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참여경찰관 및 변호인의 조사과정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사실의 설계가 필요하다. 수사관 참여제도와 변호인 참여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실 설계의 원칙은 기능성과 가변성이다. 먼저, 조사실 면적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참여경찰관이나 변호인, 그밖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위해서 2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조사관과 피조사자가 사용하는 조사용 책상과 컴퓨터 외에도 추가적으로 별도의 업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설치하여 참여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진술녹음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책상을 배치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해당 책상에 조사관, 피조사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기 위한 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참여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수용하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1개 조사실에서 모든 책상, 의자 등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실 사이를 가변형 칸막이, 접이식 문(폴딩도어)으로 구분하고 필요시에 벽을 개방하여 조사와 관련된 변호인, 신뢰관계인, 참여경찰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2.6. 조사실 방음 및 환기를 위한 시설개선 일반원칙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완전하게 분리하여 수사층을 두는 경우, 조사구역 내에서 조사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환기, 냉난방, 방음 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차음, 흡음 조치를 통해서 소음을 관리하고 일상적인 조사 시에 이루어지는 경찰관과 피조사자 간의 대화가 바로 옆 조사실 또는 조사실 밖으로 새어 나오는지에 대한 소음 레벨을 측정하여 적정 수준의 방음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조사실

내부에서 들릴 수 있는 소음원을 관측, 측정하여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방음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서의 협소한 면적 등의 여건 상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는 더욱 중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경찰관의 약 49.4%가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음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관 및 피조사자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조사실 내부의 대화가 밖에서 들릴 경우에는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음장치의 설비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기시설의 경우에는 조사실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창문이나 출입문 개방 등을 통한 자연통풍 및 자연환기보다는 환기설비의 설치를 통한 환기가 필요하다. 통한 조사실의 경우에는 보안유지 및 피조사자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외부 창문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사공간 및 조사실은 자연적인 통풍에 취약한 구조가 된다. 따라서 기계장치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조사실로 유입되고 냄새, 습기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2.7. 동선체계 수립을 통한 조사공간 선정의 원칙

경찰서에 조사공간을 배치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사생활 보호 및 접근편리성 등을 고려한 동선체계의 수립을 통한 선정이 필요하다. 조사공간을 설계, 지정할 때에는 피조사자별의 동선을 고려하여 경찰서 입구에서부터 조사실에 입실하는 동선, 조사 중 화장실의 사용, 흡연, 조사에 필요한 추가서류의 확인을 위한 사무기기의 활용(예를 들어, 신분증 복사), 조사 종료 후에 조사실의 퇴실과 입구까지 나가는 동선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피조사자의 사생활의 침해와 신변노출 등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하고 피조사자와 경찰관의 접근성 및 이동편리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찰서 내부의 공공영역에서의 신변노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접촉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체계를 고려하여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사생활보호 및 신

변노출 방지에 대한 우려의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시민들의 경우에 조사환경 개선의 필요분야에서 조사실 접근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우려가 높은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여타 조사자들이 조사실에 입실하거나 업무처리를 위해서 경찰관들이 이동하는 동선상에 조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실 창문을 불투명 유리 등으로 설치하여 신분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제2조 제1항),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1항),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항).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고인의 경우에도 사건관련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참고인들이 자신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진술과 관련해서 신변이 노출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구역과 조사실 설계가 필요하다.

만약 경찰서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공간과 분리된 조사공간을 별도의 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과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분할하여 조사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청주 상당경찰서). 이 경우에는 조사실의 출입문을 양쪽으로 설치하고 사무실 안에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와 복도에서 바로 조사실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구분한다. 이를 통해서 필요시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출입을 구분하여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이와 같은 동선계획은 조사대상자의 특성, 신체적 조건과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마련하고 경찰서 입구 안내근무자, 수사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특별조사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성, 보행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VII-4> 동선체계를 고려한 조사실의 위치 선정 설계지침

- 사무공간 외부에 설치된 조사공간이 부득이 사무실과 같은 1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본관입구에서 별도의 사무공간을 경유하지 않고 조사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최단 거리의 수직 동선으로 배치하여 사생활 침해 요소를 최소화 한다.
- 피의자, 참고인 등이 조사실로 가는 동선에는 보안구역을 거치지 않도록 영역을 완전하게 분리하고, 체포피의자 조사영역과 일반조사영역을 가급적 분리하여 배치한다.
- 체포피의자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여 동선을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한다.
- 부득이 체포피의자 조사영역과 일반조사영역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참고인 등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한다.
- 조사공간이 1층이 아닌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관입구에서 조사실로 가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사무공간을 거치지 않고 조사실에 입실 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최단 거리로 확보한다.
- 민원인들이 조사실로 가는 과정에서 사무실 근무자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확보하여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 근무자나 여타 조사 중인 민원인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한다.
- 만약 동일 층에 사무실과 조사실을 배치할 경우에는 사무실과 조사실을 복도를 사이로 구분하여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 만약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배치된 경우에는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외부 복도를 통해서 바로 입실할 수 있는 입구를 구분하여 2개를 설치, 사무공간 혹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특별조사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성,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서 입구에서 조사실까지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1.3. 조사구역 지정 및 조사실 설치를 위한 기본절차 마련

경찰서의 신축 또는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사실을 설치하는 경우, 조사실 구역은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역의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에 조사실을 신설, 확대, 확충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으로써 경찰서 건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경찰서 구조 및 환경 기초조사 단계로 경찰서의 부지, 건물면적, 건물 구조, 사무실별 배치, 공용공간 및 편의시설 등 조사실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과 시설전반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공간으로 확보가 가능한 면적을 산출하고 경찰서 전체 건물구조에서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경찰관들의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할지는 검토한다. 또한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유치장 입감이나 이송 등의 동선도 함께 고려한다.

둘째, 경찰서 구조 및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구역 지정안을 마련한다. 경찰서 조사실 설계표준안과 인권보호를 위한 설계지침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사실의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유치장과 조사공간의 인접성, 강제조사구역과 임의조사구역의 구분, 통합수사상황실 및 조사편의 영역의 배치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조사공간 전체 면적이 확보되면 1개 조사실 개별 면적을 산출한다. 각 구역의 선정과 조사실 배치에 따른 각 구역별 출입 가능한 대상자들의 동선과 이동 편의성,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 및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실의 배치와 설치가 인권보호적 측면의 설계지침에 부합한지 여부를 체크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들의 보행환경을 검토하여 휠체어 이동통로 등이 확보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셋째, 조사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경찰관, 피조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가 집단에는 건축분야 종사자, 변호사, 수사 분야 외부전문가, 상담사, 장애인 단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조사실의 위치, 동선, 조사실 면적 등 설치안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안을 반영한다. 각 경찰서별로 다른 건축물의 구조와 환경,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조사실의 개수, 면적, 조사실 형태, 방음장치, 가변형 칸막이 유형 등 세부적인 시설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넷째, 조사구역, 보안구역의 지정 및 설계안을 마련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권보호적 조사실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의도를 반영하고 업무효율성 측면에서의 경찰관들의 요구사항, 피조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진다. 설계단계에서는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설계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업무효율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설계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 결재 및 최종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사실 설치를 시행한다.

<표 VII-5> 조사구역 지정 및 조사실 설치를 위한 기본절차



2.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참여 개선

2.1. 의의와 논의 상황

2.1.1.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참여제도의 의의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도입의 취지 관련 피의자신문서 조서기재의 정확성과 신문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⁵⁹⁾과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⁶⁰⁾이 있으며 신문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⁶¹⁾도 있다.

판례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대하여 피의자신문기록의 객관성, 공정성, 입회서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즉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가 직접 기록한 경우에도 입회서기가 시종 입회하여 검사의 심문내용을 듣고 심문과 기록이 완료된 후 이를 피의자에게 읽어주고 조서에 간인한 후 하등의 이의 없이 서명날인한 사안에서 입회서기가 참여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⁶²⁾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기록 유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조서작성의 공정성 담보 및 수사 보조자 참여 근거 마련이라는 취지가 부가된 규정으로, 사법경찰관 조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실에 물리적으로 입회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⁶³⁾도 있다. 그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58)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59)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6, 23면

60)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 제4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157면.

61) 배종대·홍영기, 「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2022, 121면.

62)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2361 판결.

63) 이지은·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5), 3-23면.

일본의 대정형사소송법 제139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원래 수사를 ‘기록’ 하는 역할을 부여한 조항이었다는 것이다. 즉 대정형사소송법은 제54조에서 소송에 관한 서류는 재판소 서기가 이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36조에서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 및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재판소 서기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문 규정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도 준용되었는데 동법 제139조는 사법경찰관이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였다. 다만 1954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위와 같은 준용규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243조가 별도로 입법되었고 검사의 피의자조사 참여자에 검찰청수사관도 추가되었기에⁶⁴⁾ 기록유지 의무를 명시한 것을 넘어 수사 보조자의 조사 참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⁶⁵⁾

2.1.2. 사법경찰관리 조사 참여를 둘러싼 논의 상황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와 면접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것처럼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일찍부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록 일부이지만 학계에서는 참여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절차의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신문과정 전체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하여 편파수사 혹은 위법수사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많다는 주장도 있다.⁶⁶⁾ 형사소송법의 가장 대표적 해설서인 주석 형사소송법도 제243조의 참여 관련 “피의자신문의 필수적 절차이므로 참여자가 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⁶⁷⁾

64) 1948년 제정된 구 검찰청법은 서기관이 검찰관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서기는 서기관을 보좌하며 특히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검찰이 서기관 및 서기를 수사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실상 검찰관 직속 사법경찰제도를 실현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택수, “검찰서기관의 다중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9호, (2013), 77면.

65) 이지은·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5), 12면.

66) 최영승,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세창, 2006, 89면.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주장과 달리 사법경찰관리의 참여제도가 형사소송법의 다른 제도와 같이 큰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 문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거의 없다.

최근 공수처의 수사에 있어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수사처수사관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에서 작성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이 있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처검사가 주도하여 진행된 피의자신문과정에 수사처수사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⁶⁸⁾ 이외에는 사법경찰관리의 미참여에 대하여 적법절차의 위반 등의 이유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사가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수사관이 주도한 피의자신문 및 참고인조사 등이 문제가 된 사례들에서 모두 이러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가 검사가 작성한 조서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사법경찰관리 참여제도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비교적 최근에 되어서야 일부 다루어졌을 뿐이다. 또한 문제에 대한 학계의 해석과 접근 자체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장⁶⁹⁾은 ① 수사현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연혁적·체계적 해석에 의할 때 동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부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동 연구도 동시에 ① 조서작성의 정확성과 공정성 담보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경시하고 동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신문 참여를 조서작성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사법경찰관리 참여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며 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

67) 백형구·차용석(편집), 주석 형사소송법 제3판, 1999, 323면.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고합1223 판결.

69) 이지은·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5, 3-23면.

하게 밝힌 후 이러한 참여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참여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입법적 개선을 포함한 다른 대안의 도입 및 활용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조사를 포함한 수사과정에 어떠한 참여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참여가 어떠한 취지로 허용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 이후에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참여제도와 비교해야 할 것이다.

2.2. 대표적 참여제도와 일본과의 비교

2.2.1.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표적 참여제도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참여제도로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전부터 도입된 제도는 압수수색에 있어서 당사자 참여제도가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21조⁷⁰⁾와 제219조⁷¹⁾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당사자가 수사관과 함께 수사 현장에 있으면서 그 처분의 집행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협력하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등 권리 침해에 대한 방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른바 ‘종근당 결정’에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통제 수단으로 참여권을 제시하였고 이후 이를 강조하는 판례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권은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매우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2.2.2. 수사의 적법성 확보 또는 보조를 위한 대표적 참여제도

70)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71)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수사의 보조를 위한 참여제도도 일찍부터 도입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로는 통역 등을 들 수 있다. 즉 형사사법절차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어에 통하지 않는 자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하고(제180조⁷²⁾) 농어나 아자의 진술도 통역하게 할 수 있다(제181조⁷³⁾).

이외에도 압수수색에 있어서 최근 전문입회인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전문입회인으로서 참여시키는 제도로 특히 공안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다.⁷⁴⁾ 대법원은 압수수색과정에서 전문입회인으로 참여한 민간 전문가의 증언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삼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

2.2.3. 일본의 참여제도와 최근 논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법경찰관리 조사참여제도의 기원이 일본 형사소송법에 있다면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법경찰관리 조사참여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즉 일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수사관이 범죄의 수사를 하는데 필요한 때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를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본의 피의자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일찍부터 ① 신병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가부, ② 신병구속중인 피의자에게 출석의무나 체류의무를 부과하는 것, ③ 피의자에 대한 묵비권의 보장범위, ④ 피의자에 대한 여죄조사의 가부 및 그 범위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특히 신병구속중인 피의자신문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일본의 형사사법이 부인 또는 묵비하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공판 전 정리절차가 끝날 때까지나 혹은 공판에서 검사의 입증의 끝날 때까지 보석을 허가하지

72)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73)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74) 자세한 내용은 장응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전문가 참여의 법적 성격 검토”,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5권 제1호, (2021)을 참고하길 바란다.

않는 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용을 ‘인질사범’이라 부르며 일본 형사사범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⁷⁵⁾ 따라서 변호사의 조사참여제도 도입이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강하게 주장되고 있지만⁷⁶⁾ 사범경찰관리의 참여는 대안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⁷⁷⁾

또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자 등의 참여도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다. 우선 대부분의 참여는 비슷하다. 즉 피의자와 그 밖에 처분을 받는 자 또는 책임자 등의 참여가 가능하고, 특히 공무소의 경우 그 장 또는 이를 대신할 자에게 통지하여 참여하게 한다. 나아가 그 밖의 주거 등에 있어서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할 자를 참여시키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처분을 받는 자의 이익 보호와 절차의 공정성 담보가 목적이다.⁷⁸⁾

그러나 일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피의자, 변호인에게 참여인이 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⁷⁹⁾ 다만 감청의 경우 감청을 집행하는 통신회사의 직원을 감청의 과정에 특별히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참여가 참여하는 통신회사의 직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므로 일본 경찰청은 최근 기술적 대안을 도입하여 감청되는 내용을 암호화한 후 특정한 경우에만 복호화함으로써 통신회사 직원의 참여를 대체하고 있다.

2.3. 사범경찰관리 조사 참여제도의 평가

2.3.1.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 측면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조문이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사범경찰

75) 카를로스 곤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인질사범에 대해서는 장응혁, “일본의 형사사범과 인질사범”, 「일본비평」 제29호, (2023). 202-223면.을 참고하길 바란다.

76) 자세한 내용은 川崎英明·小坂井久 編, “弁護士立会権 取調べの可視化から立会いへ”, 「日本評論社」, (2022)를 참고하길 바란다.

77) 日本弁護士連合会, 「人質司法」の解消を求める意見書, 2020. 11. 17, 8-12면.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opinion/year/2020/201117.html>)

78) 라라기 토키오(저)/조균석(역), 「일본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177면.

79) 일본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6항

㉞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범경찰직원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이에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의 조사 참여가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국가공무원인 참여자가 설령 동료라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예를 들어 동부지검 검사 성추문 사건의 경우 조사에 검찰청수사관 등이 참여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한 달 동안 15차례에 걸쳐 동네 대형마트에서 약 100여만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여성 피의자가 송치된 사건인데 검사는 일방적으로 토요일 오후 2시에 검사실로 오라고 하고 약 6시간에 걸쳐 위압적으로 조사를 한 후 격앙이 된 피조사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안아주는 척하면서 성추행을 하였다. 이후 다른 날 저녁 검사실로 오던 피조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근처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고 한 후 차 안은 물론 근처 모텔에서 성폭행을 가했다.⁸⁰⁾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참여한 사법경찰관리 등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들 수 있고 비교적 최근의 사건으로는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이 있다.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판결문은 조사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으며 담당 검사는 가혹행위가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⁸¹⁾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주장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경찰관이나 검사도 처음부터 위증이나 증거의 날조 등 위법한 수사를 하려고 입직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흉악한 범죄가 발생

80) 박지혜,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측 변호인이 밝힌 사건개요”. 머니투데이, 2012. 11. 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2112518278252373>)(2023. 8. 11. 검색).

8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검사와 관련 “특별조사실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알아보거나 직접 그들을 신문하기도 하여 피해자들이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이 역력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혐의자를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심리적·육체적으로 제압한 다음 신문하여 혐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 진술서를 받도록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여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자신의 ‘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백을 획득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백에 의하여 기소된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더라도 ‘적법한 조사’를 했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수사관이 진실을 말하는 경우 자백의 임의성 및 신용성이 부정되어 진범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고 또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⁸²⁾ 따라서 사법경찰관리 조사 참여제도는 인권보장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애초부터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기 어려운 제도로 평가하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⁸³⁾

또한 최근에는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명백한 불법 자체도 사라진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10년간 인권위 결정례에서도 문제되는 사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⁸⁴⁾에서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참여한 사법경찰관리가 견제할 수 있고 막기 쉬운 인권침해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2.3.2. 수사의 적법성 확보 또는 보조의 측면

적법성 확보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관의 신문절차상 적법성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기능은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하에서는 수사관 이외에 제3자인 기록자를 돕으로써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하고 나아가 절차가 허위 없이 기재되게 되므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간접적인 효과로서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된

82) 木谷明, “違法捜査と冤罪”, 『日本評論社』, (2021), ii - iii면.

83) 비슷한 취지로,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67-68면도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 동료 수사관이나 다른 경찰관이 신문과정에 동석하는 것은 오히려 조사분위기를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2명의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무언의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84) 폭행이 문제 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간첩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의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피의자의 여동생도 결국 간첩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이 또한 수사로 볼 수 있다.

다는 취지 정도로 파악하기로 한다.⁸⁵⁾

비슷한 취지로 참여가 기록의 한 수단에 불과했던 점, 수사의 보조자가 수사하는 자를 감시하는 객관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참여인에게 객관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수사 적법성 보장을 위한 참여인 동석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⁸⁶⁾이 있다.

더 나아가 판례⁸⁷⁾는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 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인 사항(행위의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질문을 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주사보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 검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지켜보았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보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의 작성이 다 끝난 다음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참여검찰주사보가 불분명사항이나 보조적인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가 만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라” 고 하여 참여한 검찰주사보의 역할을 수사의 보조 또는 또 다른 수사관으로 보고 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검사의 질문 이외에도 참여수사관이 일정한 정도의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①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②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 검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켜볼 것을 요건으로 검사의 신문에서 참여주사보에게 일정 정도의 질문행위를 허용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⁸⁸⁾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결국 제243조의 취지는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가 아

85) 비슷한 취지로 이완규, “검사의 신문과정상 참여수사관의 역할과 한계”, 「형사판례연구」, 제21권, (2013), 442면.

86) 이지은·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5), 13면.

87)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88) 이완규, “검사의 신문과정상 참여수사관의 역할과 한계”, 「형사판례연구」, 제21권, (2013), 418-419면.

니고 적법성 확보 또는 수사의 보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면접조사에서도 참여한 사법경찰관리가 수사관보다 더 강압적인 질문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참여한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발생 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만 참여한 사법경찰관리의 질문이 인정되는 이상 그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

2.4. 개선방안

2.4.1. 현행 형사소송법의 철저한 준수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입법으로 개정되지 않은 한 수사기관이 무조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참여의 형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전과정에 걸쳐 조사실에 동석하는 것이 ‘참여’의 해석으로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19진정0678900 외 6건(병합) 사건에서 ‘수사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에 의한 비위’도 인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참여수사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사무를 보며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경우까지도 참여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청도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참여경찰관 입회가 구조적으로 가능한지를 파악하고자 조사실을 전수조사하고 참여경찰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마련해 내부 훈령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⁸⁹⁾

다만 이 경우 간단히 계산해 보아도 몇천 명 이상의 경찰관을 새로 증원해야 한다⁹⁰⁾.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 개별 조사실이 전 경찰관서에 도입 중이므로 향후에는 개별 조사실에서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89) 송정은, “경찰청 ‘참여경찰관제’ 이행 전수조사…인권위 권고 수용”, 연합뉴스, 2023. 1. 12.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2063600004>)(2023. 8. 11. 검색).

90) 이형근,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103면은 피의자 신문이 참여자 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유지되는 이유로 수사인력의 부족과 함께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미분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차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동일해졌고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은 점진적이기는 하나 분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인력 부족의 문제만 검토한다.

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 경우 피의자 조사의 전 과정에 계속 동석할 경찰관이 새로 필요하게 된다.⁹¹⁾

그런데 우리나라 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자조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하며 적어도 10% 이상의 수사관 증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외근수사의 비중이 적은 경제팀의 경우 정식 접수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조사의 비중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정식으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1,308.4분이었는데 이 중 피의자조사에 225.0분이 소요되었다.⁹²⁾ 물론 비교적 다른 활동의 비중이 큰 사이버수사팀의 경우 사건당 평균 2,296.5분이 소요되었는데⁹³⁾ 피의자조사는 그 중 250.72분이 소요되어 약 9%에 불과하지만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수사관 기준 최소 10% 이상을 증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수사부서의 정원은 2020년 기준 21,970명으로 10%만 증원하더라도 2,000여 명이 되고, 20%를 증원한다면 4,000여 명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통계에는 생활안전 및 교통은 물론 외사 등의 확대수사부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⁹⁴⁾ 실제 기준이 되는 수사관의 수는 훨씬 더 많다. 즉 2021년 기준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의 수사관을 제외한 과학수사, 수사, 형사, 사이버수사, 안보수사의 인원만도 32,869명이다.

91) 비슷한 주장으로 박형식, “피의자신문서 참여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3권 제2호, (2014), 141면은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거나 인력충원 등의 방법으로 수사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2)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48면. 경제팀 정식 접수사건에 있어서 세부 업무를 피해자조사, 피의자조사, 참고인조사, 추적수사, 서류작업, 팀장지휘로 구분하여 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93) 정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17), 24-25면. 사이버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세부 업무를 첩보, 민원상담, 피의자조사, 참고인조사, 피해자조사, 통신자료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영장신청, 통신수사, 자료분석, 수사보고서작성, 출동준비, 현장출동, 기타외근증거수집, 신변확보(영장신청), 신변확보(추적수사), 디지털증거분석(자체),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수사지휘, 서류정리로 구분하여 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다만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전체 처리 및 기술적 수사에 걸리는 시간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94) 경찰의 수사인력을 수사경과자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2018년 경찰청 소속 수사경과자의 정원이 26,662명이고 현원이 29,611명이었다. 이형근, 「피의자 신문서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73면. 이러한 통계는 실제로 수사를 하는 수사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사적이다. 다만 특히 확대수사부서에 있어서 수사경과자가 아닌 경찰관도 수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표 VII-1> 기능별 경찰공무원 정원

단위 : 명

기관별 연도별	계	경무	정보 통신	생활 안전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감사	홍보	지구대 (파출소)	기타
2007	96,324	3,785	1,019	5,817	18,428	9,381	6,898	3,790	2,151	1,124	1,464	115	41,912	440
2008	97,732	3,595	925	5,712	18,563	9,566	8,163	3,521	1,860	1,105	1,416	114	42,752	440
2009	99,554	3,638	939	5,719	18,534	9,460	10,139	3,540	1,856	1,123	1,457	124	42,585	440
2010	101,108	3,804	966	5,766	18,457	9,506	11,349	3,553	1,918	1,118	1,512	141	42,564	454
2011	101,239	3,745	957	5,021	18,540	9,459	12,228	3,571	1,891	1,079	1,564	151	42,592	441
2012	102,386	3,779	944	7,154	18,469	9,447	11,243	3,552	1,871	1,087	1,560	172	42,661	447

기관별 연도별	계	경무	정보화 장비	생활 안전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감사	홍보	지구대 (파출소)	기타
2013	105,357	3,250	1,359	8,977	18,542	9,510	10,794	3,375	1,812	1,093	1,549	166	44,461	469
2014	109,364	3,210	1,342	11,100	19,480	9,642	10,814	3,479	1,839	1,133	1,555	172	45,129	469
2015	113,077	3,235	1,335	12,622	19,900	9,675	10,775	3,463	2,059	1,251	1,565	174	46,533	490
2016	114,658	3,233	1,335	12,831	20,427	9,682	10,770	3,480	2,518	1,439	1,581	176	46,696	490
2017	116,584	3,581	1,336	13,156	20,601	10,007	10,216	3,357	2,500	1,563	1,708	188	47,885	486
2018	118,651	3,489	1,340	13,639	20,714	10,148	10,170	3,362	2,482	1,607	1,767	188	49,259	486
2019	122,913	3,354	1,258	14,405	21,109	10,321	13,348	2,991	2,205	1,575	1,840	169	49,808	530
2020	126,227	3,231	1,142	14,898	21,970	10,524	14,901	2,991	2,182	1,570	1,881	168	50,236	533

기관별 연도별	계	대변인	감사	정보화 장비	경무	치안 상황	경비	정보	외사	과학 수사	수사	형사	사이버 수사	안보 수사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 관서	부속 기관
2021	128,985	169	1,928	914	2,885	4,592	16,655	2,990	1,100	1,362	10,160	16,988	2,091	2,268	3,535	3,148	6,999	50,668	533

출처 : 경찰청, 「2021 경찰통계연보」, (2022), 8면.

또한 현재의 수사관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⁹⁵⁾⁹⁶⁾ 물론 경찰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지만 이태원 및 오송참사 등 다른 경찰사안에도 대응해야 하며 수사roman 한정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흥기난동 및 살해예고 등으로 더 많은 인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때로는 밀착보호도 실시하는 등의 새로운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수사관을 참여 또는 약간의 보조만을 위해 조사실에 장시간 동석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며 누적된 업무는 수사관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없게 할 것이다.

더구나 수사관의 참여로 인권보장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과 함께 피조사자의 인권보장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전제하에 사법경찰관리 참여제도의 폐지 또는 탄력적 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법경찰관리 참여제도가 인권보장 외에도 수사의 적법성 확보 또는 보조도 제도의 취지로 삼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선부른 폐지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적법성 확보 및 보조는 인권보장보다도 훨씬 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2.4.2. 형사소송법의 선택적 적용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수사의 적법성 확보 또는 보조’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참여시킬 필요는 없게 된다. 즉 얼마든지 다른 대안도 가능할 수 있으며 참여도 반드시 조사실에 계속 동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실무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또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95) 이정현 외, “수사권 조정 후 경찰 형사·수사 인력난…기피 악순환”, 연합뉴스, 2022. 2. 14.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3046400004>)(2023. 8. 11. 검색).

96) 최지은 외, “자전거 도둑 맞았다” 신고 2달째 세월아 네월아…경찰의 속사정”, 머니투데이, 2022. 8. 2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815010581923>)(2023. 8. 21. 검색).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신문 시 같은 사무실 및 공간에 있는 것을 참여로 보았고(19진정0678900 외 6건(병합) 사건, 22진정00248900 사건), 최근 개별 조사실이 설치된 이후에는 조사실 내에는 동석하지 않았으나 조사실 문을 닫고 영상녹화장비가 있는 대기실에서 참여하거나 조사실 및 대기실 출입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사무실에서 조사내용을 듣거나 사무실 밖에서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한 것을 참여로 보고 있다(21진정0061800 외 4건(병합)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면접조사에서도 개별 조사실에 창문을 내서 옆 조사실 수사관이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조사의 처음과 끝에만 참여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의 관련 규정도 참여를 매우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구 수사준칙’ 이하 함)은 제25조 제7항에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법 제243조의 참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 이러한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반대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피의자조사에는 법 제243조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조사실에 ‘반드시’ 동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수사권조정 이후 새로 제정된 수사준칙은 이 조항 자체를 폐지하였고 새로 제정된 경찰수사규칙도 위 조항을 수용하지 않아 현재는 명확한 지침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사건사무규칙⁹⁷⁾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⁹⁸⁾’은 여전히 이러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을 고려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경우를 제한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조사실에 동석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97) 제45조 제6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수사준칙 제25조 제7항을 계속 수용한 것이다.

⑥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98) 제49조 제7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않거나 적어도 조사실에 동석시키지 않는 형태의 참여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피의자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 수사준칙 등은 ‘영상녹화’ 하는 경우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영상녹화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조사의 객관성이 담보되므로, 조사 참여의 의미와 기능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주장⁹⁹⁾이 있으며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간에 사법경찰관리의 참여가 갖는 규범적 의미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¹⁰⁰⁾도 있다. 그러나 후자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동시에 구 수사준칙이 형사소송법상의 ‘참여’를 영상녹화 상황하에서만 유독 ‘조사실 내 동석’으로 규정하였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참여제도가 사법의 적법성 확보 및 보조에 목적이 있다면 사법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거나 보조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사법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자주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유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녹화하는 사건보다는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다만,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으로 불구속 수사하거나, 즉시 석방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살인, 성폭력, 증수죄,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중요범죄의 피의자신문’,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를 원칙적 영상녹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권침해 시비가 예상되는 사건’은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검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¹⁰¹⁾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

99) 이지은·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5).

100) 이형근, 「피의자 신문서의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51면.

101) 제4조(영상녹화 대상사건) ① 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인권침해 시비 차단,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2.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3.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

의자를 출석조사하는 경우’ 등 6가지를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4가지를 영상녹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²⁾

두 기관의 영상녹화 대상은 중첩되는 부분보다 상이한 부분이 더 많은데 어느 기관에서 신문을 받는가에 따라 피의자의 영상녹화 신청권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① 특수수사, 공안수사부서 등에서 빈번하게 취급하며, 표적수사 및 강압수사 등의 우려가 높은 인지사건을 필요적·원칙적 영상녹화대상으로 하고 ②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시키며, ③ 검찰의 대상 중 ‘수사태도 등을 법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는 사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¹⁰³⁾이 있다.

생각건대 두 기관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를 근거로 하므로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¹⁰⁴⁾ 그런데 일본도 영상녹화 대상사건이 경찰과 검찰이 다르다. 즉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 해당하는 재판원재판 대상사건과 지적장애자가 피의자인 사건을 기본 대상으로 하면서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모든 사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차이에는 2009년 발생한 우편부정·후생노동성 전 국장사건이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오사카 지방검찰청은 후생노동

-
- 4.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조사하는 경우
 - ② 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고발·관련인지 포함)의 피의자를 출석조사하는 경우
 - 2.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 3.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다만, 조직범죄사건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사 하는 경우는 제외)
 - 4. 통역이 필요하거나 영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 5.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 6.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검사 등이 수사상 영상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검사 등이 피의자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도 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기타 다른 법률이나 지침에 영상녹화 하도록 규정된 경우 해당 법률이나 지침을 따른다.

102) 2023년 개정 이전에는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변복이 예상되는 사건’ 등 5가지를 필요적 영상녹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공판 사건 중 조사가 필요한 자백사건’ 등 10가지를 영상녹화 권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는 별도 지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03) 이형근,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51면.

104) 과거 피의자신문을 비롯한 각종 수사절차에 관한 하위규범이 수사기관마다 상이하게 제정 및 운용되었으나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통합되고 있다. 특히 구 수사준칙은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만을 수범자로 하였으나 현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양자가 수범자이다.

성 국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체포하면서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도 후생노동성 직원의 집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날조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상사인 특수부 부장검사와 특수부장이 범인도피죄로 구속되었다.¹⁰⁵⁾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일본의 2차 사법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개혁 안에서 특히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더 나아가 참여제도의 주요 목적을 보조가 아닌 적법성 확보에 둔다면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다른 사법경찰관리가 영상녹화 내용을 조사실 밖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¹⁰⁶⁾이 있는데 이러한 모니터링이 조사의 적법성 등의 확보에 있다면 오히려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감시와 통제까지도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이전에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적법성 확보 차원에서는 수사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주어진 사법경찰관 특히 수사지휘관 등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 경우 수사의 보조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조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직접적인 업무 보조는 몰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경찰관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문기능의 경찰관이 가장 적합한데 과거 유치장의 관리 부서를 수사부서에서 경무 또는 청문 등의 부서로 이관하려고 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2.4.3. 그 밖의 대안의 모색

동적 성격이 강한 형사소송법의 경우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상황 및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의자조사 관련 가장 큰

105) 자세한 내용은 노명선, “검찰의 신뢰확보 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연구보고서, (2010)을 참고하길 바란다.

106) 이지은·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5, 18면. 면접 조사에서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한 참여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변화로는 변호인참여제도와 영상녹화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다만 이 두 제도는 뒤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위 두 제도 이외에도 피의자신문절차와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¹⁰⁷⁾, 신문조서의 작성내용과 방법¹⁰⁸⁾, 수사과정의 기록¹⁰⁹⁾ 등을 신문 시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¹¹⁰⁾로 도입하여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의자신문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어 왔으며 영상녹화제도의 경우 참여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여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훨씬 더 뛰어넘어 달성할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사소송법의 현행 규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조속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즉 제도의 취지인 적법성 확보가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참여자의 조사실 동석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참여제도의 형해화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즉 일체의 참여 없이

107)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108)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109)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수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10) 이외에도 수사준칙은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제21조(심야조사 제한),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23조(휴식시간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의 연구로는 이형근, “제정 수사준칙상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고찰-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20), 95-133면은 피의자신문의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파행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신문, 참여자에 의한 신문 및 조서 작성 후 신문자(명의자)에 의한 검토 또는 승인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¹¹⁾

2.5. 정책적 대안을 고려한 설계 지침

2.5.1. 조사 및 사무공간 전체의 양적 확충 필요

우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조사실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향후 모든 수사기관의 조사가 사무실이 아닌 조사실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의 조사실 수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실은 물론 수사관을 위한 행정공간도 더 확충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법경찰관리를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는 물론 선별적으로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법경찰관리 증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5.2. 새로운 형태의 참여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설치

수사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사법경찰관이나 다른 부서의 경찰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전체 조사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므로 우선은 조사공간 근처에 별도의 모니터링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수사상황실을 설치한다면 통합수사상황실 내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추가적인 활용도 가능케 할 것이다.

3. 기타 참여제도의 활용

3.1. 참여제도의 구분과 현황

111) 이형근,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156면.

3.1.1. 참여제도의 구분

재판과정은 물론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참여는 기본이다. 이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①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참여, ② 수사의 적법성 확보 또는 보조를 위한 참여, ③ 피해자 보호를 위한 참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참여의 경우 최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배경으로 매우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참여와 유사하므로 같이 분류할 수도 있다.

3.1.2. 참여제도의 현황

당사자 외에도 다양한 제3자가 수사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참여제도 이외에도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¹¹²⁾제도가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참여제도이다. 변호인 참여제도도 수사의 공정성 제고와 위법통제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사법경찰관리 조사참여제도의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를 제외한 수사대상자의 조사에 있어서는 아직 변호사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신뢰관계인의 참여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신뢰관계인과 변호인의 조사 참여제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참여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9조¹¹³⁾

112)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13) 제29조(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는 ‘보조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36조¹¹⁴⁾는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할애한다.

3.2. 신뢰관계인의 조사 참여제도의 검토

3.2.1. 신뢰관계인의 조사 참여제도의 의의

신뢰관계인은 수사 및 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피의자¹¹⁵⁾나 피고인¹¹⁶⁾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¹¹⁷⁾¹¹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 7. 31.>

③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5. 7. 31.>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31.>

114)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15)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

116)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성폭력처벌법’ 이라 함)¹¹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 함)¹²⁰⁾, 아동복지법¹²¹⁾, 노인복지법¹²²⁾,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¹²³⁾ 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117)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6. 1.]

118)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119)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1)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122)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 1. 29.]

123)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보통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의 증인신문과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동석하게 된다.

3.2.2. 신뢰관계인 조사 참여의 한계

경찰은 신뢰관계인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정 제35조¹²⁴⁾는 피의자의 경우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②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 ③ 미성년자인 경우, ④ 그 밖에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건관계인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특히 13세 미만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신뢰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23.]

124) 35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인 경우
 4. 그 밖에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도 제163조의2 제2항으로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동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13세 이상의 사람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므로 그 허용범위가 훨씬 넓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원래 신뢰관계인제도가 1998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로 처음 도입되어 다른 법률로 확대되었고 그 후 각각의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점에 기인한다. 즉 성폭력특별법 및 성폭력처벌법도 처음에는 제한된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동석하게 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이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이 의무화되었고 동석이 의무화된 범죄피해자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었다.¹²⁵⁾

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피의자 및 피해자의 범위라기보다는 신뢰관계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데 있다. 예외적으로 성폭력처벌법¹²⁶⁾과 청소년성보호법¹²⁷⁾이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125) 장응혁,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조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53-54면.

126)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다른 경우 신뢰관계인은 불안 또는 긴장을 해소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외에는 다른 역할은 불가능하며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 및 제221조의 제3항은 신뢰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신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수록한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¹²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을 수록한 영상물에 대해서도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전부터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 등이 자신의 범죄피해를 상세히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 가족이 때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신뢰관계인의 경우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
- 127)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8)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필요하지만 그러한 도움에는 한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주목을 받는 제도가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참여제도이며 사실 신뢰관계인제도 도입 이전부터 피해자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공판 절차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신고 및 고소,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보조 등을 하게 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¹²⁹⁾

3.3. 변호인의 조사 참여제도의 검토

변호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실 피의자신문에 먼저 참여해왔다.

3.3.1. 변호인 조사 참여제도의 의의

변호인의 조사참여제도는 변호인의 조력권에서 나온 제도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물론 헌법도 제12조 제4항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¹³⁰⁾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1980년대부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용을 고민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먼저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후¹³¹⁾ 이후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고¹³²⁾ 헌법재판소도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므로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도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¹³³⁾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2007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로 명문화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이미 1999년부터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를 제도화하였던 경찰의 노력도 컸다고 할 수 있다.

129) 장응혁,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조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53면

130)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31)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132)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133)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3.3.2. 변호인 조사 참여제도의 한계

변호사의 조사 참여는 과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사건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변호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는 매우 다양한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무리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의자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경우 현재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의 피해자만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의 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변호사의 조사 참여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① 참여하는 것에 의하여 피의자 등에게 안심감을 줄 수 있고, ② 조사 현장에 존재함으로써 부당한 조사를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이의를 제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언어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부당한 조사를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또한 ④ 피의자 등과 언어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술의 시비 및 내용에 관한 상담 및 조언이 가능하고, ⑤ ④의 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정보수집도 가능하고, ⑥ 일정한 피의자진술을 획득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발문 및 수사기관에 대한 발문의뢰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능한 효과로 제시되고 있다.¹³⁴⁾

우리나라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활동의 전제로서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둘러싸고 과거부터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졌지만 점차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참여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즉 구 수사준칙 제21조¹³⁵⁾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134) 三島聡, “8 被疑者取り調べへの弁護人の立会い”, 「刑法雑誌」 第62巻 第3号, (2023), 541면.

135) 제21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았으며 참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참여 없이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참여하는 중에 ①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하거나, ②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③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④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제한은 계속 완화되어 현재 수사준칙 제13조¹³⁶⁾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및 상담을 제한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정당한 사유라는 제한 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제한 자체에 대하여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수사준칙 등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으며 그 내용도 모호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구 수사준칙에 존재하던 개개 신문 참여 제한사유 자체는 삭제되었기에 향후 정당한 사유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큰 과제는 변호사가 조언 및 상담을 하기 위한 메모의 허용 여부인데 수사준칙은 변호인의 메모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찰은 변호인의 참여가 보다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메모장을 교부하고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여 조사과정에서 손쉽게 필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부

수 없으면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간단한 메모는 제외한다.

136)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터는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¹³⁷⁾ 이러한 시도는 2023년 제정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2조 제1항¹³⁸⁾에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도 메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검찰청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7조¹³⁹⁾ 제1항 제4호는 “신문·조사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를 참여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¹⁴⁰⁾

더 나아가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 참여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성매매, 장애인학대 등 일부 범죄에만 국선변호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변호사에게도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는 피해자변호사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함께 형사절차상 피해자 자체가 절차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성폭력처벌법¹⁴¹⁾은 피해자변호사가 피해자 조사 및 각종 절차에 참여

137) 경찰청,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 노트북, 휴대전화로 메모 가능해진다”, 경찰청 보도자료, 2020. 4. 6.

138) 제32조(변호인의 메모 보장)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등 조사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기로 메모(노트북·휴대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변호인이 메모한 내용을 열람하거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은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39) 제7조(변호인 신문·조사 참여의 중단) ①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조사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조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검사의 승인 없이 신문·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진술 번복을 유도 또는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조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한 신문·조사 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신문·조사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5.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의 도주 원조,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140) 이형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시론적 검토”, 「경찰법연구」, 제21권 제2호, (2023), 123면은 위 두 조항이 같은 나라 수사기관의 것이 맞나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대체규율에 따른 상충으로 평가하고 있다.

141)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하고 있다. 물론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포괄적 대리권은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애초부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소송행위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4.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의 활용

4.1. 영상녹화제도의 검토

4.1.1. 영상녹화제도의 의의

피의자 및 피해자 등 참고인 조사를 둘러싼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 영상녹화제도 도입이 있는데 조서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 제도만으로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참여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¹⁴²⁾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¹⁴³⁾ 특히 일본의 검찰은 다음과 같이 장단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⁴⁴⁾ 즉 ① 조사의 적정화, ② 자백의 임의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사들도 비록 녹화로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는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지만 임의성을 둘러싼 다툼이 없어졌고 진술의 변화를 그대로 증거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법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42) 이지은·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 27권 제3호, (2015), 18면.

143) 검찰에서는 2019년 89,750건, 2020년 96,840건의 녹음녹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 2009년 59,321건을 기록한 후 대략 2~3만건 정도를 녹화하고 있다.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52면.

144) 濱田毅, “檢察における取調べの録音・録画”, 「刑法雑誌」 第62卷 第1号, (2023), 12-13면.

에서 녹화물이 증거조사되는 경우가 적더라도 공판검사가 이를 통해 사건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찰 및 경찰이 일찍부터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는데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¹⁴⁵⁾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입하면서 증거능력이 매우 제한된 상태로 도입되어 검사작성 조서의 진정성 인정 및 진술자의 기억환기용으로만 활용가능하였다.

영상녹화제도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조서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주장되었는데 그러한 장점은 피의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활용한 결과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판사가 직접 청취할 수 있고, 표정이나 어감의 미묘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조사 당시의 상황, 조사자의 질문 내용과 태도, 동석자의 상태 등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 측의 동의를 전제로 피고인 가족이 영상녹화물을 방청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효과마저 있다는 점이 지적¹⁴⁶⁾되었다.

4.1.2. 영상녹화제도의 최근 변화와 문제점

이에 따라 구 수사준칙은 영상녹화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의 수사준칙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찰과 검찰은 각각 별도의 지침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기관의 규정이 매우 다르다.

145)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146) 성범죄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성범죄재판실무편람(2014), 109면.

<표 VII-2> 경찰과 검찰의 영상녹화 대상 사건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검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4조)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를 작성하는 때	할 수 있다	【원칙】(제3조) ① 진술번복 가능성 또는 진정성, 임의성, 특신상태 등의 다툼 가능성=조사영상 병행 ② 다른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 입증 가능 또는 불기소 사건=영상녹화 단독	① 실시한다 ② 할 수 있다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다만,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으로 불구속 수사하거나, 즉시 석방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② 살인, 성폭력, 중수죄,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 범죄에 있어서 피의자신문 ③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제4조 제2항) ① 직수사건의 피의자 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③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 ④ 외국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건 ⑤ 글을 읽거나 쓰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⑥ 피조사자가 요청한 사건	하여야 한다. 불구하고, 아니할 수 있다.
인권침해 시비가 예상되는 사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 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② 진술 외의 증거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 예상되는 사건 ③ 조사과정의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 ④ 수용중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있는 참고인	할 수 있다.
① 기계고장, 시설부족, 정전등의 사유로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경우 ② 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부득이 영상녹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영상녹화 피의자 조사가 심히 곤란한 경우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주로 범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검찰은 사건 또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에 비해 검찰이 증거로서의 활용도를 더 높이 고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영상녹화의 대상을 축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II-3> 검찰의 영상녹화 지침상 영상녹화 대상사건의 변화

구 수사준칙 당시의 지침 (2019. 3. 15. 개정 및 시행)	현 지침 (2023. 2. 3.~)
<p>【원칙】(제3조)</p> <p>① 공소사실 입증에의 필요성+진술번복 가능성 또는 진정성, 임의성, 특신상태 등의 다툼 가능성=조서·영상 병행</p> <p>② 다른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 입증 가능 또는 불기소 사건=영상녹화 단독</p>	<p>【원칙】(제3조)</p> <p>① 진술번복 가능성 또는 진정성, 임의성, 특신상태 등의 다툼 가능성=조서·영상 병행</p> <p>② 다른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 입증 가능 또는 불기소 사건=영상녹화 단독</p>
<p>【필요대상】(제4조)</p> <p>① 진술 외의 증거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 예상되는 사건</p> <p>②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p> <p>③ 성폭력사건의 피해자</p> <p>④ 글을 읽거나 쓰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p>	<p>(제4조 제2항)</p> <p>① 직수사건의 피의자</p> <p>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p> <p>③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p> <p>④ 외국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건</p> <p>⑤ 글을 읽거나 쓰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p> <p>⑥ 피조사자가 요청한 사건</p> <p>하여야 한다. 불구하고, 아니할 수 있다.</p>
<p>【권장대상】(제5조)</p> <p>① 구공판 사건 중 조사가 필요한 자백사건</p> <p>② 진술 번복이 예상되는 사건</p> <p>③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p> <p>④ 진술인의 수사태도 등을 법정에 현출시킬 필요 있는 사건</p> <p>⑤ 외국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건</p> <p>⑥ 사건관계인이 요청한 사건</p> <p>⑦ 조사과정의 적법절차나 인권 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p> <p>⑧ 기소중지 처분이 예상되는 공범이 있는 사건</p> <p>⑨ 공범 간의 공모관계 등에 대한 진술확보가 필요한 사건</p> <p>⑩ 항고나 재정신청이 예상되는 사건</p>	<p>(제4조 제3항)</p> <p>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p> <p>② 진술 외의 증거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 예상되는 사건</p> <p>③ 조사과정의 적법절차나 인권 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p> <p>④ 수용중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있는 참고인</p> <p>할 수 있다.</p>

물론 위의 두 지침 모두 2008년 제정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비하면 구체적이다. 즉 2008년 지침이 “피의자 등의 진술이 공소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불 때 진술번복 가능성이 있거나 조서의 진정성립, 진술의 임의성, 특신상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 되면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던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⁴⁷⁾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최근의 개정은 영상녹화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등을 새로 대상에 포함시켰고 과거에는 진술증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건 내지는 피의자에 의한 진술부인이 예상되는 사건만 반드시 영상녹화해야 했으나 개정에 의하면 피의자도 요청하면 영상녹화하도록 되었기에 일부는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침 제4조 제3항은 대상자가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검사 등이 수사상 영상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예외사유에 ‘대상자의 거부’ 를 새로 추가하였고 그 외에도 과거에는 ‘원칙으로’ 영상녹화하던 사건들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영상녹화를 제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제도가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제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법한 상황을 예방하며 수사의 적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제도이다.¹⁴⁸⁾

다만 이러한 영상녹화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최근의 입법안들도 영상녹화를 ①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외에도 ② 피의자 신청시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던가 아니면 ③ 형법상 중범죄와 주요 특별법상의 범죄에 한정하자는 입법안으로 나뉜다.¹⁴⁹⁾ 이러한 제안들은 결국 모든 범죄에 대해 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

147) 2014년 12월 영상녹화조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TF를 마련하여 실무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하였다.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43면.

148) 배종대·홍영기, 「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2022, 123면.

149)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자는 입법안도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입법안도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녹화 대신 녹음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입법안도 있다. 따라서 영상녹화제도는 진술녹음제도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4.1.3. 진술녹음제도의 의의

영국도 과거 경찰의 강압적 신문에 대한 통제방안을 논의한 결과 녹화가 아닌 녹음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1977년 설치된 왕립 형사소송위원회는 1981년 공표한 보고서에서 신문 종료시 경찰이 신문의 주요 내용을 구술로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전체 신문을 녹음하는 것은 녹취록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 없는 내용의 녹음과 처리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1984년 수사 및 형사증거법(이하 ‘PACE법’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전면적 녹음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입법 이전에 시행된 시범운영 결과 경찰측에서 우려했던 신문의 위축은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반면, 오히려 녹음이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킨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제도 도입에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배경이 있다.¹⁵⁰⁾

이러한 녹음제도는 시기상 녹화제도가 바로 도입가능하여 영상녹화제도를 먼저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으나 모든 사건을 녹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비교적 최근에 와서 녹음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히 경찰청은 2018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2019년 12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수사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계기로 도입을 검토하던 중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의 권고를 통해 시작한 것이다.¹⁵¹⁾

제도의 도입 취지는 조서작성 과정의 투명화, 자백강요, 회유, 고압적 언행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28-30면.
150)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254-256면.
151) 이형근,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273-274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방지 등이며¹⁵²⁾ 녹음의 대상은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 처리 지침상 원칙적 영상녹화대상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이다.¹⁵³⁾ 이러한 대상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2년 개정에 따라 기계고장 및 시설 부족의 이유로 영상녹화를 못하는 경우 비록 피의자 등이 동의한 경우로 제한되지만 경찰관은 진술을 녹음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경찰조사과정의 특신 상태 확보 및 조사자 증언 활성화를 대비한 개정이지만 진술녹음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경찰청도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각건대 진술녹음제도는 비록 영상녹화제도에 비하여는 한계가 있지만 피의자신문의 전과정을 언제든지 누구나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참여제도보다 훨씬 적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¹⁵⁴⁾

4.1.4. 진술녹음 및 녹화제도의 한계

진술녹음 및 녹화제도는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매우 탁월한 제도이지만 아직 수사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우선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청이 최근 도입한 제도이므로 좀 더 운용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152) 다만 해양경찰청은 2018년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도입의 배경으로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안정감의 제공 및 조사내용의 신뢰성 확보 등이다.

153) 영국의 경우 과거 의무적 녹음을 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징역 6월 이상의 정식기소범죄 또는 정식과 약식기소가 모두 가능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PACE법 실무지침 E의 개정으로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의 신문을 필수적으로 녹음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우선 승인된 녹음장치나 피의자 신문에 적절한 장소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이를 확보할 때까지 신문을 지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경찰관이 판단한 경우이다. 그리고 피의자가 신문의 녹음을 거부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관이 서면에 의한 기록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피의자가 신문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서의 신문실이 아닌 유치장에서 신문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승인된 장비 사용에 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녹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경미범죄의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신문에 응하여 경찰서 외에서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268-269면.

154) 이른바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서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전체를 재생하기로 했다. 즉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밈상’이라던가 ‘머리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TN,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녹음파일, 법정서 전체 재생한다”, (이유나,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녹음파일, 법정서 전체 재생한다”, YTN, 2023. 8. 28.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81405016201_012)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에 정식으로 명문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미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정식으로 도입된 영상녹화제도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실태는 대검찰청 지침과 경찰청 지침 모두 일정 범위의 사건만 필요적 또는 원칙적으로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 물론 상위규범인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기피는 수사기관의 시간적 부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녹화된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도 기인한다.¹⁵⁵⁾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에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증거로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즉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허용하는 입법안은 영상녹화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배제되었고 결국 형사소송법상의 영상녹화물은 진술자의 기억환기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¹⁵⁶⁾

판례도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¹⁵⁷⁾하였고¹⁵⁸⁾ 2022년 개정 형소법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대체증명 수단도 될 수 없게 하였다.¹⁵⁹⁾

155) 비슷한 취지로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73면은 현행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형사절차상 적정절차 원칙과 실제적 진실발견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의 실천적 의미를 이중적 지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한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6)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157) 대법원 2014. 7. 10. 2012도5041.

158) 또한 대법원은 최근에도 영상녹화물을 본증 사용하게 되면 ① 녹화물이 수사기관의 무기로 변질될 우려, ②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를 형해화시킬 우려, ③ 자백 위주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손현수, “대법원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 증거 사용 부적절”, 법률신문, 2020. 6. 24. (<https://www.lawtimes.co.kr/news/162432?serial=162432>))

159) 형사소송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녹화물도 본증 자체는 아니지만 탄핵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본증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영상녹화물이 있는데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상의 (피해자진술의) 영상녹화물이 그것이다. 물론 이보다 먼저 1999년에 제정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도 제10조¹⁶⁰⁾에서 녹화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증인을 전제로 판사가 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수사단계에서의 조사는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상의 영상녹화제도는 2004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서 명문화된 제도로 2001년 미국 미네소타주 경찰이 주관한 성범죄 관련 워크숍에 참석했던 경찰청 직원이 미국 경찰의 영상녹화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운영하던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¹⁶¹⁾

다만 성폭력특별법은 2004년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영상물이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성립 진정을 인정할 수 있게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위헌결정을 통하여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진정 성립되는 것을 제한하였고 결과적으로 영상녹화제도 자체가 크게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¹⁶²⁾

2020년 개정 이전	2020년 개정 이후
<p>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p> <p>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p> <p>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p> <p>② 삭제 <2020. 2. 4.></p>

160) 제정 이후 특별한 변화는 없다. 현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영상물 촬영) ①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또는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의 촬영비용 및 복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61) 장응혁,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조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47-48면.

162)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즉 헌법재판소는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함)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 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진술증거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영상물로 그 증거방법을 한정하고 신뢰관계인 등에 대한 신문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나 위 증거의 특성 및 형성과정을 고려할 때 이로써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 진술증거에 관하여 충분히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바, 그로 인한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등의 반대신문은 금지되며, 재판장은 구체적 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84면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312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피의자진술 영상녹화규정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삭제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중대성과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대안들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피고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4.1.5. 진술녹음 및 녹화제도의 보완 또는 대안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원격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하여 왔으며,¹⁶³⁾ 최근 성폭력처벌법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¹⁶⁴⁾ 다만 증거로 사용하는게 제한되었다고 하디

163) 정진성 외, 「스토리텔링 범죄학 II」, 솔과학, 2023, 401면.

164)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어 동년 10월 1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밝히고 있다.

◇ 개정이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2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제27조제6항 단서 신설).

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마.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 등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바.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등

라도 영상녹화제도가 가진 다른 장점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
 봐 온 것처럼 영상녹화제도는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최고의 제도
 이므로 적어도 현재의 각 수사기관이 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영상녹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영상녹화실이 정비되어야 한
 다. 다만 아무리 영상녹화실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영상녹화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진술
 녹음을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을 할 수 없는 사건에 대
 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참여 또는 그 밖의 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¹⁶⁵⁾

아울러 이러한 진술녹음 및 녹화제도의 전면 확대만으로 피조사자의 모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특히 개
 정된 성폭력처벌법도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¹⁶⁶⁾도 일찍부
 터 아동 등의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였
 다. 이에 따라 특히 경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면담기법이 검토되었는데 우선
 피의자에 대하여 자백 획득만을 추구하며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등을 추가함(제34조).
 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을 19세 미만 아동
 으로 확대하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제36조 및
 제37조).
 아.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보호와 원활
 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며,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 미
 만 피해자 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등에게 신문사
 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자.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
 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
 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중계시설을 통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계시설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
 로 하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
 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
 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
 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함(제41조).

165) 영국의 한 연구는 80%의 사건이 녹음만으로도 충분하였으나 20%의 사건에서는 녹화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6%는 추가된 정보가 사건 해결에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점을 들며 영상
 녹화가 피의자신문에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
 였다.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
 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264면.

16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꾸준히 제기되어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의 PEACE모델 등을 도입하였고 아동 및 장애인은 피암시성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에 미국의 NICHD프로토콜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기법들은 경찰이 사용하는 조사기법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백 또는 필요한 진술의 획득에만 치중하였던 과거에 비해 보다 풍부한 정보의 획득으로 조사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술녹음 및 녹화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영상녹화절차 위반 및 대상범죄에 대한 영상녹화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도입하여 보다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진술녹음 및 녹화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도¹⁶⁷⁾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4.2. 정책적 대안을 고려한 설계 지침

4.2.1. 변호사 참여 조사실 및 변호사를 위한 대기공간 등 설치

기존의 조사실 공간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조사관과 피의자는 물론 사법경찰관리와 변호사가 참여하는 경우 하나의 공간에 4명이 존재하게 되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없지만 변호사는 물론 신뢰관계인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통역 등이 참여하는 경우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조사실은 다수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조사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특히 변호사는 변호활동을 위해 메모장은 물론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전자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책상 등)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외부 참여인들이 조사 이전 및 이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2.2. 녹화실의 양적 확충

167)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언으로는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411-424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여청수사부서와 다른 수사부서가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을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녹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이를 위한 시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서를 기준으로 각 수사부서(수사, 형사, 여청, 교통 등)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녹화 가능한 조사실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조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나 촬영을 위한 시설은 물론 녹화를 위한 시설 설치에 별도로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4.2.3. 녹음실의 전면 도입

녹화실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모든 조사실에 녹음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녹음시설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지 및 관리 비용도 녹화시설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5. 체포된 피조사자를 위한 조사환경 구축방안

5.1. 체포된 피의자의 조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기 전 또는 조사를 받은 후에 추가 조사나 구속에 의하여 경찰서에 대기하고 유치장에 입감되는 경우들이 있다. 체포된 피의자는 법률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찰장구로 수감의 사용이다. 특히, 조사과정에 불필요한 수감의 사용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제한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로 이해된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들을 조사하면서 A피의자는 7시간 동안 수감을 채운 상태로 조사하고, B피의자는 4시간 동안 수감을 사용한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은 피의자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되어 있었으며 도주우려, 위협의

우려, 강도상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수갑을 채운 상태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수갑 사용은 도주나 자해 등의 위험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위사안에서는 피의자들에게 범죄경력이 있거나 최근 범죄사실로 인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피의자들에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으며 체포과정이나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보면 자해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없었는데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간과 대기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갑을 채워 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경찰관들을 주의 조치하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주의 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⁶⁸⁾

경찰청은 2015년부터 수사 사무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통합당직실이라는 개념으로 강제수사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표준모델을 제시하였고, 이후 10년 동안 사무공간과 분리된 조사공간이 마련되었고, 신설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통합당직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공간이 다른 건물 또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산재되어 있고, 유치장과 통합당직실이 분리되어 있어 조사실과 체포 피의자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다. 최근에 신축된 경찰서 건물의 경우인 경북 안동경찰서 건물을 보더라도 유치장은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본관 1층에 형사당직실과 수사팀 사무실과 조사실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조사나 교통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실과 조사실은 민원동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조사실이나 사무실 등에서 개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이나 장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특수관계인의 조사여부, 체포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 심야 조사의 진행 여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당직실 이외의 장소에서 부서별로 구축된 조사실 또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고 도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도주 방지 조치를 해놓은 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168)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25600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수갑을 채우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교육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면접조사와 경찰서 방문조사를 통해 체포 피의자의 조사과정의 실태와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진행한 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2. 체포 피의자의 조사과정과 인권침해적 요소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를 방지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방어하거나 보호하며,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 장구인 수갑의 사용이 가능하다.¹⁶⁹⁾

경찰장구 중 수갑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수갑등 사용지침을 통해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은 죄종, 피의자의 행동,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손괴,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험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수갑을 사용할 때는 사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위험이 해소되는 등 수갑 사용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없어지게 되면 수갑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포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 사용의 문제 등을 다룬 연구는 찾아

16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보기 어려우며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경찰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경찰관서 표준 설계방향 연구¹⁷⁰⁾, 수사사무환경이 경찰 수사관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다.¹⁷¹⁾ 2014년을 기준으로 경찰의 조사환경은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이 혼재 되어 있어 조사 중 발생하는 소음이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별도의 조사공간이 없어 피조사자들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별도의 조사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통의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어 조사나 대기 과정에 수갑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우선 피조사자를 위한 신문조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여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피조사자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일반 조사실이 아닌 특별 조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도주방지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 타인에 대한 위해방지와 도주방지 등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강제수사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수사 사무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통합당직실이라는 개념으로 강제수사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표준모델을 제시하였고, 이후 10년 동안 사무공간과 분리된 조사공간이 마련되었고, 신설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통합당직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공간이 다른 건물 또는 같은 건물이라도 층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유치장과 통합당직실이 분리되어 있어 조사실과 체포 피의자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다. 최근에 신축된 경찰서 건물의 경우인 경북 안동경찰서 건물을 보더라도 유치장은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본관 1층에 형사당직실과 수사팀 사무실과 조사실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조사나 교통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실과 조사실은 민원동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조사실이나 사무실 등에서 개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이나 장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특수관계인의 조사여부, 체포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 심야 조사의 진행여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170) 조현미 외 2인, 2014, 경찰청 연구과제

171) 최대현·이동희, “수사사무환경이 경찰 수사관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찰학논총」, 11(2), (2016), 113-147면.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당직실 이외의 장소에서 부서별로 구축된 조사실 또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고 도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도주 방지 조치를 해놓은 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기 위해 경찰서에 유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⁷²⁾ 일반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장에 체포된 피의자를 입감하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조사를 마친 후에 석방하는 절차를 거친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지 않고 석방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였으나 범죄혐의가 없는 때 또는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금할 필요성이 적어 석방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석방하지 않고 구금을 연장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법원의 허가인 구속영장이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의 구금기간은 48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연장되며 구금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조사가 가능하다. 문제는 조사가 가능한 기간에 피의자를 임의로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조사를 하는 것이 체포 또는 구금된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를 다른 경찰서의 수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하거나 같은 경찰서의 민원동에 위치한 교통범죄수사팀 조사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다.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나 검찰청의 경우에는 건물내에 유치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경찰서나 구치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구금시키고, 조사가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사무실 또는 조사실로 피의자를 이동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된 피의자를 보안구역으로 설정된 강제수사구역(통합당직실)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잠금장치로 설정된 특별 보안시설로 인해 수갑을 사용

17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하지 않더라도 도주에 대한 우려가 없으나 통합당직실이 없거나 개별 조사실 등의 충분한 조사실과 관리 감독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 부서별 조사실이나 사무실로 이동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보안 구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일반 구역이라 언제든지 외부 출입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간수자를 두어 도주를 방지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의 광역수사대와 같은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수사부서에는 유치장이 없어 일반 사무실이나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별도의 보안 구역이 없기 때문에 조사과정이나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항상 도주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체포가 이루어지면 48시간 이내에는 구금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적 심사나 사법부에 의한 외부적 심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체포된 이후에 체포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으며 체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체포의 적절성 여부 심사나 구금의 계속성 여부 심사 등을 48시간이 되는 시점에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평가되도록 하고 있다. 체포와 구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적 심사제도가 없고 외부적 심사가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진행된다는 문제점 이외에 더 큰 문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금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찰은 최대 240시간, 검찰은 무려 480시간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을 모두 합산하면 한국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은 최장 720시간에 달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피의자의 신분은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 계속 놓여 있을 수 밖에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무기의 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¹⁷³⁾ 불구속 수사의

173)이성기, “미국과 영국의 체포·구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체포·구금의 요건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4집, (2011), 311-340면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구속에 의한 방어권 제한이 기본권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나타난 것임을 기억한다면 수사기관의 장시간에 걸친 구속기간이 방어권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5.3. 비교법적 검토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5.3.1. 체포와 구금

영국에서는 체포와 구금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경찰서에 인치하고 기본적인 조사를 통하여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유치관리관의 승인에 따라 구금(detention)으로 전환된다.¹⁷⁴⁾ 구금은 범죄 혐의가 있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인치하는 경우 또는 경찰서에 임의로 출석하였으나 범죄혐의가 발견되어 체포하고 일정 장소에 억류하는 경찰 활동을 의미하는데, 체포 후 기소를 하기 전 24시간,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 후에 억류되는 기간 역시 구금 기간에 포함된다.

체포된 자를 구금할 수 있는 유치장은 모든 경찰관서에 설치가 가능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서의 상황에 따라 체포된 자를 구금할 수 있는 경찰서를 지정하는데 충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¹⁷⁵⁾ 체포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경찰서에 구금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정경찰서에 구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에 구금한 후 6시간 이내에 지정 경찰서로 이송해야 한다.¹⁷⁶⁾

5.3.2. 유치관리관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경찰서에는 유치관리관을 두고 있고 피구금자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¹⁷⁷⁾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174) PACE s. 118.2

175) PACE s. 35.1, 2

176) PACE s. 35.6

177) PACE s. 36.5

이 체포시간, 구금시간, 조사 중 휴게시간, 조사과정의 변호인 참여 보장, 신뢰관계인의 참여 보장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유치관리관은 지방경찰청장이 중간 관리자 이상의 계급인 경사급 경찰관 중에서 임명하며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에 직무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수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⁷⁸⁾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와 관계 없이 즉시 유치관리관의 체포와 구금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¹⁷⁹⁾ 유치관리관은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조사 등을 위하여 구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한다.¹⁸⁰⁾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체포 경찰관과 피의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체포경찰관은 피의자와 같이 있는 장소에서 구금에 필요한 정보를 유치관리관에게 제공할 수 있고 체포 경찰관의 주장에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며 이 과정은 기록되어 보관된다.¹⁸¹⁾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증거 충분성 여부 심사에서 유치관리관이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금이 가능하다.¹⁸²⁾ 이때의 구금은 기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의 구금을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금기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로 보고 있다.¹⁸³⁾

유치관리관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구금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피의자를 보석 또는 조건 없이 석방하게 된다. 구금의 필요성은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현재는 충분한 증거가 없더라도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¹⁸⁴⁾ 유치관리관의 구금 결정에 대해서는

178) PACE s. 65.5

179) PACE Code C s. 2. 1A

180) PACE s. 37.1

181) PACE Code C s. 3. 4

182) PACE s. 37. 1

183)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 6.

184) PACE s. 37.3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¹⁸⁵⁾

유치관리관은 구금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그 과정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금의 사유와 변호인의 접견 희망 여부 등도 고지한다.¹⁸⁶⁾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¹⁸⁷⁾ 구금 관련 모든 기록은 개인별 기록표를 만들어 관리하는데 입감시간, 조사시간, 출감시간, 구금사유의 고지, 변호인 접견 희망 여부 등이 주요한 기재사항들이다.

구금의 사유가 없다면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데 최종적으로 석방을 승인하는 권한은 유치관리관에게 있다. 이론적으로 유치관리관의 석방 승인이 없으면 석방은 불가능한 구조이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방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석방할 것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¹⁸⁸⁾

5.3.3. 구금심사

구금심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의 구금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구금 사유의 계속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경찰과 형사증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¹⁸⁹⁾ 구금심사제도는 불필요한 구금을 방지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심사는 6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9시간 간격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금심사는 원칙적으로 유치관리관이나 경위급 이상의 경찰관 중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경찰관이 담당한다.

최초 구금심사는 유치관리관이 구금을 승인한 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는데, 체포된 시간이나 경찰서에 인치된 시간이 아니라 구금을 승인

185)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 5.4 Everyone who is deprived of his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y which the lawfulness of his detention shall be decided speedily by a court and his release ordered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human-rights-act/article-5-right-liberty-and-security>)

186) PACE s. 37.4

187) PACE Code C s. 6.5)

188) PACE s. 34.2

189) PACE s. 40

한 시점이 기산 시점이 된다. 최초 심사 이후에 9시간마다 진행되는 주기적 구금심사는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¹⁹⁰⁾

5.3.4. 구금기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은 원칙적으로 24시간이며,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초 구금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기산된다.¹⁹¹⁾ 경찰서에 임의로 출석하였다가 체포되는 경우에는 체포 시점부터 체포시간이 기산된다.¹⁹²⁾ 24시간의 구금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석방 이후에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영장없는 체포는 허용되지 않는다.¹⁹³⁾

경찰의 구금기간인 24시간은 경찰서 책임자(Superintendent)의 승인이 있으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36시간까지 12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체포의 이유가 된 범죄가 기소대상 범죄이고 수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구금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승인권자는 구금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적절한 구금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금기간의 연장없이 즉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6시간을 초과하여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안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한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구금계속영장(warrant of further detention)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기간의 연장은 정식기소대상 범죄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구금기간의 연장 없이 기소 단계로 넘어 가거나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치안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36시간까지 추가로 구금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96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경찰에서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40시간이고, 검찰이 추가적으로 구금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480시간으로 수사기관의 구금

190) PACE s. 40.3

191) PACE art. 41.2.b

192) PACE art. 41.2.c

193) PACE art. 41.9

시간이 최대 720시간임을 고려할 때 영국의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최대 구금기간이 132시간으로 한국의 약 1/6 수준이다.

5.3.5. 피의자 조사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는 범행에 대한 피의자의 개입 상황을 질문을 통해 확인하기 위한 수사방법으로 경찰수사준칙(PACE Codes of Practice section 11)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면담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담조사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인권침해 유형과 주의 사항은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¹⁹⁴⁾

- 고문, 비인격적 행위, 가혹행위 또는 처벌 등의 금지
- 자유권과 안전권에 대한 침해 방지
- 성, 인종, 언어, 종교, 사회적 배경 등에 의한 차별금지

영국에서 체포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서 내 보안구역내에 위치한 조사실에서 실시하고 모든 조사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Home Office, PACE Code C, 2019) 조사실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경찰과형사증거법(PACE)과 그 법률의 시행령인 수사절차준칙(Code C, 2019)에 두고 있다.

위 근거법령에 기초하여 영국 내무부는 2023년에 수사기관조사규칙을 개정 하고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들을 재정비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규칙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

194) You must be aware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when you interview the suspect: Schedule 1 Article 3 Human Rights Act 1998 prohibition of torture: no one shall be subject to torture or inhuman,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Schedule 1 Article 5 Human Rights Act 1998-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everyone arrested has the right to be informed,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of the reasons for the arrest and of any charge made against them Schedule 1 Article 14 Human Rights Act 1998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rights shall be secured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association with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사기관조사규칙은 경찰뿐만 아니라 재무, 외환, 회계, 이민국 등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수사관에게 적용된다.

체포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유치장 등 수용시설내에 위치한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피의자를 외부로 이동시켜 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현장 검증 등 외부 조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수용시설 이외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부로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유치시설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는 강제적 면담조사(Compulsory Interview)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임의적 면담조사(Voluntary Interview)와 구별된다.¹⁹⁵⁾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다른 사건으로 추가 입건된 경우가 아닌한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동의에 의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 체포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며 동의가 없더라도 조사는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유치실 밖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사관들이 유치실로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강제적 면담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피조사자가 무조건적으로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체포된 피의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조사는 수형시설 내에 위치한 조사실이나 접견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¹⁹⁶⁾ 체포된 피의자나 수형자를 유치시설이나 수형시설 외부로 이동시켜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형자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외부 이송명령장을 발부 받아 외부로 이송하여 조사가 가능하다.¹⁹⁷⁾

- 도난 물품, 무기, 폭발물 등의 발견
- 범죄수사와 관련된 현장 검증 이나 증거물의 소재 추적
-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복잡한 사건의 수사

195) 조운오, 영국 수사기관의 미결수용자 접견 및 호송에 관한 소고: 수용자 소환명령을 중심으로, 사 회과학연구 26(1), (2019), 169-186면.

196) 위 같은 글

197) Home Office, "Interviewing Suspects", (2023), p. 55

- 비밀보호 등 민감한 사안의 조사

수사기관은 체포시간인 24시간 동안 피조사자에게 최소 8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8시간 동안 피조사자는 조사를 받지 않고 유치실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고 사건과 관련된 조사로부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 8시간은 야간에 보장되는 것이 보통이나 심야 조사 등으로 주간 휴게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에도 휴게가 가능하다.¹⁹⁸⁾

5.3.6. 시사점

우선 체포된 피의자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구금과 구금기간의 연장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유치관리관제도의 도입을 통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의 필요성 심사를 진행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금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계속 구금 여부에 대한 심사를 영국과 최초 6시간, 이후 9시간 마다 진행하여 신속하게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감금의 계속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유치관리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사로부터 독립된 부서 의 경찰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 번째,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은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에서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은 영국과 비교하여 약 6배 수준으로 체포된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에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조사는 유치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현장검증이나 증거물 추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치시설 밖으로 이동하여 조사가 가능하다.

5.4. 정책적 대안

198) Home Office, "Interviewing Suspects", (2023), p. 10

5.4.1. 통합수사상황실 설치

(현황) 현재는 수사부서가 있는 건물과 층마다 조사실이 설치 되어 있고 유치장과 통합당직실이 분리되어 있어 조사실과 체포 피의자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다. 최근에 신축된 경찰서 건물의 경우인 경북 안동경찰서 건물을 보더라도 유치장은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본관 1층에 형사당직실과 수사팀 사무실과 조사실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조사나 교통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실과 조사실은 민원동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조사실이나 사무실 등에서 개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이나 장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특수관계인의 조사여부, 체포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 심야 조사의 진행여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당직실 이외의 장소에서 부서별로 구축된 조사실 또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고 도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도주 방지 조치를 해놓은 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제조사구역과 임의조사구역의 구분) 경찰서의 본관 1층을 강제조사구역과 임의조사구역으로 구분하여 유치장과 조사실을 위치하도록 구성하고 체포 피의자 입감 장소, 유치실, 강제조사구역의 중간 지점에 통합수사상황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통합 수사상황실은 체포 피의자의 구금 승인, 유치실 관리 감독, 강제조사구역의 조사실 및 대기실 관리 감독, 임의조사구역에서 조사실의 예약 및 운영 현황 등을 관리 감독하는 등 유치장과 조사구역 전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감독시스템) 관리감독시스템은 유치실 개선모델을 참고하여 각각의 구역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시스템, 조사실예약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일 것이다. 통합수사상황실에서는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현황, 강제조사구역에 설치된 조사실에서의 조사 현황, 임의조사구역에서의 조사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사 뿐만 아니라 경비, 교통관리, 112 신고 출동 등을 총괄하는 기존의 경찰서 상황실 시스템으로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의 유치인 관리와 조사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4.2. 유치관리관 제도 도입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와 비교할 때 방어권 보장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이 따른다. 영국의 수사절차에서 체포와 구금을 구분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구금 여부를 재평가하여 구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제한된 기본권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 이유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때에는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¹⁹⁹⁾

영국과 비교할 때 구금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유치관리관이 존재하지 않고, 구금의 계속성 여부에 대하여 중간 심사를 통해 신속히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영국에서도 1981년 이전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이러한 보호장치를 두지 않았었고 한 번 체포된 피의자는 신속하게 석방을 진행할 수 있는 심사없이 체포 가능 시간 동안 구금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중간 단계에서 구금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장치가 도입된 것이다.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나 38시간 또는 46시간이 경과된 후에 석방된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경찰의 구금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⁰⁰⁾

19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200) 헌법재판소 2010. 9. 30. 2008헌마628 결정.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청구 각하

영국에서는 유치관리관을 임명하여 체포 후 경찰서에 인치될 때 구금심사를 진행하고 6시간 후에 2차 구금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9시간 마다 구금심사를 통해 구금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24시간을 초과할 때는 경찰서장이 구금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고, 36시간을 초과할 때는 법원이 구금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체포적부심청구를 제외하고 48시간 후에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금의 연장 여부를 검토 받는 것이 전부이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체포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의 결정이 48시간의 시한을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한 영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국식 유치관리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수사부서와 독립된 부서에 소속된 관리자를 유치관리관으로 임명하고, 체포 피의자 개인별로 관련 기록과 심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²⁰¹⁾ 체포 구금된 피의자의 개인별 기록표에는 구금시간, 체포 및 구금 이유 등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정보의 고지 여부, 의료서비스의 제공여부, 변호인 접견 신청 여부, 구금 중 조사를 위한 출감 및 입감 시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여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구금의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구금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판단된다.

5.4.3. 체포구속 피의자 조사를 위한 강제조사구역 설정

201) 한국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은 수사과 소속의 유치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구금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이영돈은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상 수사과장이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으로부터 수사자료 기타 참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유치 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금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영돈,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 유치관리관 제도 연구, 『법학논문집』 43(1), (2020), 249면; 김태명, “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유치장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2004), 69면. 이상훈,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2), 148면.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기 위해 경찰서에 유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⁰²⁾ 일반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장에 체포된 피의자를 입감하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조사를 마친 후에 석방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구금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국에서는 유치관리관이 담당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절차나 판단 주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지 않고 석방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였으나 범죄혐의가 없는 때 또는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금할 필요성이 적어 석방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석방하지 않고 구금을 연장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법원의 허가인 구속영장이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의 구금기간은 48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연장되며 구금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조사가 가능하다.

문제는 조사가 가능한 기간 동안에 피의자를 임의로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조사를 하는 것이 체포 또는 구금된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를 다른 경찰서의 수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하거나 같은 경찰서의 민원동에 위치한 교통범죄수사팀 조사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다.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나 검찰청의 경우에는 건물내에 유치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경찰서나 구치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구금시키고, 조사가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사무실 또는 조사실로 피의자를 이동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보호 보다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피의자를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 다시 피의자를 구금장으로 옮겨 구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유치시설에서 나와 다른

20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곳으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하고 다른 경찰서, 지방경찰청, 검찰청 등으로 이동하면서 사생활이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 등이 높은 외부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수갑 등을 착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조사과정에서도 도주의 우려가 고려되어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유치시설 내에 있는 조사실 보다 신체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조사를 이유로 피의자를 유치시설 밖으로 이동시켜 특정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효율성 보다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형사절차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이 유치시설을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경찰청이나 검찰청과 같이 외부 시설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소환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유치시설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유치시설 밖으로 이동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용자를 외부로 이동시켜 조사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로 이송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수사상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²⁰³⁾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장소를 유치시설 내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설 밖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국의 소환명령장과 같이 관리책임자의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외부로 이동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치시설 내에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경우, 유치장과 인접한 장소에 강제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수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체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를 위해 지방경찰청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203) 조운오, 영국 수사기관의 미결수용자 접견 및 호송에 관한 소고: 수용자 소환명령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2019, 169-186면. 180면.

5.4.4.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축소

한국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체포가 이루어지면 48시간 이내에는 구금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적 심사나 사법부에 의한 외부적 심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체포된 이후에 체포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으며 체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체포의 적절성 여부 심사나 구금의 계속성 여부 심사 등을 48시간이 되는 시점에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평가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부적으로 유치관리관(Custody Officer)이나 심사관(Review Officer) 제도를 통해 최초 체포 구금심사와 6시간 이후 구금 계속성 심사, 이후 9시간마다 구금의 필요성 여부 심사가 진행된다. 사법부에 의한 외부적 평가는 36시간 이내에 진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과 비교하여 12시간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

체포와 구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적 심사제도가 없고 외부적 심사가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진행된다는 문제점 이외에 더 큰 문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금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찰은 최대 240시간, 검찰은 무려 480시간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을 모두 합산하면 한국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은 최장 720시간에 달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피의자의 신분은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 계속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무기의 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²⁰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구속에 의한 방어권 제한이 기본권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나타난 것임을 기억한다면 수사기관

204)이성기, “미국과 영국의 체포·구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체포·구금의 요건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4집, (2011), 311-340면.

의 장시간에 걸친 구속기간이 방어권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이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최장 96시간으로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국 수사기관의 구금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은 무려 7배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기소 상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판사가 구금을 결정하면 구금 상태로 재판 절차로 나아가게 되고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에게 인치되고, 기소 상당성 여부 심사와 계속 구금 여부 심사 등을 거친 후에 재판에 회부된다. 사실상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은 최장 48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²⁰⁵⁾

체포된 피의자의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체포 후 시간의 경과별로 구금의 필요성 또는 계속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기소 전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시간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5.5. 정책적 대안을 고려한 설계 지침

5.5.1. 조사구역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는 조사실 중심의 조사구역과 보안이 필요한 업무 구역으로 구분하고, 조사구역은 다시 체포 피의자를 조사하는 강제조사구역과 출입이 자유로운 임의조사구역으로 구분한다. 조사구역은 건물의 1층에 구축하고 업무구역은 2층부터 설치하여 보안이 필요한 업무구역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피조사자와 일반인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은 민원동으로 한정한다.

205) 연방사건을 기준으로 체포 후 30일 이내에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소추결정 이후 치안판사에 의한 기소 상당성 심사가 20일 이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과 조사는 48시간 안에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성기, “미국과 영국의 체포·구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체포·구금의 요건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4집, (2011), 316면.)

5.5.2. 조사실

조사실은 피조사자와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 조사자와 조사참여자 등 4인이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하고 조사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참여 또는 대질 신문 등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실과 조사실 사이에는 접이문을 두어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5.5.3. 유치장

현재 경찰청 설계 지침에 따라 구성하고, 호송차 전용 보안차고, 통합수사상황실, 강제조사구역과의 연계성과 긴급상황시 비상탈출 등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본관 건물의 1층에 위치한다. 체포 피의자는 호송차 전용 보안차고로부터 이중 보안 잠금 문을 거쳐 통합수사상황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안 시설을 구축하고 통합수사상황실에서 유치실로 통하는 출입문에도 보안장치를 설치한다.

5.5.4. 통합수사상황실

통합수사상황실은 강제조사구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체포 피의자가 인계되는 호송차고와의 이동 실, 개별 유치실로 이동하는 출입 시설, 조사실로 이동하는 출입시설, 경찰관이나 변호인 등이 이동하는 출입 시설을 모두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통합수사상황실에는 유치실 모니터링시스템과 개별 조사실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수사상황실에는 경찰관,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시설을 설계하고 변호인이 출입이 가능한 통로는 통합수사상황실의 통제하에 조사실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5.5.5. 강제조사구역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공간은 경찰서의 경우 1층에 유치장과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유치장과 연계하여 조사와 입출감 공간 사이의 이동동선을 짧게 구성한다. 조사실로 이동할 수 있는 주출입로는 유치장으로부터 이동하는 출입로와 외부로부터 출입이 가능한 통로로 구축하는데, 두 개 통로 모두 통합수사상황실의 통제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5.6. 체포 피의자 대기실과 화장실

통합수사상황실의 관리 스테이션에서 관찰이 가능한 공간에 유치실 입감 전에 조사가 필요한 체포 피의자를 위한 대기실을 구축한다. 대기실은 소음이 차단되고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벽으로 2개 이상 설치하고 안전의자를 두어 자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방지를 위해 통합수사상황실 내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5.5.7. 임의조사구역

수사기관의 조사구역은 유치장과 보안장치가 설치된 조사실로 구성된 강제 조사구역과 피조사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임의조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임의조사구역은 조사실과 피조사자 대기실로 구성한다.

5.5.8. 임의조사구역 피조사자 대기실

수사기관의 조사구역 입구에는 피조사자 대기실을 설치하고, 조사실 및 조사 순서가 표시되는 안내 모니터를 설치하여 대기시간과 장소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

5.6. 정책적 대안을 고려한 설계 지침

5.6.1. 변호사 참여 조사실 및 변호사를 위한 대기공간 등 설치

기존의 조사실 공간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조사관과 피의자는 물론 사법경찰관리와 변호사가 참여하는 경우 하나의 공간에 4명이 존재하게 되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없지만 변호사는 물론 신뢰관계인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통역 등이 참여하는 경우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조사실은 다수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조사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특히 변호사는 변호활동을 위해 메모장은 물론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전자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책상 등)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외부 참여인들이 조사 이전 및 이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5.6.2. 녹화실의 양적 확충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여청수사부서와 다른 수사부서가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을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녹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이를 위한 시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서를 기준으로 각 수사부서(수사, 형사, 여청, 교통 등)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녹화 가능한 조사실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조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나 촬영을 위한 시설은 물론 녹화를 위한 시설 설치에 별도로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5.6.3. 녹음실의 전면 도입

녹화실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모든 조사실에 녹음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녹음시설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지 및 관리 비용도 녹화시설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VIII. 제도적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 요약

1. 제도적 환경개선방안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사환경은 제도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제도적 환경 개선방안의 첫 번째는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권 보장이다. 재판과정은 물론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참여는 기본이다. 이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①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참여, ② 수사의 적법성 확보 또는 보조를 위한 참여, ③ 피해자 보호를 위한 참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참여의 경우 최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배경으로 매우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참여와 유사하므로 같이 분류할 수도 있다.

당사자 외에도 다양한 제3자가 수사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²⁰⁶⁾제도가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참여제도이다. 변호인 참여제도도 수사의 공정성 제고와 위법통제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사법경찰관리 조사참여제도의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를 제외한 수사대상자의 조사에 있어서는 아직 변호사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6)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두 번째,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의 확대가 필요하다. 피의자 및 피해자 등 참고인 조사를 둘러싼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 영상녹화제도 도입이 있는데 조서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제도만으로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참여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검찰은 다음과 같이 장단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① 조사의 적정화, ② 자백의 임의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사들도 비록 녹화로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는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지만 임의성을 둘러싼 다툼이 없어졌고 진술의 변화를 그대로 증거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법정에서 녹화물이 증거조사되는 경우가 적더라도 공판검사가 이를 통해 사건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찰 및 경찰이 일찍부터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는데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²⁰⁷⁾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입하면서 증거능력이 매우 제한된 상태로 도입되어 검사작성 조서의 진정성 인정 및 진술자의 기억환기용으로만 활용가능하였다.

영상녹화제도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조서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주장되었는데 그러한 장점은 피의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활용한 결과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판사가 직접 청취할 수 있고, 표정이나 어감의 미묘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조사 당시의 상황, 조사자의 질문 내용과 태도, 동석자의 상태 등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 측의 동의를 전제로 피고인 가족이 영상녹화물을 방청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효과마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7)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세 번째,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조사과정에 의무적 진술 녹음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2019년 12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수사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계기로 도입을 검토하던 중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의 권고를 통해 시작한 것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조서작성 과정의 투명화, 자백강요, 회유, 고압적 언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방지 등이며 녹음의 대상은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상 원칙적 영상녹화대상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이다. 대상 사건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2년 개정에 따라 기계고장 및 시설부족의 이유로 영상녹화를 못하는 경우 비록 피의자 등이 동의한 경우로 제한되지만 경찰관은 진술을 녹음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경찰조사과정의 특신상태 확보 및 조사자 증언 활성화를 대비한 개정이지만 진술녹음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경찰청도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각건대 진술녹음제도는 비록 영상녹화제도에 비하여는 한계가 있지만 피의자신문의 전과정을 언제든지 누구나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참여제도 보다 기본권 보호에 더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네 번째,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필요성에 대한 주기적 구금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구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와 비교할 때 방어권 보장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이 따른다. 영국의 수사절차에서 체포와 구금을 구분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구금 여부를 재평가하여 구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제한된 기본권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 이유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때에는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²⁰⁸⁾

영국과 비교할 때 구금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유치관리관이 존재하지 않고, 구금의 계속성 여부에 대하여 중간 심사를 통해 신속히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영국에서도 1981년 이

20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전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이러한 보호장치를 두지 않았었고 한 번 체포된 피의자는 신속하게 석방을 진행할 수 있는 심사없이 체포 가능 시간 동안 구금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중간 단계에서 구금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장치가 도입된 것이다.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나 38시간 또는 46시간이 경과된 후에 석방된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경찰의 구금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⁰⁹⁾

영국에서는 유치관리관을 임명하여 체포 후 경찰서에 인치될 때 구금심사를 진행하고 6시간 후에 2차 구금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9시간 마다 구금심사를 통해 구금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24시간을 초과할 때는 경찰서장이 구금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고, 36시간을 초과할 때는 법원이 구금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체포적부심청구를 제외하고 48시간 후에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금의 연장 여부를 검토 받는 것이 전부이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체포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의 결정이 48시간의 시한을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한 영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국식 유치관리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수사부서와 독립된 부서에 소속된 관리자를 유치관리관으로 임명하고, 체포 피의자 개인별로 관련 기록과 심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²¹⁰⁾ 체포 구금된 피의자의 개인별 기록표

209) 헌법재판소 2010. 9. 30. 2008헌마628 결정.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청구 각하

210) 한국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은 수사과 소속의 유치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구금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이영돈은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상 수사과장이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으로부터 수사자료 기타 참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유치 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금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영돈,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 유치관리관 제도 연구, 법학논문집 43(1), (2020), 249면; 김태명, “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2004), 69면; 이상훈,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2), 148면.

에는 구금시간, 체포 및 구금 이유 등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정보의 고지 여부, 의료서비스의 제공여부, 변호인 접견 신청 여부, 구금 중 조사를 위한 출감 및 입감 시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여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구금의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구금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판단된다.

다섯 번째, 720시간에 달하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체포가 이루어지면 48시간 이내에는 구금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적 심사나 사법부에 의한 외부적 심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체포된 이후에 체포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으며 체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체포의 적절성 여부 심사나 구금의 계속성 여부 심사 등을 48시간이 되는 시점에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평가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부적으로 유치관리관(Custody Officer)이나 심사관(Review Officer) 제도를 통해 최초 체포 구금심사와 6시간 이후 구금 계속성 심사, 이후 9시간마다 구금의 필요성 여부 심사가 진행된다. 사법부에 의한 외부적 평가는 36시간 이내에 진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과 비교하여 12시간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

체포와 구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적 심사제도가 없고 외부적 심사가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진행된다는 문제점 이외에 더 큰 문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금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찰은 최대 240시간, 검찰은 무려 480시간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을 모두 합산하면 한국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은 최장 720시간에 달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피의자의 신분은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 계속 놓여 있을 수 밖에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무기의 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²¹¹⁾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구속에 의한 방어권 제한이 기본권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나타난 것임을 기억한다면 수사기관의 장시간에 걸친 구속기간이 방어권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이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최장 96시간으로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국 수사기관의 구금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은 무려 7배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기소 상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판사가 구금을 결정하면 구금 상태로 재판 절차로 나아가게 되고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에게 인치되고, 기소 상당성 여부 심사와 계속 구금 여부 심사 등을 거친 후에 재판에 회부된다. 사실상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은 최장 48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²¹²⁾

체포된 피의자의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체포 후 시간의 경과별로 구금의 필요성 또는 계속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기소 전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시간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로,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장소를 유치시설 내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설 밖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국의 소환명령장과 같이 관리책임자의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외부로 이동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치시설 내에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211) 이성기, “미국과 영국의 체포·구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체포·구금의 요건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4집, (2011), 311-340면.

212) 연방사건을 기준으로 체포 후 30일 이내에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소추결정 이후 치안판사에 의한 기소 상당성 심사가 20일 이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과 조사는 48시간 안에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성기, “미국과 영국의 체포·구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체포·구금의 요건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4집, (2011), 311-340면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경우, 유치장과 인접한 장소에 강제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수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체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를 위해 지방경찰청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나 검찰청의 경우에는 건물내에 유치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경찰서나 구치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구금시키고, 조사가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사무실 또는 조사실로 피의자를 이동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보호 보다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피의자를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 다시 피의자를 구금장소로 옮겨 구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유치시설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하고 다른 경찰서, 지방경찰청, 검찰청 등으로 이동하면서 사생활이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 등이 높은 외부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수갑 등을 착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조사과정에서도 도주의 우려가 고려되어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유치시설 내에 있는 조사실 보다 신체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조사를 이유로 피의자를 유치시설 밖으로 이동시켜 특정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효율성 보다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형사절차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이 유치시설을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경찰청이나 검찰청과 같이 외부 시설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소환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유치시설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유치시설 밖으로 이동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용자를 외부로 이동시켜 조사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로 이송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수사상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²¹³⁾

일곱 번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사법경찰관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입법으로 개정되지 않은 한 수사기관이 무조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참여의 형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전과정에 걸쳐 조사실에 동석하는 것이 ‘참여’의 해석으로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우리나라 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자조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하며 적어도 10% 이상의 수사관 증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외근수사의 비중이 적은 경제팀의 경우 정식 접수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조사의 비중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정식으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1,308.4분이었는데 이 중 피의자조사에 225.0분이 소요되었다.²¹⁴⁾ 물론 비교적 다른 활동의 비중이 큰 사이버수사팀의 경우 사건당 평균 2,296.5분이 소요되었는데²¹⁵⁾ 피의자조사는 그 중 250.72분이 소요되어 약 9%에 불과하지만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수사관 기준 최소 10% 이상을 증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수사부서의 정원은 2020년 기준 21,970명으로 10%만 증원하더라도 2,000여 명이 되고, 20%를 증원한다면 4,000여 명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통계에는 생활안전 및 교통은 물론 외사 등의 확대수사부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²¹⁶⁾ 실제 기준이 되는 수사관의 수는 훨씬 더 많다. 즉 2021년 기준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의 수사관을 제외한 과학수사, 수사, 형사, 사이버수사, 안

213) 조윤오, 영국 수사기관의 미결수용자 접견 및 호송에 관한 소고: 수용자 소환명령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2019, 169-186면, 180면

214)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48면. 경제팀 정식접수사건에 있어서 세부 업무를 피해자조사, 피의자조사, 참고인조사, 추적수사, 서류작업, 팀장지휘로 구분하여 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215) 정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17), 24-25면. 사이버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세부 업무를 첩보, 민원상담, 피의자조사, 참고인조사, 피해자조사, 통신자료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영장신청, 통신수사, 자료분석, 수사보고서작성, 출동준비, 현장출동, 기타외근증거수집, 신변확보(영장신청), 신변확보(추적수사), 디지털증거분석(자체),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수사지휘, 서류정리로 구분하여 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다만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전체 처리 및 기술적 수사에 걸리는 시간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6) 경찰의 수사인력을 수사경과자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2018년 경찰청 소속 수사경과자의 정원이 26,662명이고 현원이 29,611명이었다. 이형근,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73면. 이러한 통계는 실제로 수사를 하는 수사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사적이다. 다만 특히 확대수사부서에 있어서 수사경과자가 아닌 경찰관도 수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보수사의 인원만도 32,869명이다.

여덟 번째,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수사의 적법성 확보 또는 보조’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게 된다. 즉 얼마든지 다른 대안도 가능할 수 있으며 참여도 반드시 조사실에 계속 동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실무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또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신문 시 같은 사무실 및 공간에 있는 것을 참여로 보았고(19진정0678900 외 6건(병합) 사건, 22진정00248900 사건), 최근 개별 조사실이 설치된 이후에는 조사실 내에는 동석하지 않았으나 조사실 문을 닫고 영상녹화 장비가 있는 대기실에서 참여하거나 조사실 및 대기실 출입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사무실에서 조사내용을 듣거나 사무실 밖에서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한 것을 참여로 보고 있다(21진정0061800 외 4건(병합)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면접조사에서도 개별 조사실에 창문을 내서 옆 조사실 수사관이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조사의 처음과 끝에만 참여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의 관련 규정도 참여를 매우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구 수사준칙’ 이하 함)은 제25조 제7항에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법 제243조의 참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 이러한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반대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피의자조사에는 법 제243조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조사실에 ‘반드시’ 동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피의자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 수사준칙 등은 ‘영상녹화’ 하는 경우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영상녹화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조사의 객관성이 담보되므로, 조사 참여의 의미와 기능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주장²¹⁷⁾이 있으며 영

217) 이지은·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상녹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간에 사법경찰관리의 참여가 갖는 규범적 의미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²¹⁸⁾도 있다. 그러나 후자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동시에 구 수사준칙이 형사소송법상의 ‘참여’를 영상녹화 상황하에서만 유독 ‘조사실 내 동석’으로 규정하였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참여제도가 사법의 적법성 확보 및 보조에 목적이 있다면 사법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거나 보조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사법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자주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유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녹화하는 사건보다는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참여제도의 주요 목적을 보조가 아닌 적법성 확보에 둔다면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다른 사법경찰관리가 영상녹화 내용을 조사실 밖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²¹⁹⁾이 있는데 이러한 모니터링이 조사의 적법성 등의 확보에 있다면 오히려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감시와 통제까지도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적 성격이 강한 형사소송법의 경우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상황 및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의자조사 관련 가장 큰 변화로는 변호인참여제도와 영상녹화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위 두 제도 이외에도 피의자신문절차와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신문조서의 작성내용과 방법, 수사과정의 기록 등을 신문 시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하여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의자신문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어 왔으며 영상녹화제도의 경우 참여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여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훨씬 더 뛰어넘어 달성할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3호, (2014)

218) 이형근, 「피의자 신문 의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51면.

219) 이지은·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5), 18면. 면접 조사에서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한 참여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반드시 형사소송법의 현행 규정에 너무 엄매일 필요는 없고 조속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은 조사환경 구축시 고려해야 할 설계지침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설계지침을 고려한 구성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우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는 조사실 중심의 조사구역과 보안이 필요한 업무 구역으로 구분하고, 조사구역은 다시 체포 피의자를 조사하는 강제조사구역과 출입이 자유로운 임의조사구역으로 구분한다. 조사구역은 건물의 1층에 구축하고 업무 구역은 2층부터 설치하여 보안이 필요한 업무구역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피조사자와 일반인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은 민원동으로 한정한다.

두 번째, 조사실은 피조사자와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 조사자와 조사참여자 등 4인이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하고 조사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참여 또는 대질 신문 등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실과 조사실 사이에는 접이문을 두어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세 번째, 유치장은 현재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라 구성하고, 호송차 전용 보안차고, 통합수사상황실, 강제조사구역과의 연계성과 긴급상황시 비상탈출 등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본관 건물의 1층에 위치한다. 체포 피의자는 호송차 전용 보안차고로부터 이중 보안 잠금 문을 거쳐 통합수사상황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안 시설을 구축하고 통합수사상황실에서 유치실로 통하는 출입문에도 보안장치를 설치한다.

네 번째, 통합수사상황실은 강제조사구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체포 피의자가 인계되는 호송차고와의 이동 실, 개별 유치실로 이동하는 출입 시설, 조사실로 이동하는 출입시설, 경찰관이나 변호인 등이 이동하는 출입 시설을 모두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통합수사상황실에는 유치실 모니터링시스템과 개별 조사실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수사상황실에는 경찰관,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 이외에는 출입이

다섯 번째,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공간은 경찰서의 경우 1층에 유치장과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유치장과 연계하여 조사와 입출감 공간 사이의 이동 동선을 짧게 구성한다. 조사실로 이동할 수 있는 주출입로는 유치장으로부터 이동하는 출입로와 외부로부터 출입이 가능한 통로로 구축하는데, 두 개 통로 모두 통합수사상황실의 통제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여섯 번째, 체포 피의자 전용 대기실과 화장실은 통합수사상황실의 관리 스테이션에서 관찰이 가능한 공간에 유치실 입감 전에 조사가 필요한 체포 피의자를 위한 대기실을 구축한다. 대기실은 소음이 차단되고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벽으로 2개 이상 설치하고 안전의자를 두어 자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방지를 위해 통합수사상황실 내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일곱 번째, 수사기관의 조사구역은 유치장과 보안장치가 설치된 조사실로 구성된 강제조사구역과 피조사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임의조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임의조사구역은 조사실과 피조사자 대기실로 구성한다.

여덟 번째, 수사기관의 임의조사구역 입구에는 피조사자 대기실을 설치하고, 조사실 및 조사 순서가 표시되는 안내 모니터를 설치하여 대기시간과 장소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

아홉 번째, 강제조사구역과 임의조사구역 모두에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특별조사실을 설치하고,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성,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서 입구에서 조사실까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여청수사부서와 다른 수사부서가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을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녹화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상 녹화시설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모든 조사실에 녹음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녹음시설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지 및 관리 비용도 영상녹화시설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 조사실 등 조사환경을 구축하는 경우, 적절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으로써 경찰서 건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

에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경찰서 구조 및 환경 기초조사 단계로 경찰서의 부지, 건물면적, 건물 구조, 사무실별 배치, 공용공간 및 편의시설 등 조사실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과 시설전반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공간으로 확보가 가능한 면적을 산출하고 경찰서 전체 건물구조에서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경찰관들의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할지는 검토한다. 또한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유치장 입감이나 이송 등의 동선도 함께 고려한다.

둘째, 경찰서 구조 및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구역 지정안을 마련한다. 경찰서 조사실 설계표준안과 인권보호를 위한 설계지침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사실의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유치장과 조사공간의 인접성, 강제조사구역과 임의조사구역의 구분, 통합수사상황실 및 조사편의 영역의 배치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조사공간 전체 면적이 확보되면 1개 조사실 개별 면적을 산출한다. 각 구역의 선정과 조사실 배치에 따른 각 구역별 출입 가능한 대상자들의 동선과 이동 편의성,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 및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실의 배치와 설치가 인권보호적 측면의 설계지침에 부합한지 여부를 체크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들의 보행환경을 검토하여 휠체어 이동통로 등이 확보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셋째, 조사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경찰관, 피조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가 집단에는 건축분야 종사자, 변호사, 수사 분야 외부전문가, 상담사, 장애인 단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조사실의 위치, 동선, 조사실 면적 등 설치안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안을 반영한다. 각 경찰서별로 다른 건축물의 구조와 환경,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조사실의 개수, 면적, 조사실 형태, 방음장치, 가변형 칸막이 유형 등 세부적인 시설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넷째, 조사구역, 보안구역의 지정 및 설계안을 마련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권보호적 조사실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의도를 반영하고 업무효율성 측면에서의 경찰관들의 요구사항, 피조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진다. 설계단계에서는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설계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업무효율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설계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 결재 및 최종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사실 설치를 시행한다.

<표 VIII-1> 조사환경개선 설계지침

구분	세부지침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실 설치 기본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실을 사무공간과 완전하게 분리하여 조사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경찰서 건물 내에서 피조사자들과 민원인의 접근성이 가장 편리하고 경찰서 입구에서 조사실까지 이르는 최단거리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한다. • 조사공간은 임의수사구역과 강제수사구역을 구분하여 영역별 보안관리를 한다. • 조사공간 영역 내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제외한 피조사자와 변호인, 신뢰관계인, 조사자와 조사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활용되는 임의조사실 공간을 별도로 구성한다. • 강제수사구역과 인접하여 유치장을 배치함으로써 수사구역에서 유치장으로 이어지는 동선상에서 불필요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공간 설계</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층 설계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실은 불특정 다수 일반인의 접근성이 왕래가 많은 공용공간(휴게실, 화장실 등)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며, 조사실은 피조사자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본관동(또는 수사동)의 저층 또는 1층에 설치하며, 1개 층에 설치하여 집중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부득이하게 1개 층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수의 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사무공간은 조사공간과 분리하되 조사공간과 근접한 층에 설치한다. • 경찰서 부지관계, 건물구조 등으로 부득이 사무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하거나 사무공간에 접할 경우에는 복도 등으로 구분하여 사무실 밖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사실은 외부의 소리나 다른 사무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위치와 구조로 설치한다. • 유치장과 인접한 장소에 강제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수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공간은 경찰서의 경우 1층에 유치장과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유치장과 연계하여 조사와 입출감 공간 사이의 이동동선을 짧게 구성한다. • 조사실로 이동할 수 있는 주출입로는 유치장으로부터 이동하는 출입로와 외부로부터 출입이 가능한 통로로 구축하는데, 두 개 통로 모두 통합수사상황실의 통제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별도층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설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무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조사공간-사무공간을 분할하는 경우,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은 복도, 통로, 공용구역 등으로 구분한다. • 통합수사당직실을 구축하고 출입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체포피의자 강제수사구역을 지정하여 보안관리를 한다. • 유치장 및 강제조사구역, 체포피의자 이동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한다.
통합수사상황실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의 저층을 강제조사구역과 임의조사구역으로 구분하여 유치장과 조사실을 위치하도록 구성하고 체포 피의자 입감 장소, 유치실, 강제조사구역의 중간 지점에 통합수사상황실을 설치한다. • 경찰관,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시설을 설계한다. • 변호인이 출입이 가능한 통로는 통합수사상황실의 통제하에 조사실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유치실 모니터링시스템과 개별 조사실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 통합수사상황실에서는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현황, 강제조사구역에 설치된 조사실에서의 조사 현황, 임의조사구역에서의 조사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모니터링 시설을 구비한다. •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방지를 위해 통합수사상황실 내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유치장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유치장의 경우에는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름 (경찰청 예규) • 호송차 전용 보안차고, 통합수사상황실, 강제조사구역과의 연계성과 긴급상황시 비상탈출 등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본관 건물의 1층에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 체포 피의자는 호송차 전용 보안차고로부터 이중 보안 잠금문을 거쳐 통합수사상황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안 시설을 구축한다. • 통합수사상황실에서 유치실로 통하는 출입문에도 보안장치를 설치한다.
조사공간의 세분화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공간은 조사구역(임의수사구역, 강제수사구역), 유치장, 통합수사상황실, 조사편의영역(임의조사 피조사자 대기실 및 화장

	<p>실)으로 구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조사구역에는 체포피의자 조사영역 및 유치장 입감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체포피의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 공간 및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한다. 대기실은 소음이 차단되고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벽으로 2개 이상 설치하고 안전의자를 두어 자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강제조사구역에서 유치장 입출감을 위한 통로 및 이송 외부에서 보안구역으로 출입하는 별도의 출입구와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체포된 피의자와 기타 피조사자 간의 동선을 분리한다.
<p>업무공간의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공간을 별도의 층으로 배치하는 경우, 저층부에 배치된 조사공간에서 인접한 별도의 층에 업무공간을 배치한다.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거리는 가급적 가까운 동선 상에 위치하도록 한다.
<p>동선체계를 고려한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공간 외부에 설치된 조사공간이 부득이 사무실과 같은 1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본관입구에서 별도의 사무공간을 경유하지 않고 조사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최단 거리의 수직 동선으로 배치하여 사생활 침해 요소를 최소화 한다. 피의자, 참고인 등이 조사실로 가는 동선에는 보안구역을 거치지 않도록 영역을 완전하게 분리하고, 체포피의자 조사영역과 일반조사영역을 가급적 분리하여 배치한다. 체포피의자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여 동선을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한다. 부득이 체포피의자 조사영역과 일반조사영역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참고인 등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한다. 조사공간이 1층이 아닌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관입구에서 조사실로 가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사무공간을 거치지 않고 조사실에 입실 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최단 거리로 확보한다. 민원인들이 조사실로 가는 과정에서 사무실 근무자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확보하여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 근무자나 여타 조사 중인 민원인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한다. 만약 동일 층에 사무실과 조사실을 배치할 경우에는 사무실과 조사실을 복도를 사이로 구분하여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만약 사무실 내에 조사실이 배치된 경우에는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외부 복도를 통해서 바로 입실할 수 있는 입구를 구분하여 2개를 설치, 사무공간 혹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특별조사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성,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서 입구에서 조사실까지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편의영역 및 대기공간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참여인이 조사 전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조사대기공간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배치한다. 책상과 의자는 피조사자들의 변호인, 신뢰관계인이 필요시 함께 착석할 수 있도록 2인용을 기준으로 한다. • 대기실 내에서는 가구가 배치된 공간 이외에 적정면적의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로비나 계단, 화장실 등의 공용공간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기실을 벽체생성 또는 가림막 설치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대기실 내에서 개방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 수사기관의 조사구역 입구에는 피조사자 대기실을 설치하고, 조사실 및 조사 순서가 표시되는 안내 모니터를 설치하여 대기시간과 장소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용공간으로 뚫린 창문은 불투명창으로 설치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참여경찰관, 변호인, 신뢰관계인 참여를 위한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인 참여 및 신뢰관계인 동석을 고려한 대형조사실을 확보한다. • 조사실과 조사실 사이에는 접이문을 두어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만약 1개 조사실에서 모든 책상, 의자 등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실 사이를 가변형 칸막이, 접이식 문(폴딩도어)으로 구분하고 필요시에 벽을 개방하여 조사와 관련된 변호인, 신뢰관계인, 참여경찰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변호활동 등을 위해 전자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책상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조사실은 피조사자와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 조사자와 조사참여자 등 4인이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한다. • 조사용 책상과 컴퓨터 외에도 추가적으로 별도의 업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설치하여 참여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진술녹음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책상을 배치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해당 책상에 조사관, 피조사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기 위한 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녹화실 구축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수사부서(수사, 형사, 여청, 교통 등)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녹화 가능한 조사실을 구비한다. • 모든 조사실에 녹음시설을 설치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경찰청, 「경찰백서」 2008.
- 경찰청, 「경찰백서」 2009.
-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2012.
-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 제4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157면.
- 라라기 토키오(저)/조균석(역), 「일본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177면.
- 배종대·홍영기, 「형사소송법」 제3판, 홍문사, 2022, 121면.
- 백형구·차용석(편집), 「주석 형사소송법」 제3판, 1999, 323면.
- 성범죄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성범죄재판실무편람」, 2014, 109면.
-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6, 23면.
- 이형근,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 정진성 외, 「스토리텔링 범죄학 II」, 슬과학, 2023, 401면.
- 최영승,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세창, 2006, 89면.

2. 논문

- 김대근,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종결의 쟁점과 대안-법해석학적 의미와 입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2022), 55-81면.
- 김태명, “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유치장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2004), 69면.
- 김택수, “검찰서기관의 다중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9호, (2013), 77면.
- 김택수 외, “수사경찰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226면.
- 노명선, “검찰의 신뢰 확보 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연구보고서, (2010).
- 박형식, “피의자신문시 참여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3권 제2호,

- (2014), 127-146면.
- 신동운,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법학연구」, 제47권 제1호, (2006), 107-132면.
- 오병두,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2021), 7-33면..
- 이상훈,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2), 148면.
- 이성기, “미국과 영국의 체포·구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체포·구금의 요건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4집, (2011), 311-340면.
- 이영돈,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 유치관리관 제도 연구, 법학논문집 43(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 이완규, “검사의 신문과정상 참여수사관의 역할과 한계”, 「형사판례연구」, 제21권, (2013).
- 이지은·박노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5), 3-23면.
- 이형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시론적 검토”, 「경찰법연구」, 제21권 제2호, (2023). 109-130면.
- 이형근, “제정 수사준칙상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고찰-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20), 95-133면.
- 장응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전문가 참여의 법적 성격 검토”,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5권 제1호, (2021).
- 장응혁,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조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 장응혁, “일본의 형사사법과 인질사법”, 「일본비평」 제29호, (2023). 202-223면.
-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48면.
- 정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17), 24-25면.
- 조운오, 영국 수사기관의 미결수용자 접견 및 호송에 관한 소고: 수용자 소환명령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2019, 169-186면.

- 최대현·이동희, “수사사무환경이 경찰 수사관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찰학논총」, 11(2), (2016), 113-147면.
- 최대현, “수사와 기소 기능분리의 원칙과 한계: 영국 검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경찰학연구」, 12(4) 32호, (2012), 52-80면.
- 최대현,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형사절차 개혁방향에 대한 소고”, 「서울대학교법학」, 제54권 제2호, (2013), 53-78면.
-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 木谷明, “違法捜査と冤罪”, 「日本評論社」, (2021), ii - iii 면.
- 濱田毅, “検察における取調べの録音・録画”, 「刑法雑誌」 第62巻 第1号, (2023), 12-13면.
- 三島聡, “8 被疑者取り調べへの弁護人の立会い”, 「刑法雑誌」 第62巻 第3号, (2023), 541면.
- 川崎英明·小坂井久 編, “弁護人立会権 取調べの可視化から立会いへ”, 「日本評論社」, (2022).
- Corinne Davis Rodrigues, “Civil Democracy, Perceived Risk, and Insecurity in Brazil: An Extension of the Systemic Social Control Model”,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5(1), (2006), p. 242.
- Guillermo O'Donnell,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5, (1994), pp. 61-62.
- Herbert Packer, “The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 Home Office, “Interviewing Suspects”, (2023), p. 55
- Hung-En Sung, “Democracy and Criminal Justic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From Crime Control to Due Proces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5(1), (2006).
- Keith Hawkins, “Law as Last Resort: Prosecution Decision-making in a Regulatory Agen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Mark Moore, “Notable Speech: Legitimizing Criminal Justice Policies and Practices” ,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66(10), (1997).

Neal Tate and Stacia L. Haynie, “Authoritarianism and the Functions of Courts: A Time Series Analysis of the Philippine Supreme Court, 1961-1987” , Law & Society Review, 27(4), (1993), pp. 733-736.

Paul M. Bator, “Finality in Criminal Law and Federal Habeas Corpus for State Prisoners,” Harvard Law Review, 76(3), (1963), p. 442.

3. 기사

경찰청, “경찰서 수사공간 '인권친화적' 바뀐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 10. 23.

공재만, “인천경찰, 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 인권친화적 미래지향적 수사환경조성 착수” , 폴리스TV, 2020. 9. 13.

권오혁, “수사 사무공간 따로따로, 경찰서가 달라졌어요” , 동아일보, 2015. 10. 24.

김아영, “창살 없는 유치장, 경찰서도 변화” , 강원방송, 2019. 3. 11.

김종례, “조사실 설치로 '프라이버시' 보호 극대화” , 충청뉴스라인, 2016. 10. 25.

김종환, “해경, 전국 77개 '독립 조사실' 신설, 피조사자 인권보장” , 일간경기, 2019. 10. 23.

김진태, “평택해양경찰서, 인권보호차원 '독립 조사실' 운영” , 기호일보, 2019. 5. 23.

김태현, “출범 2년 반 구속영장 '전패'... '공수처' 자초한 공수처” , 노컷뉴스, 2023. 8. 5.

문정연, “대구 달성경찰서 형사,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독립조사실 운용” , 전국경찰뉴스, 2019. 4. 1.

민영규, “부산 경찰서에 피의자 전용 조사실 잇따라 마련” , 부산연합뉴스, 2013. 3. 25.

박지혜,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측 변호인이 밝힌 사건개요” , 머니투데이, 2012. 11. 25.

박진숙, “소파에 칸막이까지, 확 달라진 경찰서 조사실” , 뉴스핌, 2018. 10. 11.

- 손현수, “대법원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 증거 사용 부적절”, 법률신문, 2020. 6. 24.
- 송상현, “경찰, 안보수사본부 신설 논의 멈칫…“시기상조“ 결론”, 뉴스1, 2023. 3. 10.
- 송정은, “경찰청 ‘참여경찰관제’ 이행 전수조사…인권위 권고 수용”, 연합뉴스, 2023. 1. 12.
- 이미령, “서울 31곳 모든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운영”, 연합뉴스, 2023. 4. 14.
- 이보라 외, “또 검찰수사권 강화 ‘시행령 통치’”, 경향신문, 2023. 7. 31.
- 이승훈, “경찰서 유치장에 쇠창살 사라지고 난방시설 갖춰졌다?. 경찰청 서울지방변호사회,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개선시설 시찰”, 민중의 소리, 2018. 3. 21.
- 이유나,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녹음파일, 법정서 전체 재생한다”, YTN, 2023. 8. 28.
- 이유진, “수사권 쥔 경찰, 17년 만에 수사체제 대수술 . . . ‘조직 효율화’ 앞세웠지만 내부는 ‘부글부글’”, 경향신문, 2022. 1. 18.
- 이정현 외, “수사권 조정 후 경찰 형사·수사 인력난…기피 악순환”, 연합뉴스, 2022. 2. 14.
- 장나래, “‘피싱 →형사과, 명예훼손→경제과’ … 수사경찰 업무 분장 개편” 한겨레, 2023. 8. 8.
- 청와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1. 14.
- 최지은 외, ““자전거 도둑 맞았다“ 신고 2달째 세월아 네월아…경찰의 속사정”, 머니투데이, 2022. 8. 21.
- 해양안전팀, “전국 해양경찰관서, 인권친화적 조사공간 완공”, 해사신문, 2019. 10. 25.
- 日本弁護士連合会, 「人質司法」の解消を求める意見書, 2020. 11. 17, 8-12면,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opinion/year/2020/201117.html>(최종 검색일: 2023. 8. 18).

4. 판결문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2361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고합1223 판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마628 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33-01
발행일 2023. 11. 22.

ISBN 978-89-6114-975-4 93350